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 학 진 흥 기 금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 우 정
전 문 위 원 강 대 훈

2023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선화	518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광호	5187
	글로벌교육기획관	김광호	5187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이동훈 오규환	5185 5188
	지역인재정책관	오규환	51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박원일	5193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김수환 창성현	5186 5184
	학생건강정책관	창성현	5184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선화	5189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김수환	5186
영유아정책국		조성희	519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이동훈 김광호	5185 5187

목 차

Ⅰ. 결산 개요 ---- 1

1. 총 괄 ---- 1

가. 세입·세출 결산 ---- 1
나. 기금 결산 ---- 2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 4

2. 세입·세출 결산 ---- 5

가. 일반회계 ---- 5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4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16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8

3. 기금 결산 ---- 22

가. 사학진흥기금 ---- 22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29

4. 재무 결산 ---- 37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37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39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41

5. 2023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 42

6. 2023회계연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결산 ---- 45

7.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50

가.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 50
나.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 50
다.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 50

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54

Ⅱ. 검토의견 ---- 55

1. 총괄 ---- 57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총괄 ···· 59

1) 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 59

가) 교부금 결산 현황 ···· 59

나)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 63

2) 검토의견 ···· 74

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 74

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82

(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의 배분비율 미준수 ···· 82

(2) 법률개정 취지에 위반한 부실한 국가시책 특교 국회 보고 ···· 88

(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운용상 문제점 ···· 98

(가) 특별교부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 추진사업 과다 ···· 98

(나) 인건비성 경비, 해외연수비, 홍보비, 정책연구비, 업무추진비, 비품구입, 각종 수당 등 편성 최소화 항목 규모 증가 ···· 102

(다) 위탁기관에 의한 사업 집행 과다 ···· 106

(라) 국가시책사업심의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필요 ···· 111

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114

: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수행시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검토 필요 ···· 114

라) 보통교부금: 명확한 기준없는 산정방식 ···· 120

마) 지방교육재정 운용 ···· 124

(1) 학령인구 감소(저출산)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필요 ···· 124

(2) 학교안전을 고려한 재정제도 확립 필요 ···· 133

(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133

(나) 학교안전 관련 예방사업 강화 및 지출기준 설정 검토 필요 ···· 137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 14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14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143

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 149

1) 국가재무제표상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부채 과소계상 ···· 149

: BTL 부채 과소계상 ···· 151

2. 기획조정실 ---------- 156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 158
(1)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격차를 개선할 필요 ····· 160
(2) 신속한 사업 집행잔액 정산 및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를 촉구할 필요 ····· 165
【일반회계】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169
(1) 재외한국교육원 일부 통폐합 검토 필요 ····· 171
(2) 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 확대 필요 ····· 177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 182
: 교원해외진출사업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사업 방식 재설계 필요 ····· 184
3. 디지털교육기획관 ---------- 189
【일반회계】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 191
(1) 교육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 193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체수입의 재원 확보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201
2)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 205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의 효과성 파악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06
4. 인재정책기획관 ---------- 212
【일반회계】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 214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21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222
: 신규사업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 ····· 226
2)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 231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234
(2)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교육부 재지정 조건의 재량권 준수 필요 … 238
3) 인문사회기초연구(R&D)……240
(1) 회계연도내 연구기간 고려 미흡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 242
(2)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 245
4)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9
(1) 대학중점연구소 중 LAMP 사업(신규)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 251
(2) 지역대학 R&D 배분에 따른 연구성과 등 평가 필요 …… 254

5. 지역인재정책관 ---- 25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259
(1)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환류체계 마련 필요 …… 261
(2)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66
2) 국립대병원 지원……269
(1)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 필요 …… 271
(2)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개선 필요 …· 279
3) 학교기업 지원사업…… 282
: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 필요…… 283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292

【일반회계】

1) 장애학생교육지원…… 294
: 장애학생 대학자율사업 관리 강화 필요…… 296
2) 한국장학재단 출연…… 301
: 이자면제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303
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06
: 드림장학금 지원 중 중도 포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08
4)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316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318
5)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326
: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필요…… 327

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 333
: 매치업 직무능력인증서의 사회적 활용도 강화 필요 ····· 335

7. 책임교육정책관 ---------- 344

【일반회계】

1)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346
: 연도 말 계약 체결에 따른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 348
2)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356
(1)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 358
(2) 사업계획 준비 및 사업추진 실적 미흡 ····· 367
3) 영재교육 지원사업 ····· 378
: 회계연도를 벗어난 예산집행 개선 필요 ····· 379
4)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 386
: '대학 연계 심화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제고 필요 ····· 388
5)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 397
: 법률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9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405
: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 필요 ····· 407

8. 학생건강정책관 ----------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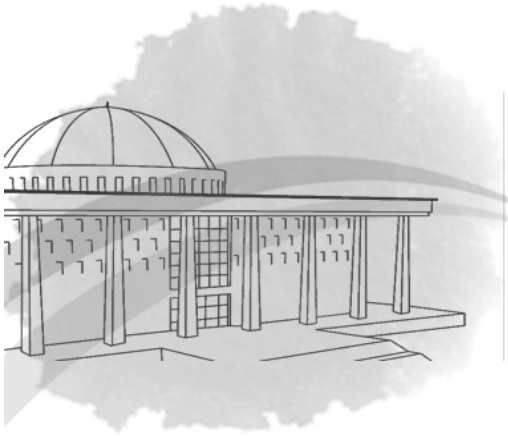
【일반회계】

1) 교육급여 ····· 414
(1) 교육급여 신청절차 일원화를 통한 실집행 개선 필요 ····· 415
(2) 지급방식 변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관리 개선 필요 ····· 423
2) 고등학교 무상교육 ····· 426
: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 필요 ····· 427
3)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 432
(1)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신속한 운영기관 선정 필요 ····· 433
(2)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성과 미흡 ····· 438
4)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 444
: 연구용역 계약 사업 집행관리 개선 필요 ····· 445

9. 교원학부모지원관 ---------- 449
【일반회계】
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451
(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 453
(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 ····· 455
(3)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 ····· 45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 459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 460
2)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468
: 정보화 관리용역사업의 적정 사업 및 비목 편성 집행 필요 ····· 469
10.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473
【일반회계】
1)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 475
(1) 교육기부 실적 개선 필요 ····· 476
(2) 법적 근거 없는 출연금 지급 부적절 ····· 482
2)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484
(1) 조속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필요 ····· 485
(2) 반복되는 사업비 재재이월 부적절 ····· 491
11. 영유아정책국(영유아 보육 이관 사업) ---------- 497
【일반회계】
1) 영유아보육료 지원 ····· 499
: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의무지출 사업의 예비비 편성 지양 ····· 501
2) 어린이집 확충 ····· 507
(1) 어린이집 확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 ····· 509
(2)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균형배치 필요 ·· 517
3) 보육사업관리 ····· 522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 524
4)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530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구조적인 집행 부진요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532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540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부적절 ····· 542
(2)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 550
1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5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 558
(1)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의 교부와 사업 대상 선정 절차 개선 및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559
(2) 당초의 사업 목적 중 '학교 복합화'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이에 기반한 사업 관리 필요 ····· 57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573
(1)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 575
(2) 고가·첨단기자재확충사업의 관리를 위한 조치 필요 ····· 583
(3) 고가 기자재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591
2) 국립대학 시설확충 ····· 595
: 국립대학의 실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 ····· 596
【사학진흥기금】
1) 행복기숙사지원사업 ····· 607
(1)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낮은 실집행률 ····· 609
(2)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616

Ⅰ. 결 산 개 요



1. 총 괄

가.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조 5,050억 6,100만원이며, 13조 7,392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13조 7,360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31억 7,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277,050	277,050	634,922	632,741	2,171	9	99.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244	15,244	20,163	20,163	0	0	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470,037	3,489,000	3,487,999	1,002	0	1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42,730	9,742,730	9,595,117	9,595,117	0	0	100.0
합계	13,505,061	13,505,061	13,739,202	13,736,020	3,173	9	99.7

자료: 교육부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0조 1,996억 6,500만원이며, 이 중 90.1%인 99조 3,294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73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조 8,528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96,915,883	96,926,556	86,243,138	16,637	10,666,780	8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21,158	421,158	383,741	0	37,417	91.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	3,470,037	3,470,037	0	0	1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01	9,381,914	9,232,583	670	148,661	98.4
합계	110,184,379	110,199,665	99,329,499	17,308	10,852,858	90.1

자료: 교육부

나. 기금 결산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3조 6,049억 2,600만원이며, 11조 7,484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3%인 11조 6,662억 3,500만원을 수납하고 815억 9,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6억 3,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46,158	13,246,158	13,246,158	11,307,181	11,271,346	35,196	639	99.7
사학진흥기금	358,768	358,768	358,768	441,288	394,889	46,399	0	89.5
합계	13,604,926	13,604,926	13,604,926	11,748,469	11,666,235	81,595	639	99.3

자료: 교육부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3조 6,049억 2,600만원이며, 이 중 85.5%인 11조 6,66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7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246,158	13,246,158	13,246,158	11,271,346	0	25,946	85.1
사학진흥기금	358,768	358,768	358,768	394,889	384	24,842	110.1
합계	13,604,926	13,604,926	13,604,926	11,666,235	384	50,788	85.8

자료: 교육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35억원 6,000만원(0.7%)이 감소한 6조 4,19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135억원 6,400만원(7.4%)이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388,713	246,194	673,519	427,325	284,806
기금	6,544,192	6,216,707	5,745,822	△470,885	△798,370
합계	6,932,905	6,462,901	6,419,341	△43,560	△513,564

주: 총수입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수입
자료: 교육부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조 7,553억 7,200만원(11.7%)이 감소한 91조 5,68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조 9,695억 2,300만원(8.9%)이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A)	2023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예산	94,630,675	95,993,631	85,286,414	△10,707,217	△9,344,261
기금	5,907,690	6,330,583	6,282,429	△48,154	374,739
합계	100,538,365	102,324,214	91,568,842	△10,755,372	△8,969,523

주: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자료: 교육부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교육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770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6,349억 2,200만원임. 실제 수납액은 6,327억 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7%임. 불납결손액은 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7,1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77,050	634,922	632,741	9	2,171	99.7
재산수입 (토지, 건물대여료 등)	14,982	30,001	29,846	-	155	99.5
경상이전수입 (벌금, 과태료 등)	188,042	527,703	525,682	9	2,012	99.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잡수입 등)	179	203	199	-	4	98.0
수입대체경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25,146	29,361	29,361	-	-	100.0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2,601	1,554	1,554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기금전입금)	46,100	46,100	46,100	-	-	100.0

자료: 교육부

❑ 주요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기타재산이자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등이 수납됨.

주요 수납내역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524,968백만원
- 기타재산이자수입	29,496백만원
-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22,152백만원

❑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산금 등임.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미도래,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에 따른 것임

주요 미수납 내역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450백만원
- 가산금	450백만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1억 7,374만원, 2022년 24억 9,976만원, 2023년 21억원 7,14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2021 ~ 2023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2021년	241,418	378,612	376,423	2,174	-	99.4
2022년	208,766	431,352	428,853	2,499	-	99.4
2023년	277,050	634,922	632,741	2,171	9	99.7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교육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계기준 96조 9,158억 3,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107억 2,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6조 9,265억 5,600만원임. 이 중 89.0%인 86조 2,431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6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조 6,667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계기준[1])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6,915,833	10,723	96,926,556	86,243,138	16,637	10,666,780
유아및초중등교육	80,379,069	13,557	80,392,626	69,975,489	14,055	10,403,082
고등교육	15,728,302	-	15,728,302	15,474,053	-	254,249
평생·직업교육	501,563	4,007	505,570	499,081	1,044	5,445
교육일반	149,586	△6,841	142,745	137,204	1,538	4,003
기초생활보장	157,313	-	157,313	157,311	-	2

자료: 교육부

1)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함.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바, 재정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수입, 총지출이 함께 활용됨.

가) 이체、이용、전용액

❑ 교육부 2023회계연도 이체액은 98억 9,100만원, 이용액은 34억7,200만원으로, 신설된 조직 이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하는 비용에 따르는 것임.

❑ 전용액은 162억 1,6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ICL 대납이자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체	이 용	전 용
2023년도	△9,891	3,472	± 16,216

자료: 교육부

주요 이체 내역

-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9,891백만원

주요 이용 내역

- 잼버리 재해대책비 등 3,472백만원

주요 전용 내역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ICL 대납이자 등 13,800백만원
- 기타 등 2,416백만원

나) 다음연도 이월액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66억 3,74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명시이월액은 없음.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학교교수학습혁신과)	690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341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349백만원	사고이월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교육콘텐츠정책과)	863	o (연구용역)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이월 등 - 일반연구비(260-01) : 3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0백만원 o (민간이전) 미지급급 지급을 위한 이월 등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809백만원	사고이월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교육시설과)	10,276	o (건설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55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9백만원 - 공사비(420-03) : 10,023백만원 - 감리비(420-04) : 117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4백만원 o (유형자산) 사업계획 변경, 설계 지연 등 - 자산취득비(430-01) : 68백만원	사고이월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교육시설과)	2,225	o (건설비) 동절기 공사주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 - 공사비(420-03) : 2,204백만원 - 감리비(420-04) : 21백만원	사고이월
정책연구개발사업(R&D) (기획담당관)	93	o (연구용역)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등 - 정책연구비(260-02) : 93백만원	사고이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국립국제교육원)	11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용역비(210-14) : 11백만원	사고이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국립국제교육원)	87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용역비(210-14) : 87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국립국제교육원)	339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용역비(210-14) : 339백만원	사고이월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교육데이터담당관)	302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302백만원	사고이월
교육행정감사지원 (반부패청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184	o (운영비) 연구용역 일정 순연 등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백만원 o (연구용역) 미지급금 이월 등 - 일반연구비(260-01) : 180백만원	사고이월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사회정책총괄담당관)	163	o (운영비) 미지급금 이월 등 - 일반용역비(210-14) : 93백만원 o (연구용역) 미지급금 이월 등 - 일반연구비(260-01) : 70백만원	사고이월
본부·소속기관 기본경비 (본부, 소속기관)	1,404	o (운영비 등) 경상경비 이월 등: 1,404백만원	사고이월

자료: 교육부

다) 불용액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불용액은 10조 6,667억 80백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3,970억원,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1,066억원 등임.

주요 불용 내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3,970억원
-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	1,066억원
- 인건비 등 기타	1,632억원

라) 세출결산 증감 현황

❑ 2023회계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0%로 2022년 대비 △10.8%p 감소하였으며, 2021년 대비 △10.7%p 감소하였음.

❑ 불용액은 2022년보다 10조 5,117억 6,300만원 증가한 10조 6,667억 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22년 대비 32억 6,600만원 증가한 166억 3,700만원임.

< 최근 3년(2021 ~ 202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비율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년	76,989,028	77,021,220	76,823,679	99.7	16,941	180,600
2022년	94,233,013	94,272,632	94,104,243	99.8	13,371	155,017
2023년	96,915,833	96,926,556	86,243,138	89.0	16,637	10,666,780

자료: 교육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52억 4,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1억 6,300만원으로 이 중 100.0%에 해당하는 201억 6,300만원이 수납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음.

< 2023 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5,244**	**20,163**	**20,163**	**-**	**-**	**100.0**
지역지원계정	15,244	20,163	20,163	-	-	100.0
- 기타재산수입	2,541	2,890	2,890	-	-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12,703	17,273	17,273	-	-	100.0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11억 5,800만원으로, 이 중 91.1%인 3,837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불용액은 374억 1,700만원으로 그린스마트스쿨조성 사업 집행 잔액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액은 지역지원계정으로 3,83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21,158	421,158	383,741	-	37,417
유아및초중등교육	421,158	421,158	383,741	-	37,417

자료: 교육부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되었음.

❑ 2023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조 4,700억 3,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조 4,89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3조 4,879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억 1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470,037	3,489,000	3,487,999	-	1,001	99.9
재산수입	-	2,712	2,639	-	73	97.3
경상이전수입	-	65,003	64,075	-	928	98.6
세계잉여금	111,767	63,015	63,015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358,270	3,358,270	3,358,270	-	-	100.0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4,700억 3,700만원으로, 이 중 100.0%인 3조 4,700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470,037	3,470,037	3,470,037	-	-
지방교육정책 지원	3,470,037	3,470,037	3,470,037	-	-

자료: 교육부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2023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조 7,427억 3,000만원, 징수결정액은 9조 5,951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인 9조 5,951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 2023회계연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9,742,730	9,595,117	9,595,117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742,730	9,595,117	9,595,117	-	-	100.0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조 3,819억 1,400만원으로, 이 중 98.4%인 9조 2,325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억 7,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486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전용액은 16억 3,5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공공요금 부족 등에 의한 것임.

❑ 불용액은 1,486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임.

< 2023회계연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프로그램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377,301	9,381,914	9,232,583	670	148,661
고등교육	8,438,181	8,442,794	8,293,463	670	148,661
평생·직업교육	939,120	939,120	939,120	0	0

자료: 교육부

가) 이체, 이월, 전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체	이 월	전 용
2023년도	-	670	±1,635

자료: 교육부

주요 전용 내역	
- 국립대학 기본경비 공공요금 부족 등	1,635백만원

나) 다음연도 이월액

❑ 2023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6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명시이월액은 없음.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학술단체지원(R&D) (학술연구정책과)	520	o (민간이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20백만원	사고이월
국립대학 시설확충 (교육시설과)	150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용역비(210-14) : 150백만원	사고이월

자료: 교육부

다) 불용액

❑ 2023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의 불용액은 1,486 억 6,100만원으로 국립대학 인건비 985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165억원 등임.

주요 불용 내역	
- 인건비	98,535백만원
- 국립대병원 지원	16,537백만원
- 기타	33,589백만원

3. 기금 결산

가. 사학진흥기금

1) 재무상태

❑ 2023년도 말 기준 사학진흥기금 총 자산은 1조 6,051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1억 5,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유동자산 2,531억 9,800만원, 투자자산(융자금 등) 1조 3,319억 8,500만원,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99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기말 부채총액은 1조 1,114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억 6,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유동부채 1,502억 3,400만원, 비유동부채 9,612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기말 순자산 금액은 4,936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00만원 증가함.

< 2023년도 사학진흥기금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자 산	유 동 자 산	253,198	266,480	△13,282
	(1) 현금및현금등가물	89,989	104,565	△14,576
	(2) 단기금융상품	1,900	1,600	300
	(3) 단기대여금 등	161,309	160,315	994
	투 자 자 산	1,331,985	1,342,167	△10,182
	(1) 장기금융상품	-	-	
	(2) 장기대여금	1,331,330	1,341,530	△10,200
	(3) 기타투자자산 등	655	637	18
	일반유형자산	19,252	19,698	△446
	무형자산	632	916	△284
	기타비유동자산	76	34	42
	계	1,605,143	1,629,296	△24,153
부채및자본	< 부 채 >	1,111,474	1,135,739	△24,265
	(1) 유동부채	150,234	131,075	19,159
	(2) 비유동부채	961,240	1,004,664	△43,424
	< 순 자 산 >	493,669	493,557	112
	(1) 기본순자산	195,832	195,832	0
	(2) 적립금 및 잉여금	295,873	295,751	122
	(3) 순자산조정	1,964	1,974	△10
	계	1,605,143	1,629,296	△24,153

자료: 교육부

2) 손익상황

❑ 사학진흥기금의 2023년도 프로그램 총원가는 전년대비 36억 4,100만원 증가한 345억 2,000만원임. 프로그램순수익은 전년대비 27억 3,800만원 증가한 367억 7,600만원이며, 프로그램 순원가는 전년대비 9억 300만원 감소한 22억 5,600만원임.

❑ 공통비용인 관리운영비는 전년보다 4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등으로 구성된 비배분비용은 전년보다 8억 5,600만원 증가함.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된 비배분수익이 21억 3,3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는 1억 2,300만원임.

< 2023년도 사학진흥기금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3년(A)	2022년(B)	증감(A-B)	
Ⅰ. 프로그램총원가	**34,520**	**30,879**	**3,641**	
1. 대학자율역량강화	2,135	2,425	△290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32,385	28,454	3,931	
Ⅱ. 프로그램순수익	**36,776**	**34,038**	**2,738**	
1. 대학자율역량강화	1,477	1,208	269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35,299	32,830	2,469	
Ⅲ. 프로그램순원가(Ⅰ-Ⅱ)	**△2,256**	**△3,159**	**903**	
1. 대학자율역량강화	658	1,217	△559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2,914	△4,376	1,462	
Ⅳ. 관리운영비	4,259	3,840	419	공통비용
Ⅴ. 비배분비용	1,901	1,045	856	법인세 등
Ⅵ. 비배분수익	4,027	1,894	2,133	여유자금 운용 등
Ⅶ. 재정운영순원가 (Ⅲ+Ⅳ+Ⅴ-Ⅵ)	△123	△168	45	
Ⅷ. 비교환수익등	-	-	-	
Ⅸ. 재정운영결과(Ⅶ-Ⅷ)	△123	△168	45	

자료: 교육부

3) 운용실적

가) 수입결산

❑ 사학진흥기금의 2023년도 수입실적은 계획현액 3,587억 6,800만원보다 361억 2,100만원(10.1%) 증가한 3,948억 8,900만원임.

< 2023년 사학진흥기금 수입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증감	
			(B-A)	%
계	358,768	394,889	36,121	10.1%
ㅇ 자체수입	170,962	189,779	18,817	11.0%
ㅇ 정부내부수입	147,248	98,804	△48,444	△32.9%
ㅇ 여유자금회수	40,558	106,306	65,748	162.1%

자료: 교육부

❑ 자체수입은 계획현액 1,709억 6,200만원 대비 188억 1,700만원 증가한 1,897억 7,900만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차입금 감소로 계획현액 1,472억 4,800만원 대비 484억 4,400만원 감소한 988억 400만원임. 여유자금회수는 계획현액 405억 5,800만원 대비 657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63억 600만원임.

나) 지출결산

❑ 2023년도 지출결산의 경우 계획현액 3,587억 6,800만원 대비 3,948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8억 4,300만원을 불용하고 3억 8,400만원을 이월함.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의 경우 계획현액 1,711억 3,400만원 대비 1,496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214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금운영비는 계획현액 98억 8,700만원 대비 9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4,900만원 불용하고 3억 8,400만원 이월함.

정부내부지출은 계획현액 1,470억 6,400만원 대비 1,440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1,900만원 불용함.

여유자금운용은 920억 3,100만원임.

< 2023년도 사학진흥기금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 현액(A)	실적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계	358,768	394,889	110.1	384	24,843
<사업비>	171,134	149,659	87.5	-	21,475
[2302]학교경영지원사업	1,229	1,165	94.8	-	64
[450]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229	1,165	94.8	-	64
[2861]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169,905	148,494	87.4	-	21,411
[300]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88,522	77,307	87.3	-	11,215
[301]행복기숙사 지원사업	70,733	70,733	100.0	-	-
[305]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10,650	454	4.3	-	10,196
<기금운영비>	9,887	9,154	92.6	384	349
[2976]기금운영비	8,576	8,246	96.2	7	323
[100]인건비	5,631	5,445	96.7	-	186
[200]기타경비	2,915	2,771	95.1	7	137
[206]대학재정분석	30	30	100.0	-	-
[2978]정보화경비	1,311	908	69.3	377	26
[250]정보시스템운영	1,311	908	69.3	377	26
<정부내부지출>	147,064	144,045	97.9	-	3,019
[9110]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110,000	110,000	100.0	-	-
[841]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110,000	110,000	100.0	-	-
[9111]주택도시기금예수원금상환	14,205	14,204	100.0	-	1
[840]주택도시기금예수원금상환	14,205	14,204	100.0	-	1
[9201]공자기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12,489	9,923	79.5	-	2,566
[841]공자기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12,489	9,923	79.5	-	2,566
[9202]주택도시기금예수이자상환	10,370	9,918	95.6	-	452
[840]주택도시기금예수이자상환	10,370	9,918	95.6	-	452
<여유자금운용>	30,683	92,031	299.9	-	-
[9701]여유자금운용	30,683	92,031	299.9	-	-
[971]통화금융기관예치금	30,683	92,031	299.9	-	-

자료: 교육부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재무상태

❑ 2023년도 말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총자산은 26조 9,48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3,144억원(9.4%)이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내역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이 3조 6,872억원(13.7%),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이 22조 8,468억원(84.8%), 유형자산 등 4,146억원(1.5%)임.

< 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3년(A)	2022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3,687,158	3,222,613	464,545
	(1) 단기투자증권	2,934,107	2,584,054	350,053
	(2) 기타유동자산	753,051	638,559	114,492
	투 자 자 산	22,846,772	20,890,710	1,956,062
	(1) 장기투자증권	20,689,877	18,587,706	2,102,171
	(2) 장기대여금 등	2,156,895	2,303,004	△146,109
	유 형 자 산 등	410,281	414,042	△3,761
	기타 비유동자산	4,344	106,813	△102,469
	합 계	26,948,555	24,634,178	2,314,377
부채및자본	< 부 채 >	587,892	590,071	△2,179
	(1) 유동부채	123,534	19,553	103,981
	(2) 비유동부채	464,358	570,518	△106,160
	< 순 자 산 >	26,360,663	24,044,107	2,316,556
	(1) 기본순자산	-	-	-
	(2) 적립금 및 잉여금	23,817,653	23,656,330	161,323
	(3) 순자산조정	2,543,010	387,777	2,155,233
	합 계	26,948,555	24,634,178	2,314,377

자료: 교육부

- 유동자산은 3조 6,872억원으로, 전년대비 4,6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단기투자증권이 3,500억원 증가하고, 기타유동자산이 1,145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 장기보유목적의 투자자산은 22조 8,468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9,5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장기투자증권이 2조 1,022억원 증가하고, 장기대여금 등이 1,461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유형자산 등은 38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비유동자산은 1,025억원 감소하였음.

- 총자산의 운용내역은 주식・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이 23조 8,958억원(88.7%),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 교직원 대여 2조 2,080억원(8.2%), 기타자산 등이 8,448억원임(3.1%).

❑ 당기말 부채총액은 5,879억원으로 전년대비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총부채 내역은 유동부채 1,235억원, 국고위탁금 등 비유동부채 4,644억원임.

❑ 당기말 순자산은 26조 3,607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3,165억원(9.6%)이 증가하였음.

- 2023년도 적립금 및 잉여금은 전년대비 1,613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의 조정(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전년대비 2조 1,552억원 증가하였음.

2) 손익상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2023년도 프로그램총원가는 5조 2,635억원으로 전년보다 5,398억원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수익은 4조 7,149억원으로 전년대비 1,461억원 증가하였고, 비배분비용은 전년보다 1,179억원 증가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은 7,098억원 감소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보다 1조 2,234억원 감소한 1,613억원(이익)임.

< 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3년(A)	2022년(B)	증감(A-B)	
Ⅰ. 프로그램총원가	5,263,548	4,723,750	539,798	
1. 연금급여 등 지급	5,235,803	4,697,979	537,824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27,745	25,771	1,974	대여,회관임대
Ⅱ. 프로그램수익	4,714,882	4,568,824	146,058	
1. 연금급여 등 지급	4,593,942	4,465,201	128,741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120,940	103,623	17,317	대여,회관임대
Ⅲ. 프로그램순원가(Ⅰ-Ⅱ)	548,666	154,926	393,740	
1. 연금급여 등 지급	641,861	232,778	409,083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93,195	△77,852	△15,343	대여,회관임대
Ⅳ. 관리운영비	12,682	12,353	329	공통비용
Ⅴ. 비배분비용	287,354	169,427	117,927	자금운용
Ⅵ. 비배분수익	1,014,164	1,723,985	△709,821	자금운용
Ⅶ. 재정운영순원가 (Ⅲ+Ⅳ+Ⅴ-Ⅵ)	△165,462	△1,387,279	1,221,817	
Ⅷ. 비교환수익 등	△4,140	△2,587	△1,552	
Ⅸ. 재정운영결과 (Ⅶ-Ⅷ)	△161,323	△1,384,692	1,223,369	당기순이익

자료: 교육부

❑ 프로그램총원가는 5조 2,635억원으로 급여 등 지급이 5조 2,358억원으로 전년대비 5,378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회관사업은 20억원 증가하였음.

❑ 프로그램수익은 4조 7,149억원으로 부담금 수입 등이 4조 5,939억원으로 전년대비 1,287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회관사업은 173억원 증가하였음.

❑ 자금운용수익인 비배분수익은 1조 142억원으로 전년대비 7,098억원이 감소하였고, 자금운용비용인 비배분비용은 2,874억원으로 1,179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를 8,277억원 증가시켰음.

3) 운용실적

가) 수입결산

❑ 기금 수입실적은 계획현액 13조 2,461억 5,800만원보다 1조 9,748억 1,200만원이 감소한 11조 2,713억 4,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1% 수납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이 계획대비 8.1% 감소하였고, 여유자금 회수는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여유자금 회수액이 감소하여 계획대비 24.3%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입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증 감	
			(B-A)	%
계	13,246,158	11,271,346	△1,974,812	△14.9
○ 자체수입	6,045,745	5,556,043	△489,702	△8.1
○ 정부내부수입	1,089,994	1,089,994	-	-
- 일반회계전입금	1,089,994	1,089,994	-	-
○ 여유자금회수	6,110,419	4,625,309	△1,485,110	△24.3

자료: 교육부

나) 지출결산

❑ 2023년도 기금 지출실적은 계획현액 13조 2,461억 5,800만원보다 1조 9,748억 1,200만원이 감소한 11조 2,713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259억 4,6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은 계획현액 8,539억 1,500만원 대비 99.4%인 8,48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은 계획현액 5조 2,350억 8,600만원 중 99.7%인 5조 2,188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62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기금운영비는 계획현액 605억 6,100만원 중 92.6%인 561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5,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대여학자금반환은 계획현액 461억원으로 100% 지출하고, 여유자금운용은 계획현액 7조 504억 9,600만원 중 72.4%인 5조 1,016억 3,000만원을 지출함.

< 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계	13,246,158	11,271,346	85.1	-	25,946
6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853,915	848,653	99.4	-	5,262
서울회관재건축(6031-301)	77,434	77,434	100.0	-	-
회관운영사업(6033-302)	14,875	13,290	89.3	-	1,585
정보시스템구축(6034-300)	6,044	5,892	97.5	-	152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57,370	54,162	94.4	-	3,208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695,958	695,701	99.9	-	257
고객지원(6038-300)	2,234	2,174	97.3	-	60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5,235,086	5,218,856	99.7	-	16,230
연금급여(6131-400)	4,378,413	4,362,354	99.6	-	16,059
재해보상급여(6132-401)	52,657	52,539	99.8	-	118
퇴직수당급여(6133-402)	804,016	803,963	99.9	-	53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영비	60,561	56,107	92.6	-	4,454
인건비(6376-100)	21,973	19,575	89.1	-	2,398
기타경비(6376-200)	10,383	8,787	84.6	-	1,596
자산운용경비(6376-202)	1,121	1,105	98.6	-	16
선급법인세(6376-203)	27,067	26,633	98.4	-	434
직원복지대부(6376-207)	17	7	41.2	-	10
8800 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반환)	46,100	46,100	100.0	-	-
국고대여학자금반환(8810-885)	46,100	46,100	100.0	-	-
9700 여유자금운용	7,050,496	5,101,630	72.4	-	-
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1)	502,985	517,928	103.0	-	-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2)	1,895,573	1,860,000	98.1	-	-
국채매입(9703-974)	975,854	661,655	67.8	-	-
국채외채권매입(9703-975)	801,644	729,429	91.0	-	-
주식매입(9703-976)	1,830,982	463,293	25.3	-	-
기타유가증권매입(9703-977)	1,043,458	869,325	83.3	-	-

자료: 교육부

4.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교육부의 자산은 60조 1,054억 1,000만원, 부채는 1조 8,274억 9,900만원으로 순자산은 58조 2,779억 1,200만원임.

❑ 자산은 유동자산 4조 5,935억 1,500만원, 투자자산 24조 2,660억 8,100만원, 일반유형자산 31조 1,541억 6,500만원, 무형자산 824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479억 2,300만원(5.3%) 증가함. 이는 주로 단기투자증권이 3,501억 원 증가하는 등 유동자산이 6,975억 원 증가(17.9%)하였고, 장기투자증권이 2조 1,097억 원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이 1조 9,534억 원 증가(8.8%)하였으며,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이 3,874억 원 증가(1.3%)함에 기인함.

❑ 부채는 유동부채 3,299억 9,800만원, 장기차입부채 9,586억 8,1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362억 6,000만원, 장기충당부채 25억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34억 5,700만원(△3.9%) 감소함. 이는 주로 장기차입부채가 상환 및 유동성대체로 437억 원 감소(△4.4%)하였고,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이 감소하는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742억 원 감소(△12.2%) 등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회계연도(A)	2022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60,105,410	57,057,487	3,047,923	5.3
Ⅰ. 유동자산	4,593,515	3,896,021	697,494	17.9
Ⅱ. 투자자산	24,266,081	22,312,651	1,953,430	8.8
Ⅲ. 일반유형자산	31,154,165	30,766,805	387,360	1.3
Ⅳ. 무형자산	82,400	72,016	10,384	14.4
Ⅴ. 기타비유동자산	9,250	9,994	△744	△7.4
부 채	1,827,499	1,900,956	△73,457	△3.9
Ⅰ. 유동부채	329,998	285,830	44,168	15.5
Ⅱ. 장기차입부채	958,681	1,002,399	△43,718	△4.4
Ⅲ. 장기충당부채	2,559	2,265	294	13.0
Ⅳ. 기타비유동부채	536,260	610,462	△74,202	△12.2
순 자 산	58,277,912	55,156,531	3,121,381	5.7
Ⅰ. 기본순자산	19,562,271	19,562,271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0,962,075	19,981,642	980,433	4.9
Ⅲ. 순자산 조정	17,753,566	15,612,618	2,140,947	13.7

자료: 교육부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교육부는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5조 6,184억 2,400만원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90조 6,692억 6,600만원, 관리운영비 1,690억 4,600만원, 비배분비용 3,134억 5,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조 8,898억 7,8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6,476억 400만원, 비교환수익 △41억 3,900만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3조 8,627억 700만원(△13.9%) 감소한 85조 6,142억 8,500만원이며, 이는 보조비의 감소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4조 6,085억 3,8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총 2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65조 3,637억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 프로그램(4조 8,888억 원) 등으로 나타남.

❑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63억원, 복리후생비 39억원, 기타관리운영비 68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2,767억 원, 감가상각비 88억 원, 기타비용 17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2,441억 원, 자산처분이익 4,787억 원, 기타수익 8,988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6,779,388	101,387,926	△14,608,538	△14.4
가. 프로그램 총원가	90,669,266	105,155,405	△14,486,139	△13.8
나. 프로그램 수익	3,889,878	3,767,479	122,398	3.1
Ⅱ. 관리운영비	169,046	179,110	△10,064	△5.6
Ⅲ. 비배분비용	313,454	172,237	141,217	82.0
Ⅳ. 비배분수익	1,647,604	2,262,281	△614,677	△27.2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85,614,285	99,476,992	△13,862,707	△13.9
Ⅵ. 비교환수익 등	△4,139	△2,587	△1,552	△60.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85,618,424	99,479,579	△13,861,155	△13.9

자료: 교육부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5조 1,565억 3,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8조 2,779억 1,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조 1,213억 8,100만원(5.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3조 8,611억 5,5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5조 6,861억 9,400만원 증가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4조 6,332억 9,6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 한편, 2023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00조 2,771억 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3조 6,782억 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조 1,565억 원, 자산재평가이익 △156억 원 등으로 구성됨.

< 20223회계연도 교육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A)	2022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55,156,531	56,949,203	△1,792,672	△3.1
Ⅱ. 재정운영결과	85,618,424	99,479,579	△13,861,155	△13.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6,598,858	101,232,154	△14,633,296	△14.5
Ⅳ. 조정항목	2,140,947	△3,545,247	5,686,194	160.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58,277,912	55,156,531	3,121,381	5.7

자료: 교육부

5. 2023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 교육부 소관 2023회계연도 신규사업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2개 세부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25억 6,5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신규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으로 한계사학의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지원 필요	2,500	2,500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20.3.31.)으로 38개 국립대학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화된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여 코러스 시스템을 연계한 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67	65
계			2,567	2,565

자료: 교육부

❑ 교육부 소관 사업 중 2023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은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1,355억 9,7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종료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일반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창의력 계발을 위한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현장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단위 학교의 창의교육 활성화	1,918	1,918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 선도모델 연구 및 구축·운영,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과학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추진 등	9,502	9,502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 기반구축(R&D)	○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의 융합 교육 역량 지원 강화	2,725	2,725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 협력적 노사관계 모색 및 합법적인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지원	463	340
	지속가능발전교육	○ 초·중등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적용 및 실천 강화	237	237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 예비교원 대상으로 학교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을 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지원 등	1,400	1,388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 국립부설(특수)학교 노후 교사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 효율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단열재 보강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	8,299	5,880
	재외동포 초청교육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하여 국내 초청교육을 통해 고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998	998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이체)	(이체)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이체)	(이체)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현액	집행액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이체)	(이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이체)	(이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할 시범대학을 선정, 지원하여 우수 운영사례 보급·확산	800	800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 고등교육 디지털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대학의 온라인 강의 활성화 지원	5,580	5,580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 학기 동안 대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확산을 위해 대학 운영비 지원	1,050	1,05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서울회관재건축(사립)	○ 건물 노후화(1982년 건립)로 여의도 인근 신축빌딩과의 임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재건축을 실시함으로써 수익성제고 및 기금수익 증대에 기여	77,434	77,434
	직원복지대부 (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운영	17	7
	자산운용경비 (사립학교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운영	1,121	1,105
	선급법인세 (사립학교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운영	27,067	26,633
계			138,611	135,597

자료: 교육부

6. 2023회계연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결산

가. 결산 총괄

❑ 정부는 ‘유보통합[2] 추진방안’을 발표(’23.1.30.)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23.4.4.)하였으며, 유보통합 1단계(’23~’24)에서는 교육부·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재원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추진하였음.

❑ 이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12월 26일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소관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이 2024년 6월 27일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이관된 사무[3]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함.

❑ 2024년도에 교육부로 이관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소관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의 2023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2)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3) 다만, 종전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소관 세부사업 중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에서 계속 수행**하기로 함.

나. 개요

❑ 2023회계연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5조 566억 8,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억 3,800만원과 전용 등 1,714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조 2,288억 5,200만원이며, 이 중 5조 2,276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5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합 계	5,056,680	738	171,434	5,228,852	5,227,626	661	565
□ 일반회계(사업비)[4]	5,056,563	733	171,454	5,228,750	5,227,533	661	55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3135-365)	941	-	-	941	941	-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3135-367)	43	-	-	43	43	-	-
어린이집 부정이용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3135-373)	1,179	-	-	1,179	1,179	-	-
공공형 어린이집 (3140-403)	664	-	-	664	664	-	-
영유아보육료 지원 (3133-331)	3,025,145	-	138,300	3,163,445	3,163,445	-	-
시간제보육 지원 (3133-336)	20,413	-	-	20,413	20,413	-	-

사 업 명	예산액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전용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3134-341)	3,473	-	143	3,616	3,616	-	-
어린이집 확충 (3134-344)	49,170	-	△16,743	32,427	32,178	-	249
보육사업관리 (3135-350)	4,655	733	-	5,388	4,420	661	307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3135-353)	1,000	-	-	1,000	1,000	-	-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3135-354)	1,892	-	-	1,892	1,892	-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3135-372)	21,772	-	-	21,772	21,772	-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	1,750,362	-	60,422	1,810,784	1,810,784	-	-
가정양육수당 지원 (3141-300)	175,854		△10,668	165,186	165,186	-	-
□ 일반회계(기본경비)	**117**	**5**	**△20**	**102**	**93**	**-**	**9**
보육정책관 기본경비 (총액)(7011-222)	83	5	△21	67	62	-	5
보육정책관 기본경비 (비총액)(7011-293)	34	-	1	35	31	-	4

4) 종전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소관 세부사업 중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제외

❑ 이월 및 불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이월 : 보육사업관리 사업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인한 6억 6,100만원임.

- 불용 :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사업단가가 낮은 리모델링 사업 편중 및 신축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2억 4,900만원, 보육사업관리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계약의 낙찰차액 3억 700만원 등 총 5억 6,500만원임.

< 2023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사유
보육사업관리	66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완료 미도래
계	661	

< 2023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불용 사유
어린이집 확충	249	사업단가가 낮은 리모델링 사업 편중 및 신축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 목표치 500개소 대비 414개소 확충 지원하여 집행잔액 발생
보육사업관리	307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낙찰차액 발생 집행잔액

세부사업명	불용액	불용 사유
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5	집행잔액
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4	집행잔액
계	565	

❑ 전용 등의 주요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 부족으로 전용(증) 311억 6,800만원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확충,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서 전용(감) 272억 6,800만원임.

< 2023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전용액	전용 사유
어린이집 확충	△16,60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 부족으로 전용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668	당초 추계 대비 시설 이용(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증가로 양육수당 대상 아동 감소하여 예산 부족사업으로 전용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1,168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 예산 부족으로 '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용
계	31,168 △27,268	

7.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가.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10	29	35	7	67

나.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시정완료	시정중	시정 미이행	
55	12	-	67

다.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7.31.)
□ 결산		
(1) 재외한국학교 국고지원 상향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운영의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주의	조치완료
(5) 학자금대출 사업 예산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 국가장학금 지원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제도개선	조치완료
(7)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제도개선	조치완료
(8) 직업계고 지원 예산의 충분한 반영 및 사업시스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9)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불용 최소화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10)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1)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7.31.)
(12)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의 다양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4) 학생 정신건강지원 사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5) 학생 중심의 정신건강지원 사업 추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6) 사업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주의	조치완료
(17)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에 특별교부금 사용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8)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9)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강사 고용안전 정책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21)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 시행	주의	조치완료
(22)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 철저 및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의 국고 환수 필요	시정, 제도개선	조치완료
(23)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4)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의 출연금 정산제도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5) 인천대학교 출연지원의 출연금 정산제도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6) LINC 3.0 사업 지표 재설정 및 실적 부진 대책 마련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중**
(27)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주의, 제도개선**	**조치중**
(28) 사업비 편성 및 집행방식 변경 필요(출연→위탁)	**제도개선**	**조치중**
(29)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예산 삭감 조치 필요	시정	조치완료
(30) 글로벌 교육교류 보조금 사업 관리 강화	제도개선	조치완료
(31) 지원대상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32)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사업집행 부진 원인규명 필요	주의	조치완료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논의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4) 초·중등 공교육 성과 제고 필요	주의	조치완료
(35)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사업 간 차별화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36) 수탁기관 보유 이월금 국고 반납 및 적정 수수료 산정방안 마련 필요	시정	조치완료
(37) 국가시책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7.31.)
(38) 당해연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39)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 필요	시정	조치완료
(40) 사업 취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준비 필요 및 예산 전용 지양 필요	주의	조치완료
(41) 부적절한 사업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수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주의	조치완료
(42) 수탁기관 보유 이월금 국고 반납 및 적정 수수료 산정방안 마련 필요	시정	조치완료
(43)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 제고 필요	주의	조치완료
(44)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자 확대 시 면밀한 검토 필요	주의	조치완료
(45) 장학금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적정 예산 반영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46)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47)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8)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완료
(49) 유사사업 추진 시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초등돌봄교실의 원활한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0)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모니터링 필요	주의	조치완료
(5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52) 당초 목적과 다른 집행 지양 필요	시정	조치완료
(53)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중**
(54) 사업계획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5) 반도체 거점대학 준비된 대학으로 추가 선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6) 각 대학의 사업기간을 고려한 연구비 반영 및 사업비 편성관리, 감독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57) 회계연도 내 미집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8)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등 기준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9) 사업지연 방지 및 적정예산 확보, 임의적 집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	**조치중**
(60) 수입대체경비의 재량적 지출 최소화 및 수요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시정	조치완료
(61) 성과 달성도 적정 평가 대책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62) 교부금 예산 적정 편성 등 대책 마련 필요	**시정**	**조치중**
(63) 사학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조속한 마련 필요	**주의**	**조치중**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4.7.31.)
(64)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 대책 마련 필요	**주의**	**조치중**
(65)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와 다른 운용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시정	조치완료
(66) 적정 예산 편성 대책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 **예비비 지출**		
(1)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공공임상교수제 안착 방안 마련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3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의 1,675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함.

❑ 주요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1,383억원을 배정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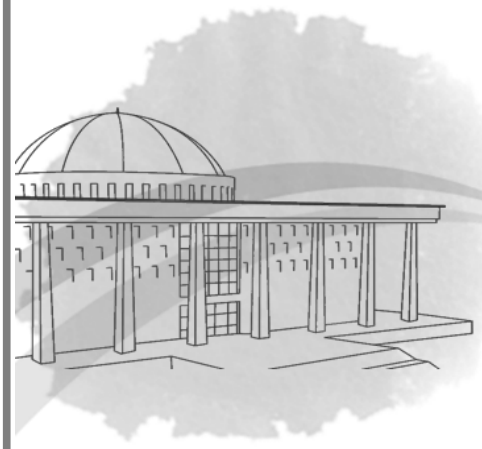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292억 5,400만원을 배정받음.

< 2023년도 영유아 보육 관련 이관 사업 예비비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배정 사유
영유아보육료 지원	138,300	'23년 보육시설 이용자 수 증가(+49천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9,25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
계	167,554	

Ⅱ. 검 토 의 견



1. 총괄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총괄[5)]

1) 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가) 교부금 결산 현황

(1) 사업 내용(제도 개요)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됨.[6)]

---

5) 문의: 02-6788-5185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제3조 제1항), 이 중 특별교부금은 종래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됨(제5조의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분>

종류		교부기준	교부 목적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국가시책	3%의 60%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지역현안수요	3%의 30%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교부
	재난안전관리	3%의 10%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교부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17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전출금 제외

자료: 직접 작성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7) 2023년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제5조의3 신설, '23. 12. 31.)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p)에 해당하는 재원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될 예정임.

(2) 결산 개요

❑ 2023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75조 7,606억 중 65조 3,436억을 집행하고 10조 3,970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6.3%임.

교부금 종류별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예산현액 73조 5,334억원 중 63조 4,164억원을 집행하고 10조 3,970억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86.2%였고, 특별교부금은 2조 2,272억원 중 1조 9,472억원을 집행하고 2,800억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87.4%임.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경우 1조 3,363억원 전액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00.0%였으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경우 6,681억원 중 4,581억원을 집행(집행률 68.8%)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2,227억원 중 1,527억원을 집행(집행률 68.6%)하였음.

<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75,760,666	65,363,666		10,397,000	86.3
보통교부금	73,533,444		73,533,444	63,416,456		10,116,988	86.2
특별교부금	2,227,222		2,227,222	1,947,210		280,012	87.4
국가시책	1,336,333		1,336,333	1,336,333		0	100.0
지역현안	668,167		668,167	458,158		210,009	68.8
재난안전관리	222,722		222,722	152,719		70,003	68.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10조 3,970억원의 결산상 불용액은 세수결손 발생으로 교부금을 미교부하면서 이를 불용으로 처리한 것임.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내국세입이 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세수결손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감소하였고, 이에 예산액 대비 교부금을 미교부하면서 불용으로 처리하였음.

❑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14조 7,436억원(22.6%), 서울시교육청 5조 7,329억원(8.8%) 등의 순임.

< 2023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도 교육청	보통 교부금	특별교부금			합계	비중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 관리		
서울	5,486,912	150,056	66,570	29,444	5,732,982	8.8
부산	3,581,626	70,105	16,952	14,453	3,683,136	5.6
대구	2,870,246	93,038	16,729	19,296	2,999,309	4.6
인천	3,329,047	91,096	28,990	1,865	3,450,998	5.3
광주	2,034,006	39,441	8,993	5,442	2,087,882	3.2
대전	1,988,590	51,206	27,976	3,576	2,071,348	3.2
울산	1,608,036	34,654	14,114	2,459	1,659,263	2.5
세종	873,934	21,231	-	608	895,773	1.4
경기	14,351,642	297,016	80,094	14,866	14,743,618	22.6
강원	3,116,860	43,829	30,352	2,352	3,193,393	4.9
충북	2,712,224	56,703	16,552	4,329	2,789,808	4.3
충남	3,586,337	85,198	29,542	8,306	3,709,383	5.7
전북	3,499,471	42,309	23,126	10,167	3,575,073	5.5
전남	3,748,949	70,105	11,502	11,550	3,842,106	5.9
경북	4,449,403	88,746	42,608	11,912	4,592,669	7.0
경남	5,183,533	76,650	35,254	12,096	5,307,533	8.1
제주	995,638	24,951	8,803	-	1,029,392	1.6
합계	63,416,456	1,336,333	458,158	152,719	65,363,666	100

* 자료: 교육부

나)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결산 현황

(1)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8]에 따라 각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비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 교육감이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도 예산현액 기준 총 99조 5,987억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0조 8,364억원(71.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조 8,593억원(66.1%)으로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16조 1,605억원(16.2%)으로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여건 변화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원 변동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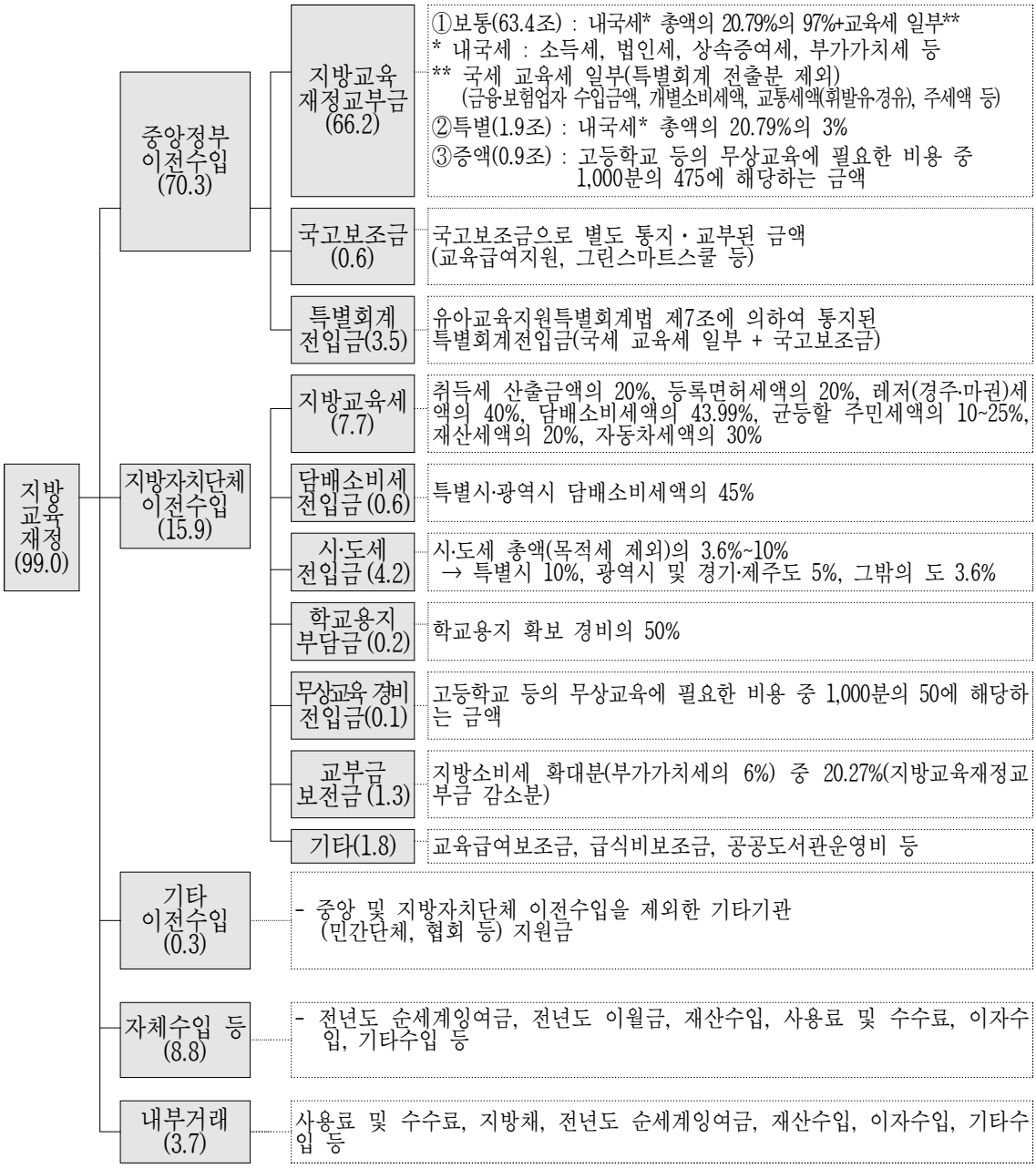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95,008,405	4,590,348	99,598,753	99,020,416	98,977,317	5,006	38,094
중앙정부이전수입	70,837,951	-	70,836,482	70,317,533	70,317,533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859,373	-	65,859,373	65,363,666	65,363,666	-	-
- 증액교부금	902,807	-	902,807	902,807	902,807	-	-
- 국고보조금	585,651	-	585,651	584,025	584,025	-	-
- 특별회계전입금	3,490,121	-	3,490,121	3,470,037	3,470,037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160,574	-	16,160,574	15,839,975	15,839,975	-	-
기타이전수입	281,909	-	281,909	287,843	287,843	-	-
자체수입	888,435	-	888,435	1,141,208	1,098,108	5,006	38,094
지방채 및 기타	3,161,627	4,590,348	7,751,976	7,752,947	7,752,947	-	-
내부거래	3,677,909	-	3,677,909	3,677,909	3,677,909	-	-

주: 현재 2023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4. 3.) 기준(2024. 10. 결산 완료 예정)
자료: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표(2023년도 결산 기준) >

(단위 : 조원)



주: 현재 2023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4. 3.) 기준(2024. 10. 결산 완료 예정)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202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9조 5,987억원으로 이 중 90조 9,652억원을 집행하였고 5조 3,22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조 3,114억원을 불용하였음.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은 성질별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등으로 구분되며, 인건비 등 경직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집행액 기준 약 51조원으로 56.1%) 특징이 있음.

<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성질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5,008,405	4,590,348	99,598,753	90,965,281	5,322,056	3,311,417
- 인건비	51,683,560	270	51,684,017	51,052,774	391	630,853
- 물건비	3,495,641	67,946	3,556,933	3,360,239	58,540	138,154
- 이전지출	3,348,378	34,084	3,402,829	3,279,565	4,187	119,076
- 자본지출	15,533,871	4,483,976	20,146,931	14,073,936	5,257,454	815,541
- 전출금 등	18,737,963	4,072	18,650,530	18,372,733	1,484	276,313
- 예비비 및 기타	471,120	-	419,641	241,473	-	178,168
- 내부거래	1,737,872	-	1,737,872	584,561	-	1,153,312

주: 현재 2023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4.3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 정책사업별로 세출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2조 8,920억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9]에 44조 4,300억원, 평생교육 부문에는 2,080억원, 교육일반에 3조 7,061억원 집행하였음.

<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정책사업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5,008,405	4,590,348	99,598,753	90,965,281	5,322,056	3,311,417
유아및초중등교육	44,915,851	4,316,845	49,258,344	42,892,097	5,013,798	1,352,449
- 인적자원운용	570,298	434	572,401	534,365	2,478	35,559
- 교수학습활동지원	7,724,833	753,979	8,482,956	7,816,862	440,803	225,292
- 교육복지	5,892,520	8,332	5,901,925	5,819,887	5,320	76,717
- 보건급식	5,246,269	162,223	5,413,234	5,001,756	247,738	163,740
- 학교재정지원관리	13,315,032	-	13,315,032	13,167,872	2,075	145,085
- 학교시설여건개선	12,166,900	3,391,876	15,572,796	10,551,355	4,315,383	706,057
평생교육	206,846	12,584	219,430	208,095	6,468	4,867
교육일반	5,004,394	260,920	5,290,418	3,706,183	301,790	1,282,444
- 교육행정일반	1,608,898	41,374	1,673,703	1,552,993	41,178	79,531
- 기관운영	980,730	219,545	1,201,948	897,829	260,612	43,507
- 재무활동	2,414,766	-	2,414,766	1,255,361	-	1,159,406
예비비 및 기타	345,231	-	293,664	115,498	-	178,167
인건비	44,536,081	-	44,536,897	44,043,408	-	493,489

주: 현재 2023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4.3월) 기준임
자료: 교육부

9) 주로 초중등학교 교직원 인건비로 종래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포함시켰으나 2023년도 결산부터 별도로 집계하고 있음.

❑ 2023년도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수납액 및 집행액이 각각 23조 5,299억원 및 20조 9,30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임. 다음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집행액 기준 11조 7,664억원, 경남교육청이 6조 7,263억원 수준임.

< 2023년도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입				세출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서울	13,785,863	13,325,866	13,314,516	8,915	13,785,863	14,388,007	11,766,498	783,489	1,838,020
부산	5,589,127	5,619,763	5,614,380	4,336	5,589,127	5,724,671	5,138,111	393,154	193,406
대구	4,119,650	4,260,167	4,258,834	1,332	4,119,650	4,237,285	4,064,009	132,807	40,469
인천	5,144,596	5,368,559	5,366,087	2,471	5,144,596	5,347,730	5,132,156	174,792	40,782
광주	2,859,633	2,963,300	2,962,365	872	2,859,633	2,949,062	2,840,379	71,844	36,839
대전	2,873,063	2,925,717	2,925,258	460	2,873,063	2,905,827	2,832,426	54,610	18,791
울산	2,190,670	2,233,660	2,232,956	703	2,190,670	2,222,283	2,138,015	67,774	16,495
세종	1,079,402	1,122,918	1,122,841	77	1,079,402	1,109,880	1,062,436	41,889	5,556
경기	21,378,619	23,540,210	23,529,969	8,807	21,378,619	23,284,483	20,930,440	1,654,693	699,351
강원	3,867,825	3,936,287	3,932,150	4,134	3,867,825	3,913,501	3,772,317	67,495	73,690
충북	3,470,152	3,519,029	3,517,473	1,555	3,470,152	3,510,795	3,402,686	65,891	42,217
충남	5,011,376	5,226,962	5,226,711	247	5,011,376	5,189,154	4,965,245	193,548	30,360
전북	4,447,230	4,653,873	4,652,032	1,835	4,447,230	4,617,697	4,361,889	209,822	45,986
전남	4,883,500	5,042,112	5,042,077	35	4,883,500	5,005,496	4,655,677	285,421	64,398
경북	5,826,214	6,385,603	6,384,742	861	5,826,214	6,367,210	5,603,618	672,631	90,961
경남	6,943,625	7,226,120	7,225,174	942	6,943,625	7,163,454	6,756,291	352,798	54,365
제주	1,537,860	1,670,270	1,669,754	513	1,537,860	1,662,218	1,543,091	99,397	19,730
합계	95,008,405	99,020,416	98,977,317	38,094	95,008,405	99,598,753	90,965,281	5,322,056	3,311,417

주: 현재 2023년 결산 진행중으로, 위 자료는 가결산(2024.3월) 기준임

* 자료: 교육부

(2) 기금 결산

❑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등 법정기금[10]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등 총54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3년말 현재 시도교육청 기금 현재액은 18조 6,975억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8조 1,2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조 5,994억원, 기타 기금이 9,730억원임.

<시도교육청별 주요 기금 현황>

구분	기금명	설치 교육청	현재액('23말) (억원)
법정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7개 시도	81,251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7개 시도	95,994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개[11] (서울, 경기)	9,730
비법정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7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개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 주택임차지원기금 등	각 1개 (총 9개)	
		총 54개	**186,975**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0)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금으로 각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근거함

11) 동 기금은 17개 시도교육청 전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 외에는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에 대한 문제점은 133p이하 "(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에서 상술

❑ 최근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8년 10개에서 ’23년 54개로 기금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누적 조성액도 22조 6,109억원에 달하였음. 다만, ’22년도까지는 기금 적립액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3년도에 세수결손 대응 등으로 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액이 ’22년 21조 3,811억원에서 감소한 18조 6,975억원이 되었고, 누적 사용액도 3조 9,134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시도교육청 기금 설치 · 운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8	10	466,881	33,077	433,804
2019	20	1,798,057	82,336	1,715,721
2020	32	2,976,076	81,311	2,894,765
2021	46	6,167,707	763,647	5,404,060
2022	55	22,167,156	786,011	21,381,145
2023	54	22,610,971	3,913,452	18,697,519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 특히, 기금 적립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2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되었고 조성액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23년도에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사용액이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년도 11조 5,845억원에서 2조 6,575억원을 사용하여 ’23년도 9조 5,994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2년도 8조 8,074억원에서 1조 1,447억원을 사용하여 ’23년도 8조 1,251억원임[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현황>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억원)			
	기금수(개)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기금수(개)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9	6	11,828	-	11,828	-	-	-	-
2020	13	23,056	-	23,056	-	-	-	-
2021	14	36,895	6,774	30,121	13	18,721	207	18,514
2022	17	120,564	4,719	115,845	17	90,409	2,335	88,074
2023	17	122,569	26,575	95,994	17	92,698	11,447	81,251

주: 1.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2. 2023년말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가결산자료 기준
자료: 교육부

12) 각각 ’23년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추가 조성액이 있음.

<참고>

< 2023년도 교육청별 기금 설치·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개수	기금명	조성연도	조성액(A)	사용액(B)	'23말 현재액 (A-B)	집행율 (B/A)
서울	5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	2016	146,988	6,827	140,161	4.6%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20	15,799	12,267	3,532	77.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1,251,304	235,199	1,016,105	18.8%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2	665,663	-	665,663	0.0%
		생태전환교육기금	2022	420	-	420	0.0%
부산	4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943,814	180,000	763,814	19.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494,249	-	494,249	0.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2	739	3	736	0.4%
		교육정보화기금	2022	241,657	-	241,657	0.0%
대구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1	504,526	30,000	474,526	5.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725,245	110,000	615,245	15.2%
인천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851,180	235,000	616,180	27.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455,561	95,457	360,104	21.0%
광주	3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1,598	-	1,598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459,856	-	459,856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9,769	81,600	128,169	38.9%
대전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562,375	70,000	492,375	12.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06,018	104,000	102,018	50.5%
울산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60,110	-	160,110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315,371	32,130	283,241	10.2%
세종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461,035	28,000	433,035	6.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2,201	-	52,201	0.0%
경기	4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019	29,582	12,489	17,093	42.2%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3,655	-	3,655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815,065	644,900	1,170,165	35.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1,190,964	-	1,190,964	0.0%

구분	개수	기금명	조성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23말 현재액 (A-B)	집행율 (B/A)
강원	4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	3,381	-	3,381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1,186,758	-	1,186,758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563,294	-	563,294	0.0%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	51,533	21,469	30,064	41.7%
충북	3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19	867,412	-	867,412	0.0%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021	89,587	9,708	79,879	10.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345,196	56,000	289,196	16.2%
충남	3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2015	76,708	8,046	68,662	1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028,877	495,000	533,877	48.1%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	158,996	-	158,996	0.0%
전북	3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1	1,101	-	1,101	0.0%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812,512	246,000	566,512	30.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572,075	-	572,075	0.0%
전남	5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1994	8,547	5,695	2,852	66.6%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0	408		408	0.0%
		폐교재산매각대금관리기금	2020	18,828		18,828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874,436	36,412	838,024	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	436,491	295,000	141,491	67.6%
경북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	347,679	-	347,679	0.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013	268,814	30,282	238,532	11.3%
		공무원주택임차기금	2009	4,859	4,313	546	88.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884,057	393,900	490,157	44.6%
경남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1,107,078	427,555	679,523	38.6%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1	718	-	718	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735,282	-	735,282	0.0%
제주	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235,790	-	235,790	0.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1	119,348	200	119,148	0.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	46,462	6,000	40,462	12.9%
계	54			22,610,971	3,913,452	18,697,519	17.3%

주) 1.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2. 2023년말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가결산자료 기준
3. 음영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정기금임

자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제출자료)

2) 검토의견

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등에 연동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므로 연내 내국세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게 됨.

2023년도에는 내국세입이 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세수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13], 이에 연동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감소하였음. 이러한 세수결손 발생에 대하여 교부금 약 10.4조원을 미교부하면서 불용으로 처리하였음.

<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65,363,666	65,363,666	10,397,000
보통교부금		73,533,444	63,416,456	63,416,456	10,116,988
특별교부금		2,227,222	1,947,210	1,947,210	280,012
	국가시책	1,336,333	1,336,333	1,336,333	0
	지역현안	668,167	458,158	458,158	210,009
	재난안전관리	222,722	152,719	152,719	70,00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3)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전년대비 51.9조원 감소)함

* 국세수입(△56.4조원): 소득세 △16.0, 법인세 △24.6, 부가가치세 △9.4 등

< 2023회계연도 총세입 현황(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실적(A)	2023년		예산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573.9	534.0	497.0	△37.0	△77.0
국세수입	395.9	400.5	344.1	△56.4	△51.9
세외수입	178.0	133.5	152.9	19.4	△25.1

* 자료 : 기획재정부

❑ 교육재정교부금이 예산액 대비 10.4조원 미교부(통보 ’23년 9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보유기금 활용, 기금 전출금 예산 감액과 함께 시설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였음.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조 9,449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6,736억원을 활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3조 9천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1조 4,341억원 등 약 2조 9천억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음.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 >

(단위: 억원)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전출금등)	기금 활용		기금전출금	지출 구조조정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시설비	기타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14,743

주1) 기재부 재추계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경정예산 증감액 기준

주2) 보통교부금 감액분(△10.4조원)의 경우 부산교육청에서 교육부 통보액(△5,961)보다 적은 금액(△4,500억원)을 세입경정처리하여 당초 감액추계액(△10.5조원)과 상이

주3) 기타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인건비 약 5,000억원, 예비비 약 3,000억원 등

자료 :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로 기금활용 여부 및 금액, 지출구조조정 규모 등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 17개 시·도교육청별 세입감소에 따른 대응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방세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전출금	지출 구조조정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시설비	기타
합계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14,743
서울	△9,132	△2,625	-	-	△11,533	-	△224
부산	△4,500	148	1,800	-	△2,700	145	3
대구	△4,777	348	300	1,100	△2,000	△201	△828
인천	△5,541	△61	2,350	-	-	△1,876	△1,376
광주	△3,385	△199	-	816	△2,204	△308	△256
대전	△3,310	156	700	-	△1,716	△378	△360
울산	△2,676	24	-	321	△1,270	△594	△467
세종	△1,512	△77	280	-	△850	△124	△335
경기	△23,886	24	6,449	-	△15,641	0	△1,772
강원	△5,187	△259	-	-	△1,924	△2,045	△1,477
충북	△4,514	26	-	560	△2,352	△758	△818
충남	△5,969	△102	-	-	△2,740	△1,869	△1,462
전북	△5,824	△331	1,580	-	△3,500	△85	△990
전남	△6,239	△148	2,950	-	△34	△2,401	△1,002
경북	△7,405	△127	-	3,939	-	△1,574	△2,019
경남	△8,627	240	3,040	-	△2,000	△2,179	△1,168
제주	△1,657	999	-	-	△148	△93	△417

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미편성하였음

자료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등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하고 있음[14]. 다만, 내국세등이 줄어드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년간 교부금 조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5].

구체적으로 예산액(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많을 경우 초과분을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반영하고, 예산액(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적을 경우 초과분을 다음다음연도 교부금 본예산 편성시 감액하여 반영하는 방식임.

---

14)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157호, 2016. 5. 29. 개정ㆍ시행)

<개정이유>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법률 제12151호, 2014.1.1)이 개정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최근 10년간 지방교부금 추경 및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연도중 내국세등이 증가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전년도 정산금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본예산 대비 감액된 사례로 '20년도 세입경정에 의한 감액(1조 8천억) 및 '13년도 불용 사례가 있었음.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불용처리에 대해서, 이는 예산교부후 정산이라는 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시정요구를 하였음[16].

또한, 본예산 대비 변경액 규모를 살펴보면 '21년 13.4%, '22년 25.0%에 이어 '23년에는 △13.7%로 최근 3년간 비율과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16)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65)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필요 등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00-300)**	시정
	지적 사항	**○ 2013년 전체예산 41조 619억원 중 세수부족으로 인해 2,50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정산규정 취지(예산교부 후 정산)에 어긋나는 것임. ※ 이월: 7,500억원** **○ 2015년 정산규모가 ' 13년 예산 대비 6.51%, ' 14년 예산 대비 6.54%에 달해 지방교육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산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교부금 정산 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10년간 교부금 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본예산(A)	추가교부(변경) (B)			합계(A+B) (예산현액)	본예산 대비 변경액 (B/A)
		당해연도 추경 (순증분)	전년도 정산금	불용/ 이월등		
2013	41,061,919	-	-	△1,000,000	40,061,919	△2.4%
2014	40,868,077	-	-	-	40,868,077	0.0%
2015	39,405,566	-	-	750,000	40,155,566	1.9%
2016	41,228,353	1,933,149	-	-	43,161,502	4.7%
2017	42,931,736	1,786,761	1,872,494	-	46,590,991	8.5%
2018	49,540,693	-	2,912,093	-	52,452,786	5.9%
2019	55,248,823	-	5,281,687	-	60,530,510	9.6%
2020	55,372,241	△1,861,069	31,897	-	53,543,069	△3.3%
2021	53,230,001	6,365,795	741,258	-	60,337,054	13.4%
2022	65,059,537	10,985,419	5,252,633	-	81,297,589	25.0%
2023	75,760,666	-	-	△10,397,000	65,363,666	△13.7%

자료: 교육부

이와같은 큰 규모의 예산대비 변경액 규모는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큰데 기인함. 구체적으로 내국세수의 본예산과 실제수납액간 차이는 '20년도 1.6%에서 '21년 23.7%, '22년 19.0% 및 '23년 14.5%로 최근 3년 연속으로 50조원 상당의 큰 오차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오차가 발생한 것임.

<세수추계 오차 현황(내국세 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20	’21	’22	’23
본예산(최초편성)	251.1	239.6	296.1	358.0
실제수납액(결산액)	247.0	296.4	352.3	306.1
차이	△4.1 (△1.6%)	56.8 (23.7%)	56.2 (19.0%)	△51.9 (△14.5%)

자료: 교육부

❑ 내국세수와 연동하여 규모가 결정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수의 추계오차가 일정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내국세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19년 신설)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021년 신설)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17] 과도한 추계오차 발생시 탄력적인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정경비 외에도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교육정책의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담보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2024년에도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8.4조 감소하였다는 점에서[18][19], 올해에도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규모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17) 23년도 기준 전체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 비중(66.1%),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인건비 비중 56.1% 등

18)「'24.4월 국세수입 현황(기획재정부)」

* 참고로, 23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1조원/24년 예산은 367.3조원

1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10.31.에서 2024년도에도 6조원 가량 세수부족이 발생(정부 367.4조원, 예정처 361.4조원)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따라서, 정부는 과도한 세수추계 오류로 인한 교육재정교부금등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수추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세수입의 추이와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과 예산 및 기금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일반회계)(1502-302)

(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의 배분비율 미준수

❑ 2023년도는 연도중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총 10.4조원을 미교부(불용처리)하였는데, 특별교부금(교부금 전체의 3%)도 예산액 2조 2,272억원 대비 2,800억원이 미교부 되었음.

그런데, 특별교부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경우 예산액 1조 3,363억원을 전액 교부한 반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각각 2,100억원, 700억원이 미교부되었음.

<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불용액	집행액 (D)
		본예산	추경(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75,760,666	65,363,666	10,397,000	65,363,666
보통교부금		73,533,444	73,533,444	63,416,456	10,116,988	63,416,456
특별교부금		2,227,222	2,227,222	1,947,210	280,012	1,947,210
	국가시책	1,336,333	1,336,333	1,336,333	0	1,336,333
	지역현안	668,167	668,167	458,158	210,009	458,158
	재난안전관리	222,722	222,722	152,719	70,003	152,71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구체적으로 교부금 종류별 법률상 기준과 실제 집행차이를 살펴보면,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세수결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상 금액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현행 법률상 기준보다 1,680억원을 초과하여 교부하였고(60%→68.6%),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법률상 기준에 미달(각각 30%→23.5%, 10%→7.8%)하게 교부하였음.

< 2023년도 교부금 내역별 법률상 기준과 실제 집행 차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법률상 기준	23년 집행	법률상 기준과 차이
보통교부금		97%	97%	
특별교부금		3%	3%	
	국가시책	(60%)	(68.6%)	+168,007(+8.6%)
	지역현안	(30%)	(23.5%)	-126,006(-6.5%)
	재난안전관리	(10%)	(7.8%)	-42,001(-2.2%)

주)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특교는 전체 특교(100%) 중 비율임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교육부는 이에 대해 '23년 당시 별도의 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교부완료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회수할 근거가 없었으며, 연도 중 교부예산의 감액시 예정된 학교 교육사업의 중단·축소 등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었으며, 법률상 교부비율과 다르게 집행한 내역은 결산을 통해 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월별 교부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교부액	교부율	교부액	교부율	심의액	교부액	교부율
전년도					1,162,047		
1월	746,883	68.7	945,148	64.8	-	1,095,040	79.1
2월	24,161	2.2	31,489	2.1	-	18,895	1.4
3월	-	0	12,573	0.9	174,286	98,835	7.1
4월	21,721	2	-	0	-	16,891	1.2
5월	11,275	1.1	-	0	-	34,150	2.5
6월	5,350	0.5	-	0	-	31,456	2.3
7월	-	0	-	0	48,218	37,533	2.7
8월	277,411	25.5	463,689	31.8	-	32,507	2.4
9월	-	0	6,000	0.4	-	6,269	0.4
10월	-	0	-	0	-	10,865	0.8
11월	-	0	-	0	-	2,110	0.1
12월	-	0	-	0	-	-	0
합계	1,086,801	100.00	1,458,899	100.00	1,384,551		100.00

주) 교부액은 시도교육청에 “교부통지”한 금액임(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시 실제 교부액은 이보다 적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그에 대응하여 교부금액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첫째, 현행법상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종류별 비중은 법률에서 국가시책(60%), 지역현안(30%), 재난안전관리(10%)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이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20], 이를 집행과정

20)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

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하지는 않음.

종래 초과세수로 인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되거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각각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세수결손시에는 이와 달리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함.

둘째, 기준재정수요에 따라 교부되고 과반 이상이 인건비 등 고정비 성격이 큰 보통교부금의 경우도 사업 우선순위 조정등을 절감하여 집행한 것과 비교시[2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집행에 있어 예산상황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은 문제라고 판단됨[22].

특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교부통지 금액 및 시기와 실제 교부 금액 및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세수감소가 예상된 하반기의 교부금액이 50.0%로 상반기와 유사한 실정임.

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21) 기금지출 등을 제외하고 지출구조조정 2조 9,084억원 상당

22) 전년대비(징수예상액 대비) 세수실적은 월단위로 관리되는데(기획재정부, 월별 국세수입 현황), '23년도는 1/4분기부터 세수진도율이 계속 계획대비 부진하였음.

<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월별 교부진도율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보통교부금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본예산	73,533,444		1,336,333			
월별	교부액	교부율(누적)	교부통지액	(비율)	교부액	(비율)
1월	70,000	9.5%	10,950	79.1%	-	-
2월	90,000	21.8%	189	1.4%	-	-
3월	72,273	31.6%	988	7.1%	-	-
4월	38,370	36.8%	169	1.2%	5,810	43.5%
5월	35,747	41.7%	342	2.5%	-	-
6월	61,277	50.0%	315	2.3%	872	6.5%
7월	47,080	56.4%	375	2.7%	2,000	15.0%
8월	50,000	63.2%	325	2.3%	1,000	7.5%
9월	42,500	69.0%	63	0.5%	-	-
10월	40,600	74.5%	109	0.8%	1,939	14.5%
11월	81,944	85.6%	21	0.1%	-	-
12월	4,374	86.2%	-	-	1,743	13.0%
합계	634,165	**86.2%**	1,384,551	100%	13,363	**100.0%**

* 자료 : 교육부

셋째, 1월에 대부분의 금액을 교부(통지)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23],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도중 특별한 교육정책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되는[24]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과 비교시[25],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규모 및 운영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비교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육부)	국가지방협력교부세 (행안부)	보조금 (전 부처)
예산확정	전년도말 + 연도중 상시	상시	전년도(국회 확정)
교부시기	1월에 대부분 교부	상시(규정없음)[26]	최소 2차례 이상
비고	특교의 60%	특교의 10%	

또한, 종래('21년, '22년) 하반기(8월)에 2~30%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도 1월에 80%를 교부(통지)한 '23년도의 집행방식은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 보통교부금 등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교부율 진도를 관리한 반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액 교부하였음.

❑ 따라서, 교육부는 세수결손 발생시 법률상 정해진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에 위배되어 교부금을 교부·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27], 국가시책특별교부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4) 반면, 국가시책 특교의 경우 전년도말에 상당부분 심의를 하지만, 연도중에도 수시로 심의하여 교부함
2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23.1. 117면(자치단체보조사업), 97면(민간보조사업)
* 실제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교부하여 집행함.
26)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등에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27) 2024년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법률개정 취지에 위반한 부실한 국가시책 특교 국회 보고

❑ 특별교부금은 2023년도의 경우 결산 기준 1조 9,472억원이며 이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1조 3,363억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중 및 추이>

(결산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465,910	524,528	605,305	535,431	603,371	812,976	654,057
보통교부금	448,084	509,499	588,011	520,434	586,217	789,444	634,163
특별교부금	17,826	15,029	17,294	14,997	17,154	23,532	19,472
(교부금 중 비중)	4%	3%	3%	3%	3%	3%	3%
국가시책	10,696	9,018	10,376	8,998	10,292	14,119	13,363
지역현안	5,348	4,508	5,189	4,499	5,146	7,060	4,582
재난안전	1,783	1,503	1,729	1,500	1,715	2,353	1,527

자료 :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경우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에 사용되고(사용내역), 교육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 교육부 내 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서 심의 후 확정되며(절차), 특별교부금 중 60%를 차지하고 있음(규모).

그러나 이러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금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의 내용 및 교부대상이 결정되고 있어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한을 벗어나 있으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최근(2023년 10월 24일 시행) 특별교부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28],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용(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 해당 법률에 따라 2024년 3월 처음으로 교육부는 「2023~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에 제출한 동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경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교부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사업 및 교부단체·교부일·상세 집행 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459호)」

<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국회보고 자료(일부 예시) >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부액(백만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13,178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5,560
	미래형 고교교육 기반 조성	28,175
	고등학교 수업 개방·공유 활성화	1,700

자료 : 교육부

이상과 같은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한 보고는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 배분내용 및 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 운영에 따른 결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 강화 및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의 취지[29]에도 위배됨.

또한, 재정규모가 상당함에도(특별교부금의 60%로 1조 3,363억원) 국회보고자료는 5쪽에 불과하여(전체 특별교부금 보고자료는 62쪽),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보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한편,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의 경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교육부)과 유사한 국가지방협력 교부세(행안부)의 경우에도 교부단체, 교부일, 구체적인 사업명 및 교부액을 명시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30].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459호)」, 제안이유

<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국회보고 자료(일부 예시) >

단체별	교부일	사업명	교부액(백만원)	비고
서울특별시 (본청)	2023-12-22	지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개선 시책	400	국가지방협력
부산(중구)	2023-07-20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국가지방협력
대구(본청)	2023-11-13	26년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기반시설 정비	1,012,167	국가지방협력
경북(상주)	2023-07-20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	300	국가지방협력

* 자료 : “2023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행정안전부, 2024.3.

< 국가시책특별교부금과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비교 >

구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교육부)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행안부)
규모 및 비율		13,363억원 (특별교부금의 60%)	2,061억원 (특별교부세의 10%)
국회 보고 자료	내역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체별, 교부일, 내역사업
	분량	5p (특교 전체는 62p)	(특교 전체 200p)

❑ 교육부가 법률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이지 않고(내역사업 및 교부단체, 교부일 불포함) 보고자료가 부실(5쪽 수준)하다는 점에서,

30)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23., 2014. 12. 31.>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상의 국회 보고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2024년도 3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 보고의 내용과 수준에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법률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역사업 및 교부단체, 교부일 등을 포함하는 등 보고서식을 보완하여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다시 보고(시정)함과 동시에 향후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

<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보고양식(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교부일	집행기관	교부액

* 현재는 세부사업별 총액만 보고(내역사업 및 교부일, 교부처, 교부액이 명시되어야 함)

<참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2024.3.) 중 국가시책특교 발췌

붙임1 2023년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단위사업별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부액
[1]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1-1]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48,613
	[1-2] 미래교육체제 지원	14,395
	[1-3] 미래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 지원	14,409
	[1-4] 디지털 융합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지원	121,922
	[1-5]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65,195
	[1-6] 교과서 활용 및 교수학습 평가 지원	40,680
	[1-7]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혁신 지원	12,334
	[1-8]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및 연수체제 개선	28,004
	[1-9] 학교 전인적 교육 활성화	11,883
[2]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2-10] 교육복지 지원 강화	33,172
	[2-11]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585,994
	[2-12] 방과후·초등돌봄 지원 강화	110,910
	[2-13] 유아교육 역량강화	13,608
	[2-14] 장애학생 교육 지원체계 강화	26,445
[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15] 학생 안전 및 건강	35,688
	[3-16]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	16,798
[4] 진로·직업교육 책임강화	[4-17] 고교단계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79,496
	[4-18]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15,141
[5] 교육행정지원	[5-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	40,665
	[5-20]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지원	69,199
합계		**1,384,551**

○ 세부사업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부액
[1-1]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1-1-1]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13,178
	[1-1-2]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5,560
	[1-1-3] 미래형 고교교육 기반 조성	28,175
	[1-1-5] 고등학교 수업 개방·공유 활성화	1,700
[1-2] 미래교육체제 지원	[1-2-2]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3,691
	[1-2-3]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1,700
	[1-2-4]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500
	[1-2-5] 미래형 교육협력 체제구축 지원	3,500
	[1-2-6] 교육회복 학생 성장 및 적응 체제 구축 지원	1,850
	[1-2-7] 편·불법 학원 운영 근절 지원	3,154
[1-3] 미래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 지원	[1-3-1] 국가교육과정 실행 및 이해 제고 지원	8,530
	[1-3-2] 자유학기 운영 내실화 지원	5,879
[1-4] 디지털 융합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지원	[1-4-1] 지능정보기술 기반 과학교육 여건 마련 및 기초학력 지원	2,200
	[1-4-2] 디지털 기반의 수학교육 내실화 지원	1,000
	[1-4-3] AI 교육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35,320
	[1-4-4] SW·AI 과학인재 육성 기반 마련 및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	2,325
	[1-4-5]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750
	[1-4-6] 미래형 융합교육(STEAM)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지원	3,000
	[1-4-7] 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원	40,627
	[1-4-8]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36,700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부액
[1-5]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1-5-1]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60,995
	[1-5-2]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4,200
[1-6] 교과서 활용 및 교수학습 평가 지원	[1-6-1] 교과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7,707
	[1-6-2]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지원	17,250
	[1-6-3] 미래형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 체제 구축·운영	7,175
	[1-6-4] 학습자 중심 교과서 지원	1,158
	[1-6-5] 해외 온·오프라인 역사교류 활성화 지원	800
	[1-6-6]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600
	[1-6-7] 수업혁신 기반 조성 및 수업나눔 활성화	5,990
[1-7]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혁신 지원	[1-7-1] 원격교육 기반 구축	2,821
	[1-7-2]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용 활성화	5,594
	[1-7-3] 교육용콘텐츠 개발·보급	3,919
[1-8]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및 연수체제 개선	[1-8-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18,915
	[1-8-2]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개선	9,089
[1-9] 학교 전인적 교육 활성화	[1-9-1] 주제별 교육정책 연계를 통한 전인적 인재 양성	11,883
[2-10] 교육복지 지원 강화	[2-10-1] 교육비 부담 경감	21,972
	[2-10-2]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10,500
	[2-10-3]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700
[2-11]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11-1] 기초학력 향상 지원	81,663
	[2-11-2]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17,891
	[2-11-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6,485
	[2-11-4]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20,530
	[2-11-5] 교육결손 해소	459,425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부액
[2-12] 방과후·초등돌봄 지원 강화	[2-12-1] 방과후·돌봄 정책 운영 지원 강화	1,190
	[2-12-2]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8,061
	[2-12-3] 초등 전일제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지원	51,826
	[2-12-4] 방과후 연계·통합 돌봄교실 운영 지원	39,793
	[2-12-5] 거점형 돌봄 시범 운영	10,040
[2-13] 유아교육 역량강화	[2-13-1]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1,475
	[2-13-2] 유아 놀이중심 교육문화 조성	8,440
	[2-13-3] 국공립 유치원 유형 다양화 지원 사업	770
	[2-13-4]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2,923
[2-14] 장애학생 교육 지원체계 강화	[2-14-1] 장애 포용적 교육 지원 강화	10,728
	[2-14-2] 장애학생 진로설계 역량 강화 지원	4,500
	[2-14-3] 중도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5,757
	[2-14-4] 장애학생 교육혁신 기반 조성	2,760
	[2-14-5]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역량 지원 강화	2,700
[3-15] 학생 안전 및 건강	[3-15-1]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4,597
	[3-15-2] 등하굣길 학생 교통안전 강화	391
	[3-15-3]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	30,000
	[3-15-4] 안전체험관 확충	700
[3-16]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	[3-16-1]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4,507
	[3-16-2]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	5,695
	[3-16-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2,944
	[3-16-4] 학생 상담 통합 지원	1,702
	[3-16-5]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1,950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부액
[4-17] 고교단계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4-17-1] 직업계고 운영 기반 조성	9,523
	[4-17-2]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	12,733
	[4-17-3] 직업계고 현장성 강화	53,120
	[4-17-4] 선취업 활성화 지원	4,120
[4-18]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4-18-1]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9,481
	[4-18-2]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 체험교육 활성화	5,480
	[4-18-3]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진로연계학기 지원 방안	180
[5-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	[5-19-1]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조사	719
	[5-19-2]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체계 구축	8,556
	[5-19-3]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운영	14,554
	[5-19-4]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509
	[5-19-5]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6,120
	[5-19-6]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207
[5-20] 지방교육행·재정 운영 지원	[5-20-1] 대입전형 지원	52,070
	[5-20-2] EBS 교육방송 지원	12,256
	[5-20-3]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지원	4,873
합계		**1,384,551**

(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운용상 문제점

(가) 특별교부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 추진사업 과다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의 사업 기간은 당해 연도 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31)]

이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집행하는 교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년도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년간 지원하도록 하여 계속사업으로서 재정소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연도별 국가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업이 3년을 초과하여 시행되고 있고, 그 비율(건수)은 2018년 31.5%에서 2023년 67.0%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년 이상 초과사업이 교부액 기준 74.9%(약 1조원)로서 역대 최대 규모임.

---

31) 「2023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p.10
1. 국가시책사업수요
바. 운용방법
○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 연도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3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 현황(2018~2023년) >

구분	사업수(건)			교부액(백만원)		
	전체	3년 이상	비율(%)	전체	3년 이상	비율(%)
2018	89	28	**31.46**	918,372	360,124	**39.21**
2019	94	37	39.36	1,062,346	481,309	45.31
2020	99	57	57.58	925,185	589,056	63.67
2021	98	52	53.06	1,086,802	600,837	55.28
2022	85	58	**68.24**	1,458,899	736,139	50.46
2023	82	55	**67.07**	1,336,333	1,001,314	**74.93**

자료: 교육부

❑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국가시책 특교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 등 10년 이상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2,200억원 규모)이 상당한 수준임.

또한, 세부적인 사업별로 상당수는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거나[32],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33].

32) 대표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조사"는 당초 국고에 편성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시책 특교로 교부된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33) 일례로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측정항목인 교육복지지원비(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에 포함시켜서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3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3년 금액	사업시작 연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80,874	2006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17,891	2006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19,530	2006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3,691	2009
대입전형 지원	52,070	2009
방과후 • 돌봄 정책 운영 지원 강화	1,020	2010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750	2011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	1,945	2011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용 활성화	5,594	2012
EBS 교육방송 지원	9,910	2012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3,207	201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2,944	2013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	12,733	2013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조사	719	2013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10,500	2014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6,485	2014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207	2015
국가교육과정 실행 및 이해 제고 지원	8,530	2016
SW·AI 과학인재 육성 기반 마련 및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	2,325	2016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4,200	2016
중도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5,200	2016
국공립 유치원 유형 다양화 지원 사업	770	2017
학생 상담 통합 지원	1,702	2017
장애학생 진로설계 역량 강화 지원	4,500	2017
직업계고 현장성 강화	50,620	2017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9,481	2017
장애 포용적 교육 지원 강화	10,728	2018
교육용콘텐츠 개발·보급	3,919	2018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역량 지원 강화	2,700	2018
안전체험관 확충	700	2018
선취업 활성화 지원	4,120	2018
교육비 부담 경감	21,742	2018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지원	4,743	2018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영어 학습 지원	5,879	2018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13,178	2018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1,700	2018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500	2019
미래형 교육협력 체제구축 지원	3,500	2020
학습자 중심 교과서 지원	1,158	2020
해외 온·오프라인 역사교류 활성화 지원	800	2020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950	2020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660	2020

자료: 교육부

❑ 이는 근본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의 재정 규모와도 관련되는 사안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동 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교육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세수결손 등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34][35]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국가시책 특교는 제도상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 사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 또는 보통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교육부는 장기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의 필요성 및 국가시책 특교 취지에 부합하는지 평가와 함께,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포함하여 교부범위 등 국가시책 사업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34) 2017. 12.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3항) 개정(시행 2018.1.1.)으로 특교 배분 비율을 종래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음.

35) 국가시책에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60%로 지방교부세 10%에 비해 높음.

(나) 인건비성 경비, 해외연수비, 홍보비, 정책연구비, 업무추진비, 비품구입, 각종 수당 등 편성 최소화 항목 규모 증가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 중에서 정책연구비, 해외연수비, 홍보비, 수당 및 인건비성 경비(특히 비정규직), 업무추진비, 비품구비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6].

이는 일반 예산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를 통한 확정을 통해 사업내용 및 규모등이 결정되지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이러한 절차없이 교육부가 사업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 및 특별교부금 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됨.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업별 요구액 산출근거에 해당 항목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36) 2023「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교육부, 2023. 1., p.10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신청서(서식 제1호)>

(2) 사업 중 편성 최소화 항목 현황

※ 정책연구비, 해외연수비, 홍보비, 수당 및 시도교육청이 고용하는 인건비성 경비(특히 비정규직)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신청

○ 편성 최소화 항목

(단위: 백만원)

연도	항목	금액	사업내역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2023년 교부액	정책연구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국외연수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홍보비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인건비 및 수당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2024년 요구안	정책연구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국외연수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홍보비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인건비 및 수당	○○	o ○○사업 : ○○백만원 - 산출기초	

* 자료 : 2023「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교육부, 2023. 1., p.31

❑ 이상의 항목에 대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1,480억 8,700만원을 집행(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중 10.7%)하여 2022년도 828억 7,100만원(5.6%)과 비교시 652억 1,600만원이 증액 집행되었음.

구체적인 집행내역으로 정보화사업비 822억 9,800만원, 인건비성 경비 489억 1,800만원, 정책연구비 60억 1,400만원, 홍보비 57억 3,800만원, 각종수당 46억 5,100만원 등 모든 항목에서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며, 해외연수비의 경우 4억 6,800만원이 순증되었음.

<국가시책특교 중 편성 최소화 항목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증감
국가시책특교 총액(A)		1,458,899	1,384,551	△74,348
편성 최소화 항목 합계(B) (B/A)		**82,871 (5.6%)**	**148,087 (10.7%)**	**65,216**
	해외연수비	0	468	468
	홍보비	2,074	5,738	3,664
	정책연구비	5,675	6,014	339
	각종수당	2,683	4,651	1,968
	인건비성 경비	21,073	48,918	27,845
	정보화사업비	51,366	82,298	30.932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책연구비, 각종수당, 인건비, 정보화사업비 등은 고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수반되는 정책연구,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인력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국가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이상의 항목들이 원활한 사업수행에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① 규모가 국가시책 특교의 10.7%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도하고 ② 전년 대비 국가시책 특교 총액이 감소하였음에도 해당 항목들은 전영역에서 상당규모로 증가(비중 기준 5.6%→10.7%)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운용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집행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을 통한 해외연수비, 홍보비, 정책연구비, 각종수당, 인건비성 경비, 정보화사업비 항목에 대한 집행규모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다) 위탁기관에 의한 사업 집행 과다

❑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시·도교육청은 이를 자체 집행하거나 일선 단위학교에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37],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은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특정 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형식적으로 교부함. 이후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업무협약·계약, 교육부 지정을 통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분담금 형태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집행하거나, 모든 시·도 교육청이 일정 액수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상당규모가 연례적으로 위탁기관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2023년도의 경우 1조 3,845억 5,100만원 중 22.5%인 2,549억 700만원을 시·도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였음.

---

37)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최근 5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기관위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교부(집행)대상	2019	2020	2021	2022	2023
시도 교육청	812,427	679,794	835,132	1,265,373	1,129,644
위탁기관	249,919	245,390	251,669	193,526	254,907
총계	1,062,346	925,184	1,086,801	1,458,899	1,384,551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617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575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에 247억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30억원 등을 위탁하여 집행하였음.

< 2023년 국가시책사업 위탁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위탁사업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과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17개	61,740,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등 13개	57,586,000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교육방송 지원 등 6개	24,785,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지원	23,015,000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등 14개	14,669,000
한국과학창의재단	AI 교육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7개	11,622,00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2개	8,181,000
대한상공회의소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2개	5,863,000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2개	4,830,000
응용측정평가연구소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2개	4,218,000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4,097,00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등 2개	3,975,0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비 부담 경감 등 5개	3,908,0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2,705,000
마음건강센터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	2,050,000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지원	2,000,000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1,600,000
충남대학교	교육용콘텐츠 개발·보급 등 2개	1,450,000

기관명	사업명	위탁사업비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 등 2개	1,450,000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1,395,000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1,375,000
한국장학재단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	1,370,000
한국발명진흥회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	1,150,000
서울교육대학교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개선 등 2개	1,070,000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 등 2개	872,000
사이버폭력예방교육센터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840,00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지원	800,000
효성 ITX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99,293
서울대학교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개선 등 3개	717,500
열린의사회	학생 상담 통합 지원	520,000
공주대학교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개선	420,00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미래형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 체제 구축·운영	420,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	400,0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350,000
한국방송공사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등 2개	320,000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지원	280,000
한국과학기술원	SW·AI 과학인재 육성 기반 마련 및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	245,000
경북대학교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개선	220,000
부산대학교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개선	220,000
전남대학교	교원 양성 및 연수체제 개선	220,000
중부대학교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200,0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	200,000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편·불법 학원 운영 근절 지원	187,000
국립중앙의료원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184,812
공주교육대학교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100,0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100,000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100,000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육비 부담 경감	67,500
(주)BC카드사	편·불법 학원 운영 근절 지원	20,000

자료: 교육부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의 기관 위탁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되, 위탁사업비는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8], 이에 따라 위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신청서(서식 제1호)>

(3) 위탁기관 현황

※ 위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교육비를 최소화하여 운영
(위탁기관명을 미정으로 작성하면 위탁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인정)

○ 위탁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 교부액	'24년 요구안
○ 위탁기관명 : ○○연구원 ○ 위탁금액 : ○○백만원 ○ 위탁사업내역 - ○○ 운영비(00백만원) - ○○ 사업비(00백만원)	○ 위탁기관명 : ○○연구원 ○ 위탁금액 : ○○백만원 ○ 위탁사업내역 - ○○ 운영비(00백만원) - ○○ 사업비(00백만원)

* 자료 : 2023「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교육부, 2023. 1., p.31

또한, 법률에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교부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교부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직접적인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38) 2023「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교육부, 2023. 1., p.10

❑ 관련 기관등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의 22.5%가 시·도교육청을 거쳐 위탁기관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이 중복적이고 우회적임에 따라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교육부는 위탁을 통한 특별교부금 집행규모의 타당성 검토 등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라) 국가시책사업심의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필요

❑ 특별교부금 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은 교육부 사업부서의 신청과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사업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결정됨.

< 국가시책사업 시행 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추진내용
사업신청	교육부 사업부서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수요 발생 시 신청
⇩		
사업심의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국가시책사업 관련 심의
⇩		
확정교부통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교부 통지
⇩		
집행 및 결과보고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교육부 사업부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결과보고

* 자료 : 교육부

❑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39].

3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3년도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실·국장 3인 및 교수 7인, 교육청 부교육감 2인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국가시책사업심의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	성명	성별	직위	임명/위촉일	법령근거
위원장	교육부	장OO	남	차관	당연직	4항 1호
위원	교육부	신OO	남	기획조정실장		
위원	교육부	김OO	남	책임교육정책실장		
위원	교육부	김OO	남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위원	이화여대	박OO	남	교수	2021.12.	3호
위원	숙명여대	송OO	남	교수	2021.12.	
위원	전주교대	정OO	남	교수	2023.2.	
위원	신한대	이OO	남	교수	2023.2.	
위원	공주교대	전OO	남	교수	2023.2.	
위원	순천향대	김OO	남	교수	2023.2.	
위원	공주대	이OO	남	교수	2023.2.	
위원	강원교육청	김OO	남	부교육감	2023.2.	2호
위원	경기교육청	김OO	여	부교육감	2023.2.	

자료: 교육부

❑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의 선정, 비용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부담 비율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로 인적 구성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체적으로 교부금의 집행주체가 시·도교육청이라는 점에서 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소속 지방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교육감의 제청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에 따라[40] 부교육감 18인 중 17인의 원소속기관이 교육부로 사실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는 실정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18인) 원소속기관 현황>

(24년 6월말 현재)

구분	교육부	교육청	합계
인원	17	1	18

주)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은 규모등 고려해서 부교육감이 2인임

이 경우 시·도교육청의 부담비율 등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상황 및 입장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따른 지방교육청 소속 인원(제4항제2호)을 위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심의회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보다 상향(현재 13인 중 12인이 남성이고 여성은 1명) 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41](일반회계)(1502-300) :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수행시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검토 필요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으로[42], 2023년도는 예산액 6,681억 6,700만원 중 4,581억 5,800만원을 집행(집행률 68.8%)하고 2,100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43].

< 2023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특별교부금	2,227,222		2,227,222	1,947,210		280,012	87.4
지역현안	668,167		668,167	458,158		210,009	68.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은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임.

시·도교육감은 지역현안 수요 발생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효과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에 연중 수시로 신청하며, 이에 대해

41) 세부사업명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502-300)
42)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43) 불용사유는 전술한바와 같이 세수감소로 인한 미교부분 불용처리와 함께 특별교부금 내에서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을 전액 교부하고 다른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불용시킨데 기인함.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및 재정 여건과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함.

❑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2012년「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44], 기존 6개 지역 외 '23년도에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23년 7월)하였음.

<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현황 >

- **(1기, '13년~'17년)**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
- **(2기, '18년~'22년)** 1기 5개 지역 재지정 + 경기 안산·시흥 1개 지역 신규 지정
- **(3기, '23년~'27년)** 2기 6개 지역 재지정 + 12개 지역 신규 지정
  * 12개 신규지정 지역 : 부산 중구/남구/해운대구/서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세종, 경기 화성, 충남 천안/당진/홍성·예산, 제주(서귀포시)

*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23.7.12.)

❑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23년 48억 3,400만원을 교부하는 등 2012년도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국제화특구 지원을 하고 있음[45].

---

4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45) 교육특구법이 제정된 2012년도부터 계속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원하고 있음.

< 2023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육국제화특구 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교부일	시도	시군구	사업명	교부액
2023-03-31	대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달서구)	1,050
2023-03-31	대구	북구	교육국제화특구(북구)	740
2023-03-31	인천	서구	교육국제화특구(서구, 계양구)	566
2023-03-31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	717
2023-03-31	전남	여수시	교육국제화특구(여수)	860
2023-11-03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광산구)	800
2023-11-03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제주)	100
합 계				4,833

* 자료 : 교육부

< 최근 3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1	2022	2023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교육국제화특구)	3,934	3,933	4,833

*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및 지정해제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정·운영·육성에 관해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교육부에 설치,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의 심의를 거치며,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 등에 관한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46], 국가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짐.

46)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사업,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등에 교부·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시 국제화자율시범학교, 네트워크학교 등 학교 운영 및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을 위한 성과모델 확산·연수 등으로 사용내역에 차이가 있음.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예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일반적 집행내역)	교육국제화특구(상세내역)
ㅇㅇ중 체육관전면보수 △△중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교체 □□고 문화관 교육환경개선사업 xx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중 체육관 외벽방수 및 옥상방수 공사 역지사지 공존형 토의토론 수업	**(학교 운영)** 국제화자율시범학교 운영, 글로벌인재양성 중심학교 운영, 네트워크학교 운영, 글로벌체험실 구축운영 **(특구 운영)**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 성과모델 확산, 현장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워크숍), 현장지원 교육연구회 운영

주 : 100백만원 이상 집행내역 중 일부 예시
*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교육부는 이에 대해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는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47].

47) 그밖에 국가시책특교의 경우 전체 교육청이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 자율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일부 교육과정 운영 외 시범학교 및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주로 집행하고 있고 둘째, 국가시책특교의 경우도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IB프로그램 도입 확산지원'등 일부 교육청에만 교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등도 국가가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교부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별,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지 않음.

참고로 특구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국가사업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등 타부처 소관 특구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타부처 특구 운영 현황>

구분	소관부처	근거법률(예산지원[48])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구	통일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구분 및 교부비율(각 60%, 30%)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국제화특구를 국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집행하는 것은 동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특별교부금간 사용기준이 불명확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교육특구가 늘어나는 현실('24년도부터 교육국제화특구가 종래 6개에서 18개로 확대[49])에서 특별교부금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

4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그밖에 다른 특구의 경우도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보조금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49) 그밖에 "교육발전특구"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보통교부금(일반회계)(1501-300) : 명확한 기준없는 산정방식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9개 측정항목에 따른 일반수요 산출, 자체노력수요 반영, 수요보정)한 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 교부함[50].

< 202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

(단위: 억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교부액
		1. 교직원인건비	473,451		1.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89,023	
		2. 학교운영비	147,757			시.도세전입금	51,839	
		3. 교육행정비	7,394			담배소비세전입금	7,079	
		4. 교육복지지원비	39,1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포함)	13,923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68,208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	1,368	
		6. 유아교육비	7,284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사업 전환 보전분	934	
		7. 방과후학교사업비	7,398		2. 학교용지부담금		1,356	
		8. 고교무상교육지원	9,858		3.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8,934	
		9. 재정결함보전	134,696		4. 고교무상교육전입금		924	
		10. 자체노력수요	학교통폐합 지원	1,170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100				
			외부 교육투자 유치	618				
			재정집행효율화 지원	1,025				
		소 계		898,133				
		세종특별자치시 보정		1,040				
		감사결과 반영 등		△3				
		정정교부액		-				
11,544	+	합계		899,170	합계		175,380	= 735,334

* 자료 : 교육부(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50)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일반수요 항목은 교직원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기관 등 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고교무상교육지원비, 재정결함보전 등 9개 측정항목으로 산정됨[51]. 그밖에 자체노력수요로 학교통폐합 지원, 재정집행 효율화지원 등이 반영된 후 수요보정을 거쳐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출('23년 기준 89조 9,170억원)됨.

❑ 구체적인 측정항목별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학교운영비('23년 기준 14조 7,757억원)의 경우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 등 세부적인 측정항목이 정해지고 측정단위별로 항목별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함.

< 학교운영비 측정항목 ·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

측정항목		측정단위	비 고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측정단위 x 항목별 단위비용 (15조 5,904억원)
	나. 학급경비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3,742억원
		증설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2,672억원

* 자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및 보통교부금교부 보고 재구성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최근 해당 항목 산정추이를 보면 측정단위(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는 큰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연평균 증가율 0.5%, 0.4%, △1.9%)임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단위비용이 계속 증가(연평균 증가율 9.6%, 8.4%, 8.9%)하여 실제 운영비도 역시 증가(연평균 증가율 10.2%, 8.8%, 6.9%)하였음. 이에 따라 2016년도 대비 2023년도의 학교·학급·학생경비의 경우 '16년 7조 6,671억원에서 '23년 14조 8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됨.

< 학교/학급/학생경비 기준재정수요 산정 추이 >

(단위 : 교, 학급, 명, 억원, 천원, %)

구분		2016 (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B)	연평균 증가율 (B-A)/A
학교경비	학교수	16,144	16,213	16,357	16,380	16,478	16,611	16,710	16,749	0.5
	단위당	272,027	314,618	363,508	361,148	360,098	274,661	470,999	516,461	9.6
	운영비	43,916	51,009	59,459	59,156	59,337	45,624	78,704	86,502	10.2
학급경비	학급수	240,348	238,879	238,958	239,712	241,035	241,824	243,521	247,109	0.4
	단위당	4,391	5,043	5,950	5,838	5,828	4,616	7,291	7,696	8.3
	운영비	10,554	12,046	14,218	13,995	14,048	11,163	17,756	19,018	8.8
학생경비	학생수	6,026,499	5,834,287	5,698,732	5,561,934	5,437,109	5,350,399	5,318,794	5,267,312	△1.9
	단위당	368	460	490	484	482	505	638	671	8.9
	운영비	22,201	26,857	27,915	26,914	26,187	27,017	33,920	35,325	6.9
운영비 계		76,671	89,912	101,592	100,065	99,572	83,804	130,380	140,845	

자료 : 교육부

❑ 이러한 급격한 단위비용 상승은 실제 학교·학급·학생단위당 경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설명 및 증가이유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오히려, 보통교부금은 법령상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당해연도 교부금 규모가 결정되면 기준재정수요액을 교부금 규모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보임[52].

교육부는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이 자의적이고 측정항목이 세분화되어 중복·과다산정의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중으로, 향후 기준재정수요 산정개선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2) 반면, 교부세(행정안전부)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이 보통교부세 총액규모와 독립적으로 산출되고, 양자간 차이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조정함.

마) 지방교육재정 운용

(1) 학령인구 감소(저출산[53])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필요

❑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규모(최종예산 기준)는'23년 95조 84억원으로 전년도 107조 2,473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등 원인), '17년 68조 2,643억원 9,652억원 대비 26조 7,440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5.7%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증감의 원인은 지방교육재정의 큰 부분('23년 기준 68.8%, '22년 기준 75.8%)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등에 연동하여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최종교부 기준)이 '17년 46조 5,909억원 대비 '23년 65조 3,636억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682,643	737,370	820,810	773,326	849,199	1,072,473	950,084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09	524,527	605,305	535,430	603,370	812,975	653,636	5.8

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교부 기준
자료: 교육부

53) 최근 '저출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현행 법률에서 저출산을 법정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저출산'으로 명명함.

❑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지원대상(만 6~17세,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7년 583만명에서 '23년 527만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연평균 증가율 △1.7%)임.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지방재정(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17년 1,170만원에서 '23년 1,804만원으로 연 7.5% 증가(634만원)하였고,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7년 799만원에서 '23년 1,241만원으로 연 7.6% 증가(442만원 증가)하였음.

< 학령인구 대비 지방교육재정 추이 >

(단위: 백만원, 만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시.도교육청 최종예산	68,264,379	73,737,072	82,081,074	77,332,620	84,919,952	107,247,319	95,008,405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0,991	52,452,786	60,530,510	53,543,069	60,337,054	81,297,589	65,363,666	5.8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	583	570	556	544	535	532	527	△1.7
학생 1인당 최종예산	11.70	12.94	14.76	14.22	15.87	20.15	18.04	7.5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99	9.20	10.88	9.85	11.28	15.27	12.41	7.6

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교부 기준
자료: 교육부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54]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23년 533만명 → '30년 409만명 → '40년 293만명 → '72년 194만명) 됨에 따라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54)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4.2.28.」에 따르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0.72이고 출생아수도 23만명으로 역대 최저임.

< 학령인구 추계 >

(단위 : 만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학령 인구 (6-21)	초(6-11)	270	261	248	234	161	156	153	123	94
	중(12-14)	137	136	138	140	115	68	83	71	48
	고(15-17)	132	136	138	137	133	69	82	74	52
	계	539	533	524	511	409	293	318	268	194

주) 중위추계기준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등에 연동하여 계속 증가하는 교부금에 따라 초등 및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높은 반면 대학교는 낮아져서, OECD 평균과 비교시에도 초중등학교는 높고 대학교는 낮은 실정임.

< 초중등 ·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교(2020년) >

(단위: 미국 달러의 구매력 평가지수 환산액)

	학생 1인당 교육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	13,278	17,038	12,225
OECD 평균	10,658	11,942	18,105

주)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지출 ÷ 학생수) ÷ PPP(미국 달러의 구매력 평가지수)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3” 수록(2020년 기준임)

이에 2023년도 예산안 심사시 교부금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통해[55], 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5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1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유·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및

세입액의 일부를 삭제하고[5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음.

또한, 국회는 최근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규모 산정방식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산상 시정조치 요구하고 있음.

< 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관련 국회 결산 시정조치 사항 >

연도	시정요구
’20년 결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잉여금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규모 산정방식에 대해 강구할 것
’21년 결산	교육부는 지방재정교육부금 산정방식 개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출격차 개선 등을 포함한 운용 효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적정 규모 산정과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
22년 결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 산정에 있어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직원수와 함께 학교·학급·학생 등 측정기준 설정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56)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
*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3조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5조 규모(3년 한시)로 절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서 주요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교직원수”항목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학교수(11.2%), 학생수(8.9%), 학급수(2.6%) 순임.

< 주요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비율(2023년) >

(단위 : 억원)

측정단위	측정항목	기준재정수요 측정액(비율)
교직원수	· 전년도 교직원 인건비 결산액 및 처우개선율	473,451 (52.7%)
학교수	· 학교경비, 교과교실 운영비, 기숙형고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등 고등학교 지원, 학점제운영 직업계·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 기관운영비(학교), 지역 간 균형교육비(통학면적)	100,500 (11.2%)
학급수	· 학급경비, 방과후학교사업 지원, 초등 돌봄 운영비	23,587 (2.6%)
학생수	· 학급경비(가중학급경비), 학생경비, 기관운영비, 계층간 균형교육비, 지역간 균형교육비, 고교무상교육지원비	79,897 (8.9%)
계		677,435 (75.3%)

자료 : 교육부

❑ 교부금 수요 산정에 과반을 차지하는 교직원수 중 교원을 살펴보면,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00년 대비 20여년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00년→’21년, 19.5→10.9, 28.7→14.0, 20.1→11.9, 19.9→9.9). 학급당 학생수도 동일한 추세로 큰 감소를 보였음.

<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추이 >

(단위 : 명)

연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19.5	28.7	20.1	19.9	26.3	35.8	38.0	42.7
2011	14.6	17.3	17.3	14.8	20.9	25.5	33.0	33.1
2016	13.3	14.6	13.3	12.9	19.7	22.4	27.4	29.3
2018	12.3	14.5	12.1	11.5	17.9	22.3	25.7	26.2
2019	11.9	14.6	11.7	10.6	17.0	22.2	25.1	24.5
2020	11.4	14.2	11.8	10.1	16.7	21.8	25.2	23.4
2021	10.9	14.0	11.9	9.9	17.5	21.5	25.5	23.1
2022	10.3	13.7	11.7	9.6	16.7	21.1	25.0	22.6
2023	9.4	13.3	11.6	9.8	16.1	20.7	24.6	22.9

주: 1. 각 연도 국·공립 및 사립학교 대상 매년 4월 1일 기준임
2.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 / 교원 수
3. 교원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단, 휴직교원 포함)
4. 직위별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포함됨

자료: 교육부(출처: 교육기본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살펴보면(2021년 기준) 고등학교는 한국이 2.6명 적고(10.7<13.3), 중학교는 비슷하며(13.3=13.2), 초등학교가 한국이 1.5명 정도 많은(16.1>14.6)[57] 실정임.

<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비교(2021년 기준)>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OECD 평균	14.6	13.2	13.3
한국	16.1	13.3	10.7

자료: 교육부

57) 2027년에는 12.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부, 2023.4.)

다만, 초등교원의 경우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년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와 경제규모(G20 : 18.4명) 및 인구수가 비슷한 국가(인구 4천만명 이상 : 19.3명)과 비교시 낮음[58)59)].

❑ 다음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수와 학급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수 및 학급수는 큰 변동이 없는(소폭 증가) 실정이고, 이에 따라 '17년 대비 '23년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6%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1개 학급 및 학교당 교부금은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이보다 낮은 실정임.

58) OECD 국가별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해당 국가 예시	비고
G20	18.4	G7 + 호주,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튀르키예 등	대한민국 포함
인구 4천만명 이상	19.3	미,영,프,독,일,이탈리아,스페인등	
OECD 상위 10개국	11.8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	

*자료: OECD 통계(2019년 기준) 재구성

59) 또한, 직위별로 모든 교원을 평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부족한 인원을 별도로 확인하여 수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 · 학교 · 학급당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

(단위: 백만원, 교, 학급,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0,991	52,452,786	60,530,510	53,543,069	60,337,054	81,297,589	65,363,666	5.8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	583	570	556	544	535	532	527	△1.7
교부금 지원대상 학급 수	238,879	238,958	239,712	241,035	241,824	243,215	247,109	0.6
교부금 지원대상 학교 수	16,213	16,357	16,380	16,478	16,611	16,636	16,749	0.5
학생 1인당 교부금	7.99	9.20	10.88	9.85	11.28	15.27	12.41	7.6
1개 학급당교부금	195	220	253	222	250	334	265	5.2
1개 학교당 교부금	2,874	3,207	3,695	3,249	3,632	4,887	3,903	5.2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교부 기준

자료: 교육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및 학급간 통폐합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환경, 통학거리, 지역간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학생수 감소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60].

또한, 교육재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2023년도는 세수감소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교육재정 규모가 감소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60) 따라서, 적정 교부금 규모 산정시 학생수뿐 아니라 학교·학급수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현재 교부금 수요산정시 학생수 비중(8.9%)보다 학교 및 학급수 비중(13.8%=11.2+2.6)이 높다는 점에서 적정한 학생수 비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령인구 감소는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기인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등 보육지원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 등 정책영역별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61][62].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나 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등 교육영역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함과 함께, 교육영역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 요청됨.

61)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4차)에 따른 저출산대응 예산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교육부가 5조 7,754억원으로 국토부, 복지부에 이어 중앙부처 중 3번째로 큰 규모임.
62) 다만, 교육부 소관 저출산 예산의 경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에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 학교안전을 고려한 재정제도 확립 필요

(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63] 및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64].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설치 근거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법정기금”과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으로 구분되며, 법정기금은 다시 설치 의무 여부에 따라 “의무기금”과 “재량기금”으로 나뉘는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에 해당함.

❑ 시도교육청별 ‘기금 현황표’을 살펴보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52조[65]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는 동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63)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4) 2023년 말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총 54개로, 전체 기금조성액은 22조 6,109억원이며, 이 중 3조 9,134억원(17.3%)을 집행하고 나머지 18조 6,975억원은 적립되어 있음.

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07.1.26. 제정>**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시도교육청의 법정 기금 설치 현황 >

구분	기금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연도	설치 교육청
의무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	2007	서울, 경기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2021~ 2022	17개 시도
재량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2019~ 2022	17개 시도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안전법」에서 동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 기금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고, 실제로는 서울·경기를 포함한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다고 설명함.

또한, 동 기금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운용하면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제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임[66].

66)「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사회) ①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와 같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시도교육청별 관리대상 기금에서 제외할 경우, 시도교육청 및 전체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23년기준 대략 1,000억원 규모이나 교육부는 정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동 기금이 제외됨에 따라 외부 통제장치가 없어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됨.

❑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기금의 설치주체 및 관리·운용의 책임자는 교육감(「학교안전법」 제11조, 제52조)[67]이고,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68].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도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지방의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2013. 5. 7.).[69]

---

6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학교안전공제기금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받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70].

69)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3-0013, 2013.5.7.):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에 대하여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지방의회)의 심사·의결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70) 24년 7월 말 현재, 교육청이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입법예고('24.6.4.~8.5.)중임.

(나) 학교안전 관련 예방사업 강화 및 지출기준 설정 검토 필요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6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건수가 증가하다가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전년도 14만 9천건 대비 4만 4천건이 증가한 19만 3천건으로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

(단위: 천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	116	117	123	139	42	93	149	193

* 자료: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1)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사고 및 보상통계)

구체적인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19만 3,177건 중 체육활동 중 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쉬는시간, 식사시간 순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7만여건이고 고등학교가 3만 9천건 수준이었음.

<학교안전사고 현황(2023년도)>

체육활동	쉬는시간	식사시간	수업시간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기타**	계
69,421 (35.9%)	32,330 (16.7%)	28,265 (14.6%)	21,423 (11.1%)	12,550 (6.5%)	10,223 (5.3%)	8,749 (4.5%)	10,216 (5.3%)	193,177 (100.0%)

* 수업시간 : 체육활동(체육수업) 제외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합계
건수	9,861	71,608	71,223	39,133	726	626	193,177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기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도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기금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공제급여 지출에 516억 7,700만원(80.3%), 예방사업 13억 9,400만원(2.1%), 기타 운영비에 113억 1,300만원(17.5%) 등 총 643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음. 또한, 동 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전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23년도)>

(단위: 백만원)

시도	기금 현황	`23년 국고등 지원현황				`23년 기금 사업내용			
		국고	지방비 (교육청)	그외	소계	공제급여	예방사업 (콘텐츠제작 등)	기타 (운영비 등)	소계
서울	3,532	-	8,488	-	8,488	9,817	116	2,334	12,267
부산	4,888	-	2,720	-	2,720	3,116	8	733	3,857
대구	2,771	-	2,443	-	2,443	2,607	40	754	3,401
인천	4,395	-	3,293	-	3,293	2,969	38	1,805	4,812
광주	3,366	-	1,482		1,482	1,827	9	308	2,144
대전	3,499	-	1,476	-	1,476	1,070	-	294	1,364
울산	6,170	-	-	-	-	1,227	-	-	1,227
세종	2,847	-	590	-	590	457	8	179	644
경기	17,093	-	11,742	-	11,742	10,076	548	1,864	12,488
강원	5,030	-	2,268	102	2,370	2,156	6	625	2,787
충북	4,249	-	1,557	38	1,595	1,810	12	462	2,284
충남	8,714	-	2,112	-	2,112	2,556	47	603	3,206
전북	7,892	-	7,892	-	7,892	2,451	507	579	3,537
전남	6,596	-	1,574	-	1574	2,296	10	-	2,306
경북	8,723	-	8,473	250	8,473	3,297	27	493	3,817
경남	8,422	-	3,153	-	3,153	3,460	13	-	3,473
제주	4,218	-	682	20	682	485	5	280	770
합계	102,405	0	59,945	410	60,085	51,677 (80.3%)	1,394 (2.1%)	11,313 (17.5%)	64,384 (100%

* 자료: 교육부(교육부는 시도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취합한 자료라고 답변하고 있음)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안전기금이 아닌 특별교부금(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71].

❑ 학교안전사업은 안전의 특성상 안전사고 감소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고발생 후 공제급여 지급 등 지출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사업 수행으로 안전사고 자체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72]. 특히, 의무지출인 공제급여와 달리 예방사업은 재량지출로서 재정상황 등에 따라 소극적인 사업수행 및 지출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지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73].

일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의 경우 기금 총액의 8% 이상을 예방용도로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정하여 예방에 대한 투자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74]. 이와 달리, 학교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의 용도를 법률, 조례, 공제회 정관에서

71) 이하에서는 사업추진 방식(중앙-지방 공제회간 관계) 및 특교 등 별도예산 지원의 적절성이 아닌, 학교안전기금의 재원배분 기준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함

72) 일례로 화재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조치 장비 등 기준(부처 인증기술 활용 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73) 교육부는 현재 공제급여 지급 및 운영비만으로도 부족하며, 예방사업은 별도로 특교 및 분담금 등(83억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3. (생 략)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 기금에서의 지출비중은 2% 수준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관련 규정 현황(예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건수가 종래 연 10만건에서 '23년도 19만건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후적인 보상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한 안전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안전 예방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7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76]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77]는 공공기관(국가기관 등)에게 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에

---

75) 문의: 02-6788-5187

7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024년 2월 6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 2024. 8. 7.)됨.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7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024년 7월 9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2024. 7. 10.)됨.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2024. 7. 9.>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78]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당해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79]의 1% 이상으로 설정한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80]

교육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81]에 해당하는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 1%)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음.

---

7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79)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함.

80) 2024년 2월 6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 2024. 8. 7.)됨에 따라 2025년부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정해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부 칙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③ "공공기관"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교육부의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총구매액의 1.12~1.98%로 구매목표비율인 1%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매목표비율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총구매액의 1%	14,377	285	1.98%
2022		14,802	232	1.57%
2023		14,188	159	1.12%

자료: 교육부

❑ 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총구매액은 증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과 구매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국립대학교(37개)[82], 국립특수학교(5개)[83], 교육부 소속기관(6개)[84]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82) 국립교육대학교를 포함함.
83)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서울농학교, 서울맹학교
8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

공공기관[85]으로, 동 기관들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나[86], 2023년도의 경우 총 29개의 기관에서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 미만인 공공기관 >

(단위: 백만원)

기관명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부산대학교	78,550	106	0.13%
부산교육대학교	3,698	8	0.23%
한경국립대학교	24,073	65	0.27%
충남대학교	68,196	214	0.31%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6,493	86	0.32%
전주교육대학교	4,754	18	0.37%
국립순천대학교	19,621	79	0.40%
제주대학교	29,257	116	0.40%
진주교육대학교	5,157	22	0.42%

국학술원(사무국)

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86) 위의 기관들 또한 구매목표비율이 1%임.

광주교육대학교	5,069	23	0.46%
국립공주대학교	42,339	205	0.48%
국립금오공과대학교	15,834	76	0.48%
국립부경대학교	46,774	227	0.4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4,773	118	0.48%
한국교원대학교	30,509	149	0.49%
강원대학교	55,143	274	0.50%
국립창원대학교	26,089	144	0.55%
경인교육대학교	7,804	44	0.56%
국립한밭대학교	20,343	114	0.5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3,493	203	0.61%
서울농학교	1,090	7	0.67%
충북대학교	31,307	216	0.69%
국립안동대학교	17,698	124	0.70%
서울교육대학교	5,415	39	0.73%
춘천교육대학교	4,296	33	0.76%
한국선진학교	1,908	15	0.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826	8	0.91%
경북대학교	50,461	487	0.97%
청주교육대학교	2,946	29	0.99%

자료: 교육부

❑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 미만인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비율이 매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

(단위: 개)

연도	총 공공기관(A)	구매비율 1% 미만 공공기관(B)	비율(B/A)
2021	49	27	55.1%
2022	49	30	61.2%
2023	48[87]	29	60.4%

자료: 교육부 제공 자료 편집

주1) 총 공공기관 - 국립대학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특수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87) 2023년 3월 1일자로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되었음.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① (2021년)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학교 내 물품 수요가 급감하였고, ② (2022년)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 등에서 구매실적을 미충족하였으며, ③ (2023년)예산 및 총구매액이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전년대비 140% 증가)하였고, 교육기관 특성상 양질의 용역 발주[88]를 위해 적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처를 바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는바, 일정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립대학교, 국립특수학교, 소속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올해 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89],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별

---

88) 대학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학술연구 및 교육분야 용역이 다수 발주됨.

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부 칙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상향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비율이 총구매액의 2%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규정됨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생산시설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매의무비율을 상향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따라서 구매의무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90].

90)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생산품목으로 202개의 물품을 지정하고 있음([붙임1] 참조).

[붙임1]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생산품목 202개(2023.12.31.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생산품목명	생산품목명	생산품목명	생산품목명
CCTV	두부류	신발	주차관제장치
PE봉투(비닐봉투류)	디자인서비스	신선편이농산물	주차장관리서비스
USB	떡류	실물모형	진공포장기
가공스프및스튜	마스크	쌀과자	차류
가구류	망사포대	쐐기형 인장클램프	차선분리대
가로등주	면류	쓰레받기	창
가로정비용역	명함케이스	안내판	채소류
가방	모니터	안마서비스	청소
가스차단기	모자	안마서비스주선업	청소기
간판	모터펌프	애니메이션	체험활동서비스
감열지	무대장치	액서서리(스트랩류)	초콜릿
강정류	무인기농업서비스	양말	추출가공식품
개인컴퓨터	문서파쇄	양초	출입통제시스템
건강기능식품	문서파일류	어묵	출장 스팀세차
건포류	물비누	오디오북(텍스트포함)	침구류
견과류	물티슈	옷걸이	칫솔류
경계서비스	바닥형보행신호등	옹기	카페
곡류	발효원액	우편발송DM	커튼
공기살균기	방향제	울타리재료및제품	커피류
공기순환기	배선용꽂음접속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커피점토
공기여과기	배전반, 제어장치	유지류	컨테이너 향초
공기청정기	버섯류	육류가공품	콘크리트블록
공기청정기유지관리서비스	범용세척제	음성점멸유도등	타월
공연	변압기	응집기	탈수및배수장치
공예품	보일러(온수매트)	이동식경사로	탈취기
공원체육시설	블라인드	이사용역	태양광발전장치
과실류	비누	인쇄물	택배
과자류	비닐케이스	일회용품	판촉물인쇄
교통신호등	사무용의자(플라스틱)	임산물(곶감,버섯류)	페인트및전처리제
구내방송장치	사무용지류	입욕제	폐기물중간처리업
구운계란	사회관계망서비스관리	자동차임시번호판	폐현수막마대
그림렌탈	살균소독수	자료처리업무	포장용랩
금속기둥	상장케이스	장갑류	포장용테이프
급지대	생분해비닐봉투류	장작	폴리프로필렌포대
기념패	생활가전세척서비스	재생토너카트리지	프린터유지관리서비스
김치류	선풍기	전광판	플라스틱상자
깃발	세제류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피복류
꿀	세차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넉가래	세탁	전선보호판	해조류
논슬립손잡이쟁반	소금	전시회	행사용품렌탈설치서비스
농산물가공품	소독방역	전주도색판	행정봉투
누룽지	소방용기구	전화장비네트워크연결장치	현수막
눈삽	쇼핑백	점자안내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다시팩	수공예카드	접지장치·조립품	화장지류
다용도꽂이	수문	접착식메모지	화장품
달걀	수세미	제과제빵	화장품냉장고
도로표지판	수제청	조경관리	화재감지기
도시락	숙박업	조명기구	화훼류
도자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	조형물	휴대용 비데
도장	식기대여및세척서비스	종이상자	
동영상제작서비스	식육포장처리업	종이컵	

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1) 국가재무제표상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부채 과소계상

가) 사업개요

❑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91)92)].

사회기반시설을 BTL 방식으로 건설하는 경우, 공사 완료 후에 국가는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받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종료일까지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며, 국가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국고보조할 수 있음.

---

9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92) BTL은 수익현 민간투자사업(BTO)와 달리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주로 사용됨

❑ BTL사업의 특성상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기 때문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 예산심사시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고 있음[93][94].

또한, BTL사업으로 인하여 향후 국가가 재정으로 지출할 정부지급금에 대한 정보는 국가결산서와 BTL정부지급금 추계서를 통하여 국회에 제공되고 있으며[95], 국가결산서를 구성하는 국가재무제표는 국가사업에 대한 임대료 추계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음[96].

---

93) 각 회계연도별 예산안과 같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예비심사(2024회계연도의 경우 교육위원회 및 환경노동·국방위원회)와 종합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있음.

94)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96) 2023회계연도에 국가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인식한 BTL부채는 총 9조 5,608억원임(전부처 합계)

(2) 결산개요

❑ 교육부 소관 2023년도 BTL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대학별 학생생활관, 기숙사, 시설개선 등 약 50여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및 운영비 합계 1,252억 9,700만원임.

2022년까지 누적 정부지급금은 1조 2,575억 9,500만원(향후 지급금까지 포함한 총 정부지급금은 2조 9,729억 7,600만원)이며, BTL 한도액은 1조 9,775억 4,3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교육부 BTL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한도액	총 민간 투자비	정부지급금		2023년도 정부지급금				
		총 정부지급금	누적 정부지급금 (~2022년)	임대료		운영비		소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1,977,543	1,762,183	2,972,976	1,257,595	77,650	15,062	1,177	29,537	125,297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BTL 부채 과소계상 [97]

❑ 교육부의 국가재무제표 상 BTL부채 7,424억원은 BTL정부지급금 추계액 8,680억원보다 1,255억원[98]이 과소계상되었으며, 이는 2023년 BTL부채의 16.9%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23회계연도 교육부 BTL 부채 및 정부지급금 추계액 비교 >

(단위: 억원, %)

구분	국가재무제표 상 명목가액			정부지급금 추계액 (d)	차이금액(e=d-c)	차이비율(e/c)
	BTL임대료미지급금 (a)	BTL임대료 장기미지급금 (b)	BTL부채 합계 (a+b=c)			
교육부	757	6,667	7,424	8,680	1,255	16.9

자료: 교육부

❑ 교육부의 BTL부채는 40년 이상 된 노후 교육시설을 BTL 방식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추계액임[99].

---

97) 교육부를 포함한 전부처 재정정보 측면에서의 BTL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참조

98) 후술할 BTL부채 누락에 따른 효과 1,269억원 및 기타 오류가 (-)14억원

99) 2023년도 말 명목가액 기준으로 BTL부채 합계 7,424억원임(현재가치할인차금 1,553억원을 차감g는 경우 5,871억원임)

(단위: 억원)

구분	유동부채(a)			비유동부채(b)			BTL부채 합계(a+b)		
	BTL 임대료 미지급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차감계	BTL 임대료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차감계	BTL 부채 합계	현재가치 할인차금	차감계
교육부	757	△235	522	6,667	△1,317	5,350	7,424	△1,553	5,871

자료: 교육부

❑ 그런데, 교육부는 BTL 방식으로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시점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임대료 추계액을 BTL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2개교의 BTL부채액을 누락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TL 방식으로 건립하여 2023년부터 운영개시된 한국교원대와 제주대 기숙사등의 BTL 추계액인 684억원과 586억원을 2023년 결산에서 누락함에 따라 부채가 과소계상 되었음.

< 2023회계연도 BTL부채 누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한국교원대 BTL	제주대 BTL	합계
BTL추계액	684	586	1,270
운영개시일자	2023-08-18	2023-11-16	-
자산등재일	2023-09-11	2024-03-19	-
부채누락 사유		근저당 말소 과정에서 자산등재 지연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개 학교 BTL의 누락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사업종료일까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음. 2024~2042년까지 매년 64.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사업종료일에는 39.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차이 금액의 총합계가 1,269억원이며, BTL부채 과소계상액에 해당함.

< 운영중인 교육부 BTL 정부지급금 스케줄 및 BTL 부채 스케줄 비교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지급금 스케줄(a)	81,853	81,853	81,853	81,853	79,753	53,153	48,853
BTL부채 스케줄(b)	75,378	75,378	75,378	75,378	73,278	46,678	42,378
차이금액 (a-b)	6,475	6,475	6,475	6,475	6,475	6,475	6,475
구분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정부지급금 스케줄(a)	47,153	47,153	47,153	47,153	41,828	33,275	27,490
BTL부채 스케줄(b)	40,678	40,678	40,678	40,678	35,353	26,800	21,015
차이금액 (a-b)	6,475	6,475	6,475	6,475	6,475	6,475	6,475
구분	2038	2038	2040	2041	2042	2043	합계
정부지급금 스케줄(a)	21,899	13,703	11,853	8,146	8,053	3,923	867,953
BTL부채 스케줄(b)	15,424	7,228	5,378	1,671	1,578	0	741,005
차이금액 (a-b)	6,475	6,475	6,475	6,475	6,475	3,923	126,94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는 특성에 따라 예결산 등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또한, 「국가회계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100].

100)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재무제표상 BTL 부채가 정부지급금 추계액보다 과소계상되어 있는 등 국가부채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조정실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10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국고보조금의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 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사립학교 전대차관 관리수수료 등 연체료 및 반환금 명목으로 징수되는 수입임.

❑ 동 세입은 지출금반납금, 잡이익, 국고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출금반납금이며 이는 사업비의 집행잔액에 해당함.

< 최근 5개년 항목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교육부(계정과목별)					대학, 소속기관 등	총계
	국고예금	잡이익	지출금반납금	기타비교환수익	소계		
2019	3	502	214,639	387	215,532	5,609	221,141
2020	2,566	183	279,851	0	282,599	6,251	288,851
2021	618	2,674	436,127	0	439,419	10,419	449,838
2022	0	12,081	391,089	0	403,170	12,985	416,156
2023	0	807	594,396	96	595,299	11,018	606,316
총계	3,187	16,247	1,916,102	484	1,936,019	46,283	1,982,302

자료: 교육부 자료 재구성

101) 문의: 02-6788-5184

(2) 결산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의 202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878억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264억 2,200만원이었고, 이 중 5,249억 6,8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경상 이전수입	187,800	-	187,800	526,422	524,968	99.7	1,450	4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격차를 개선할 필요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102]를 모두 포함한 기타경상이전수입 총 수납액은 2019년에 2,211억 4,100만원에서 2023년에 6,063억 1,600만원에 달할만큼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

(단위: 백만원)

연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합계
’19	113,718	5,483	101,941	221,141
‘20	179,015	5,642	104,194	288,851
’21	270,772	8,271	170,795	449,838
’22	345,060	5,268	65,827	416,156
’23	524,968	17,273	64,075	606,316

자료: 교육부

❑ 특히 동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동시에 수납률(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150% 이상이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수납률이 30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102) 교육부의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됨.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부터 도입되어 아직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 연도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19	114,348	114,348	-	114,348	114,742	113,718	99.4	99.1	1,025
'20	99,895	99,895	-	99,895	180,314	179,015	179.2	1,299	-
'21	138,256	138,256	-	138,256	272,089	270,772	195.8	1,316	-
'22	114,900	114,900	-	114,900	346,570	345,060	300.3	1,510	-
'23	187,800	187,800	-	187,800	526,422	524,968	279.5	1,450	4

자료: 교육부

❑ 이처럼 예산액과 수납액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액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였던 것에 반해, 징수결정액의 규모는 예산액에 비해서 훨씬 크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이 지출금반납금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교육부가 사업 예산액을 과대 편성한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 특히 2023년에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103]하였기 때문인데, 2021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2022년 전반적인 소득분위가 상승[104]하여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축소되었고,

103)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4,173억 5,300만원의 지출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79.3%를 차지함.

예상만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서의 집행 부진은 일시적인 것이며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예산안 편성 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나,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체 지출금반납금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금반납금이 매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왔으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예산안 편성 시에 동 사업에서의 지출금반납금의 예상 규모를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고,

< 연도별 지출금반납금 발생 주요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순위	2020		2021		2022		2023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94,624 (33.8%)**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1,487 (11.8%)**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18,794 (30.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17,353 (70.2%)**
2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21,360 (7.6%)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20,612 (4.7%)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68,760 (17.6%)	한국장학재단출연	24,275 (4.1%)
3	개인 기초연구	8,347 (3.0%)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17,595 (4.0%)	이공학 학술 연구기반 구축	12,722 (3.3%)	대학혁신 지원사업	8,617 (1.4%)

104) 국가장학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결정됨.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재산가액이 반영되고 기준 중위소득에는 재산가액이 반영되지 않으며, 재산가액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으므로, 전년도(n-1) 공시지가의 상승은 당해연도(n) 소득분위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급 인원 축소로 이어지게됨.

순위	2020		2021		2022		2023	
4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3,071 (1.1%)	대학혁신 지원사업	16,020 (3.7%)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10,044 (2.6%)	이공학 학술 연구기반 구축	8,375 (1.4%)
5	초등 돌봄교실	2,550 (0.9%)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3,742 (3.2%)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9,287 (2.4%)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6,093 (1.0%)
-	지출금 반납금 총계	279,851	지출금 반납금 총계	436,127	지출금 반납금 총계	391,089	지출금 반납금 총계	594,396
-	기타경상 이전수입 총계	288,851	기타경상 이전수입 총계	449,838	기타경상 이전수입 총계	416,156	기타경상 이전수입 총계	606,316

자료: 교육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고 그 결과 2022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규모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2022년 8월에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105]에 따른 2022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이로 인한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105) 연도별 공시가격 상승률: ('17) 4.44% → ('18) 5.02% → ('19) 5.23% → **('20) 5.98%** → **('21) 19.05%**

❑ 또한 교육부는 세입예산 편성 시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2025년 세입예산 부처안 편성 시 최근 5년치 결산 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임을 밝혔으나,

최근 5년치 결산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매년 징수결정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 결정액 >

(단위: 백만원)

연도	'19	'20	'21	'22	'23
징수결정액	114,742	180,314	272,089	346,570	526,422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공시가격 변경에 따른 예상 지출금 반납금 규모 변화 등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근 기타경상이전수입이 크게 발생했던 사업들 위주로 차년도 발생 추이를 예측하여 세입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음.

(2) 신속한 사업 집행잔액 정산 및 장기 미수납액 납부 촉구 필요

❑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출금반납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2021년에 예산을 교부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약 111억 8,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적지 않음.

< 2021년 이전 교부 예산에 대한 2023년 지출금반납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교부연도	전체 교부액	반납액	반납사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5	4,100	0.7	15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환수금 반납
한국학진흥	2015	22,124	2.9	집행잔액 등
한국학진흥	2016	22,624	229	집행잔액 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7	4,675	3	17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환수금 반납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7	4,675	0.4	17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환수금 반납
학술단체지원	2017	4,187	1	집행잔액 등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2018	47	6	부정수급 반환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2018	221	40	집행잔액 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8	4,500	1.3	18년 파란사다리 참가자 환수금 반납
한국학진흥	2018	16,522	34.5	집행잔액 등
대입전형 운영 지원	2019	55,940	95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학술단체지원	2019	4,073	6	집행잔액 등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2019	792	9.6	집행잔액 등
한국학진흥	2019	15,272	6	집행잔액 등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9	4,460	0.6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학술단체지원	2020	4,223	91	집행잔액 등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2020	152	0.48	불인정금액 등 (UNESCO 교육협력 지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2020	1,441	115.8	집행잔액 등
한국학진흥	2020	14,359	81.9	집행잔액 등

세부사업명	교부연도	전체 교부액	반납액	반납사유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2021	106	1.2	집행잔액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2021	5,121	13	집행잔액 등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2021	210	7	집행잔액 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21	3,594	333.6	21년 한·미대학생연수 이자수입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2021	1,639	0.02	정산환수금 및 이자 등
이러닝 세계화	2021	1,814	12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학술단체지원	2021	3,819	65	집행잔액 등
대입전형 운영 지원	2021	57,208	16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021	75,000	890	집행잔액 등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021	25,040	141	집행잔액 등
해외 한국어 보급	2021	5,647	177	집행잔액 등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021	9,600	141	집행잔액 등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021	7,500	136	집행잔액 등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2021	1,500	205	집행잔액 등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2021	36,872	22	진행잔액 등
한국학진흥	2021	23,077	124.6	집행잔액 등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021	270,431	5,322	집행잔액 등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021	8,000	44	집행잔액 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21	3,594	1,396	21년 한·미대학생연수 집행잔액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2021	104,500	1,005	집행잔액 등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1	5,900	275	집행잔액 등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2021	780	6	집행잔액 등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2021	4,817	9	집행잔액 등
대학구조개혁 지원	2021	14,457	0.06	피보조기관 부담금 환급액 발생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2021	243	46	집행잔액 등 (한-EU 교육협력사업)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2021	510	69	집행잔액 등
합계		855,366	11,181.76	-

자료: 교육부 자료 재구성

❑ 교육부 측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랜 시점이 지난 경우에도 징수결정을 하여 집행잔액 등을 오차 없이 징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나,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산이 2015년과 같이 10여년 전에 시행한 사업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장기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그해에 수납하지 못한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2019년에는 10억 2,500만원이었다가 2023년에는 23억 7,9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최근 5개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미수납액		
	교육부	대학, 소속기관 등	총계
2019	717	308	1,025
2020	977	524	1,501
2021	861	456	1,316
2022	949	562	1,511
2023	1,801	578	2,379
총계	6,232	2,427	8,659

자료: 교육부 자료 재구성

❑ 교육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소송비용액이며 단순 미납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징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자진 납부 유도, 독촉장 및 분납고지서 발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위탁 등을 통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미수납액 가운데는 2006년에 징수를 결의한 5,300만원의 미수납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장기 미수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징수 결의일로부터 20년 가량이 지난 미수납액도 존재하는 상황임.

< 최초결의 연도별 장기미수납액 현황 >

(단위: 원)

최초결의 연도	금액(합계)	결의 내용 및 징수 지연 사유
2006	53,000,000	NAFIS 고지정보 데이터전환
2012	19,372,670	소송비용 확정액 반납 고지
2014	112,943,900	경제적 어려움
2017	402,094,960	소송비용액 세입고지 등
2018	4,521,380	소송비용액 세입고지 등
2019	90,531,710	소송비용액 세입고지 등
2020	38,548,440	한국학진흥사업 제재조치에 따른 연구비 환수
합계	721,013,060	

자료: 교육부 자료 재구성

❑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적기에 파악하여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출금 반납금 징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기 미수납금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10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사업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서,

재외교육기관(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지원사업,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재외동포용 교과서등 개발,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06)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784억 4,400만원으로 784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9%임.

< 2023년도 재외동포교육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8,444	-	78,444	78,417	-	27	99.9
○ 재외교육기관 지원[107]	71,573	-	71,573	71,555	-	18	99.9
○ 교과서 및 교재개발·보급	5,948	-	5,948	5,839	-	9	99.9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935	-	935	935	-	-	100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8	-	88	88	-	-	100

자료: 교육부

107) 동 사업의 경우 일부 운영비 외 해외경상이전(67,867백만원) 및 해외자본이전(2,561백만원)임.

나) 검토의견

(1) 재외한국교육원 일부 통폐합 검토 필요

❑ 재외교육기관 중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을 기능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108]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한국교육원은 일반적으로 원장 1인 및 현지채용 인원 1인 이상으로 운영되며[109],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재외한국교육원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9개국에 총 43개의 한국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일본지역 15개, 미국지역 7개, 러시아지역 4개, CIS지역 3개 및 기타지역 14개소임.

---

10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9) 5개 교육원(타슈켄트, 알마티, LA, 파리, 하노이)은 원장 외 부원장 1인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다수의 교육원은 현지채용 인원이 1인이나,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도 있음.

< 2023년 재외한국교육원 현황(2023.4.1.기준) >

교육원명	설립연원일	파견자 수(명)	한글학교 수(개)	동포수 (명)	한국으로온 유학생(명)
동경한국교육원	‘66.05.01	1	28	92,241	5,850
사이타마한국교육원	‘94.07.26	1	7	20,394	
치바한국교육원	‘70.01.21	1	5	20,083	
가나가와한국교육원	‘63.04.01	1	7	34,456	
나가노한국교육원	`70.02.26	1	3	46,138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1	4	4,164	
센다이한국교육원	‘64.07.25	1	6	7,764	
오사카한국교육원	‘63.04.01	1	29	96,361	
나라한국교육원	‘77.02.21	1	2	5,200	
교토한국교육원	‘63.04.12	1	13	26,972	
고베한국교육원	‘63.04.01	1	12	40,006	
오카야마한국교육원	‘66.04.01	1	3	4,681	
후쿠오카한국교육원	‘63.06.28	1	5	22,140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1	25	8,805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10	1	4	1,719	
일본지역 소계 (15개원)		**15**	**153**	**431,124**	
워싱턴한국교육원	‘80.07.01	1	64	189,474	3,214
뉴욕한국교육원	‘81.07.01	1	117	360,053	
시카고한국교육원	‘81.07.01	1	85	357,993	
휴스턴한국교육원	‘88.08.10	1	38	175,446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	‘80.04.15	2	167	664,414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87.08.20	1	63	245,173	
애틀랜타한국교육원	`17.03.13	1	110	242,093	
미국지역 소계 (7개원)		**8**	**644**	**2,234,646**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42	79,923	2,486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12	26,375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15	29,225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2	11,834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4**	**71**	**147,357**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2	23	175,865	10,409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2	23	109,495	1,255
비쉬켁한국교육원	‘01.05.28	1	4	18,106	669
CIS지역 소계 (3개원)		**5**	**50**	**303,466**	**12,333**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17.03.17	1	8	13,524	231

캐나다한국교육원	`81.07.31	1	73	125,291	665
시드니한국교육원	‘89.08.01	1	32	113,907	294
영국한국교육원	‘81.07.01	1	22	36,690	536
프랑스한국교육원	‘75.12.31	2	17	25,417	2,541
독일한국교육원	‘81.08.04	1	33	47,428	1,393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1.01	1	3	4,833	29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87.08.21	1	12	22,847	38
상파울루한국교육원	‘88.09.01	1	27	35,186	307
뉴질랜드한국교육원	’12.04.01	1	11	27,152	77
태국한국교육원	‘12.06.01	1	5	18,130	1,009
호치민시한국교육원	‘12.11.13	1	4	89,699	43,361
하노이한국교육원	‘20.12.22	1	1	65,000	
말레이시아한국교육원	‘20.12.30.	1	8	13,667	1,226
기타지역 소계 (14개원)		**15**	**256**	**638,771**	**51,707**
19개국 43개원		**47**	**1,174**	**3,755,364**	**75,590**

자료: 교육부

주) 파견자는 원장, 부원장 등 교육부장관이 선발하여 파견하는 인원(교육청 자체 파견 제외)

❑ 한국교육원은 연혁상 1963년 재일동포에게 한국어 및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역적 범위 및 설립개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현행 한국교육원 설립시기 >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	계
신 설	10	4	13	7	9	43

자료: 교육부

주1) 통폐합된 교육원을 고려하면 실제 설립개수는 더 많음

주2) 2024년도에 설립진행 중인 4개소 제외

2024년에는 4개 지역(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미국 시애틀)에 한국교육원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데(’24년 8월 교육원장 파견 예정)[110],

교육원 설치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가 1만명 이상일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111][112].

❑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등에게 한글학교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유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인원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이 필요함[113].

현재 관할 지역의 재외동포 수가 1만명 미만인 한국교육원은 1천명대 1개소(시모노세키), 4천명대 3개소(삿포로, 오카야마/ 파라과이) 등 총 7개소로 이 중 6개소가 일본 지역임.

---

110) 2024년 한국교육원 신설 국가 현황 (단위 : 명)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미국(시애틀)
재외동포('21)	10,673	17,297	11,107	176,983
한국으로 온 유학생('22)	1,328	2,278	430	3,073(미국 전체)
한국어반 학생('22)	2,541	7,271		23,593(미국 전체)

11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과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1실 이상·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2) 이는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가까운 개념임.

113) 다만, 재외국민 1만명 기준은 '07년 시행령 제정시 마련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음.

< 관할지역 재외동포 수 1만명 미만인 교육원 현황 >

관할공관	교육원명	설립연월일	재외동포수(명)	한국으로 온 유학생	교육원 강좌 수강생수('23)	한국어 채택 학교수
주히로시마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10	1,719	5,733 (일본 전체)	257	11
주삿포로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4,164		99	18
주오사카	오카야마한국교육원	'66.04.01	4,681		68	6
주오사카	나라한국교육원	'77.02.21	5,200		136	9
주센다이	센다이한국교육원	'64.07.25	7,764		318	20
주히로시마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8,805		26	21
주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1.01	4,833	205	1,093	24

자료: 교육부
주) 관할공관은 주파라과이대사관 외에는 전부 총영사관

이러한 한국교육원의 특정지역(일본) 편중 해소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래 계속적으로 인근 교육원과 통합하거나 폐지한 사례가 있었음.

< 한국교육원 통합 및 폐지 현황 >

	통합	폐지
1980년대	기타큐슈,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히가시오사카 (▸오사카)	니시토쿄, 군마, 회기, 시마네, 돗토리, 아키타, 이와테
1990년대	이바라기 (▸동경) 후꾸이 (▸나고야) 아오모리, 후쿠시마 (▸센다이)	나고야, 시애틀[114]
2000년 이후	니가타 (▸나가노) 오이타 (▸후쿠오카) 와카야마 (▸오사카)	기후

자료: 교육부
주) 통합된 교육원은 괄호 안에 표시

114) 시애틀의 경우 90년대에 폐지 후 2024년에 재외동포 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 추진중임.

❑ 국가·지역별 재외국민의 현황 및 교육 지원의 필요성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한국교육원도 신설, 조정통합 및 폐지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 및 관할 공관별 한국교육원 설치 현황에 대한 고려 및 현지교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교육원은 인근지역의 교육원으로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 확대 필요

❑ 재외교육기관 중 하나인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5]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116]에 따른 학교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국외에 설립을 승인한 정규학교로서 16개국에 34개교[117]가 설치되었음.

❑ 재외한국학교에 기본운영비(인건비·운영비·임차료)와 목적사업비(시설비, 대수선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해외자본이전(340-03), 그 외 비용은 해외경상이전(340-01)으로 지원하고 있음.

---

1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 ~ ⑥ (생 략)

116)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117) **< 재외한국학교 현황(16개국 34개교) >**

구분	계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	기타
학교수	34	4	13	2	2	2	11*

* 자카르타, 싱가포르, 방콕, 필리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모스크바, 테헤란, 카이로, 말레이시아, 프놈펜

※ 자료: 교육부

2023년도 재외한국학교 지원 예산액은 565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565억 7,500만원으로 동일하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재외한국학교 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재외한국학교 지원	56,575	-	-	56,575	56,575	-	-
- 해외경상이전 (340-01)	53,912	-	△49	53,863	53,863	-	-
- 해외자본이전 (340-03)	2,561	-	49	2,610	2,610	-	-

자료: 교육부

❑ 16개국 34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국가·학교별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교육부지원금 비율이 낮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비율이 높은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평균 등록금이 낮은 수준임.

< 국가·학교별 재외한국학교 총지출액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

국가명	학교명	학생수 ('22.4.1.자) (A)	총지출액 (USD) (B)	등록금 수입 총액 (USD) (C)	학생 1인당 등록금 (USD) (C/A)	교육부 지원금 (USD) (D)	총지출 액 대비 교육부 지원금 (D/B)
일본	동경	1,391	8,604,878	3,253,281	2,339	2,411,327	28%
	교토	156	6,022,517	450,156	2,886	2,043,259	34%
	금강	267	4,556,324	978,041	3,663	994,101	22%
	건국	461	10,104,848	895,530	1,943	1,644,025	16%

국가명	학교명	학생수 ('22.4.1. 자) (A)	총지출액 (USD) (B)	등록금 수입 총액 (USD) (C)	학생 1인당 등록금 (USD) (C/A)	교육부 지원금 (USD) (D)	총지출액 대비 교육부 지원금 (D/B)
중국	북경	692	7,181,886	3,640,475	5,261	1,726,315	24%
	천진	562	5,896,573	2,501,992	4,452	1,448,836	25%
	상해	917	9,264,806	5,323,188	5,805	1,742,200	19%
	무석	460	4,168,695	1,953,456	4,247	1,373,542	33%
	소주	349	3,124,030	1,621,855	4,647	971,873	31%
	옌타이	320	3,564,607	1,151,650	3,599	1,160,019	33%
	칭다오청운	699	7,385,286	2,378,366	3,403	3,769,614	51%
	웨이하이	278	3,226,116	792,892	2,852	1,157,376	36%
	대련	208	2,404,563	809,421	3,891	904,324	38%
	선양	132	2,121,430	400,278	3,032	888,461	42%
	연변	84	2,264,086	235,223	2,800	608,644	27%
	광저우	367	3,886,200	1,857,223	5,061	961,615	25%
	홍콩	118	3,071,094	915,611	7,759	1,170,399	38%
대만	타이뻬이	64	787,858	145,286	2,270	370,311	47%
	까오숑	43	672,177	35,741	831	371,200	55%
베트남	하노이	2,145	12,549,253	7,627,600	3,556	1,758,981	14%
	호치민시	2,047	11,112,688	6,795,660	3,320	1,825,892	16%
사우디 아라비아	젯다	6	220,941	6,463	1,077	178,867	81%
	리야드	23	520,164	23,399	1,017	327,361	63%
싱가포르	싱가포르	360	10,231,159	4,596,879	12,769	2,406,236	24%
태국	방콕	137	1,902,781	418,424	3,054	904,330	48%
필리핀	필리핀	139	1,769,188	745,486	5,363	705,852	40%
파라과이	파라과이	86	453,740	42,524	494	266,094	59%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140	1,280,924	223,932	1,600	427,553	33%
러시아	모스크바	51	1,029,097	175,102	3,433	513,511	50%
이란	테헤란	6	659,800	4,700	783	227,828	35%
이집트	카이로	30	496,050	26,771	892	305,545	6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35	645,860	166,211	4,749	319,086	4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805	8,685,076	5,046,495	6,269	1,280,088	15%
캄보디아	프놈펜	45	703,831	128,245	2,850	357,835	51%
합계	**34**	**13,623**	**140,568,526**	**55,367,556**	**4,064(평균)**	**37,522,500**	**27%(평균)**

자료: 교육부

주) 총지출액, 등록금 수입 총액, 교육부 지원금: 2022학년도 결산 기준[118)]

118)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외한국학교의 2023년 결산은 집계·검토 중인 상황이며, 매년 6월 이전까지 재외한국학교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결산서 등 재정자료는 9월에 확정됨.

❑ 교육부의 국고지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119]에 따라 학교의 재정상태, 소재지역 물가수준, 학생 수·학급 수 등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하므로 국가별 국고지원비율에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20]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121]에 따라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

---

1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2.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③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12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121)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외국민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를 전액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4531-300)[12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4531-300) 사업은 교육교류 및 인재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하고,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학위취득 등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인 'Global Korea Scholarship(외국인)(이하 "GKS"라 함)'과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 지원을 위한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인 '교원해외진출사업'으로 구성됨.

122) 문의: 02-6788-5184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976억 4,500만원으로, 이 중 95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2,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7.5%임.

< 2023년도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ODA)	97,645	-	97,645	95,211	11	2,423	97.5
○ GKS (외국인)	93,278	-	93,278	92,061	-	1,217	98.7
○ 교원해외 진출사업	4,367	-	4,367	3,150	11	1,206	72.1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교원해외진출사업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사업 방식 재설계 필요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은 GKS(외국인)와 교원해외진출사업으로 구분됨. 이 중 교원해외진출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사업과 단기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됨.

❑ ① 장기사업은 장기해외파견으로 1~3년간 초등, 중등(수학·과학·ICT), 직업기술 교육분야 교원과 한국어 교원을 개발도상국 현지 정규학교 및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② 단기사업은 단기해외교육봉사로 방학 기간 중 4주의 해외 현지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며, 국립국제교육원이 프로그램 심사 후 대학을 선발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최근 5개년간 교원해외진출사업의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43억 6,700만원의 예산 중 12억 600만원의 예산을 불용하여 72.1%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개년 교원해외진출사업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A/B)
	본예산	추경(A)								
2019	6,114	6,114	-	-	-	6,114	5,094	-	1,020	83.3
2020	6,114	4,422		△3,360		1,062	1,015		47	23.0
2021	5,136	5,136	-	-	-	5,136	960	-	4,176	18.7
2022	4,366	4,366	-	△1,192	-	3,174	2,160	-	1,014	49.5
2023	4,367	4,367	-	-	-	4,367	3,150	11	1,206	72.1

자료: 교육부

❑ 이처럼 집행률이 부진했던 것은 장기해외파견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충분한 인원을 모집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원의 경우 매년 지원 인원이 충분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모집률이 100%에 가깝지만, 중등 교원의 경우 지원 인원이 부족하여 2023년 모집률이 57.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 최근 4개년 교원해외진출사업의 모집 및 선발 현황 >

(단위: 명, %)

구분		초등	중등	한국어	직업기술	퇴직자문관	계
2019	모집	29	37	24	5	5	100
	지원	34	46	90	4	14	188
	선발	17	22	39	2	5	85
	파견포기	-	-	-	-	-	
	모집률	58.6	59.5	162.5	40.0	100.0	85.0

구분		초등	중등	한국어	직업기술	퇴직자문관	계
2021	모집	-	-	40	2	-	42
	지원	-	-	60	4	-	64
	선발	-	-	33	1	-	34
	파견포기	-	-	-	-	-	
	모집률	-	-	82.5	50		81.0
2022	모집	6	15	31	8	-	60
	지원	6	7	46	6	-	65
	선발	5	6	30	5	-	46
	파견포기	-	-	-	-	-	
	모집률	83.3	40.0	96.8	62.5		76.7
2023	모집	3	21	31	5	-	60
	지원	7	22	63	11	-	103
	선발	3	12	32	5	-	52
	파견포기	1	1	-	-	-	2
	모집률	100	57.1	103.2	100		86.7

※ 주1. 2020년은 코로나 19 유행의 영향으로 해외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음.
주2. 모집률 =(선발 인원/모집 인원)×100(%)
자료: 교육부 자료 편집

❑ 따라서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모집률을 높여야 할 것인데,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측은 초·중등 분야의 다소 저조한 지원율과 한국어 과목의 계속하여 높아지는 지원율 추세를 반영하는 등 교원 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모집 및 충원할 계획임을 밝힘.

❑ 그러나, 당초 교원해외진출사업의 사업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 지원을 통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총 52명의 교원 중 32명이 한국어 교원이라는 점과,

< 2023년도 과목별 교원 선발 현황 >

(단위: 명)

과목	초등	중등	한국어	직업기술	계
선발인원	3	12	32	5	52

자료: 교육부

우리나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기초교육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수학·과학 등 타 과목에 비해 비교적 간접적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매년 한국어 교원 선발 인원은 초·중등 교원 선발 인원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개선 기조는 한국어 교육에 치우친 측면이 있음.

❑ 또한,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4331-301)의 내역사업 중 현지 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에서도 키르기스스탄 등 ODA 수원국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사업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정 없이 동 사업 내 한국어 교원 파견 인원을 늘리는 조치는 특정 수원국에 한국어 교원 파견 인원이 집중되는 등 각 국가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 있음.

< 2023년도 사업별 · 파견국별 한국어 교원 파견 인원 >

(단위: 명)

구분	교원해외진출사업 內 한국어 교원 파견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內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
ODA 수원국	키르기스스탄(5), 카자흐스탄(7), 네팔(3), 말레이시아(10), 파라과이(4), 세르비아(2)	키르기스스탄(7), 태국(58), 베트남(4), 우즈벡(3), 필리핀(1), 인도(2), 라오스(2), 캄보디아(2), 타지키스탄(1), 요르단(1), 파푸아뉴기니(1), 페루(1)
ODA 비 수원국		헝가리(2), 불가리아(1)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는 교원해외진출사업의 낮은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재설계는 다소 부진한 중등 교원 등의 모집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면서, 유사 사업간 조정을 통해 각 국가의 실질적인 교원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야 할 것임.

3.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반회계>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1303-500)[12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1303-500)은 교육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함)의 기관 운영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것임.

(2) 결산개요

❑ 교육정보원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방식 운영 기관으로,

202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은 지출예산 총액 410억 600만원에서 자체수입 계상액 15억 6,100만원을 제외한 394억 4,500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123) 문의: 02-6788-5189

< 2023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39,445	-	39,445	39,445	-	-	100.0
○ 기관운영출연금	19,724	-	19,724	19,724	-	-	100.0
- 인건비	18,742	-	18,742	18,742	-	-	100.0
- 경상비	982	-	982	982	-	-	100.0
○ 사업출연금	19,721	-	19,721	19,721	-	-	100.0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1,696	-	1,696	1,696	-	-	100.0
- 학술정보 유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211	-	4,211	4,211	-	-	100.0
- 현장 중심의 미래 교육행정 서비스 기반 조성	5,064	-	5,064	5,064	-	-	100.0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및 교육학술정보 시스템 운영	5,316	-	5,316	5,316	-	-	100.0
- 실증기반 미래교육 연구 및 글로벌 협력 선도	1,699	-	1,699	1,699	-	-	100.0
-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체제 확립	1,165	-	1,165	1,165	-	-	100.0
-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	570	-	570	570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교육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 202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 중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된 ‘현장 중심의 미래 교육행정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에서, 4세대 나이스[124] 관련 운영비 등이 집행되었음.

< 202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 중 나이스 관련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역	집행액
○ 현장 중심의 미래 교육행정 서비스 기반 조성		5,064
- 교육행정 업무지원체계 안정화	• 나이스 응용 S/W 운영 및 유지보수 • 나이스 기술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648
- 교육행정 인프라 표준화 및 관리체계 고도화	• 나이스 인프라(H/W, 상용S/W) 유지관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PC 보호 서비스 • 나이스 총괄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	2,703
- 나이스 보안성 강화 기반 고도화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 및 유지	439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운영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기술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1,274

자료: 교육부

124)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전자정부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국가 정책 기반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국 12,000여개 학교,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 교육행정 업무 및 학생·학부모, 민원인 대상 대국민서비스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효율화를 지원함(www.neis.go.kr).

❑ 4세대 나이스는 당초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3월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활성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과 신산업분야 IT 신기술 반영을 위해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코로나19 확산 및 공공 IT 서비스 분야 인력 수급 곤란 등으로 품질 확보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2023년 6월에 전면개통됨.

< 4세대 나이스 개통 관련 계획 및 추진 일정 >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추진일정	추진내용
계획수립	'19.12.16.	'20.9.8.	-	4세대 나이스 구축 기본 계획 수립 / 변경
PMO	-	'21.1.11.~ '23.6.30.	좌동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 PMO용역
응용SW 개발	'20.1.~ '22.3.	'21.3.10.~ '23.7.31.	'21.3.31.~ '23.3.31.	4세대 나이스 업무별 SW 개발
인프라 구축	'20.4.~ '22.3.	'22.1.6.~ '23.7.31.	'22.2.18.~ '23.5.30.	4세대 나이스 인프라 구축 (교육부 총괄, 시도운영센터, 클라우드센터)
나이스플러스 개통	-	'22.3.23.	좌동	나이스플러스 서비스 개발
감리	-	'23.3.17.~ '23.7.31.	좌동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 감리
현장 베타테스트	-	-	'23.4.24.~ '23.6.5.	전국 교직원을 대상으로 4세대 나이스 개통 전 베타테스트 실시
전면개통	'22.3.	'23.6.21.	좌동	4세대 나이스 전면 개통

자료: 교육부

❑ 4세대 나이스 전면개통 이후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202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의 성과지표 및 결과에 포함되었는데,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성과지표 달성도는 65.6%로 전년 대비 36.3%p 낮은 수준이며, 다른 성과지표인 교육정보서비스(에듀넷·티-클리어) 콘텐츠 활용량 101.5%,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9.8%에 비해서도 저조함.

< 202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사업 성과지표 및 결과 >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정보서비스 (에듀넷·티-클리어) 콘텐츠 활용량 (단위: 만건)	목표	172	202	236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증가율(17%) 반영	에듀넷·티-클리어로 제공되는 교육과정 맞춤형 콘텐츠의 월평균 이용 건수(만건)	에듀넷·티-클리어 이용통계 시스템
	실적	174	205	-			
	달성도	101.2	101.5	-			
교육정보서비스 (에듀넷·티-클리어)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9.9	90.8	91.7	최근 5개년 목표치 평균증가율(1.04%) 적용	교육정보서비스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점)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	89.3	90.6	-			
	달성도	99.3	99.8	-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단위: %)	목표	86	88	89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된 목표치 설정	나이스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	87.6	57.7	-			
	달성도	101.9	**65.6**	-			

주: 3개 성과지표는 2022년에 신규로 설정됨
자료: 교육부

❑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동 조사는 나이스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대상별 조사 결과에서 교직원의 만족도가 33.7%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72.1%)과 학부모(67.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임.

< 2023년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요 >

구분	내용
조사기간	• 2023. 11. 14. ~ 11. 27.
집계 완료 시점	• 2024년 1월말
조사수행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대상	• 나이스(NEIS)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 교직원(72만명): 나이스 인사정보 등록 사용자 수 - 학생(55만명): 나이스플러스 학생 서비스 가입자 수 - 학부모(52만명):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자 수
조사항목	• 검색성, 사용성, 유용성, 사용자 소통 등 - 교직원(총 28문항): 기본정보 7문항, 사용자 소통 6문항, 시스템 신뢰성 3문항, 나이스 서비스 개선도 진단 10문항, 나이스 서비스 종합의견 2문항 - 학생(총 20문항): 이용자 정보 및 사용환경 10문항, 검색성 1문항, 사용성 4문항, 유용성 2문항, 사용자 소통 2문항, 의견 수렴 1문항 - 학부모(총 20문항): 이용자 정보 및 사용환경 11문항, 검색성 2문항, 사용성 3문항, 유용성 1문항, 사용자 소통 2문항, 의견 수렴 1문항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연 1회, 자체조사) - 교직원: 나이스사용자지원시스템 - 학생: 나이스플러스 서비스 - 학부모: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자료: 교육부

< 2023년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별 응답 내역 >

(단위: 명, %)

구분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응답자	응답률	응답자	응답률	응답자	응답률
합계	11,389	100.0	875	100.0	979	100.0
만족	3,833	**33.7**	631	72.1	660	67.4
매우 만족	934	8.2	221	25.3	223	22.8
대체로 만족	2,899	25.5	410	46.9	437	44.6
보통	2,147	18.9	197	22.5	283	28.9
대체로 불만족	2,396	21.0	31	3.5	21	2.1
매우 불만족	3,013	26.5	16	1.8	15	1.5

주: 1. 교직원의 경우 '약간 만족, 만족하는 편'을 '대체로 만족'으로, '약간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을 '대체로 불만족'으로 각각 분류하여 적용함.
2. 2023년 성과지표 실적 57.7%는 각 조사대상별 '만족' 응답의 평균임((교직원 33.7%+학생 72.1%+학부모 67.4%)/3)

자료: 교육부

❑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가 당초 목표했던 88%보다 30.3%p 낮은 57.7% 수준이고 특히 교직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2023년 6월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발생한 문제 및 교직원 의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3년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하여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으로 총 115,556건('23.12.31. 누적기준)의 요청사항(질의, 오류발생 등)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주요 오류 사항은 문항정보표 출력 오류, 세션 비정상 종료, 결시생 인정점 오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오류 등이며, 이에 대하여 출력 요청 시간 단위 세분화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짐.

<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발생한 주요 오류 발생 및 조치 내용 >

연번	발생량[1)]	발생일	처리일	오류 발생 및 조치 내용
1	7건	'23.6.21.	'23.6.23.	• 오류: 유사 시간대에 출력 요청한 다른 문항정보표가 출력 • 조치: 출력 요청 구분 시간 단위를 세분화하고, 각 출력 요청에 고유번호를 부여
2	48건	'23.6.21.	'23.7.2.	• 오류: 사용 시간이 남았음에도 세션이 비정상적으로 종료 • 조치: 세션 정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3	212명	'23.7.10.	'23.7.13.	• 오류: 결시생 인정점에 기존 입력점수가 자동으로 입력 • 조치: 오류로 자동입력된 기존 입력점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
4	45건	'23.7.12.	'23.7.13.	• 오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기능이 비활성화 • 조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클릭 시 조회되도록 조치

주: 1) 오류발생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원 수로, 그 외의 경우는 접수된 신고 건수로 각각 기재함.

자료: 교육부

- 또한 교직원 대상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개편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안내 매뉴얼 및 도움말과 문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부족하고, 화면의 메뉴 구성 및 배치, 비율 등에서 가독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단계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편의성이 저조한 시스템 사용으로 필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함에 따라, 단시간(수업종료 후 다음 수업시작 전) 내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이 학기 중, 주중에 전면개통되어,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임.

❑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사용자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연평균 접속량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정하였으나, 시스템 개통 준비를 위한 일주일 사용 정지 후 대량 접속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오류가 나타난 측면이 있으며,

  메뉴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교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고, 시스템 개통 시기는 7월 검정고시, 8월 이후 대학입시 등을 고려하여 6월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시스템 사용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고려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시범운용 등을 통해 적정 기간 동안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전면개통 전에 반영하는 한편,

수업이 없는 방학 중, 주말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시스템 적응과 이를 활용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정보원은 추후 시스템 개편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보완된 사항 등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4세대 나이스가 교직원의 안정적·효율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체수입의 재원 확보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교육정보원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방식 운영 기관임.

수지차 보전방식 운영 기관은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또는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결산 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125)]

❑ 교육정보원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예·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탁사업 수입의 경우 2021년 89.8%에서 2023년 92.2%로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0.2%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가 유지됨.

125)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24~25

< 교육정보원 수입 및 지출 예·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비중)	예산	결산	(비중)	예산	결산	(비중)
수입(A)	361,007	389,138	(100.0)	424,124	515,075	(100.0)	369,355	517,208	(100.0)
- 정부출연금	39,139	39,139	(10.1)	43,833	43,833	(8.5)	39,445	39,445	(7.6)
- 자체수입	1,496	739	(0.2)	1,496	861	(0.2)	1,561	882	(0.2)
- 수탁사업	320,372	349,260	(89.8)	378,795	470,381	(91.3)	328,349	476,881	(92.2)
지출(B)	361,007	236,489		424,124	383,814		369,355	369,646	
결산잉여금(A-B)		152,649			131,261			147,562	

자료: 교육부, 교육정보원

❑ 자체수입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예·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비중이 50%대로 낮아 2023년에는 6억 7,9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목적사업수입은 매년 1억 9,8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액은 예산액의 약 0.5%인 100만원 수준임.

< 교육정보원 자체수입 예·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예산(A)	결산(B)	결손(A-B)	예산(A)	결산(B)	결손(A-B	예산(A)	결산(B)	결손(A-B
목적사업수입	198	1	197	198	-	198	198	1	197
이자수입	70	30	40	70	118	△48	147	197	△50
잡수입	50	78	△28	50	57	△7	38	50	△12
전년도이월금수입	1,178	630	548	1,178	686	492	1,178	634	544
합계	**1,496**	**739**	**757**	**1,496**	**861**	**635**	**1,561**	**882**	**679**

자료: 교육부, 교육정보원

❑ 교육정보원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제공 사업[126]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유료화 등을 통한 수입 확보는 교육의 공익적 부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으나,

수지차 보전방식 운영 기관으로서 적정 수준의 자체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원은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 심사료 수입을 심사비용으로 집행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한 심사 업무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자체수입으로 확보하고 있고, 2023년 8월 AI 디지털교과서 기술검정심사 지원 기관으로 지정되어 AI 디지털교과서 기술검정심사 수수료 등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수입 규모가 가장 큰 2025년이 6,500만원 수준임.

< 교육정보원 자체수입 확보 예상액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콘텐츠 내용심사	1	3	5	5	5
AI 디지털교과서 기술검정 심사	-	-	60	42	22
합계	**1**	**3**	**65**	**47**	**27**

자료: 교육부, 교육정보원

126)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교육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대학 공개강의서비스(KOCW, Korea OpenCourseWare) 등

❑ 따라서 교육정보원은 수지차 보전방식 운영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결산액 및 향후 자체수입 확보 예상액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12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1301-301)은 공교육 현장의 수요가 에듀테크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의 연구·개발, 에듀테크 관련 교육 관계자 간 교류·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결산개요

❑ 2023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은 17억 8,800만원이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고, 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788	-	1,788	1,788	-	-	100.0
○ 사업출연금	1,788	-	1,788	1,788	-	-	100.0

자료: 교육부

127) 문의: 02-6788-5189

나) 검토의견: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의 효과성 파악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함) 출연사업으로, 교육정보원이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운영함.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에듀테크가 공교육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촉진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모델을 개발하며, 교원·학생·학부모 등에게 연수를 제공함.

❑ 2023년에는 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등 3개 권역에 구축된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운영되었으며, 관리기관인 교육정보원의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지원 예산 5억 8,800만원과 3개 권역 운영기관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예산 12억원 등 총 17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현황 >

구분	수도권(경기)	동부권(대구)	서부권(광주)
운영	• 경기대학교 - 경기교육청(대표), 도청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대구시청(대표), 교육청	• 광주교대 - 광주교육청(대표), 시청
특징	•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에듀테크 제품 보급 사업 운영(대구시 대응 투자)	• 예비 교원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습 과정 제공

자료: 교육부

< 2023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계	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관리기관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지원	교육 혁신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198	198	-	-	-
		에듀테크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8	118	-	-	-
		에듀테크 협의체 운영 및 성과 확산	174	174	-	-	-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인력 인건비	98	98	-	-	-
		소계	**588**	**588**	-	-	-
운영기관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실증 프로그램 운영	294	294	68	152	74
		특화프로그램·연수 운영	186	186	37	51	98
		홍보·성과공유 및 사업 운영비	203	203	67	37	99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269	269	145	87	37
		전담인력 인건비	248	248	83	73	92
		소계	**1,200**	**1,200**	400	400	400
합계			**1,788**	**1,788**	-	-	-

자료: 교육부

❑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실증 기획, 2단계 실증 준비, 3단계 실증 수행, 4단계 실증 완료로 이루어지는 실증 과정을 진행함.

<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과정 >

① 실증 기획	② 실증 준비	③ 실증 수행	④ 실증 완료 (현장적용)
• 학교 현장 수요 분석 • 현안 과제 도출 • 실증기업 공모·선정	• 실증 제품 분석 • 실증요원(교원) 모집 • 제품-실증요원 매칭	• 교육 현장 실증 • 개선 사항 발굴 • 에듀테크 제품 개선	• 현장 적합성 검증 • 활용 모델 개발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실증과제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2건으로, 이 중 4단계 실증 완료인 학교 현장에 적용된 과제는 61.1%인 44건 수준임.

현장에 적용된 44건의 실증과제가 적용된 사례는 108건으로 실증과제별 적용 사례 수는 평균 2.5건(사례 108건 / 과제 44건)이며, 실증과제별 적용 사례 수가 3건 이하인 경우가 79.5%(과제 35건 / 4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증과제의 현장적용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에듀테크 소프트랩 권역별 실증과제 및 현장적용과제 현황 >

(단위: 건)

구분	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합계		
	실증 과제수	현장적용 과제수	현장적용 사례수	실증 과제수	현장적용 과제수	현장적용 사례수	실증 과제수	현장적용 과제수	현장적용 사례수	실증 과제수	현장적용 과제수	현장적용 사례수
2021	5	3	3	5	3	4	5	4	6	15	10	13
2022	8	6	8	10	6	10	8	7	23	26	19	41
2023	11	1	6	10	5	20	10	9	28	31	15	54
합계	**24**	**10**	**17**	**25**	**14**	**34**	**23**	**20**	**57**	**72**	**44**	**108**

주: 2023년까지 수행된 사업 기준
자료: 교육부

❑ 실증과제의 현장적용 사례 저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장적용 사례는 실증 과정에 참여한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를 사용한 후 실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어, 결과보고서 제출 없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경우는 파악되지 않으므로 실제 활용 실적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교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에듀테크 활용실적 파악을 위한 학교 대상 전수조사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교육부는 2023년 11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실증 과정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교에 에듀테크를 공급한 실적을 시범조사한 바 있음.

기업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3년간(2021~2023년) 실증 참여기업의 학교 공급 실적은 실증 과정 참여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약 2.6배 증가(3,196건 → 8,330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에는 기업 6, 7과 같이 공급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기업 4, 22, 23과 같이 유사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기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또한 공급 실적을 제출한 기업은 전체 실증 과정 참여기업 66개 중 37.9%인 25개 수준으로 실적이 파악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함.

< 에듀테크 소프트랩 권역별 실증 참여기업의 학교 공급 실적 상세 내역 >

(단위: 개교)

연도	권역	기업	학교 수		비고
			실증 전	실증 후	
2021	수도권	기업1	35	200	
		기업2	100	1,000	
	동부권	기업3	1	40	중복참여(a)
		기업4	10	10	
	서부권	기업3	-	-	중복참여(a′)
		기업5	-	-	18,000명 → 35,000명[2]
2022	수도권	기업6	2,000	3,300	
	동부권	기업7	800	3,000	중복참여(b)
		기업8	50	200	중복참여(c)
		기업9	14	20	
		기업10	10	70	
		기업11	10	40	
		기업12	0	2	
		기업13[1]	69	52	
	서부권	기업14	2	18	중복참여(d)
		기업15	10	100	
2023	수도권	기업8	-	-	중복참여(c′)
		기업16	3	169	
		기업17	30	33	
		기업18	-	-	27,000명 → 33,000명[2]
	동부권	기업19	40	50	
		기업20	-	-	2건 → 36건[3]
		기업21	-	-	0건 → 7건[3]
		기업22	10	10	
		기업23	2	4	
		기업24	0	2	
	서부권	기업7	-	-	중복참여(b′)
		기업14	-	-	중복참여(d′)
		기업25	0	10	
	합계		**3,196**	**8,330**	

주: 1) 기업13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 사업을 통해 학교에 에듀테크를 공급하였으나, 현재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공급 규모가 축소됨
2) 기업5, 18은 학교 단위가 아닌 개별 교사 단위로 공급
3) 기업20, 21은 공급 학교 수가 아닌 공급 규모로 제출

자료: 교육부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에듀테크를 개발하여 공교육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 등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등이 필요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실증 과정을 거친 에듀테크의 공교육 활용실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실증 과제의 지나친 특수성, 결과물 공유 미비 등 원인을 파악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에듀테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결과물 공유를 통해 동일 권역 내, 타 권역 등에서도 필요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인재정책기획관

<일반회계>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2305-305)[12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2305-305)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과,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재평가 준비·기준정비를 위한 운영지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사후 질관리 제고에 기여하는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76억 9,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128) 문의: 02-6788-5188

<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7,697	-	7,697	7,697	-	-	100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7,497	-	7,497	7,497	-	-	100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	-	200	200	-	-	100

나) 검토의견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임.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59.5%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 2023년도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200	200	200	0	200	119	0	59.5

❑ 이러한 실집행 부진에는 2022년 실시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추가평가의 실시 저조가 원인으로 작용함. 2022년 제3주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 >

인증 법학전문대학원 (9개교)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조건부 인증[129] 법학전문대학원 (13개교)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시적 불인증[130]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 이 중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학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 추가평가를,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학교는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평가 현황 >

법전원명	3주기 평가 결과	추가 평가 여부 (평가 시기)	기타 / 평가 불응 사유
아주대	조건부 인증	2023. 하반기	'충족'판정
중앙대	조건부 인증	2023. 하반기	'충족'판정
건국대	조건부 인증	2024. 상반기	'충족'판정
고려대	조건부 인증	미실시	추가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
서울대	조건부 인증	미실시	소송중
서울시립대	조건부 인증	2024. 상반기	'충족'판정
성균관대	조건부 인증	미실시	미신청

129) 조건부 인증 : 5개 평가영역(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130) 한시적 불인증 :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법전원명	3주기 평가 결과	추가 평가 여부 (평가 시기)	기타 / 평가 불응 사유
원광대	조건부 인증	2024. 상반기	'충족'판정
이화여대	조건부 인증	2024. 상반기	'충족'판정
전남대	조건부 인증	2024. 상반기	'충족'판정
전북대	조건부 인증	2024. 상반기	'충족'판정
제주대	조건부 인증	미실시	미신청
충북대	조건부 인증	미실시	미신청
경희대	한시적 불인증	미실시	소송중
서강대	한시적 불인증	미실시	2025년 희망함
인하대	한시적 불인증	미실시	소송중

❑ 그러나 추가평가를 신청한 학교(아주대, 중앙대)도 적고, 일부대학은 평가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추가평가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추가평가 및 재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131]로서 학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함.

131)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심판을 청구한 대학들은 모두 각하재결을 받았으나, 이후 조건부 인증 및 한시적 불인증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임.

< 인증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 현황 >

대학명	사건번호	사건명	기타	비고
서울대 법전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	조건부인증처분취소	진행중	행정심판청구 건 2023. 12. 5. 각하
인하대 법전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081	한시적불인증 처분취소등	진행중	행정심판청구 건 2023. 12. 26. 각하
경희대 법전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61	한시적불인증 처분취소청구의 소	진행중	행정심판청구 건 2023. 12. 26. 각하

❑ 이처럼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 미흡 및 법적 분쟁의 발생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규정이 다른 교육과정과 상이한 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132]에 따라 정부 인정을 득한 인정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

132)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133] 실제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 바 있으며, 대원대학교 간호학과는 2023년 간호교육인증평가 불인정 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수시 입시 절차를 전면 중단한 바 있음.

---

133)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들과 달리 그 평가의 근거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으며, 평가만 받을 것을 규정할 뿐, 평가에 따른 인증까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에 따른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련 직종과 달리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법학교육과정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함으로써 법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도 의무화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의무화보다는 현재의 규정 내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처리 보완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1)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13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사업은

- '전문대학 산학연협력'을 보편화한 1,2단계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연협력 역량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모든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3.0)

-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첨단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융합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산업계·연구계 간 협력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 대학 내 창의적 자산(기술, 특허, 아이디어 등)의 '탐색-실사-고도화(비즈니스모델 설계, 기술 융·복합, 상용화개발, 시제품제작, 후속RnD컨설팅 등)-실용화(기술이전, 기술창업 등)' 전 과정을 지원

134) 문의: 02-6788-5188

하여 대학 기술사업화(기술이전·기술창업)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 재무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 유망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하여 산학연협력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고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로 대학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기획 및 제도개선,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컨설팅,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기반 조성, 산학협력마일리지 및 계약학과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개인의 진학·조기취업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중소(견)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으로 우수인재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 등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학사급 인력을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5,572억 4,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557,247	-	557,247	557,247	-	-	100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302,500	-	302,500	302,500	-	-	100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144,300	-	144,300	144,300	-	-	100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BRIDGE3.0)	16,800	-	16,800	16,800	-	-	100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4,000	-	4,000	4,000	-	-	100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1,404	-	1,404	1,404	-	-	100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17,100	-	17,100	17,100	-	-	100
○ 지역선도대학 육성	2,143	-	2,143	2,143	-	-	100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00	-	15,000	15,000	-	-	100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54,000	-	54,000	54,000	-	-	100

나) 검토의견 : 신규사업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첨단인재 양성 사업으로서 2023년에 새로 시행되었음. 해당 사업은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양성체계 구축, 교원 확보, 실험·실습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8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대학별 특성화 분야, 운영유형을 고려한 주전공 및 융합전공 기반의 반도체 양성체계를 마련하였음.

< 2023년도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성과 >

유형	지역	대학명	특성화 분야	양성 인원
단독형	수도권	서울대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50명
		성균관대	차세대 반도체	60명
	비수도권	경북대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180명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80명
		부산대	차량 반도체(파워반도체)	50명
동반성장형	수도권	명지대-호서대	소재·부품·장비, 패키징	185명
	비수도권	전북대-전남대	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	140명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120명

❑ 그러나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별 집행이 전체적으로 저조함.

< 2023년도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대학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주관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역할	총사업비	집행액	이월금	실집행액	실집행률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관연구개발기관	4,360	4,173	2,143	2,030	46.6%
고려대학교(세종)	고려대학교(세종)	주관연구개발기관	6,780	6,537	4,869	1,669	24.6%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주관연구개발기관	6,780	5,992	3,479	2,514	37.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주관연구개발기관	4,360	4,360	1,170	3,190	73.2%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주관연구개발기관	6,780	6,689	4,937	1,752	25.8%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주관연구개발기관	3,780	3,744	1,947	1,797	47.5%
	호서대학교	공동연구개발기관	3,000	2,990	1,712	1,278	42.6%
	소계		6,780	6,734	3,658	3,076	45.4%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주관연구개발기관	4,350	2,800	1,794	1,005	23.1%
	전남대학교	공동연구개발기관	3,880	3,388	2,173	1,215	31.3%
	소계		8,230	6,187	3,967	2,220	27.0%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주관연구개발기관	4,000	4,000	2,202	1,798	45.0%
	충남대학교	공동연구개발기관	2,030	2,030	873	1,157	57.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동연구개발기관	2,200	2,200	772	1,428	64.9%
	소계		8,230	8,230	3,847	4,383	53.3%
계			52,300	48,903	28,070	20,833	39.8%

❑ 이러한 부진에는 장비비 집행 저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1차년도에 반도체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인프라 및 장비 구축이 집중되면서 연구시설/장비비 비중이 58%에 달하는데, 그 집행률은 27%에 불과함.

❑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장비 심의 단계에서의 사양 조정 요구, 학기 중 시설 개·보수 불가로 인한 계획 지연 수립, 고가의 반도체 장비 계약 체결 지연 및 납품 지연 등으로 장비비 집행 저조가 발생하였으며, '24년 예산 수립 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차년도 예산('23년 예산)의 80% 수준으로 2차년도 예산('24년 예산)을 수립·확정하였다고 설명함.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반도체 장비 구매 관련 절차 >

① 장비·시설 구매계획 수립

○ (3천만원 이하) 대학 자체 도입심의를 진행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문기관과 논의하여 진행한 건의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구매 절차 진행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도입 타당성 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운영' 심의 진행

○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이 주관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 여부 심의

② 구매계약 체결

○ 심의(재심의) 결과 도입 계획이 승인된 경우, 대학 내부 기자재 구매 절차에 따라 구입 진행

- (수의계약 범위 이내) 대학별 구매 지침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의 기자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리
- (수의계약 범위 초과)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 자체 조달 진행
- (1억 이상)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구입 절차 진행

* 대학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의 계약 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

* 나라장터 공고 기간은 물품 금액별 7~40일 등으로 상이함

③ 장비 제작 및 납품

○ 실습 교육을 위한 장비 Spec이 일반 상용품과 다르기 때문에 통상 주문제작이 필요하며, 대학 장비 설치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납품 일자 조정

- (외자장비) 외산 장비 혹은 물류 등의 문제로 해외 배송이 필요한 경우 납품 소요기간 추가 발생

④ 검수 및 장비 등록

○ 장비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가동 상태 점검 등 인수 확인

○ 취득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범부처 장비관리 플랫폼)에 해당 시설·장비를 등록 및 관리

❑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4년도 예산을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인프라 및 장비 구축사업의 계획 지연 등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2023년 선정대학의 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임.

2)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2256-302)[13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2256-302) 사업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담보 및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10개 기관) 역량강화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및 공학교육인증 지원사업,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의 (재)지정·중간평가 및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 지원인 평가·인증기구 지정·지도사업,

❑ 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학위인정센터(NIC : NAtional Information Center)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원사업,

❑ 국내대학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한 질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및 유학생 실태관리 조사를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사업,

---

135) 문의: 02-6788-5188

❑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의 성과를 정부가 평가하고 행·재정 지원 및 컨설팅 등으로 환류하여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는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사업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대학사회 인식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진흥 프로그램 개발·확산을 위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사업,

❑ 공학교육인증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20억 2,500만원으로, 20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6%임.

< 2023년도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7,697	-	7,697	7,697	-	-	100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1,249	-	1,249	1,249	-	-	100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90	-	90	90	-	-	100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241	-	241	241	-	-	100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84	-	84	76	-	8	90.5
○ 공학교육 혁신지원	361	-	361	361	-	-	100

나) 검토의견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중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사업은 10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136]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임.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한국간호 교육평가원	42.8	42.8	42.8	42.8	-	42.8	42.8	42.8	42.8	-	-	100.0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40	40	40	40	-	40	40	40	40	-	-	100.0
한국경영 교육인증원	40	40	40	40	-	40	24.6	40	24.6	-	-	61.5
한국의학 교육평가원	42.8	42.8	42.8	42.8	-	42.8	38.7	42.8	38.7	-	-	90.4
한국치의학 교육평가원	42.8	42.8	42.8	42.8	-	42.8	12.5	42.8	12.5	-	-	29.2
한국한의학 교육평가원	42.8	42.8	42.8	42.8	-	42.8	28.9	42.8	28.9	-	-	67.5
한국보건 의료정보관리 교육평가원	40	40	40	40	-	40	27.9	40	27.9	-	-	69.8
한국약학 교육평가원	42.8	42.8	42.8	42.8	-	42.8	26	40	26	-	-	60.7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	40	40	40	40		40	23	40	23			57.5

136)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 교육인증원	605	605	605	605	-	605	576	605	576	-	-	95.2

❑ 동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동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는 교육과정평가 및 평가를 위한 인정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부는 2023년 10월 10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예비인정기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는 인정기관에 대한 사항

만을 규정했을 뿐, 예비인정기관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대비표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032호, 2018. 7. 10., 일부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787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인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137]의 지정기준(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실적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춘 신청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이하 "예비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상을 고려했을 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137)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1의2. 평가·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4. 최근 2년 내에 지정·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의 예비인정기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예비인정기관 제도는 교육부 고시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제정 시('09년)부터 있었으나, 법제처의 상향 입법 권고('20.11.)에 따라 '23.5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고, '23년 10월 공포하였기 때문에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비 인정'을 이미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에 예비 인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향 입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2)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교육부 재지정 조건의 재량권 준수 필요

❑ 교육부는 지난 5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구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음.

❑ 동 조건은 「행정기본법」 제17조[138]에 따른 부관의 일종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 부관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나, 재량이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는바, 현행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부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기관 재지정은 재량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기본법은 부관이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고,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사전심의 조건을 명시한 것은 의학교육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

138)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139)]

❑ 이상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는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재지정 등에 있어 재량권을 준수하여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인정기관에 대한 재지정 조건은 이번 의평원 재지정 심의시('24.5월)에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 기준 등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아직 의평원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요변화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사항을 심사할 수 없었으며, 이번 주요변화평가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고, 확정·공표 후 사후 심의를 통해 평가 관련 사항이 변경된다면 대학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조건으로 부가한 것이며,

재지정 조건 부가에 대한 의평원의 이의 신청(6.27.)에 따라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을 수정 부가(7.5.)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재지정에 있어 재량권을 준수하여 처분하고 있다는 입장임.

139) 7월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문, 2024.7.10.

3) 인문사회기초연구(R&D)(2432-301)[14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인문사회기초연구(2432-301)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으로 학문후속세대 지원, 일반연구지원, 인문사회연구소,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대학 사업 등이 있음.

< 2023년도 인문사회기초연구(R&D)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결산액
학문후속세대	인문사회분야의 박사급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101,190
일반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개인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	62,343
인문사회 연구소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일반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우수 연구 성과 창출	61,159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대학	대학간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과 공유를 통해 대학의 사회문제 문제해결력 및 자체 역량 극대화	15,000
명저번역	명저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동·서양 명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 제고	1,680

* 자료 : 교육부

140) 문의처: 02-6788-5185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2,413억 7,200만원으로, 2,413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0%임[141].

< 2023년도 인문사회기초연구(R&D)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인문사회기초연구	241,372	-	241,372	241,372	-	-	100%
○ 학문후속세대지원	101,190	-	101,190	101,190	-	-	100%
○ 일반연구지원	62,343	-	62,343	62,343	-	-	100%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61,159	-	61,159	61,159	-	-	100%
○ 인문사회융합인재	15,000	-	15,000	15,000	-	-	100%
○ 명저번역지원	1,680	-	1,680	1,680	-	-	100%

* 자료 : 교육부

141) 전액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

나) 검토의견

(1) 회계연도내 연구기간 고려 미흡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 내역사업별로 신규과제예산액 대비 실집행률(대학 기준)이 학문후속세대지원의 경우 69.9%, 일반연구지원의 경우 69.3%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실집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내역사업	과제수	예산액 (A)	실집행액 (재단)	실제사용액 (대학) (B)	실집행률 (B/A)
학문후속세대지원	437	16,000	17,480	11,185	69.9 %
일반연구지원	927	25,795	24,544	17,887	69.3 %
명저번역지원	38	390	378	302	79.8 %

주1) 학문후속세대지원의 경우 학술연구교수 A유형(장기지원)
주2) 일반연구지원의 경우 개인연구, 공동연구, 융합연구
주3) 학문후속세대지원의 실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는 당해연도 계속과제 중 중단과제 발생시 신규과제 추가선정(37과제× 40백만원)하였기 때문
*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집행관리와 함께 국가 회계연도와 대학 회계연도간의 불일치 및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에 기인함.

구체적으로 대학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인데, 종래 신규과제의 경우 7월부터 사업 개시일이어서 대학회계연도 내 실제 사업기간은 8개월임.

❑ 그러나, 인문학 관련 R&D의 경우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 개시일을 6월로 앞당겨서 추진하였으나[142], 전반적으로 과제 선정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143].

특히,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의 학술연구교수(A유형_장기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고등교육특별회계 도입에 따라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신규과제 1차년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학술연구교수(A유형)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32,840백만원 -(신규) 300과제내외 × 평균40백만원 × 9/12개월 = 9,000백만원 -(계속) 596과제내외 × 평균40백만원 = 23,840백만원	52,040백만원(19,200 증) -(신규) 400과제내외 × 평균40백만원 = 16,000백만원 -(계속) 901과제내외 × 평균40백만원 = 36,040백만원

*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반면, 동 사업과 유사한 이공학 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144]의 경우 대학 회계연도와의 차이로 인한 실집행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모든 신규과제의 개시일자를 9월로

142) 실제로는 6월 중 과제선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6월 1일부터 연구개실일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143) 학문후속세대지원의 경우 6월 중 과제선정 이후 7, 8, 11월에 추가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였음.
144) 이공학학술기반구축(R&D) 사업의 내역사업임.

통일하고 1차년도 연구비를 6개월분 지급(연구기간 : ’23.9～’24.2)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실집행 부진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신규과제의 경우 집행절차 및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교육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회계연도내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임.

(2)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HUSS[145])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사업은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교육을 통해 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신규로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음.

구체적으로 대학간/학과간[146]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등 5개 주제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비수도권 대학 60%[147]) 융합교육과목(학부과정)을 개발·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주제별 컨소시엄 구성 현황 >

대주제	컨소시엄 구성 현황		권역비율(%)	
	주관대학	참여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고려대	숙명여대, 순천대, 영남대, 충남대	40%	60%
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국민대	덕성여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60%	40%
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선문대	세종대, 순천대, 순천향대, 한밭대	20%	80%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의 대응	성균관대	가천대, 건양대, 충남대, 한동대	40%	60%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단국대	동서대, 원광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서대	40%	60%

* 자료 : 교육부

145)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

146) 주관 및 참여대학 내에서도 2개 이상의 학과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학내에서 학과(전공)간 융합 촉진을 취지로 함

(예시) 디지털 분야 주관대학인 고려대의 경우“국어국문학, 철학, 한국사학, 사회학, 한문학, 독어독문학, 일어일문학, 언어학, 컴퓨터학, 경영대학”등 총 10개 학과가 참여함.

147) 당초 사업계획상 기준은 비수도권 대학 기준은 40% 이상 포함,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70% 이상 참여하며 주관대학이어야 함.

❑ 2023년도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은 예산현액 150억원 중 실제 집행액(대학 기준) 98억 3,3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71.2%임.

교육부는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컨소시엄 선정절차 진행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3년도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과제	예산액 (A)	실집행액 (재단)	실제사용액 (대학) (B)	실집행률 (B/A)
5개	15,000	15,000 (관리비 850)	9,833	71.2

* 자료 :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은 ①융합인재 양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교과목 개발·운영건수 및 이수자 수 등) ②운영성과 공유·확산(컨소시엄간 또는 공동 활용대학 대상 교과목 운영 및 이수자 수 등) ③진로성과(융합인재 배출수 및 사업추진을 통한 취업·진학실적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계획하였음[148].

1차년도 핵심성과지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181건의 교과목을 개발하였고 이 중 163건의 교과목을 운영하여 7,300여명이 이수하였음. 다만, 주제와 연계된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없거나 매우 낮아(0.1～2.29%), 현장과의 연계성이나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48) 2023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2023.4.

또한, 컨소시엄간 공유교과목 이수자수가 없는 등 운영성과 공유·확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융합인재 배출(인증서를 수여받은 학생수로 평가)도 일부대학에 국한되며 전체 이수자 대비 2.2%(166명/7,319명)에 불과한 실정임.

< 2023년도 컨소시엄별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

구분	핵심성과지표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융합인재 양성분야 정규교과목 개발 건수(건)	15	30	23	87	26	181
	융합인재 양성분야 정규교과목 운영 건수(건)	32	22	27	63	19	163
	융합인재 양성분야 정규교과목 이수자 수(명)	855	824	722	4,329	589	7,319
	사업주제 연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비율(%)	0.16	0	2.29	0	0.1	
	융합인재양성분야 정규교과목 이수자 만족도(점)	4.52	4.32	4.49	4.57	4.48	
운영성과 공유·확산	컨소시엄 간 공유교과목 이수자 수(명)	0	0	0	0	0	0
진로성과	융합 인재배출 수(명)	0	0	102	64	0	166

* 자료 : 교육부

교육부는 사업 1차년도임에 따라 핵심 성과지표만 정량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중장기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149].

149) 그밖에 운영성과 확산 측면에서 “공동 활용대학 대상 교과목 운영 및 이수자 수”, 진로성과 측면에서 “사업 추진을 통한 취업 및 진학 실적”을 핵심 성과지표로 두고 있으나, 이는 3차년도

❑ 동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내·대학간 협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 점은 적절하다고 생각됨.

다만,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인 대학간/학과간 융합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증 수여(또는 학점인정)는 학생들의 참여유인 제고 및 교육의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교육부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육운영 성과 및 진로성과 확산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부터 점검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4)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15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2446-300) 사업은 이공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학문균형발전지원 사업이 있음.

< 2023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결산액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과정생'부터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따른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자로서의 성장 지원	55,335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구축 및 신진연구인력에 안정적인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연구 인프라 지원	179,396
학문균형발전지원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학문분야에 대해 지원	294,315

* 자료 : 교육부

150) 문의처: 02-6788-5185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5,290억 4,600만원으로, 5,290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0%임[151].

< 2023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529,046	-	529,046	529,046	-	-	100.0%
○ 학문후속세대지원	55,335	-	55,335	55,335	-	-	100.0%
○ 대학연구기반구축	179,396	-	179,396	179,396	-	-	100.0%
○ 학문균형발전지원	294,315	-	294,315	294,315	-	-	100.0%

* 자료 : 교육부

151) 전액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

나) 검토의견

(1) 대학중점연구소 중 LAMP 사업(신규)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 대학중점연구소[152] 지원 사업 내 LAMP[153] 사업은 대학이 연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기존 '과제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관리체계 강화 및 혁신적 공동연구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기초과학 10개 분야[154]에 대해서 5년(3+2)간 대학 연구소별 16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임.

'23년도에는 수리·통계과학, 물질·에너지과학, 지구·해양·대기과학 등 분야별로 8개 대학에 대해 대학별 2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지원되었는데[155], 전체 예산 153억 3,3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42억 4,100만원(대학)으로 실집행률은 27.7%임.

---

152) 대학연구소는 전국 5,300여개(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로 '22. 12. KCI 홈페이지 등록 기준)에 이르나, 펀드 유치 목적으로 임시 운영된 뒤 비활성되거나 후속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한국연구재단, LAMP사업 추진배경)

153)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 · PhD students, and Postdocs

154) ① 수리·통계과학 ② 원자과학 ③ 천체·입자·우주과학 ④ 분자수준과학 ⑤ 나노단위과학 ⑥ 물질·에너지과학 ⑦ DNA·RNA 분자생물학 ⑧ 진화·종의 다양성 ⑨ 지구·해양·대기과학 ⑩ 뇌·신경과학·기초의학

155) 8개 대학 중 6개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배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을 제외, 4대 과학기술원 제외

< 2023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주관기관	분야	예산액 (A)	실집행액 (재단)	실제사용액 (대학) (B)	실집행률 (B/A)
서울대학교	수리·통계과학	2,000	2,000	618	30.9
아주대학교	물질·에너지과학	1,333	1,333	262	19.7
경상국립대학교	분자수준과학	2,000	2,000	603	30.2
강원대학교	DNA·RNA 분자생물학	2,000	2,000	275	13.8
부산대학교	지구·해양·대기과학	2,000	2,000	227	11.4
국립부경대학교	지구·해양·대기과학	2,000	2,000	477	23.9
경북대학교	진화·종의 다양성	2,000	2,000	783	39.2
조선대학교	뇌·신경과학·기초의학	2,000	2,000	996	49.8
합 계		15,333	15,333	4,241	27.7

*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23.9.1.~'24.2.29)과 달리 사업공모(5월) 및 사업개시(10월)가 늦어짐에 따라, 1차년도 사업일정이 1개월 순연되었음. 이로 인해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2차년도 사업추진 일정이 조정('24.4~'25.2)되었고[156], 예산도 11개월분 반영되었음.

< LAMP사업 추진일정(조정) >

구분	1단계(총 29개월)			2단계(총 30개월)			총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연구 기간	'23.10~ '24.3 (6개월)	'24.4~ '25.2 (11개월)	'25.3~ '26.2 (1년)	'26.3~ '27.2 (1년)	'27.3~ '28.2 (1년)	'28.3~ '28.8. (6개월)	'23.10~ '28.8 (59개월)

* 자료 : 교육부

156) 당초 대학회계에 따라 '24년 3월에 사업개시됨.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규사업으로서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협의과정 진행 및 대학의 사업신청 준비 시간에 따라 사업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신규사업 추진시 관계부처간 협의 및 주관기관 공모 등 사업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집행률이 27.7%에 불과한 것은 신규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157].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준비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면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157)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정산이 아닌 단계별 정산 및 자동이월이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2) 지역대학 R&D 배분에 따른 연구성과 등 평가 필요

❑ 교육부는 R&D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지역대학 연구자에게만 지원하거나, 과제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에 할당하는 등 전 부처[158] 중 유일하게 “R&D 지역할당제”[159]를 두고 있음[160][161].

❑ 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에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23년 90억원)”의 경우 과제의 40%를 지역대학으로 배분하고 “박사후 국내연수(’23년 376억원)”도 과제의 50%를 지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밖에도 연구소지원(LAMP사업 등[162]) 등에 있어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대학에 한정하여 우수 연구자를 지원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23년 956억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158) 23년도 전부처 R&D 예산(31조) 중 상위 5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9.6조), 산업통상자원부(5.4조), 방위사업청(5.0조), 중소벤처기업부(1.7조), 교육부(2.8조, 24년도 비 R&D 전환사업 제외시 1.3조)임.

159) 설명과 같이 ①지역대학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역사업 운영 ②과제의 일정 비율을 지역대학 연구자에게 배정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사용함(공식용어는 아님)

160) 인문학 분야의 경우도 인문사회기초연구 R&D 사업의 경우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사업에서 40% 비수도권 대학 할당을 두고 있고, 인문사회융합대학지원 사업에서도 비수도권 대학 참여율을 정하는 등 R&D 지역할당제를 두고 있음.

161) 다만, 인문학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등과 같은 별도의 지역대학만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연구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타부처 R&D사업과 비교(이공학 R&D의 경우 과기부 등 타부처가 지역할당제가 없는 것과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하에는 이공학 R&D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함.

162) 8개 대학 중 6개는 비수도권 선정

< 지역대학 연구자 R&D 지원제도 현황(교육부 이공학R&D) >

내역사업	23년 결산액	과제	지역대학 지원비율	지원범위	제도신설년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90억원	600	40%	4대 과기원, 포항공대 제외	2019
박사후 국내연수	376억원	871	50%	4대 과기원, 포항공대 제외	2017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956억원	1,508	100%	4대 과기원, 포항공대 제외	1999

*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역대학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우수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수도권에 비해 연구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R&D 지역할당제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연구의 필요성과 성과가 지원기준이 되어야 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사업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163]

163) 일례로 교육부는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지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 (‘19년 49.9% → ’21년 55.1%)하였음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데(보도자료), 이는 예산지원을 지역대학에 증가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산출결과로서 연구개발 성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개발(R&D)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고 대학 등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R&D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164]에서 지역할당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가 필요함[165].

❑ 교육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부처 중 유일하게 지역할당제를 도입·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의 성과의 관점에서 면밀한 사업평가를 수행하고[166],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지원정도 및 적절한 제도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6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① 정부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5) 이상의 지역할당제 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연구시설 지원과는 달리 연구자 및 학생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바텀업(Botton-Up)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에서 개별 연구자 입장에서는 역차별 또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사업지원 체계를 달리할 경우 지역의 거점국립대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실제로는 지역간/국공립·사립대학 연구자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음.

166) 구체적으로 지역할당제 도입 전후로 지역대학 소속 연구자의 예산지원비중 등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과제선정 평가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확인(개인 연구계획서 평가점수는 높은데 수도권이어서 탈락된 현황 등) 및 제도 도입전후 연구개발 성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비교분석하여야 할 것임.

5. 지역인재정책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1)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2301-304)[16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2301-304) 사업은 사립대학 재정위기 가속화에 따라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구분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회생 또는 퇴로 마련 등의 전문적인 경영자문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전체 사립대학 대상으로 대학의 결산 재무정보 기반의 진단을 통해 재정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경영위기대학 구분에 활용하기 위한 재정진단 사업,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퇴로 방안을 제시하여 사립대학을 지원하며, 다양한 구조개선 모델 및 이행과제를 개발·제시하는 경영자문 사업, 법령 제정에 예비하여 정책연구, 민간 및 대·내외 구조개선 사례 벤치마킹 등 구조개선 지원사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기반 마련사업으로 구성됨.

---

167) 문의: 02-6788-5188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2,500	-	2,500	2,500	-	-	100
○ 재정진단	600	-	600	600	-	-	100
○ 경영자문	1,680	-	1,680	1,680	-	-	100
○ 사업 기반 마련	220	-	220	220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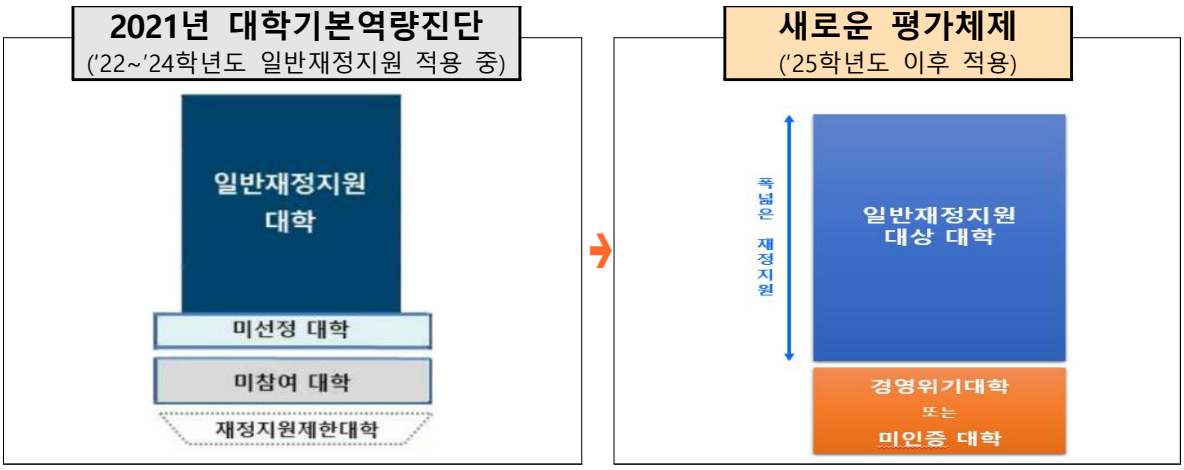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1)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환류체계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 재정위기 극복 및 대학 재정지원 평가체제 개편에 따른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위해 추진,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경영위기대학 지정에 활용하기 위해 재무정보를 기준으로만 실시하는 재정진단,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경영자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예비한 사업 고도화로 구성됨.

❑ 2025학년도부터 대학평가체제 개편이 되면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2023년의 사학구조 개선지원 사업은 이러한 평가체제 개편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재정진단을 수행한 것임.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개편 체계도 >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342개교에 대한 재정진단 및 재정진단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60개교 대상의 실태조사 수행, 4개교에 대한 경영자문 및 32개교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수행했음.

< 2023년 사학구조 개선 지원사업 추진 내용 >

사업	구분			사업 변동 차이
	국회 확정	시행 계획	추진 내용	
재정진단	재정진단	재정진단	**재정진단 342개교**	▸ 재정진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수행 ▸ 실태조사의 경우 재정진단 결과, 재정진단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필요 대학 확대로 인해 추가 실시
	실태조사 30개교	실태조사 30개교	**실태조사 60개교**	
경영자문	경영자문 8개교	진단컨설팅 40개교	**진단컨설팅 32개교**	▸ '진단컨설팅'의 경우 경영자문의 한 형태인 약식 경영자문임. 시범 사업임에 따라 많은 대학에게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론과 모델을 수집하기 위하여 경영자문에 배정된 예산의 50%를 '진단컨설팅'으로 명명하여 수행함 ▸ 다만, 제한된 대상군 내 수요 기반 컨설팅임에 따라 사업 초기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한 대학의 제한적 지원으로 당초 목표인 40개교에 미치지 못함
		경영자문 4개교	**경영자문 4개교**	

사업	구분			사업 변동 차이
	국회 확정	시행 계획	추진 내용	
사업 기반	재정진단 편람 ·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및 전담인력 채용 등	재정진단 편람 ·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및 전담인력 채용 등	재정진단 편람 ·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및 전담인력 채용 등	▸ 해당없음

❑ 다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예비한 정책연구가 법안 제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되지 않아 4,000만원이 불용된 것을 포함, 총 1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사립대학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경영자문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함.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영자문의 경우, 경영자문의 결과로서 제시된 다양한 재정개선 방안 및 구조개선 시나리오가 존재하나, 각 대학별로 경영자문 결과물의 이행 여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총 예산 2,500백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67%(1,680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경영자문’에 대한 성과 확인 및 환류 체계를 갖추어, 대학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이행과제의 지속적인 자문과 이행 지원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함.

❑ 경영위기대학 지정이 단순히 대상대학의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이후 사업추진에 있어 경영자문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4건이 발의된 바 있으며,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류) 발의 현황 >

구분	(17653) 이태규의원	(19373) 강득구의원	(20729) 정경희의원	(23877) 문정복의원
발의 일자	2022.09.30.	2023.01.09.	2023.03.17.	2023.08.18.
심사 현황	▸('22.10.04) 교육위/법사위 회부 ▸('22.11.21) 교육위 상정/소위 회부 ▸('22.11.23) 법안심사소위 상정 ▸('22.11.24) 법안심사소위 상정 ▸('23.05.26) 법안심사소위 제안설명/축조심사 ▸('23.06.23) 법안심사소위 제안설명 ▸('23.07.05) 법안심사소위 제안설명/축조심사 ▸('23.11.23) 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24.01.04) 법안심사소위 상정	▸('23.01.10) 교육위/법사위 회부 ▸('23.02.16) 교육위상정/ 소위 회부 ▸('23.05.26) 법안심사소위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23.06.23) 법안심사소위 상정/제안설명 ▸('23.07.05) 법안심사소위 제안설명/축조심사 ▸('23.11.23) 법안심사소위 상정 /축조심사 ▸('24.01.04) 법안심사소위 상정	▸('23.03.20) 교육위/법사위 회부 ▸('23.05.16) 교육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3.05.26) 법안심사소위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23.06.23) 법안심사소위 제안설명 ▸('23.07.05) 법안소위 제안설명/축조심사 ▸('23.11.23) 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24.01.04) 법안심사소위 상정	▸('23.09.20) 교육위/법사위 회부 ▸('23.11.23) 법안심사소위 상정 /축조심사 ▸('24.01.04) 법안심사소위 상정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구조개선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구조개

선 조치,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21대 국회에서는 재정지표만을 근거로 구조개선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해산장려금 지원이 타당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바 있음.

(2)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경영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상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실시한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의미하는데,

2023년 재정진단의 경우 대학 평가체제 개편 시행 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예비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으로서, 경영상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예비 경영위기대학 도출 및 경영자문 대상학교 선정에 활용되었음.

❑ 그러나 2024년부터 이루어지는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은 2025학년부터 시행되는 평가체제 개편에 따라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야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과 달리,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 지정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3의2.「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3의3.「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재정진단, 경영자문, 정책연구 등은 해당 조항에 의해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영위기대학 지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위탁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168]을 고려했을 때, 위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2025학년도 경영위기대학 지정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8)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기준 경영위기대학 지정 주체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정부조직법」을 고려했을 때, 그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16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사업은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병원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788억 3,300만원으로, 622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65억 3,7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79.0%임.

169) 문의: 02-6788-5188

< 2023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병원 지원	78,833	-	78,833	62,296	-	16,537	79.0
○ 강원대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31건	59,764	-	59,764	58,781	-	983	98.4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 사업	19,069	-	19,069	3,515	-	15,554	18.4

나) 검토의견

(1)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 필요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32개의 국립대병원 시설 신축, 교체 사업 등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병원시설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총 59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으로 190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병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5% 혹은 30%(교육·연구시설비는 75%), 국립대치과병원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고 있음.

❑ 보조사업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을 제외한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52.2%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 2023년도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강원대병원 차세대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990	990	990	0	990	990	0	100.0
강원대병원강원권역 공공의료센터 건립사업	1,440	1,440	1,440	0	1,440	0	1,440	0.0

강원대병원 영상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1,767	1,767	1,767	0	1,767	1,767	0	100.0
강원대병원혈관조영중재 시술장비 세트 교체	900	900	900	0	900	857	43	95.4
경북대병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505	1,505	1,505	0	1,505	23	1,482	1.5
경북대병원 임상교육 훈련센터건립사업	1,000	1,000	1,000	0	1,000	0	1,000	0.0
경북대병원 노후장비 교체사업	2,500	2,500	2,500	0	2,500	0	2,500	0.0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임상연구동·의생명연구원 건립사업	728	728	728	0	728	184	544	25.3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5,215	5,215	5,215	0	5,215	0	5,215	0.0
서울대병원 본관 물류 하역장 차량동선 개선 사업	983	0	0	0	0	0	0	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1,000	0	1,000	1,000	0	100.0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건립사업	5,354	5,354	5,354	0	5,354	5,354	0	100.0
전남대병원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	1,204	1,204	1,204	0	1,204	178	1,026	14.8
전남대병원 차세대 HIS 고도화 사업	1,125	1,125	1,125	0	1,125	1,125	0	100.0
전남대병원 첨단의료장비 보강사업	2,530	2,530	2,530	0	2,530	2,530	0	100.0
전남대병원 임상교육 훈련센터건립사업	1,000	1,000	1,000	0	1,000	0	1,000	0.0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사업	1,650	1,650	1,650	0	1,650	1,650	0	100.0
전북대병원 진료환경 개선사업	2,033	2,033	2,033	0	2,033	501	1,532	24.6
전북대병원 첨단의료장비 보강 및 고도화 사업	2,700	2,700	2,700	0	2,700	2,700	0	100.0
전북대병원 임상교육 훈련센터건립사업	1,000	1,000	1,000	0	1,000	0	1,000	0.0
세종충남대병원 감염병 전담외래	351	351	351	0	351	197	154	56.1

센터 및 교육연구공간 확충사업								
충남대병원 환자안전 시설 개선사업	1,557	1,557	1,557	0	1,557	1,414	143	90.8
충남대병원 첨단의료 장비 구축사업	1,250	1,250	1,250	0	1,250	1,235	15	98.8
충남대병원 임상교육 훈련센터건립사업	4,557	4,557	4,557	0	4,557	2,880	1,677	63.2
충북대병원 의생명진료 연구동 건립사업	3,012	3,012	3,012	0	3,012	3,012	0	100.0
충북대병원 노후 전기 설비 개선공사	848	848	848	0	848	225	623	26.5
충북대병원 의생명진료 연구동 신규 장비 도입	984	984	984	0	984	984	0	100.0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교육연구지원동 건립	1,500	1,500	1,500	0	1,500	845	655	56.3
경북대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센터 건립사업	1,500	1,500	1,500	0	1,500	633	867	42.2
부산대치과병원 구강암 및 안면외상센터 설치 사업	900	900	900	0	900	900	0	100.0
서울대치과병원 국민재난 진료지원센터 건립사업	4,534	4,534	4,534	0	4,534	7	4,527	0.2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사업	2,147	2,147	2,147	0	2,147	0	2,147	0.0
합계	**59,764**	**58,781**	**58,781**	**0**	**58,781**	**31,191**	**27,590**	**52.2**

자료: 교육부

❑ 병원시설 지원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보여왔으며,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사업관리 미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에서는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의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일부 사업의 집행률 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병원시설 지원사업 국회 시정요구사항 >

○ 2017년 결산

- 국립대병원 국고보조율 차등 지원의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각 국립대병원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의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 국립대병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021년 결산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중 서울대학교병원의 일부 사업(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서울대병원(분당)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은 2020년 및 2021년에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총사업비 변경절차(내부 검토 및 관련 부처 협의절차)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시 절차 지연 등을 고려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병원시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음.

< 2019 ~ 2023 병원시설 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68,255	74,989	55,946	65,260	59,764
실집행액	56,571	63,868	51,751	42,635	31,191
실집행률	82.9	85.2	92.5	65.3	52.2

❑ 특히, 2024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증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정부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대교육지원 TF 구성,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이상을 고려했을 때, 병원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 병원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효율성 제고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 볼 수 있음.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기준」('22.4. 개정)에 따르면, 사업 시작년도부터 당해 연도말 국고지원금 누적 실집행률이 60% 미만 또는 당초 공정률 대비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은 '지연사업'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 지연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차년도 예산 신청이 제한되며, 2년 연속 지연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차년도 교부 연차사업비에서 발생이자액을 감액하여 반영함.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기준('22.4. 개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국 고 지 원 기 준</th></tr>
<tr><td rowspan="6">출연금</td><td>1. 시설비</td><td colspan="2">의료필수시설에 한정</td></tr>
<tr><td>○병원 신축(분원)</td><td colspan="2">• 국고(출연)지원 : 출연 25%</td></tr>
<tr><td>○교육·연구 시설의 설치
※ 단, 진료수익이 발생하는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td><td colspan="2">• 국고(출연)지원 : 출연 75%</td></tr>
<tr><td rowspan="2">○ 시설 증축 및 개축 등</td><td>• 병원 증·개축
• 입원실, 수술실 등이 위치한 의료필수시설의 개·보수 등</td><td>• 국고(출연)지원 : 출연 25%</td></tr>
<tr><td>2. 장비구입비</td><td colspan="2">교육·연구 활동 및 진료 선진화를 위해 지원 추진</td></tr>
<tr><td>○신규</td><td colspan="2">• 신설병원 : 시설비에 포함
• 신규 교육·연구시설 : 시설비에 포함</td></tr>
<tr><td>보조금</td><td>○기존장비 교체</td><td colspan="2">• 내용연수를 경과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 장비 구입비의 25% 지원</td></tr>
<tr><td rowspan="3">보조금</td><td>3. 운영비</td><td colspan="2">병원의 운영비 및 교육·연구 활동비 등 지원</td></tr>
<tr><td>○신설병원 개원 준비비</td><td colspan="2">• 개원 전·후 운영비 : 3개월분 지원
※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순수 운영비(100% 지원)</td></tr>
<tr><td>○교육·연구</td><td colspan="2">• 의학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출연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td></tr>
<tr><td>비고</td><td colspan="3">1. 종합의학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독립치과병원은 해당병원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 75% 내외로 출연할 수 있다.
1의2.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의료수가 등 재정구조가 열악한 종합병원은 해당병원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30% 내외로 출연할 수 있다.
2. 병원의 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병원 간 균형성·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한다.
3. 집행효율성 제고와 관련,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u>- 사업 시작년도부터 당해 연도말 국고지원금 누적 실집행률이 60% 미만 또는 당초 공정률 대비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은 '지연사업*'으로 지정 관리,</u>
<u>* 신규사업 신청 제한 다만, 사업 완료 후 또는 정상추진이 확실시 된 이후에 신규사업 신청 가능</u>
<u>* 2년 연속 지연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차년도 교부 연차사업비에서 발생이자액 감액 반영</u>
- 자부담 비율 미준수 시 국고 감액 조정 검토
-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관련으로 출연금을 신청한 후 단순 사정변경 등으로 의료장비의 변경 요청 시 엄격한 내역변경 승인 검토</td></tr>
</table>

❑ 그러나 이러한 제재방식은 각 사업별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정해진 조건 하에서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총사업비에 대한 정해진 국고지원율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지연사업으로 인해 차년도 예산 신청이 제한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지원받는 총액은 동일하고, 사업기간만 길어지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변동 및 건축단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은 총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2022년과 2023년에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서울대병원(분당)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신규 시설·장비비 사업예산 신청을 제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두 사업은 사업기간만 연장되고, 총사업비도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

< 2022 ~ 2024년 서울대병원 지원사업 현황 >

구분	분류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시설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7,992	5,215	2,843
계속	시설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1,896	0	0
계속	시설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0	0	2,726
계속	시설	서울대병원 본관 병동 리모델링 사업	208	0	0
계속	시설	서울대병원 본관 물류하역장 차량동선 개선 사업	89	983	0
계속	시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0	0	1,544
신규	시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24~'28)	0	0	668
신규	장비	서울대병원 의료장비 교체 및 구매사업('24)	0	0	4,925
신규	정책	서울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3~'26)	0	1,000	3,600

< 2022, 2023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내역사업 총사업비 변경 내역 >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당초	현행	당초(A)	2022	2023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2019~2022	2019~2024	27,089	44,921	49,099
분당서울대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2019~2022	2019~2024	27,365	32,931	33,144

❑ 따라서, 의과대학 정원증원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시설,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과적인 예산 배분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동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개선 필요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을 막고자 하는 사업임.

❑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이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의 임상교수를 채용하여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순환근무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함. 이는 응급, 분만, 감염병 등 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지역별 의료 격차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공공임상교수 모집이 저조하여 2년 연속 실집행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23년 3월 기준 150명 정원에서 채용된 인원은 23명으로 정원의 약 15%만 충원된 상황임.

< 연도별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 행률 (B/A)
2022년	-	9,375	9,375	9,375	1,083	1,083	1,083	8,292	11.5
2023년	19,069	-	19,069	19,069	3,515	3,515	3,222	15,847	16.9

❑ 이에 따라 2024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71억 6,400만원이 감액된 19억 5백만원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44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63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실적은 저조하나,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붕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필수의료혁신전략(23.10.), 필수의료 정책패키지(24.2.)를 발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임상교수제의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70]이 발의된 바 있음.

170) 의안번호 제2120482호,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공공임상교수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학교기업 지원사업(4604-400)[17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학교기업 지원사업(4604-400)은 학교 내 부서인 학교기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이 교육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66억 7,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도 학교기업 지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학교기업 지원사업	6,672	-	6,672	6,672	-	-	100

171) 문의: 02-6788-5188

나) 검토의견 :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 필요

(1)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 동 사업은 산업체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생에게 체계적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교내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교육에 재투자하여 학교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달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3년 9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래 운영되어 왔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업은 총 257개이며, 동 사업은 이 중 30개 기업에 대해 (연합형 4개, 단독형 26개) 지원하고 있음.

< 2023년도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현황 >

유형	학교 (학교기업)	연계학과	소속	사업종목
단독형	가천대학교 (GRP센터)	방사선학과	산학협력단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단독형	계원예술대학교 (계원창작소)	리빙가구디자인과, 애니메이션과	산학협력단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독형	국립공주대학교 (수바이오젠)	특수동물학과	산학협력단	농업
단독형	국민대학교 (할엔터테인먼트)	영화전공	산학협력단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단독형	국립군산대학교 (쓰리디프로)	조선해양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산학협력단	교육 서비스업

단독형	남서울대학교 (iNTER VR)	가상현실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대학	정보서비스업
단독형	남서울대학교 (JOBGO)	광고홍보학과	대학	정보서비스업
단독형	대경대학교 (대경양조)	세계주류양조과	산학협력단	식료품 제조업
단독형	대구한의대학교 (DHU바이오융복합센터)	화장품공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제약공학과	산학협력단	연구개발업
단독형	동의과학대학교 (DIT스포츠재활센터)	물리치료과	산학협력단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단독형	국립부경대학교 (해양ICT융합기술센터)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전공	산학협력단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독형	서울시립대학교 (더고구마)	환경원예학과	산학협력단	농업
단독형	서정대학교 (서정반려동물센터)	반려동물과	전문대학	소매업 (자동차 제외)
단독형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아이)	공예과	산학협력단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단독형	숭실대학교 (플렉스매스)	수학과	산학협력단	교육 서비스업
단독형	신성대학교 (신성바이오)	화학공학과	산학협력단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단독형	안양대학교 (AY COSMEITC)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대학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독형	울산과학대학교 (영상콘텐츠제작센터)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산학협력단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단독형	원광보건대학교 (WM주얼리컴퍼니)	3D제품디자인과	전문대학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단독형	을지대학교 (EMF)	식품산업외식학과	산학협력단	식료품 제조업
단독형	전남과학대학교 (무인항공교육원)	농공플랜트드론과	산학협력단	기타 제품 제조업
단독형	전주기전대학교 (전북말산업복합센터)	말산업스포츠재활과	전문대학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단독형	중앙대학교 (아리)	전통예술학부	산학협력단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단독형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쿨투라)	푸드전공	산학협력단	음식점 및 주점업

단독형	한경국립대학교 (재활심리치료교육센터)	상담심리학전공	산학협력단	교육 서비스업
단독형	한국승강기대학교 (KLCC)	승강기공학부	산학협력단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연합형	동서대학교 (애니모션)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디자인학부	대학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경남정보대학교 (슈키트)	신발패션과	전문대학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연합형	부천대학교 (제펫스튜디오)	영상&게임콘텐츠과	전문대학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애드버게임코리아)	-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합형	원광대학교 (원네이처)	생명과학부, 생명환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산학협력단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원광보건대학교 (WM힐빙테라피)	미용피부화장품학과	전문대학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연합형	전남과학대학교 (바이오플라워텍)	화훼원예과	전문대학	기타 제품 제조업
	전남과학대학교 (365바이오그린)	호텔커피칵테일과, 호텔조리김치발효과	산학협력단	식료품 제조업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꿈트는 치즈N스쿨)	-	-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먼저,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 대학의 학교기업 현장실습 개설 기준은 당해 연도 연계학과 입학정원 합의 최소 10% 이상이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 일반현장실습을 의무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연계학과의 최소 2명 이상으로 규정).

현재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30개의 학교기업은 모두 현장실습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023년도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현장실습 현황 >

학교(학교기업)	'23년 연계학과 입학정원(명)	현장실습 인원(명)	현장실습 비율(%)
가천대(GRP센터)	40	20	50.0
계원예대(계원창작소)	174	29	16.7
공주대(수바이오젠)	25	24	96.0
국민대(할엔터테인먼트)	19	13	68.4
군산대(쓰리디프로)	58	22	37.9
남서울대(인터브이알)	148	22	14.9
남서울대(잡고)	87	9	10.3
대경대(대경양조)	30	12	40.0
대구한의대 (DHU바이오융복합센터)	190	45	23.7
동의과학대 (DIT스포츠재활센터)	40	30	75.0
부경대 (해양ICT융합기술센터)	61	26	42.6
서울시립대(더고구마)	29	17	58.6
서정대(반려동물센터)	255	34	13.3
숙명여대(숙명아이)	34	30	88.2
숭실대(플렉스매스)	38	11	28.9
신성대(신성바이오)	40	15	37.5
안양대(AY COSMEITC)	35	7	20.0
울산과학대 (영상콘텐츠제작센터)	54	11	20.4
원광보건대학교 (WM주얼리컴퍼니)	20	12	60.0
을지대(EMF)	38	38	100.0
전남과학대 (무인항공교육원)	30	4	13.3
전주기전대 (전북말산업복합센터)	32	32	100.0
중앙대(아리)	85	31	36.5
청강문화산업대(쿨투라)	72	40	55.6

한경국립대 (재활심리치료교육센터)	13	12	92.3
한국승강기대(KLCC)	298	216	72.5
동서대(애니모션)	170	72	42.4
부천대(재팻스튜디오)	70	58	82.9
원광대(원네이처)	203	36	17.7
전남과학대 (바이오플라워텍)	115	42	36.5

❑ 다만, 수익을 창출해 교육에 재투자하여 학교 재정지출의 선순환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액을 제외했을 때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당기순이익 기준 11개의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에서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제외 순이익 기준으로는 부경대학교의 해양ICT융합기술센터를 제외한 모든 학교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음.

이는 현재의 학교기업 운영방식의 정부재원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줌.

< 2023년도 학교기업 지원사업 재정지표 현황 >

학교(학교기업)	지원금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지원금 제외 순이익(백만원)
가천대(GRP센터)	204.6	205.4	-118.7	-323.3
계원예대(계원창작소)	204.6	152.2	47.9	-156.7
공주대(수바이오젠)	167.4	110.0	-39.4	-206.8
국민대(할엔터테인먼트)	204.6	608.1	-20.3	-224.9
군산대(쓰리디프로)	167.4	22.2	21.1	-146.3
남서울대(인터브이알)	167.4	39.8	-62.0	-229.4
남서울대(잡고)	186.0	348.4	62.9	-123.1
대경대(대경양조)	186.0	125.1	9.8	-176.2
대구한의대 (DHU바이오융복합센터)	204.6	1300.0	26.8	-177.8
동의과학대 (DIT스포츠재활센터)	186.0	303.1	7.2	-178.8
부경대 (해양ICT융합기술센터)	186.0	284.7	232.7	46.7
서울시립대(더고구마)	167.4	105.0	-17.7	-185.1
서정대(반려동물센터)	204.6	1768.7	166.0	-38.6
숙명여대(숙명아이)	186.0	215.0	31.6	-154.4
숭실대(플렉스매스)	186.0	234.2	72.1	-113.9
신성대(신성바이오)	186.0	120.0	-77.3	-263.3
안양대(AY COSMEITC)	167.4	160.8	51.2	-116.2
울산과학대 (영상콘텐츠제작센터)	167.4	108.7	54.1	-113.3
원광보건대학교 (WM주얼리컴퍼니)	186.0	180.0	2.0	-184.0
을지대(EMF)	204.6	266.2	-31.7	-236.3
전남과학대 (무인항공교육원)	167.4	37.7	31.5	-135.9
전주기전대 (전북말산업복합센터)	204.6	330.1	7.1	-197.5
중앙대(아리)	167.4	17.4	-12.9	-180.3
청강문화산업대(쿨투라)	186.0	556.4	73.0	-113.0

학교(학교기업)	지원금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지원금 제외 순이익(백만원)
한경국립대 (재활심리치료교육센터)	186.0	116.8	12.4	-173.6
한국승강기대(KLCC)	204.6	135.6	-91.0	-295.6
동서대(애니모션)	350.0	96.7	76.6	-273.4
부천대(재팻스튜디오)	315.0	170.5	-181.8	-496.8
원광대(원네이처)	385.0	380.1	67.9	-317.1
전남과학대 (바이오플라워텍)	526.0	222.0	-9.7	-535.7

※ 지원금 제외 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지원금액을 제한 금액임

(2) 학교기업 수익성 제고 필요성

❑ 학교기업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른 수익창출 모델과 달리 학생의 현장실습을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기업이 적자를 보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임.

❑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부터 지금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를 보면, 지원대상과 1개교당 평균 지원액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학교기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기업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원 규모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대상	53	53	52	52	46	61	60	44	44	42	36	36	36	30
지원액	120	110	130	122.5	110.5	104.9	99.7	86.7	68.3	64.7	69	69	64.1	66.7
평균 지원액	2.3	2.2	2.5	2.4	2.4	1.7	1.7	1.9	1.6	1.5	1.9	1.9	1.8	2.2

(3) 학교기업 수익성 관련 지적사항

❑ 학교기업의 수익성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학교기업이 그 이름과 달리 법적으로 기업이 아님으로 인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견해가 존재함.

❑ 먼저, 학교기업은 별도 법인이 아닌 학교의 부속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법인격이 부재함. 이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분류될 수 없어[17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형태임.

❑ 또한, 학교기업은 비영리기관인 학교의 부서로서 그 재원을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재원에 의존해야 하며, 외부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초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172)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이외에도 조달청 입찰자격 부재,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등이 학교기업의 수익성 관련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4) 결론

❑ 학교기업은 단순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등 학교기업들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재정지원은 그 수혜를 받는 소수의 기업에만 기능하지만, 규제개선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다수의 학교기업들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기업 생태계 조성에 더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 따라서, 교육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일반회계>

1) 장애학생교육지원(1231-300)[17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장애학생교육지원(1231-300)은 ①국립특수학교[174]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아교육지원 사업, ②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사업, ③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①과 ② 사업은 국립특수학교 유·초·중등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교과용도서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③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①과 ② 사업과 유사하게 수업지원인력 제공, 학습 보조공학기기 제공, 대학 내 장애학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173) 문의: 02-6788-5193
174) 국립특수학교(5개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우진학교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42억 7,300만원으로, 14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장애학생교육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장애학생교육지원	14,273	-	-	14,273	14,196	-	77	99.5
○ 장애아교육지원	9,247	-	△52	9,195	9,118	-	77	99.2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1,609	-	52	1,661	1,661	-	-	10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3,417	-	-	3,417	3,417	-	-	100

나) 검토의견: 장애학생 대학자율사업 관리 강화 필요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운영(일반교육지원인력[175], 전문교육지원인력[176]), 장애대학(원)생 보조기기 지원, 대학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이하 '대학자율사업 등' 이라 함), 사업관리·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대학자율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계속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자율사업 대학'으로 선정하여 각 대학교에 최저 300만원~1,500만원까지 지원하되,

사업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유사한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177]하였고,

인식개선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과 홍보, 장애 및 비장애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175) 장애대학(원)생의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재학 중인 대학생을 활용한 일반지원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으로 지원

176) 장애대학(원)생 대학 학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교정사, 화면해설사 등 전문인력

177) 교육부, 2023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2023.3.

< 2023년도 대학자율사업 등 예산편성 기준 >

구분	국고지원	대학 대응투자	비고
대학자율사업	(학교당) 최저 300만원 최대 1,500만원	없음(자율)	국고지원율 100%
인식개선교육 지원	(학교당) 정액 100만원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특히 장애대학(원)생 보조기기 지원 사업(58.9%)과 대학자율사업 등(35.5%)에서 집행부진이 그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2023년도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장애학생교육지원	14,273	-	-	14,273	13,698	-	575	96.0
○ 장애아교육지원	9,247	-	△52	9,195	9,118	-	77	99.2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1,609	-	52	1,661	1,661	-	-	10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3,417	-	-	3,417	2,919	-	498	85.4
-교육활동 지원	1,863	-	-	1,863	1,985	-	△122	106.6
-보조기기 지원	1,110	-	-	1,110	654	-	456	58.9

내역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대학자율사업 등	110	-	-	110	39	-	71	35.5
-사업관리·운영비	334	-	-	334	241	-	93	72.2

자료: 교육부

❑ 장애대학(원)생 보조기기 지원 사업[178]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차에 불과하고, 학교마다 장애학생 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보조기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최근 2년간 장애학생 보조기기 집행현황 >

(단위 : 원, 개)

구분	대학지원			개인지원		
	대학 교부금액 (집행금액)	기기구입		대학 교부금액 (집행금액)	기기구입	
		품목수	수량		품목수	수량
2022년	774,978,200 (748,131,738)	245	468	86,895,000 (85,060,000)	30	34
2023년	590,850,810 (577,453,440)	224	518	80,540,000 (76,183,000)	30	36

자료: 교육부

178) ①다수에 의한 공동 이용 또는 비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대여 형태 지원방식과 ②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장기 이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러나 대학자율사업은 사업계획 시 예정했던 규모인 7개교에 미치지 못한 4개교만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선정된 학교에서도 장애학생 심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장애학생 자치활동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최근 2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미미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학교도 있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최근 2년간 대학자율사업 집행현황 >

구분	학교명	지원액	실집행액	프로그램 명
2022	이화여자대학교	7,000,000	5,490,000	- 장애학생 심리,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진로가이드 리플렛, 가이드북 제작.배부
	대구대학교	12,000,000	3,760,000	- 장애학생 사회통합 프로그램
	서울신학대학교	15,000,000	14,035,966	- 친친프로젝트, "나, 너 우리"
	중앙대학교	5,400,000	4,237,968	- 배리어프리(Barrier-free)영화제 페스티벌, - 신입생 장애 인권 교육 책자 제작
	소계	39,400,000	27,523,934	
2023	대구대학교	6,148,000	5,537,580	① 나도 점역·교정사가 될 수 있다 (점역·교정 기초교육)
				②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 이야기
				③ 나도 점역·교정사가 될 수 있다 (점역·교정사 자격증 대비반)
				④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 이야기
	목포대학교	4,000,000	3,000,000	① 2023학년도 한국수어교육 (한국수어교육 기초반)
				② 2023학년도 한국수어교육 (한국수어교육 기초반)
	서강대학교	15,000,000	11,855,000	① 장애대학(원)생 당사자 모임 · "다소니 자치회" 힐링간담회 · "다소니 자치회" 총장간담회 · "다소니 자치회" 종강워크숍 · "다소니 자치회" 선배와의 대화 · "다소니 자치회" 서강문화제

구분	학교명	지원액	실집행액	프로그램 명
				· "다소니 자치회" 취미전시회
	이화여자대학교	3,000,000	660,000	① 장애대학(원)생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
	소계	28,148,000	21,052,580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이 장애대학(원)생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와 함께, 지원대상인 개별 학교 수준에서 보았을 때 큰 규모의 사업이라 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및 집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교육부가 당초 계획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사업의 규모와 수요 등에 대해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사업 내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00%를 넘어가는 등 수요가 많은 반면, 나머지 사업들은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수요 재검토와 함께, 대학자율사업 등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17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과 재단 고유사업비 및 재단운영비로 구성됨.

❑ 이 중 재단의 주요사업인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은 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대납이자, ②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③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④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⑤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⑥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으로 구성됨.

179)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3,217억 4,100만원이고, 138억원을 전용[180]하여 예산현액은 3,355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한국장학재단출연	321,741	-	13,800	335,541	335,541	-	-	10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182,530	-	16,000	198,530	198,530	-	-	10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8,625	-	△2,400	6,225	6,225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 면제	1,572	-	△550	1,022	1,022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9,755	-	-	9,755	9,755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14,056	-	750	14,806	14,806	-	-	100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11,862	-	-	11,862	11,862	-	-	100
○ 고유사업비	43,005	-	-	43,005	43,005	-	-	100
○ 재단운영금	50,336	-	-	50,336	50,336	-	-	100

18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사업으로부터 전용됨.

나) 검토의견: 이자면제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동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100%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100%에 근접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자면제 사업인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사업은 각각 68.4%, 60.6%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3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학자금대출	ICL	○ 대납이자	182,530	198,530	198,530	196,513	-	2,017	107.7
		○ 이자면제	8,625	6,225	6,225	5,903	-	322	68.4
	일반대출	○ 군이자면제	1,572	1,022	1,022	952	-	70	60.6
		○ 특별상환유예	9,755	9,755	9,755	9,721	-	34	99.7
		○ 이차보전	14,056	14,806	14,806	14,035	-	771	99.9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11,862	11,862	11,862	11,862	-	-	100
○ 고유사업비			43,005	43,005	43,005	41,936	-	1,069	97.5
○ 재단운영비			50,336	50,336	50,336	50,166	-	170	99.7

자료: 교육부

* 예산액, 집행액은 자체수입 제외 기준

❑ 또한 최근 3년간 이자면제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도에는 사업 간 내역변경으로 이자면제 사업에서 총 29억 5,000만원을 감액(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24억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5억 5,000만원)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는 군 입대자 수 감소[181],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학자금대출 수요 감소,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21~'23년 1.7%) 등 동 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가 주원인으로 파악됨.

< 최근 3년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2,119	1,409	**66.5**	8,091	4,684	**57.9**	8,625	5,903	**68.4**
- 군이자면제	2,119	1,409	**66.5**	1,869	1,203	**64.3**	1,665	1,050	**63.1**
- 기초차상위계층 이자면제	-	-	**-**	2,308	459	**19.9**	2,642	583	**22.1**
- 다자녀 이자면제	-	-	**-**	3,914	3,022	**77.2**	4,318	4,269	**98.9**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1,838	1,547	**84.2**	1,738	1,161	**66.8**	1,572	952	**60.6**

자료: 한국장학재단

181)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군 입대자가 증가(전년 대비 '19년 5%, '20년 2% 증가)하였으나 '21년 이후, 5개년 평균 감소율(4%) 대비 군 입대자는 2배 이상 감소하였음.
※군이자면제 지원 대출자 수: ('19)69,928→('20)67,694→('21)61,617→('22)51,592→('23)44,518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 예산은 2021년 이후 매해 증액되었음에도 실집행률 70%를 넘긴 적 없이 2023년에는 실집행률 68.4%에 머물렀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사업 예산은 2021년 이후 매해 줄어들면서도 2023년 실집행률은 60.6%를 기록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면제 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또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은 2023년 12월 8일에 의결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지원범위와 사업규모가 확대[182]되어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102억 3,800만원 증액된 188억 6,300만원으로 편성된바,

교육부와 재단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한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동일한 사유로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82)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①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휴학기간 포함)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②이자면제 대상을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였고, ③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18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통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유형에 따라 ①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Ⅱ유형), ②대학생 근로장학금, ③우수학생 국가장학금, ④희망사다리 국가장학금으로 구성됨.

183)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4조 5,664억 3,600만원이고, 138억원을 전용[184]하여 예산현액은 4조 5,526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인 4조 4,460억원을 집행하고 1,066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566,436	-	△13,800	4,562,636	4,446,000	-	106,636	97.4
○ 국가장학금 지원	4,030,777	-	△22,345	4,008,432	3,901,796	-	106,636	97.3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376,445	-	-	376,445	376,445	-	-	10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56	-	-	57,856	57,856	-	-	100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99,338	-	8,545	99,338	107,883	-	-	100
○ 운영비(인건비)	2,020	-	-	2,020	2,020	-	-	100

184)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사업으로 전용함.

나) 검토의견:드림장학금 지원 중 중도 포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지원 사업(이하 ‘드림장학금’이라 함)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제1기 신규 장학생(고3)을 선발하였음.

❑ 지원대상 및 금액은 국내 고교 2~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준비생에게 유학 준비를 위한 학업장려비 항목으로 월 50만원~70만원을, 선발된 유학생에게는 학비와 체재비로 연 6만달러(항공료 별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선발인원은 해마다 학년별 및 전체인원 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30명 내로 유학준비생을 선발하는데, 2023년도에는 고2 11명, 고3 19명, 총 30명의 유학준비생을 선발하였고, 유학생은 이전에 선발된 유학준비생 중 미국 등 3개국 17개 해외대학에 최종합격한 20명[185]을 유학생으로 전환·선발하였음.

185) < 2023년도 연도(기수) 별 해외유학생 선발현황 >

선발연도(기수)	’21년(10기)	’22년(11기)	’23년(12기)	합계
인원	14명	5명	1명	20명

< 드림장학생 연간 선발 인원 >

(단위: 명, 기준: 선발인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고2	-	-	5	10	10	12	16	16	20	22	16	11	15
고3	10	10	5	10	10	6	14	16	10	8	10	19	15
합계	10	10	10	20	20	18	30	32	30	30	26	30	30

※ '24년은 선발 예정 인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선발절차는 학년별, 고교유형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면접(인·적성검사 포함)을 실시하되, 1차 서류심사 통과자만을 대상으로 1·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대평가 방법으로 연 30명 내외의 인원[186]을 최종 선발하고 있으나,

최종 선발 시 1개 고교 당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은 선발 계획 인원의 10% 이내(미달 시 10% 초과 허용)로 하며, 선발된 유학준비생의 자퇴, 제적, 자격포기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해서 최종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 예비 유학준비생 후보자를 선발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에서 교과성적, 자기소개서, 외국어능력 등을 평가하고, 2차 심층면접에서 학생의 학문적 열의, 유학의지, 사회공헌의식, 인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학준비생을 선발하고 있음.

186)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에서 25명 내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서 5명 내외로 선발하되, 최종 선발 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드림장학생 선발절차 및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심층면접		최종선발
(심사기준)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심사 (선발인원) 최종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	⇨	(목적) 인성, 가치관, 태도,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측정하여 심층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기준) 학업 및 유학에 대한 의지, 진로준비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총 30명) 고교 2학년 12명 내외, 3학년 13명 내외,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5명 내외 선발

자료: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동 사업을 통해 2023년 12월말 기준,, 유학준비생 52명(고2 11명, 고3 34명, 진학유예 7명)과 유학생 95명(10개국, 67개교)으로 총 147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도 드림장학생 운영결과 >

(2023.12.31. 기준)

구분	'22년 말 (a)	'23년 운영			'23년 말 (e=a+b-c-d)
		선발/전환(b)	포기/박탈(c)	전환/졸업(d)	
유학준비생	50명	30명	8명	20명	52명
유학생	87명	20명	2명	10명	95명

* 본교 및 캠퍼스는 1개 대학으로 산정
자료: 한국장학재단

❑ 2023년도 드림장학생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선발된 장학생 중에서 중도 포기 및 탈락한 유학준비생 8명, 유학생 2명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포기 및 탈락 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바, 주요 포기 사유는 고3 유학준비생이 해외유학에서 국내대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유학준비생은 유학생 이전 단계의 신분으로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유학준비금은 유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 유학생의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정식 드림장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유학포기생으로 간주하기 곤란하고, 정식 드림장학생 경우만 고려했을 때는 일부 유학생만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도 유학준비생 관리를 위해 유학준비생 소속 고교와 재단, 외교부,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대학과의 협조를 통해 안전교육, 해외문화 사전 습득 지원, 입시설명회 등 진학관리, 선·후배 멘토링 및 행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유학준비생 외에도 유학생 및 졸업생 관리를 위해 ①카운슬러를 통한 현지 유학생 학업 및 생활환경 파악 등 현지 모니터링, ②학업실적, 향후 계획 등 중간평가, ③학부 졸업생 진로 파악 등 장학생 사후 관리, ④유학생 안전관리, 유학생 성적 공개 등 학사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드림장학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선발연도별 드림장학생 학위 취득 등 운영 현황 >

(2023.12.31. 기준, 단위: 명)

선발 연도	구분	신규 선발 (A)	진학 (전환)	포기	박탈	유예 종료	소계	합계 (B)	포기 비율 (A/B)	학위 취득	학위중
2023	유학준비생	30	-	1	0	0	1	1	3%	-	
	유학생[187]		20	0	0	-	0			0	20
2022	유학준비생	26	-	3	0	0	3	3	12%	-	
	유학생		23	0	0	-	0			0	20
2021	유학준비생	30	-	7	0	1	8	9	30%	-	
	유학생		22	0	1	-	1			0	19
2020	유학준비생	30	-	6	0	1	7	10	33%	-	
	유학생		24	2	1	-	3			0	21
2019	유학준비생	32	-	6	0	2	8	9	28%	-	
	유학생		24	1	0	-	1			2	21
2018	유학준비생	30	-	9	1	0	10	14	47%	-	
	유학생		20	1	3	-	4			3	13
2017	유학준비생	18	-	5	0	0	5	8	44%	-	
	유학생		13	1	2	-	3			4	6
2016	유학준비생	20	-	3	0	2	5	6	30%	-	
	유학생		15	0	1	-	1			14	1
2015	유학준비생	20	-	2	0	0	2	3	15%	-	
	유학생		18	0	1	-	1			15	2
2014	유학준비생	10	-	0	0		0	1	10%	-	
	유학생		10	0	1	-	1			9	0
2013	유학준비생	10	-	3	0		3	3	30%	-	
	유학생		7	0	0	-	0			7	0
2012	유학준비생	10	-	4	0		4	4	40%	-	
	유학생		6	0	0	-	0			6	0
합계	**유학준비생**	**266**	**-**	**49**	**1**	**6**	**56**	**71**	**2**	**-**	**-**
	유학생	**-**	**202**	**5**	**10**	**-**	**15**			**60**	**123**

자료: 교육부

187) 전년도 유학준비생으로 선발된 고3 학생과 전전년도 유학준비생으로 선발된 고2 학생 중 유학생으로 전환된 인원과 고교 졸업 후 유학 유예 학생을 포함한 인원임.

❑ 드림장학금 사업에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고, 유학준비생을 위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포기하는 시점도 정식 해외유학생이 아닌 유학준비생 신분에서 유학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경우가 많다하더라도,

2023년 12월말 기준, 2012년 이후 총 71명(유학준비생 56명, 유학생 15명)의 드림장학생이 중도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선발인원 대비 평균 약 26.9%(유학준비생 21.1%, 유학생 7.4%) 학생이 중도포기하는 것임.

유학생의 학위 취득기간을 살펴보면, 2015년에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 9년차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보이고, 7년차인 2017년에 선발된 13명의 유학생 중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명에 불과하는 등 언어의 제약이 있는 해외 유학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대학의 학사과정이 통상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드림장학생의 학위 취득기간이 과도하게 긴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교육부가 중도포기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언어 학습, 군복무, 전공 등을 감안한 적정 기간 내에 유학을 마칠 수 있도록 유학

준비생 및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업계획과 자기소개서 등에서 유학 의지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 또는 강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에도 학업장려비를 지원받기 전[188]에 유학생활의 현실과 어려움 안내, 선배들과의 면담 및 컨설팅 등 통해 지원 학생의 학업과 유학의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강화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유학준비생 중간점검 평가 이전인 유학준비금을 지원받기 전 단계부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의 학업 및 유학의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선배 유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선배들이 얻는 보상과 성취감 공유 등을 통해 유학준비생 및 유학생들이 유학에 대한 의지를 꺽지 않고 해외유학 포기 결정을 지금보다 더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88) 현재 1차로 고교 졸업한 해 3~5월 중, 2차 그 차년도 3~5월 중에 유학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외유학 의지, 유학 가능성, 성취도 등 유학 준비정도를 점검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계속지원 여부를 '드림장학위원회'에서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학지원비를 지원받은 이후 실시한다는 점과 점검항목이 시험응시, 입학지원서 제출 여부, 입학설명회가 주요 평가항목이고,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평가항목에 존재하나 필수참여 항목은 평가점수의 15%만 차지하고 있음(**참고1. 유학준비생 중간점검 평가**)

참고1. 유학준비생 중간점검 평가

□ 점검 시기

ㅇ (1차) 고교 졸업한 해 3~5월 중

ㅇ (2차) 고교 졸업 차년도 3~5월 중

□ 점검 항목

ㅇ 시험 응시, 대학 입학지원서 제출, 카운슬링 프로그램, 입학 설명회 참여 등

구분	시험 응시		입학지원서 제출	카운슬링 프로그램		입학 설명회	계
	입시시험	어학시험		필수 참여	선택 참여		
배점	15점	15점	25점	15점	15점	15점	100점
기준	횟수 당 5점						

ㅇ (응시 시험) 유학 준비 국가 및 대학별 필요한 시험만 인정

- 입시시험: SAT, ACT, AP, EJU, 수능 등
- 어학시험: TOEFL, IELTS, DUOLINGO, HSK, JLPT 등

ㅇ (입학지원서 제출) 대학 입학지원서 제출 기준으로 확인

ㅇ (카운슬링 프로그램) 필수, 선택 행사로 구분하여 참석 여부 확인

- 필수 참여: 장학생 개별 카운슬링, OT, 장학생 캠프

  ※ 교내외 시험, 행사 등으로 참석 불가능 시 증빙할 경우 참석 인정

  ※ 2차 점검 시 OT는 참석으로 간주하여 점수 부여

- 선택 참여: 국가별 입시설명회, 선배장학생 특강, 선후배 간담회, 미국 대사관 협업 카운슬링 등

ㅇ (입학설명회) 재단 해외대학 입학설명회에 한하여 인정

4)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18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는 UNESCO, OECD, APEC, ASEAN 등의 국제기구 및 소속 국가와 우리나라 간 쌍방 인적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총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 중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ACU) 사업은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아세안사이버대학(이하 “ACU”라 함) 설립 계획에 따라,

온라인 ACU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협력 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한-아세안 대학 간 학점인정과 교류 등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아세안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 기반의 국내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사업임.

189)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99억 9,900만원으로, 199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비ODA)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19,999	-	-	19,999	19,958	-	41	99.8
○ UNESCO 교육협력지원	4,505	-	-	4,505	4,464	-	41	99.1
○ 아태무제이해교육원지원	3,924	-	-	3,924	3,924	-	-	100
○ OECD 교육연구협력	642	-	-	642	642	-	-	100
○ APEC 교육협력 지원	896	-	-	896	896	-	-	100
○ ASEM 교육협력사업	646	-	-	646	646	-	-	100
○ ASEAN 교육협력사업	501	-	-	501	501	-	-	10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3,500	-	-	3,500	3,500	-	-	100
○ 한-EU 교육협력사업	200	-	-	200	200	-	-	100
○ CAMPUS Asia 사업	4,449	-	-	4,449	4,449	-	-	100
○ 글로벌 포럼	48	-	-	48	48	-	-	100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82	-	-	82	82	-	-	100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45	-	-	45	45	-	-	100
○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ACU)	561	-	-	561	561	-	-	100

나) 검토의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부로부터 2023년 예산액 전액인 5억 6,100만원을 교부받아, 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여 98.7%의 실집행율을 기록하였음.

< 최근 3년간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ACU)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590	590	590	569	-	21	96.4
2022년	590	590	590	578	-	12	98.0
2023년	561	561	561	553	-	8	98.7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아세안사이버대학(가칭)’의 설립을 건의하였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아세안 이러닝 후발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를 중심으로 이러닝 역량 강화 및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하여 2019년까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0] 사업으로 추진해왔음.

190)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개발협력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함.

❑ 이후 기존 ODA 사업이 2019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사업의 취지 및 아세안 10개국의 의견 및 교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DA 사업에서 다자간 교육협력 사업 성격의 비ODA 사업으로 전환[191]하였고,

2021년 9월 제11차 아세안 교육분야 고위관리 회의(SOM-ED+3)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운영' 최종 모델을 결정하였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한·아세안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한·아세안 간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역내 인적교류와 인재양성을 위하여,

2023년에는 ①한-아세안 협력 네트워크 운영, ②ACU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지원, ③ACU 플랫폼[192] 운영 및 개선 사업을 수행하였음.

< ACU 사업 추진 결과 요약 >

영 역	주요내용	주요성과(산출물)
한-아세안 협력 네트워크 운영	○국내·외 협의체 운영 ○ACU 고등교육 컨퍼런스 개최 ○사무국 운영 및 프로젝트 홍보	○국내·외 협의체(4회) ○ACU 컨퍼런스 개최(1회) ○국제회의 등 참여(3회)
ACU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지원	○국내·외 온라인 콘텐츠 번역 및 탑재 ○LMS 활용 교육과정 운영 ○ACU 활용 지원 동향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콘텐츠 확보(11종) ○국내·외 교육과정 운영(8종) ○동향리포트(5종)

191) ODA사업은 외교부 지정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세안 전체 국가를 아우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비ODA 사업으로 전환함.
192) http://www.aseanoer.net/

영 역	주요내용	주요성과(산출물)
ACU 플랫폼 운영 및 개선	○ACU 플랫폼 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ACU 플랫폼 서비스 운영 결과보고서(1종) ○클라우드 운영 결과보고서(1종)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핵심인 ACU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지원 사업은 ①한·아세안 콘텐츠 공동활용 서비스인 ACU-OER에 국내·외 우수 신규 콘텐츠 확보 및 탑재하기 위해 해외 콘텐츠와 국내 콘텐츠로 구분하여 발굴하고, ②학습관리시스템(ACU-LMS) 활용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는바,

①해외 콘텐츠의 경우, 공모를 통해 해외 우수 학습 콘텐츠를 선정하여 다국어 번역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콘텐츠는 교육부「원격대학 교육역량 혁신 사업」에서 개발된 교육 과정 중 ACU 플랫폼 기반 아세안 대학과의 협력 운영 가능한 교과목 대상으로 ACU 플랫폼에 탑재하여 연계하고 있음.

②ACU 학습관리시스템(ACU-LMS)[193]는 운영 유형에 따라 자체운영, 협력운영, 매칭운영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주체, 대상, 학점인정 여부, 사업 추진방식이 상이함.

193)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지원, 콘텐츠 전달 및 관리, 그리고 학습자 정보의 기록과 관리를 포함한 온라인 학습을 위한 시스템을 의미함.

< ACU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유형 >

구 분	운영주체	대상	학점인정	추진방식
자체운영	아세안대학	자교학생	○	공모
협력운영	KERIS/국내대학	아세안 대학생	X	협약
매칭운영	국내대학	아세안대학	○/X	협약
자체 운영 : 아세안 대학 자체적으로 ACU 공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협력 운영 : KERIS와 국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불특정 아세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매칭 운영 : 국내대학과 협약이 된 아세안의 현지 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종의 콘텐츠를 신규 개발한 이후 2023년까지 신규 콘텐츠 개발은 없고, 총 17종의 국내·외 콘텐츠 연계 실적만 기록 중이며, 동 사업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총 17개 교육과정에서 1,060명에 불과함.

< ACU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지원 사업 실적[194]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콘텐츠 개발(종)	1	-	-	-	1
국내·외 콘텐츠 연계(종)	3	6	5	3	17
교육과정 운영(종) (학점/비학점)	-	3 (1/2)	6 (3/3)	8 (6/3)	17
학습자 수(명)	-	95	348	617	1,060

자료: 교육부

❑ 또한 국가별 ACU 플랫폼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각국의 총 방문자수와 방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연평균 15,257명, 38,558회에 불과한데, 이는 ACU 플랫폼 방문자 1명이 평균 2.5회 가량 접속한 것임.

< 아세안 국가별 ACU 플랫폼 이용 현황 >

(단위: 명,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문자수	방문수	방문자수	방문수	방문자수	방문수	방문자수	방문수
캄보디아	691	1,825	140	295	78	117	250	428
라오스	464	1,024	115	463	37	113	27	40
미얀마	2,201	8,399	788	1,553	713	2,913	1,595	3,734
베트남	9,066	35,540	6,072	22,949	6,895	19,117	4,134	9,738
태국	91	126	213	515	445	665	285	378
인도네시아	42	73	233	496	183	327	511	1,114
말레이시아	19	24	51	190	38	149	426	1,091
필리핀	40	51	303	881	191	613	207	383
브루나이	0	0	22	97	44	180	6	11
싱가포르	43	66	771	1,112	248	756	177	243
한국	4,133	6,698	3,291	5,675	3,060	6,355	2,997	4.853
기타	2,600	2,957	2,682	3,417	2,021	3,051	2,387	3.436
합계	19,390	56,783	14,681	37,643	13,953	34,356	13,002	25,449

자료: 교육부

194) 참고 2. 최근 3년간 ACU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동 사업이 당초 한-아세안 국가 간 고등교육 협력 강화라는 취지로 아세안 사무총장의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요청과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가 의향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동 사업이 ODA 사업에서 비ODA 사업으로 전환 및 사업비 감소 등에 따라 아세안 국가의 사업참여 의지가 전반적으로 저조해진 것이 주원인으로 보임.

❑ 또한 각국이 KERIS에 요청하는 과정 중 협력운영 및 매칭운영 과정은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한국 대학과 매칭된 아세안 대학의 해당 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한국어 학습, 태권도, k-beauty, CPR 등 응급의료 분야 등 한국 문화와 선진 응급의료 분야로 제한적인 반면,

해당 국가의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과정은 수혜대상이 해당국가 대학의 학생이므로 자국의 부족한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를 대체할 ACU 플랫폼의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이러닝 분야로 차이[195]가 있는 등 각국의 교육여건 차이에 의한 것도 기인하고 있음.

195) 2024년도에는 3개국(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에서 50개 자체교육과정을 운영 신청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예산 상 한계로 인하여 KERIS는 이중 5~10개 과정을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임.

❑ 이는 아직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 분야 등의 역량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비ODA 사업이라는 면과 동 사업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번역하기 어려웠으며, 교육과정의 운영 역시 자국에서 관심도가 높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한국의 선진 응급의료 체계분야를 우선 선택하였고, 더하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인증 기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도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 하에서도 동 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한-아세안 국가 간 고등교육 협력과 국내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ACU 플랫폼을 통한 아세안 각국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 교육과정 수요 조사 및 이에 기반한 콘텐츠 목록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 공동 운영 수요조사와 함께, ②국가별, 기관별 원격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원격 학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CU 플랫폼 고도화 계획 등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2. 최근 3년간 ACU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협력운영	과정수	1개	3개	1개	5개
	과정명	바른한국어 1	바른한국어 1, 2	Taste of Taekwondo	
	학습자수	20명	55명	53명	130명
	기타	(수료증)과정 (고려사이버대-KERIS 운영)	비학점(수료증)과정 (고려사이버대-KERIS 운영)	비학점(수료증)과정	
매칭운영	과정수	1개	1개	3개	5개
	과정명	Introduction to CPR and First Aid	CPR and First Aid Training	1. CPR and First Aid 2. K-Beauty Up-Style 3. Joint Korean Curs	
	학습자수	37명	185명	204명	426명
	기타	비학점(수료증)과정 (강원대-베트남 동아대 운영) 학점과정	(강원대-베트남동아대, 타이빈의과대운영) 학점과정	(1.강원대-타이빈의대등 2.건양사이버대-왕립캄보디아대 3.원광디지털대-라오스 삼동백천기술학교)	
자체운영	과정수	1개	2개	4개	7개
	과정명	Introduction to e-learning	1. Semantic Web and Ontology Engineering 2.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	1. Artificial Intelligence 2. Java Programming 3. Intro. to Computer System 4. Theory and Application of Online Lear	
	학습자수	38명	10명/98명	360명	506명
	기타	자체대학 학점과정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	1.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2. University of Technology (Yatanarpon Cyber City)	1. Univ. of Technology (미얀마) 2. Makassar State Univ. (인도네시아)	

자료: 교육부

5)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4606-306)[19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4606-306)은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1년 이내)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 수요를 발굴하고, 채용 연계를 위해 구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42억 6,500만원이고, 전액집행하였음.

< 2023년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4,265	-	-	4,265	4,265	-	-	100
○ 사전직무교육	2,915	-	-	2,915	2,915	-	-	100
○ 훈련수당	1,215	-	-	1,215	1,215	-	-	100
○ 컨설팅	135	-	-	135	135	-	-	100

196) 문의: 02-6788-5193

나) 검토의견: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필요

❑ 동 사업은 2022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수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모를 통해 총 32개 교육기관, 44개 과정을 선정하여 직업계고 3학년 및 1년 이내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하였음.

❑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를 5:5로 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자(전담기관)에 사업비 총액으로 교부하고, 일부 신산업분야 등 직무교육과정 이수 소요 기간, 훈련수당 등에 따라 지방비 추가 부담 발생이 가능함.

❑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부로부터 2023년 예산액 전액인 42억 6,500만원을 교부받아 3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8,300만원을 불용하여 74.6%의 실집행율을 기록하였음.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2,783	2,783		2,260		523	81.2
2023년	4,265	4,265	4,265	3,182	-	1,083	74.6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22년 526명, 2023년 605명이 취업하였는데,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신청인원 경쟁률이 약 1.8대1에 머물렀고, 실제 입교인원은 합격 후에도 입교를 포기한 경우가 많아 매년 목표인원에 미치지 못한 893명, 1,036명만이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최종 취업률 또한 당초 목표인원 대비 50.1%, 44.8%, 입교인원 대비해서도 58.6%, 58.4%에 머무르고 있는바, 실집행률 부진과 함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결과 >

(2024. 5. 27. 기준)

구분	목표	접수	합격	입교	수료	취업	대학 진학	군입대 등	중도 탈락
23년	1,350명	2,361명	1,860명	1,036명	966명	605명* (63%)	175명	48명	70명
22년	1,050명	1,480명	1,050명	893명	859명	526명 (61%)	135명	미파악	34명

자료: 교육부

❑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3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14개 교육청만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2023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참여하였음. 그러나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방비 매칭 계획액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미흡한 성과와 함께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197]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만이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계획액을 달성하였을뿐,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동 사업의 예산 편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였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당초 계획액에 미달하였음.

< 시 · 도교육청별 지방비 매칭 실적 >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계획액	실적액	환수액	계획액	실적액	환수액	
서울	339	322	17	379	368	11	
부산	209	199	11	253	215	38	
인천	186	176	9	253	323	-	증액(추경)
울산	69	65	4	171	120	51	
대구	133	126	7	126	122	4	
광주	209	199	10	316	197	119	
경기	721	684	37	948	918	30	
강원	79	75	4	95	89	6	
충북	37	35	2	95	108	-	증액(추경)
충남	106	101	5	190	215	-	증액(추경)

19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계획액	실적액	환수액	계획액	실적액	환수액	
경북	79	75	4	126	117	9	
경남	101	96	5	126	67	59	
세종	19	18	1	13	12.6	0.4	
제주	79	75	4	158	154	4	
대전	-	-	-	63	34	29	
전남	-	-	-	63	61.2	1.8	
전북	-	-	-	63	61.2	1.8	
계	2,366	2,246	120	3,438	3,182	364	

자료: 교육부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동 사업의 국고 매칭 지방비 본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계획인원의 76.7%에 해당하는 1,036명분만을 편성하였고,

부족분에 대해 추경을 통해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인천 등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상 추경이 불발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지원자가 2개 과정에 복수 합격한 경우, 교육과정별 합격 및 입교자 확정과정에서 해당 시도교육청의 대응 투자 예산이 합격자 전체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입교자 수를 조정한 경우, 접수 → 합격 → 입교 과정에서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최종 입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3년 합격자 대비 입교자가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동 사업을 통해 2022년 72.6%(순취업률 61%), 2023년 81.4%(순취업률 63%)의 취업률[198]을 달성한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인 2022년 57.8%, 2023년 55.7%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이 단순히 직무교육과정 이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취업희망자와 기업 간 채용연계가 목표인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계획인원 대비 신청인원 경쟁률이 2대1에 못 치지 못하였다는 점,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매칭도 계획액 대비 매칭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생을 선발할 수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의 홍보가 미흡한 것과 함께, 교육생 선발 시 지원자들의 취업의지, 전공, 적성, 취업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기업 취업 수요에 따른 채용연계라는 사업 당초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인원배분

198) 교육부 발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단, '22년 군입대 등 미파악 수치 제외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계획된 규모의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집행률 제고를 도모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보다 많은 취업희망자가 계획에 따라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거의 집행실적, 참여 취업희망생 및 기업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등의 매칭계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19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은 ①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온 국민에게 제공하여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②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매치업(Match業)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99)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283억 100만원이고, 전액집행하였음.

< 2023년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28,301	-	-	28,301	28,301	-	-	100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24,413	-	-	24,413	24,413	-	-	100
○ 매치업 운영	3,888	-	-	3,888	3,888	-	-	100

나) 검토의견: 매치업 직무능력인증서의 사회적 활용도 강화 필요

❑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주체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2023년 예산액 전액인 283억 100만원을 교부받아 245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 7,900만원을 불용하여 86.7%의 실집행율을 기록하였음.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28,301	28,301	28,301	24,522	-	3,579	86.7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24,313	24,313	24,313	20,750	-	3,563	85.4
○ 매치업 운영	3,888	3,888	3,888	3,772	-	116	97.0

자료: 교육부

❑ 매치업 운영[200]은 신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6개월 내외)으로, 대표기업이 핵심직무를 제안하고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

200) 동 사업은 2017년도에 수립한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으로 사업명을 확정하고 동 사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온라인 강좌만으로는 현업에 필요한 신기술 습득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 2022년도부터 실무 프로젝트 기반으로 현장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실무 프로젝트형 심화과정을 도입하여 온라인 강좌인 기초과정과 함께 이원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교육강좌 이수자가 직무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학습자 부담 감소와 직무능력평가 응시율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평가와 직무능력인증평가를 일원화[201]하여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직무능력인증서(대표기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동명의)를 발급하고 있음.

< 매치업 교육과정 및 운영흐름도 >



201) **(직무능력인증평가)** 대표기업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직무능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별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기말고사) 및 이수요건 충족 시 직무능력 인증평가 합격자로 선정함.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운영되는데, 사업 1년차에는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 단위로 핵심직무, 강좌 및 인증평가 선정 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년차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년차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는 운영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사업종료 해인 3년차 이후부터는 차년도 사업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202]함. 2023년도에는 7개 분야 44개 강좌를 신규로 개설[203]하였음.

202) 2019년도 3개 분야(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2020년도 2개 분야(스마트시티, 지능형자동차)가 과제로 선정되어 운영하였으나, 운영결과 평가 후 2023년도에 2019년 블록체인, 2020년 스마트시티 분야 과제를 종료하였고, 3개 분야만 연장 운영하였음.

203) 2023년부터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관계부처 합동, 2023.2.1.)에서 도출한 **5대 핵심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도에 지능형농장(8개 강좌), D.N.A.(8개 강좌) 의료메타버스(8개 강좌), 클라우드(8개 강좌), 빅데이터(4개 강좌), 드론(4개 강좌), 가상·증강현실(4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였음.

* ①(Aerospace/Mobility)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②(Bio health)바이오헬스, ③(Component)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④ (Digital)디지털, ⑤(Eco/Energy)환경·에너지

< 교육과정 분야 및 참여기관 >

선정연도	'19-'20년(3개)			'21년(4개)			
분야*	E 스마트 팜	A 신에너지 자동차	A 지능형 자동차	A 드론	D 가상·증강 현실	D 빅 데이터	E 대체 에너지
대표기업	팜한농, LG CNS	HYUNDAI NGV	HYUNDAI	LIG 넥스원	unity	Data Streams	한국가스공사
교육기관	연암대	현대 엔지비	현대 엔지비	동서울대	남서울대	고려 사이버대	순천향대
선정연도	**'22년(4개)**				**'23년(3개)**		
분야*	B 의료 메타버스	E 지능형 농장	D D.N.A.	D 클라우드	A 항공·드론	A 미래 자동차	B 바이오 헬스
대표기업	MEDICAL IP	팜한농, LG CNS, N.THING	건솔루션, 프랙커넥션, Link2us	Metanet	DOOSAN, 에이스드론	CAREX, MORPHING	i-sens
교육기관	인천 가톨릭대	연암대	건 솔루션	IGM세계 경영연구원	인천 재능대	경기과학 기술대	광운대

* 첨단산업 5대 핵심 분야 ▲(Aerospace/Mobility)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io health)바이오헬스, ▲(Component)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Digital)디지털, ▲(Eco/Energy)환경·에너지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제시한 핵심직무 및 세부직무능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직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교육훈련 실적으로 활용하고, 구직자의 경우 대표기업 및 관련 사업체, 동일 산업분야 취업 시 인증서로 활용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바,

이를 위해 기업은 매치업 교육과정 및 이수결과를 채용 또는 승진 등 인사업무에 활용하고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대학은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교육과정을 블랜디드 러닝(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에 활용하도록 안내하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매치업 교육과정 개발 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자격시험과 연계되도록 과정을 설계하여 매치업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을 취득[204]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기관마다 동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수결과 활용처가 아직까지는 주로 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기업 재직자나 참여대학 재학생 위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구직자가 동일 산업분야로 취업 시 인증서로 활용하거나 타 대학 학생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등 사회적 활용도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매치업 직무능력인증서 활용 기업(2023년 누적) >

구분	채용			인사		계
	성적우수자 인턴 채용	채용 시 가점 부여	채용 시험 일부 면제	승진·진급 시 가점 부여	사내 교육 시간 인정	
기업 수(개)	45	102	22	45	101	150

주) 매치업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치업 홈페이지(www.matchup.kr)-게시판-공지사항의 '매치업 활용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상시접수

자료: 교육부

204) **【매치업 교육과정 자격 연계 사례】**
- (드론 분야) 드론 조종 심화과정 이수 시, 국가 자격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인비행시간 6시간 인정(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종 3명 취득, 3종 11명 취득), 드론 제작·정비 심화과정 이수자 중 20명이 드론정비사 1급 자격 취득
- (클라우드 분야) 클라우드 심화과정 이수자가 국제자격증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Azure)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 수강생 대상 Azure실습 구독권 지원
- (빅데이터 분야) 빅데이터 심화과정 이수자가 국가 자격인 빅데이터분석기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 지원 예정

❑ 특히 동 사업 교육과정개발에 참여한 학교에서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학교만이 비교과 학점 또는 프로그램 점수로 인정하거나 교양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매치업 직무능력인증서 활용 학교 >

<table>
<tr><th>구분</th><th>교육기관</th><th>활용사례</th></tr>
<tr><td>1. 빅데이터</td><td>고려사이버대</td><td>• 고려사이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로 인정</td></tr>
<tr><td>2.가상・증강현실</td><td>남서울대</td><td>• 전공 수업의 블렌디드러닝 과정으로 활용하여 학점인정
<table>
<tr><th>남서울대 전공 과목</th><th>매치업 교육과정</th></tr>
<tr><td>VR·AR콘텐츠 분석</td><td>유니티 VR프로그래밍</td></tr>
<tr><td>iAR프로그래밍</td><td>산업용증강현실</td></tr>
<tr><td>지능가상현실</td><td>ML-Agent와 강화학습</td></tr>
</table></td></tr>
<tr><td>3.드론</td><td>동서울대</td><td>• 동서울대 스마트드론과 재학생 대상 비교과 학점 인정(최대 2학점)
• 동서울대 재학생 대상 비교과 학점 인정(최대 1학점)</td></tr>
<tr><td>4.지능형농장</td><td>연암대</td><td>• 연암대 스마트원예, 농창업특성화반 재학생 대상 교육과정 활용, 플립러닝으로 사전학습 과정 활용, 귀농귀촌 교육과정 및 ICT 교육과정에 활용, 심화과정 교재 활용</td></tr>
<tr><td>5.의료메타버스</td><td>인천가톨릭대</td><td>• 대학 내 교양학점 인정(1학점)
• 대학 전공 수업에서 블렌디드러닝으로 활용 : 인천가톨릭대 대학원 바이오메디컬아트전공 3개 교과목(과학시각화, 바이오메디컬콘텐츠 제작, 바이오메디컬 3D프로젝트), 학부 전공 수업에 평가로 활용(바이오메디컬아트)</td></tr>
<tr><td>6.바이오헬스</td><td>광운대</td><td>• (기초과정) 교육기관의 교양선택 2학점 정규 교과 과정으로 개설 및 운영
• (심화과정) 교육기관의 경영학과, 화학과, 컴퓨터 정보공학부 전공 선택 2학점 정규 교과 과정으로 개설 및 운영</td></tr>
<tr><td>7.미래자동차</td><td>경기
과학기술대</td><td>• 대학수업 시 플립러닝 수업으로 활용
• 대학생의 자기개발 및 전기자동차 학과 교육과정 이수 연계
• 매치업 과정 이수 시 교내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 진로설계 및 진학지원(1학점)</td></tr>
<tr><td>8.항공・드론</td><td>인천재능대</td><td>• 대학 내 학점연계 예정</td></tr>
</table>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동 사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수료 후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증서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직무능력인증서가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 등으로 인증[205] 받게 되면 기업에서는 해당 분야 전반에서 채용·이직에 있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자격기본법」 등 관련 법령[206]에

---

205) 이를 위해서는 매치업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인증서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직무능력 평가절차를 강화하고, 교육부에서 민간자격을 등록·관리·운영하는 사업인 자격체계 구축(4131-302) 사업과 연계를 통해 직무능력인증서를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20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삭제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따라 학교에서도 학점으로 인정[207]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7) 이외에도 ①「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재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②「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치거나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바, K-MOOC 및 매치업 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학점인정이 가능함.
다만, 현재까지 매치업 사업은 표준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강좌가 없어 평가인정을 받은 강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자교뿐만아니라 타교에서도 범용성을 갖고 학교 학점으로 인정받기가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매치업 직무능력인증서가 학습자와 활용 기업 및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전반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받는 방안 등 직무능력인증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러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직무능력인증서를 취득한 학습자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아 취업·이직 등에 적극 활용하고,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받는 등 직무능력인증서의 범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삭제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0의2.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7. 책임교육정책관

가. 책임교육정책관

<일반회계>

1)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20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 사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지원 및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정 후속 정책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운영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22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24억 100만원 중 1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66.1%임.

208) 문의처: 02-6788-5184

< 2023회계연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9	112	2,401	1,586	690	125	66.1
○ 교육과정 개정 정책 연구	1372	112	1484	1081	349	54	72.8
○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897	-	897	486	341	71	54.1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운영	20	-	20	20	-	0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연도 말 계약 체결에 따른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 동 세부사업의 2023년도 정책연구비(260-02)는 1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이월액 1억 1,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8,400만원 중 10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3년도 정책연구비(260-01)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2,289	112	0	2,401	1,586	690	125
- 일반수용비(210-01)	897	-	△887	10	-	-	10
- 일반연구비(260-01)	-	-	887	887	486	341	60
- 정책연구비(260-02)	1,372	112	-	1,484	1,081	349	54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0	-	-	20	20	-	0

자료: 교육부

❑ 최근 5년간 동 세부사업 정책연구비(260-02)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100만원, 2020년 2억 2,600만원, 2021년 2억 8,100만원, 2022년 1억 1,200만원, 2023년 3억 4,9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매년 연도 말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연구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5년 정책연구비(260-02)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920	-	-	920	829	91	0	90.1
2020	880	91		971	745	226	0	76.7
2021	1,600	226	-	1,826	1,480	281	65	81.0
2022	1,827	281	-	2,108	1864	112	132	88.4
2023	1,372	112	-	1,484	1,081	349	54	72.8

자료: 교육부

❑ 2023년도의 경우 총 10건의 계약 중 2건은 2022년도의 정책연구비(260-02) 18억 2,7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이 2023년도로 이월된 후 용역계약이 체결(2023.1.27.)된 것이며,

3건은 연도 말(2023.10.23./2023.11.1.)에 체결되어 2023년도의 정책연구비 13억 7,200만원 중 3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209]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23년도 정책연구비(260-02)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	계약방법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영문판 개발 연구	조규희(경인교대)	2023.1.27.~6.26.	29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온정덕(경인교대)	2023.1.27.~11.26.	77.42	

209)「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187

계약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	계약방법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황규호(이화여대)	2023.4.14.~12.15.	63.6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김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4.17.~12.18.	57.91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김종훈(건국대)	2023.4.20.~12.19.	4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초·중학교 중심)	노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5.11.~ **2024.2.29.**	490.9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중학교 자유학기제 개선방안 연구	신철균(강원대)	2023.5.30.~9.29.	10	수의계약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방안 연구	김성애(덕성여대)	2023.10.23.~ **2024.2.22.**	49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서효정(공주대)	2023.10.23.~ **2024.2.22.**	6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중고 합본 과목 및 고교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11.1.~ **2024.6.1.**	534.6	
합계			1419.43	

자료: 교육부

❑ 동 세부사업의 2023년도 정책연구비(260-02) 집행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교육부는 2022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 18억 2,8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인 2023년도로 이월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국가재정법」 제48조[210]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금지 원칙' 및 「국가재정법」 제3조[211]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1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21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2년 10월에 예정된 '2022개정 교육과정 고시' 일정에 맞추어 해당 계약[212]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고시 일정의 지연('22.10.→'22.12.)으로 관련 정책연구 추진 일정이 순연되었으며, 당초 2022년도 내에 추진하고자 했던 연구과제의 경우 정책연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이월(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정책연구비(260-02) 전년도이월액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 건명	계약금액(예상)	입찰공고일	사고이월액	계약금액	계약일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개선방안 연구	30	2022.12.20.	30	29	2023.1.27.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영문판 개발연구	80	2022.12.12.	80	77.42	2023.1.27.
조달수수료(예정)	2		2	0.83	
계	112		112	107.3	

자료: 교육부

그러나 해당 계약 중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경우 입찰공고를 2022년 12월 20일에 하고 2023년 1월 27일에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3호[213]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21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영문판 개발 연구',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개선방안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213)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영문판 개발연구" 용역의 경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14] 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 둘째, 2023년도에 추진된 정책연구과제 10건 중 4건의 연구용역은 소요되는 준비기간 및 연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공고, 접수 및 심사 절차를 추진하여 연도 말(10월말)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정책연구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일부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추진일정>

정책연구	공고일	접수일	심사일	계약기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초·중학교 중심)	'23.3.10.	'23.3.31.	'23.4.4.	'23.5.11. ~'24.2.29.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방안 연구	'23.7.17.	'23.7.31.	'23.9.26.	'23.10.23. ~'24.2.2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23.7.17.	'23.7.31.	'23.9.26.	'23.10.23. ~'24.2.2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중고 합본 과목 및 고교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23.7.19.	'23.8.9.	'23.9.26.	'23.11.1. ~'24.6.1.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후속연구의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을 차년도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후 접수일로부터 계약 체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모 접수일 이후 심사 일정을 지연 없이 추진하여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면 연구용역이 연도 내 완료되었거나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개발(중고 합본 과목 및 고교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은 교육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연구

(초·중학교 중심)'와의 공통된 교과목이 없어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바,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계약기간 차년도 설정 정책연구별 관련 선행연구 현황>

정책연구	관련 선행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방안 연구('23.10.23.~'24.2.22.)	①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23.4.14.~12.15.) ②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23.4.17.~12.18.)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23.10.23.~'24.2.2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중고 합본 과목 및 고교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23.11.1.~'24.6.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초·중학교 중심, '23.5.11.~'24.2.29.)

자료: 교육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 연구(초·중학교 중심)' 개요>

자료명	주요내용	발행사 (개발사)	개발기간
초·중학교 총론	초·중학교 성취수준 개발 총론 1종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23.5월~ '24.2월 (10개월)
고등학교 총론	고등학교 성취수준 개발 총론 1종		
국어	초1~2, 초3~4, 초5~6, **중1~3**		
도덕	초3~4, 초5~6, **중1~3**		
사회	초3~4, 초5~6, **중1~3**		
역사	**중1~3**		
수학	초1~2, 초3~4, 초5~6, **중1~3**		
과학	초3~4, 초5~6, **중1~3**		
실과(기술·가정)	초5~6(실과), **중1~3**(기술·가정)		
체육	초3~4, 초5~6, **중1~3**		
음악	초3~4, 초5~6, **중1~3**		
미술	초3~4, 초5~6, **중1~3**		
영어	초3~4, 초5~6, **중1~3**		
생활외국어	**중1~3**(독일어, 프랑스어 등 8개 외국어)		
통합교과	초1~2(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5종 45과목	집행액	490.9백만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기준 개발(중고합본과목 및 고교공통과목 중심)' 개

요

자료명		주요내용		발행사 (개발사)	개발기간
중·고 합본	총론	중고 합본 과목 및 고교 공통과목 평가기준 총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23.11월~ '24.6월 (8개월)
	정보	정보(6과목) : 중1~3, 고(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정보과학)			
	한문	한문(4과목) : 중1~3, 고(한문, 심화 한문, 언어생활과 한자)			
	보건	보건(2과목) : 중1~3, 고			
	환경	환경(2과목) : 중1~3(환경), 고(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2과목) : 중1~3, 고			
고등학교	국어	공통과목(2과목) : 공통국어1, 공통국어2			
	수학	공통과목(2과목) :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영어	공통과목(2과목) :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사회	공통과목(2과목) :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역사	공통과목(2과목) : 한국사1, 한국사2			
	과학	공통과목(4과목) : 통합과학1, 통학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12종 31과목		집행액	534.5백만원		

❑ 따라서 교육부는 연례적으로 정책연구비(260-02)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시 당해 회계연도에서 실제 소요되는 준비기간 및 연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21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교과용도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완성도 및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교사)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지원 및 수정·보완을 통해 질 높은 미래 교과서 발행체계 대비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15) 문의처: 02-6788-5184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48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7억 1,500만원 중 47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82.4%임.

< 2023회계연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868	15	5,715	4,708	863	145	82.4
○ 교과용도서 개발	2,913	-	3,760	3,531	223	6	93.9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72	-	72	72	0	0	100.0
○ 교과용도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40	-	40	20	20	0	100.0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1,011	-	1,011	886	0	125	87.6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106	15	106	78	15	14	72.6
○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40	-	40	40	0	0	100.0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586	-	586	0	586	0	0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	-	100	81	19	0	81.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의 8개 내역사업 중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등 4개의 사업은 2023년도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320-02)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2023년도 내역사업별 민간위탁사업비(320-02)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세목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민간 위탁 사업 비 (320 -02)	○ 교과용도서 개발	2,679	847	3,526	3,297	223	6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 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15	-	15	15	0	0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1,009	-	1,009	884	0	125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586	-	586	0	586	0
	합계액	4,289		5,136	4,196	809	131

자료: 교육부

❑ 2023년도 동 세부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는 총 42억 8,900만원을 편성되어 전년도 이월액 8억 4,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억 3,600만원 중 41억 9,600만원을 집행되고 8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3,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세부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216]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17]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데, 근거 법령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218]로 구성되며,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며,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인정도서는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행「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수학·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의 검정·인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각각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16)**「초·중등교육법」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7)**「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8)**「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제26조(수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 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바. (생 략)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

아.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년의 경우 국정도서는 한국교원대·서울교대 산학협력단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고,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교과용도서 및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사업은 법령의 근거 없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였음.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비(320-02) 집행관련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집행액
교과용도서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0.17.~2022.12.31. (2022.10.17.~2024.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국어과)편찬기관 선정(이월사업)	421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0.17.~2023.2.28. (2022.10.17.~2024.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국어과)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1차, 이월사업)	46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0.7.~2023.2.28. (2022.10.17.~2024.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수학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1차, 이월사업)	468
	한국교원대학교	2022.10.13.~2022.12.31. (2022.10.17.~2024.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통합교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1차, 이월사업)	629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3.1.~2023.12.31. (2022.10.7.~2024.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수학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2차)	509
	한국교원대학교 산학렵력단	2023.4.1.~2023.12.31. (2022.10.7.~2024.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통합교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2차)	684
	한국교원대학교 산학렵력단	2023.4.1.~2023.12.31. (2022.10.7.~2024.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국어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2차)	509

내역사업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집행액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4.3.~2023.12.31. (2023.4.3.~2025.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군 국정도서(도덕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1차)	191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4.13.~2023.12.31. (20223.4.13.~2025.8.3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군 국정도서(국어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1차)	555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12.26.~2024.6.30. (2023.12.26.~2026.1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군 국정도서(도덕과) 편찬기관 선정(장기계속 1차)	222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나무엘	2023.6.14.~2023.7.31.	2023년 교과서 포럼(AI 시대 질문하는 능력을 길려주는 교과서) 개최 용역	14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23.2.17.~2023.12.31.	2023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915**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서커스컴퍼니**	2024.2.29.~2024.9.30.	**실감형콘텐츠 10종 개발 및 기 개발콘텐츠 16종 수정·보완**	**577**
합계액				5,740

자료: 교육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발행자 등이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2023년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및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사업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비 14억 9,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 법령[219]과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절차(① 접수검토→② 검토승인→③ 후속조치)[220]에 따르면,

21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의 발행사는 ① 접수검토 단계의 '수정·보완의 요청사항 접수, 검토, 자료작성, 승인요청'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인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따른 소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서책형교과서 편찬기관이 개발[221] 하되,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은 편찬기관이 수행하여야 함.

❑ 그런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및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민간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비로 매년 약 10억원[222] 상당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223]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20)〔참고자료 1〕"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절차" 참조

221) 국정(편찬기관 선정→개발→보급)

222)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됨. 2017년, 2018년의 경우에는 4~5억원을 집행하였음

22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6조(수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6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연도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집행액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2017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17.1.1.~12.31.	2017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380
	2018		2018.1.1.~12.31.	2018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500
	2019	〃	2019.5.1.~12.31.	2019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945
	2020	〃	2020.4.9.~12.31.	2020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1,080
	2021	〃	2021.2.8.~12.31.	2021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1,066
	2022	〃	2022.1.18.~2.28.	2022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20
		〃	2022.3.7.~12.31.	2022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888.5
	2023	〃	2023.2.17.~12.31.	2023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915.4
디지털 교과서 수정·보완	2019	한국과학 창의재단	2019.3.~2019.3.	2019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30
			2019.3.~2019.12.	2019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30
	2020	〃	2020.8.14.~12.31.	2020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73
	2021	〃	2021.4.26.~12.31.	2021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75
	2022	〃	2022.714.~12.15.	2022년 국정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70
	2023	㈜서커스 컴퍼니	2024.2.29.~9.30	실감형콘텐츠 10종 개발 및 기개발 콘텐츠 16종 수정·보완	577

자료: 교육부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 예산의 투입 없이 발행사에게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시스템’의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발행사의 소극적인 수정작업으로 교과용도서의 질 하락과 소요 비용 회수에 따른 교과서의 가격 상승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동 세부사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과 ‘국정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거나 현행 법령[224] 규정에 따른 적절한 사업 수행 방식으로의 전환방안 등을 모색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225]

224)「초·중등교육법」,「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25) 참고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0.12.16., 의안번호 제210651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23.8.8., 의안번호 제2123689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참고자료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절차**

절차		추진 내용		
❶접수검토	접수	‣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자체 수정, 민원 요청, 의견 제안 접수 → 수정·보완 요청 사항을 편찬기관 및 발행사에 통보		
	검토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편찬기관(집필진)과 발행사 협의	발행사(집필진) 협의	발행사(집필진) 협의
	자료 작성	발행사 발송(학기별) 공문 ①수정·보완 대조표 ② 편찬기관(집필진) 협의록	발행사 입력(~매월 10일까지)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①수정·보완 대조표 ②집필진 협의록	발행사 입력(수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①수정·보완 대조표 ②집필진 협의록
	승인 요청	발행사 → **교육부**	발행사·민간위탁기관 → **교육부**(~매월 15일까지)	발행사·민간위탁기관 → **시·도교육청**
❷검토승인	승인 검토	**교육부** 교과별 검토자가 검토 실시 (필요시 자문 위원회 검토 가능)	**교육부** **단계** / **내용** / **관련기관(수.발신)** 신간본 검토자 추천 / ‣ 검토자 1~2인 추천(요청건수 확인 후 추천 인원 확정) / ‣ 검정심의기관 → 교육부, 민간위탁기관 기간본 검토자 구성 / ‣ 교과별 내부·외부검토자로 구성하며 내부검토자 공석시 외부검토자 선정·구성 / ‣ 교육부, 민간위탁기관 검토 의뢰 / ‣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 / ‣ (외부)민간위탁기관 →검토자 ‣ (내부)업무담당자 → 검토자 검토 실시 / ‣ 검토실시 후 의견서 작성·송부 / ‣ 검토자 검토 결과 송부 / ‣ 검토 의견서 송부 / ‣ (외부) 검토자 → 민간위탁기관 → 교육부 ‣ (내부) 검토자 → 업무담당자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업무 편람」에 근거하여 수정·보완 사항 심의
	승인·통보	‣ 교육부 → 편찬기관 발행사	‣ 교육부 → 민간위탁기관 → 발행사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민간위탁기관 → 발행사
❸후속조치	안내 공급	‣ 시·도교육청은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을 학교에 안내 ‣ 민간위탁기관은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정·보완 사항 대국민 안내 ‣ 발행사는 수정·보완 승인 사항을 교과용도서에 반영하여 인쇄하고 현장에 공급		
	평가 환류	사용자 대상 교과용도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교과서 품질 관리		

자료: 교육부

(2) 사업계획 준비 및 사업추진 실적 미흡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의 8개 내역사업 중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교과서 및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감형 콘텐츠의 수정·보완을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질 관리 강화 및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586	-	586	0	586	0
- 민간위탁사업비(320-01)	586	-	586	0	586	0

자료: 교육부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의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비는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실감형 콘텐츠 변환(VR 웹전환)"을 위하여 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사업 예산 산출근거>

○ ('22) 79백만원 → **('23예산) 586백만원**, 742% ◦ (내용)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실감형 콘텐츠 변환(VR 웹전환) ◦ (산출) - 실감형콘텐츠 개발: 10종×50백만원 = 500백만원 - 실감현콘텐츠 변환(VR 웹 전환): 16종×5.4백만원 = 86백만원

❑ 교육부의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26]에 따르면, '2023년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변환 추진사업'은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과융합형/교과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 10종 개발'과 '초등학교 사회, 과학 실감형 콘텐츠(VR) 16종 웹 VR 변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교과융합형/교과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 VR) 10종 개발'은 다양한 콘텐츠 체험을 희망하는 현장의 의견(현장교사의 참여 확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융합형 실감형 콘텐츠와 교과서 내 학습내용을 확장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심화형 실감형 콘텐츠 10종을 개발하는 것이며,

'초등학교 사회, 과학 실감형 콘텐츠(VR) 16종 웹 VR 변환'은 다운

226)〔참고자료〕'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변환 추진계획(안)' 참조, 2023년도 예산안 검토 시 교육부 기제출자료임.

로드 방식으로 이용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과학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16종을 웹(Web)브라우저(크롬 최적화)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임.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변환 사업계획안>

○ 디지털교과서 연계 교과융합형/교과심화형 10종 개발

<표> 교과영역별 실감형콘텐츠 개발 주제(안)

연번	학교급	교과	과정	주제명	유형	비고
1	초등학교	사회 공통	-	알 보듬어주기(칭찬, 예절)	AR	교과 융합형
2	초등학교	사회	3-2	우리 고장의 땅과 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VR	교과 융합형
3	초등학교	과학	4-1	Balance(다양한 물체의 수평 잡기 원리 익히기 및 수평 맞추기)	AR	교과 융합형
4	초등학교	과학	5-1	음식으로 알아보는 미생물	AR	교과 심화형
5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6-2 과학2	전자석으로 만들어진 생활 속 물건	AR	교과 융합형
6	중학교	과학	과학1	기계적 풍화작용의 원인과 과정	360	교과 심화형
7	중학교	사회	사회①	통계 지도의 종류와 유용성	AR	교과 심화형
8	중학교	과학	과학2	바다의 깊이에 따른 온도와 염도	VR	교과 심화형
9	중학교	사회	사회②	쓰레기 매립지, 공원이 되다	AR	교과 융합형
10	중학교	과학	과학3	별의 밝기와 색을 이용하여 별의 특성 알아보기	AR	교과 심화형

※ 현장교사와 전문가의견 수렴을 통해 주제 도출/실감형콘텐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주제 10종 확정 후 개발 추진

○ 웹 실감형콘텐츠 변환 16종

<표> 기개발 **초등 3~4학년 사회, 과학** 실감형콘텐츠 웹 변환 목록(안)

번호	학교급	과목	과정	콘텐츠명	유형
1	초등	과학	3-1	공룡 발자국 탐구	VR
2	초등	사회	3-1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	VR
3	초등	과학	3-2	땅에 사는 동물 / 물에 사는 동물	VR

번호	학교급	과목	과정	콘텐츠명	유형
4	초등	과학	3-2	강 주변의 지형	VR
5	초등	과학	3-2	소음을 줄이는 방법	VR
6	초등	사회	3-2	환경에 따른 세계 여러 고장의 주생활 모습	VR
7	초등	사회	3-2	옛날의 결혼풍습 알아보기	VR
8	초등	과학	4-1	핀치 생활 환경 관찰	VR
9	초등	과학	4-1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VR
10	초등	사회	4-1	무형 문화유산 답사하기	VR
11	초등	사회	4-1	공공기관 견학하기	VR
12	초등	사회	4-1	주민참여 체험하기	VR
13	초등	사회	4-2	촌락과 도시의 문제 알아보기	VR
14	초등	사회	4-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모습	VR
15	초등	사회	4-2	세계 각국의 특별한 문화	VR
16	초등	사회	4-2	편견과 차별의 문제 가상 체험(휠체어 체험)	VR

❑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당초 ‘2023년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변환 추진계획(안)’의 사업 기간(’23.1월～12월)을 벗어난 2024년 2월 29일에 과업 명과 일부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2024년 7월 기준)에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의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계약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	계약방법
2023년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	㈜서커스컴퍼니	2024.2.29. ~ 2024.9.30.	실감형콘텐츠 10종 개발 및 기개발 콘텐츠 16종 수정·보완	577	협상에 의한 계약

자료: 교육부

<민간위탁사업(320-02) 계획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후[227]
사업명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변환사업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변환***
사업기간	2023.1월~12월	**계약일로부터~2024.9.30.**
사업내용	-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과융합형/교과심화형 실감형콘텐츠(VR,AR) 10종 개발 - 초등학교 사회, 과학 실감형콘텐츠(VR, 360) 16종 웹 VR 변환	-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과(2022개정 교육과정 영어, 수학, 정보) 실감형콘텐츠 10종 개발** - 기개발된 실감형콘텐츠 16종 변환

주: * 2024.2.29.체결된 계약명은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사업”임.

❑ 당초 계획(안)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의 ‘신규 실감형콘텐츠 개발 10종’과 ‘웹 실감형콘텐츠 변환 16종’은 다음과 같음.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사업 내역>

○ 신규 실감형콘텐츠(영어, 수학, 정보) 개발 10종

<표> 실감형 콘텐츠 개발 과목별 주제

과목	주제	
영어 2종	초등	한국으로 친구 초대하기: 한국에 놀러온 친구에게 식당, 놀거리 등의 선택 상황에서 묻고 답하고, 함께 놀기
	중등	세계여행 떠나기: 공항 - 면세점 - 항공기 - 여행지에서의 영어 회화
수학 4종	초등	도형과 측정
	초등	자료수집과 정리
	중등	생활속 각도와 기울기
	중등	스포츠활동에서 백터 개념 이해하기

227) 2023년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의 제안요청서(Ⅱ. 제안요청 내용 중 1. 제안요청 개요)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과목	주제	
정보 4종	초등	스마트 생활: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 체험
	중등	스마트 생활: 네비게이션과 자동 택배 배송시스템
	중등	컴퓨터 분해조립
	중등	인공지능의 원리 : 개념, 학습 방법, 생성형 AI의 원리

○ 기개발된 실감형콘텐츠 변환 16종

<표> 실감형 콘텐츠 개발 과목별 주제 (사회,과학: **초등3,4→초등3,5, 중1,2)**

번호	학교급	과정	과목	콘텐츠명	유형	비고
1	초등	3-1	사회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	VR	완료
2	초등	3-2	과학	땅에 사는 동물	VR	완료
3	초등	5-2	사회	고려의 문화유산 금속 활자	AR	완료
4	초등	5-2	사회	우리 생활에서 인권보호 체험하기	VR	완료
5	중	1-1	과학	지구 내부 구조 탐사	VR	완료
6	중	1-1	과학	석회동굴 탐험을 통한 형성과정의 이해	VR	완료
7	중	1-1	사회	열대 우림 및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생활	VR	완료
8	중	1-1	사회	이효석이 이야기 하는 메밀꽃 필 무렵	VR	완료
9	중	1-2	사회	나도 할 수 있다, 민사·형사 재판(판사 편)	VR	완료
10	중	2-2	과학	사람의 소화 기관과 소화 과정	VR	완료
11	중	2-1	과학	별의 일주운동	VR	완료
12	중	1-1	사회	해안 침식 지형의 형성과정	AR	예정
13	중	1-1	사회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정	AR	예정
14	중	1-1	사회	세계 자연유산을 가진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	AR	예정
15	중	2-2	과학	심장과 온몸에서의 혈액순환	AR	예정
16	중	2-1	과학	원소의 불꽃반응	AR	예정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당초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개발을 꺼리는 실감형콘텐츠를 국가가 개발하여 디지털교과서에 활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22.11.) 하였으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3.6.),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23.8.)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조기 추진이 곤란하였으며,

해당 계약 건은 교육부가 2023년 11월 초에 조달청으로 긴급 계약의뢰를 요청하여 조달청의 입찰공고('23.12.20.) 후 2024년 2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3호[228]에 근거하여 이월 처리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조[229]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제48조제1항[230]의 '세출예산의 이월금지원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

228)「**국가재정법**」**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229)「**국가재정법**」**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30)「**국가재정법**」**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의 정책적 변화[231]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최초 도입 교과('25년~, 수학, 영어, 정보)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의 추진계획을 2023년 11월 6일에서야 수립하고, 입찰공고[232]를 연도말에 추진한 것은 사전에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미흡하였으며, 정책 변화를 고려함이 없이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

<사업 추진 경과>

◦ 교육부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이러닝과 → 교육콘텐츠정책과, '23. 1. 1.)
◦ '23년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용 활성화 사업(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 포함)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23. 2. 9.)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23. 2. 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23. 6. 8.)
◦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사업' 추진 계획 수립('23. 11. 6.)**
◦ 사업 계약 의뢰(교육부 → 조달청, '23. 11. 7.)
◦ **사업 입찰 공고(조달청, '23. 12. 20.~'24. 1. 16.)**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실시(7개사, '24. 1. 30.)
◦ **사업 계약 및 추진('24. 2. 29.~)**
◦ 교과별 실감형콘텐츠 주제 선정('24. 3. 4.)
◦ 스토리보드에 따라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기개발 콘텐츠 웹 변환 작업 추진('24. 5~현재)

다.

231)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6.),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고시(2023.8. 개정),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2023.8.)
232) 조달청, '23.12.20.~'24.1.16.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33]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33)「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6 참조
Ⅰ. 일반지침 /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1-5. 예산의 이월

참고자료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변환 추진계획(안)**

□ 목적

○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 및 학습내용을 포함하는 **교과융합형/교과심화형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기개발한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감형콘텐츠에 대한 활용 방법 다양화를 통한 **콘텐츠의 질 제고 및 활용성 증대**

□ 개요

○ **(사업명)** 2023년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변환 사업**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내용)**

-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과융합형/교과심화형 실감형콘텐츠(AR, VR) 10종 개발
- 초등학교 사회, 과학 실감형콘텐츠(VR, 360) 16종 웹 VR 변환

○ **(예산액 / 과목)** 585백만원(23년 국고)

□ 주요 추진 내용

○ **교과융합형 / 교과심화형 실감형콘텐츠 개발(10종)**

①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감형콘텐츠 개발

- **(융합·심화형 학습주제)** 다양한 콘텐츠 체험을 희망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융합·심화형 주제 발굴
  -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목을 융합하여 다양한 학습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교과융합형 실감형콘텐츠 개발
  - ※ 교과서 내 학습내용을 확장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심화형 실감형콘텐츠 개발
- **(현장교사 참여 확대)** 주제 발굴 및 콘텐츠 기획·개발 시 현장교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요구 기반의 콘텐츠 개발

② 체험 요소 강화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콘텐츠 구현

- **(학생 조작활동 확대)** 학생 활동을 강화하는 조작 및 체험 요소 확대
- **(휴먼팩터 고려)** 어지럼증, 멀미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 학습효과를 높이는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제고

를 위한 설계 및 디자인 통일성 확보

- **(화질 및 음질 최적화)** 학교 활용 환경에 최적화된 고화질 및 고음질의 실감형콘텐츠 구현

③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영체제 지원

- **(다양한 OS 지원)** Android, iOS 용 태블릿 기반 개발
- **(사용자 활용도 제고)** 디지털교과서와의 연동 및 실감형콘텐츠 앱으로 다양한 활용 방법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활용도 제고

○ **웹 실감형콘텐츠 변환(16종)**

- **(최신 기술 적용)** 반응형 웹, 크로스브라우징, 웹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실감형콘텐츠 변환 추진
- **(활용 확대)** 웹 디지털교과서 및 교육용 플랫폼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변환된 실감형콘텐츠 서비스 페이지(에듀넷) 탑재

○ **품질 관리**

- **(심사위원회 운영)** 실감형콘텐츠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실감형콘텐츠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승인
- **(검수)** 실감형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규격 준수 여부 및 기술적 오류, 실감형콘텐츠 통합 앱에서 정상 작동 여부 등 검수

3) 영재교육 지원사업(1031-305)[23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재교육 지원사업(1031-305)은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을 통한 영재교육 관련 정책·자료의 연구·개발과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22억 3,900만원으로, 22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6%임.

<2023회계연도 영재교육 지원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영재교육 지원사업	2,201	-	2,239	2,229	-	10	99.6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지원	576	-	614	604	-	10	98.4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지원	1,625	-	1,625	1,625	-	-	100

자료: 교육부

234) 문의처: 02-6788-5184

나) 검토의견: 회계연도를 벗어난 예산집행 개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긍정적 기제로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의 경우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비’ 15억 9,500만원과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3,000만원을 포함한 16억 2,500만원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되었음.

< 2023년도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민간 위탁비 (320-02)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625**	**1,625**
	-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창의융합 캠프, 온라인 학습멘토링 등 제공	1,595	1,595
	-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 고도화	30	30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2023년도 영재키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2023.3.28.)하여 12개월의 사업 기간(2023.3.1.～2024.2.28.) 동안 초4～고1 학생 269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총 720명[235]에 대한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이앤시티와의 “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한 용역 계약(2024.1.3.～2024.2.16.)을 체결하여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재키움 프로젝트 시스템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적법한 이월 절차 없이 2023회계연도를 벗어난 2024년도에 계약을 체결,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236] 및 제48조[237]의 재정 운용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세출예산 이월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35) 기존참가 451명(초4~고3) +신규선발 269명(초4~고1), 초 342명(50.9%), 중 258명(38.4%), 고 72명(1.7%)

236)**「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37)**「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또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사업[238]의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기간(2023.3.1.~2024.2.28.)에 대한 협약을 계약기간의 시작일보다 늦은 2023년 3월 28일에 체결하고, 해당 15억 9,500만원의 사업비 중 1억 6,700만원을 이월 절차 없이 2023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상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교사연구회 지원비, 중앙컨설팅 활동수당 및 자문료, 국내출장비, 사무용품 구입, 홍보용품 구입비, 온라인 학습 멘토링 수업 멘토수당, 성과발표회 관련 비용, 수기 공모전 시상, 문화체험활동비 등”으로, 2023회계연도 및 2024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관련 지출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관련 회계연도 초과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기관	거래일자	금액	지급일 등	내용
서울대학교	2024-01-24	1,030		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교사 연구회 지원비_서울 2권역 연구회(박○○)
	2024-02-15	1,050		1/16 자문료_소외계층 영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자문(박○○, 조○○ 등 7인)
				중간 생략
	2024-02-26	547		인쇄비_보고서 출력 및 제본
	2023-02-28	1,728		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교사 연구회 지원비서울 중등연구회(서○○)
	소계	14,144		중간 생략
인천대학교	2024-01-12	500		전문가 멘토링데이 재료비(게임 참여자 독려용) 문화상품권
	2024-02-05	610	손○○ 등 3명	출장비_2024.1.25.~1.28./출장지: 제주도
	2024-02-05	1,096		자율연구프로그램 548,230원*2명 = 1,096,460

238)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 주관, KAIST 주최로 운영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교육부 주관, KAIST 주최, 4개 권역별 운영지원대학의 운영체제로 변경되었음.

기관	거래일자	금액	지급일 등	내용
	2024-02-13	661		대표교사 및 창의융합커무니케이터 교사 단체복 44,100원*15명 = 661,500원
	2024-03-12	3,500		홍보용품 수건제작 175학교*2명식 =350개/2개할인 (350개*10,000원=3,500,000원)
	2024-03-12	1,974	우판등심 등 7곳	회의장소: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 회의목적: 2023 영재키움 프로젝트 책자 제작 및 2024년 계획 등
	소계	15,200		중간 생략
대전대학교	2024-01-12	2,800	노○○ 등 14명	('23.12.04~12.18.) 2023년 영재키움프로젝토 하반기 중앙컨설팅 활동 수당
	2024-01-04	1,793	꿀벌담	홍보물품비_영재키움프로젝트 신청학교 홍보답례품
				중간 생략
	2024-02-29	1,200	고려기프트(주)	홍보물품비_에코백_고려기프트주식회사
	2024-02-29	950	용방카피랜드	소모품비_토너 및 잉크, 복사용지_용방카피랜드
	2024-02-16	340	박○○ 등 9명	국내출장_박○○ 등 9명, (23.8.11.~8.12., 23.8.25.~8.26., 24.1.25.~1.26.)
	소계	12,975		중간 생략
부산대학교	2024-02-29	2,640	농협	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례집 제작 등 1건
	2024-01-08	546	조○○	자율연구프로그램 조○○
	2024-01-17	1,400	김○○ 등 7명	2023년 중앙컨설팅(2차)
				중간 생략
	2024-02-07	4,354	서○○ 등 8명	자율연구프로그램
	2024-02-22	366	농협	지성문구 물품구매
	소계	12,395		중간 생략
KAIST	2024-01-25	1,100	2024-02-02	1/25 강사료_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멘토교사 협의회 강사료 (조○○, 권○○ 등 5인)
	2024-02-22	600	2024-02-29	2/22 강사료_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 멘토링 활동 우수 사례 발표 (권○○, 이○○ 2인)
				중간 생략
	2024-01-25	9,000	2024-02-05	1/25, 1/26 수당_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 멘토교사 협의회 회의수당(고○○, 곽○○ 등 45인)
	2024-02-23	14,400	2023-02-29	2/23 수당_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멘토교사 협의회 회의수당 (강○○ 등 36인)
				중간 생략
	2024-01-05	3,549	2024-02-19	남성용티셔츠==단체 티셔츠 61ea(대표멘토교사협의회)
	2024-02-29	30,000	2024-03-04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홈페이지 고도화
	2024-01-26	1,030	2024-02-19	1/26 문화체험활동비_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멘토교사 협의회 운영
	2024-01-26	13,589	2024-02-19	1/26 숙박료, 대관료, 식대_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멘토교사협의회 참석자 숙박료, 대관료 및 2이차 조식식대
	2024-02-19	3,000	2024-02-23	2/19 시상금_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수기 공모전 상금(장○○ 등 14명)
		112,211		중간생략
총합계		166,925		

주: 합계(소계)액은 생략된 집행내역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중 2024년도 지출내역을 재구성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동 사업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239]에 따른 학교회계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매년 이월 절차 없이 2개년도를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240]

이와 같이 학교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라 사업 기간을 정하더라도 사업예산은 「국가재정법」의 재정 운용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2023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지출행위는 이월 절차에 따른 회계처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241]

❑ 한편,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사업의 연간 교육프로그램[242]에 따르면, 우수 멘토링 사례 발표 및 공유, 수기 공모전 시상 등의 성과발표회는 매년 1월 중에 추진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성과발표회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안에, 당해연도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성과발표회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안에 포함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기간을 해당 회계연도 내로 설정함으로써 당해연도의 예산으

239)**「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240) 2023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지출내역 중에는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예산이 지출(지급)된 내역도 일부 있음.

241)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 시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음.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p. 208~214 참조

242)〔참고자료〕 "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간 주요 추진 일정(안)" 참조

로 그 회계연도의 경비만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이월 절차 없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의 재정 운용 규정에 따른 이월 절차에 부합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간 주요 추진 일정(안)

순	행사	일정	장소	비고
1	´23년 오리엔테이션	´23.5월	각 권역별 대학	• 신규 학생 및 멘토교사 • 기존참가자
2	온라인 학습 멘토링	´23.4월～´24.1월	온라인	• KAIST 재학생에 의한 수학·과학 멘토링
3	1차 중앙컨설팅	´23.5월～6월	온·오프라인	• 17개 지역별로 실시 - 서울·강원권(3개), - 경기·인천권(2개) - 경상권(5개) - 충청·호남권(7개)
4	SW·AI 창의융합캠프	´23.7월～8월	오프라인	• 초·중등: 집합 캠프
5	2차 중앙컨설팅	´23.10월 중	온라인	• 4개 권역별(온라인)로 실시 -서울·강원권. 경기·인천권 -경상권, 충청·호남권
6	SW·AI 전문가 멘토링데이	´23.10～11월 중	오프라인	• 4개 권역별로 실시 -서울·강원권. 경기·인천권 -경상권, 충청·호남권
7	수기공모전	´23.12월 중	온라인	• 학생 및 멘토교사 • 우수 수기내용 시상
8	성과발표회	´24.1월 중	온·오프라인	
9	대표교사 협의회	´23.8월 중, ´24.2월 중	오프라인	

자료: 교육부(2023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계획(안) 일부 발췌)

4)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1031-403)[24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1031-403)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 개발 지원, 학생·교원의 학습활동 지원, 교육환경 구축 등 과학·수학·융합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내역사업	사업 목적 및 내용
과학교육 내실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 선도모델 연구 및 구축·운영,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과학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추진
수학교육 내실화	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능형 수학실 구축·운영 및 교사·학생의 수학교육 활동지원 등을 통한 즐겁게 생각하는 수학교육 추진
융합교육 내실화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 연수, 융합형 연구과제, 학생 체험·탐구 활동 지원 및 융합교육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한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자료: 교육부

243) 문의처: 02-6788-5184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95억 200만원으로, 95억 200만원을 전액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출연되어 집행률은 100%임.

<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9,502	-	9,502	9,502	-	-	100.0
○ 과학교육 내실화	5,629	-	5,629	5,629	-	-	100.0
○ 수학교육 내실화	1,609	-	1,609	1,609	-	-	100.0
○ 융합교육 내실화	2,264	-	2,264	2,264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대학 연계 심화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제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과학교육 내실화’의 예산액 56억 2,900만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과학수업 개선’ 33억 7,300만원, ‘과학교육 활동 지원’ 22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과학교육 활동 지원’ 중 ‘대학 연계 심화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 7,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내역사업 ‘과학교육내실화’의 2023년도 집행내역>

세사업 명	예산 집행내역
과학교육 내실화	○ 예산액 5,629백만원 집행 - 과학수업 개선(3,373백만원) •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지원: 43교(신규)×502백만원+75교(계속)×10백만원=2,970백만원 • 과학과 교육과정 개선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20종×23.2백만원=463백만원 - 과학교육 활동 지원(2,256백만원) • 사다리프로젝트 운영: 125팀×10백만원 = 1,250백만원 • 과학창의대회: 13종×48.5백만원 = 630백만원 **• 대학 연계 심화프로그램: 376백만원** **※ 공동AP교육과정 운영·지원, 담당교원 연수, 공동AP전문가 협의회 운영**

❑ ‘대학 연계 심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과학고·영재학교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dvenced Placement)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A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을 독려하여 과학고와 과기대 간의 교육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과학 인재의 조기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동AP(Advenced Placement): 과학고등학교·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교과목을 선이수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교육부는 과학고(20개교) 교육과정에 대학 과목(14개)*에 준하는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이 관련 대학에 입학 후 해당 과목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수학) 미적분학 Ⅰ·Ⅱ,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학 총 4개, (물리) 일반물리 Ⅰ·Ⅱ, 일반물리학실험 Ⅰ·Ⅱ 총 4개, (화학) 일반화학 Ⅰ·Ⅱ, 일반화학실험 Ⅰ·Ⅱ 총 4개, (생물) 일반생물, (정보)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2023년) 공동 AP과목 이수 후 5개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 2,536명 중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1,360명으로 53.6%에 해당하며, 이수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과학고 학생의 비율이 증가 추세라는 입장임.

<최근 7년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학생의 학점 인정 현황>

(단위: 명, %)

연도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계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2017	139	100	71.9	29	1	3.4	51	2	3.9	74	7	9.5	14	5	35.7	307	115	37.5
2018	110	77	70.0	39	7	17.9	55	10	18.2	84	9	10.7	17	12	70.6	305	115	37.7
2019	120	90	75.0	22	9	40.9	55	17	30.9	100	36	36.0	18	11	61.1	315	163	51.7
2020	134	97	72.4	16	6	37.5	45	20	44.4	99	52	52.5	53	46	86.8	347	221	63.7
2021	128	101	78.9	58	16	27.6	65	17	26.2	55	28	50.9	93	79	84.9	399	241	60.4

연도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계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2022	140	105	75.0	80	19	23.8	43	6	14.0	69	41	59.4	77	63	81.8	409	234	57.2
2023	137	96	70.1	66	22	25.8	31	6	22.6	119	56	47.1	101	91	90.1	454	271	59.7
계	908	666	73.3	310	80	25.8	345	78	22.6	600	229	38.2	373	307	82.3	2,536	1,360	53.6

주: 공동AP 과목을 수강한 과학고 학생 중 5개 과기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

❑ 그러나, 공동 AP과목을 이수한 과학고(20개교) 학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은 2019년 29.2%, 2020년 30.6%, 2021년 36.5%, 2022년 37.4%로 최근 4년간 평균 33.4%이며, 공동 AP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후 학점 인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15.1%, 2020년 19.5%, 2021년 22.0%, 2022년 21.4%에 해당하여 최근 4년의 평균 비율이 19.5%로 다소 저조한 수준임.

<연도별 과학고(20개교)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의 학점 인정 현황>

(단위: 명,%)

연도	세종	한성	부산	부산일	대구일	인천	인천진산	대전동신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산	경남	창원	제주	총계 (a)	진학 학생 (b)	진학 비율 (b/a × 100)	학점 인정 (c)	인정 비율 (c/a × 100)
2019	118	98	70	68	47	48	46	57	42	68	47	30	50	35	55	24	34	63	51	28	1,079	315	29.2	163	15.1
2020	125	100	76	70	48	51	41	56	50	75	48	33	53	40	72	21	37	65	50	24	1,135	347	30.6	221	19.5
2021	94	91	76	71	45	52	47	63	45	67	45	31	51	36	69	32	35	66	51	26	1,093	399	36.5	241	22.0
2022	99	94	74	63	52	46	50	60	71	64	43	35	46	38	63	21	39	60	48	27	1,093	409	37.4	234	21.4

* 공동 AP 과목을 수강한 과학고 학생 중 5개 과기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률 및 이수 학점의 인정비율 등 사업 성과 대비 매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국가 재정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과학고별 공동 AP과목 이수 학생 현황**

연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1	세종 과학고	'19.1학기	3	118		118		118				354
		'19.2학기	1							118		118
		'20.1학기	4	125		87		112		51		375
		'20.2학기	2				89		113			202
		'21.1학기	4	94		66		78		44		282
		'21.2학기	2				60		71			131
		'22.1학기	4	99		62		87		49		297
		'22.2학기	2				78		92			170
		'23.1학기	4	112		81		93		50		336
		'23.2학기	2				81		94			175
		계	28	548	0	414	308	488	370	312	0	2,440
2	한성 과학고	'19.1학기	2	98						98		196
		'19.2학기	2			98				98		196
		'20.1학기	2	100						100		200
		'20.2학기	1			100						100
		'21.1학기	1	91								91
		'21.2학기	1			91						91
		'22.1학기	1	94								94
		'22.2학기	3			60		79		49		188
		'23.1학기	1	97								97
		'23.2학기	3			59		83		52		194
		계	17	480	0	408	0	162	0	397	0	1,447
3	부산 과학고	'19.1학기	3	70		46		53				169
		'19.2학기	0									0
		'20.1학기	3	76		44		65				185
		'20.2학기	0									0
		'21.1학기	3	76		46		57				179
		'21.2학기	0									0
		'22.1학기	3	74		39		55				168
		'22.2학기	0									0
		'23.1학기	3	78		46		57				181
		'23.2학기	0									0
		계	15	374	0	221	0	287	0	0	0	882
4	부산일 과학고	'19.1학기	3	68		68		68				204
		'19.2학기	0									0
		'20.1학기	3	70		70		70				210
		'20.2학기	0									0
		'21.1학기	3	71		35		69				175
		'21.2학기	0									0
		'22.1학기	4	63		63		63		52		241
		'22.2학기	0									0
		'23.1학기	4	81		81		81		67		310
		'23.2학기	0									0
		계	17	353	0	317	0	351	0	119	0	1,140

연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5	대구일 과학고	'19.1학기	3			23		24		24		71
		'19.2학기	0									0
		'20.1학기	3			27		21		21		69
		'20.2학기	0									0
		'21.1학기	3			21		24		37		82
		'21.2학기	0									0
		'22.1학기	3			20		40		29		89
		'22.2학기	0									0
		'23.1학기	2			31		39				70
		'23.2학기	0									0
		계	14	0	0	122	0	148	0	111	0	381
6	인천 과학고	'19.1학기	4	9		11		9		7		36
		'19.2학기	0									0
		'20.1학기	4	19		13		10		9		51
		'20.2학기	0									0
		'21.1학기	4	21		10		12		9		52
		'21.2학기	0									0
		'22.1학기	4	46		30		27		26		129
		'22.2학기	0									0
		'23.1학기	5	49		27		35		20	8	139
		'23.2학기	0									0
		계	21	144	0	91	0	93	0	71	8	407
7	인천 진산 과학고	'19.1학기	3			43		14		19		76
		'19.2학기	4	46			43		14	19		122
		'20.1학기	3			33		32		19		84
		'20.2학기	3				33		32	19		84
		'21.1학기	3			44		25		13		82
		'21.2학기	4	47			44		25	13		129
		'22.1학기	2			34				22		56
		'22.2학기	4	50			34		33	22		139
		'23.1학기	2			42		29				73
		'23.2학기	4	52			42		29	18		141
		계	32	195	0	196	196	100	133	164	0	986
8	대전 동신 과학고	'19.1학기	0									0
		'19.2학기	1	57								57
		'20.1학기	0									0
		'20.2학기	0									0
		'21.1학기	0									0
		'21.2학기	0									0
		'22.1학기	0									0
		'22.2학기	0									0
		'23.1학기	0									0
		'23.2학기	0									0
		계	1	57	0	0	0	0	0	0	0	57

연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9	울산 과학고	'19.1학기	3	42		42		42				126
		'19.2학기	3		42		42		42			126
		'20.1학기	4	50		34		45		21		150
		'20.2학기	4		50		34		45	21		150
		'21.1학기	4	45		32		40		18		135
		'21.2학기	4		45		32		40	18		135
		'22.1학기	4	46		32		42		18		138
		'22.2학기	4		46		32		42	18		138
		'23.1학기	4	46		27		37		28		138
		'23.2학기	4		46		27		37	28		138
		계	38	229	229	167	167	206	206	170	0	1,374
10	경기북 과학고	'19.1학기	4	68		68		68		51		255
		'19.2학기	0									0
		'20.1학기	4	75		61		63		51		250
		'20.2학기	0									0
		'21.1학기	4	67		60		59		38		224
		'21.2학기	0									0
		'22.1학기	4	65		52		56		47		220
		'22.2학기	0									0
		'23.1학기	5	73		58		61		61	22	275
		'23.2학기	0									0
		계	21	348	0	299	0	307	0	248	0	1,224
11	강원 과학고	'19.1학기	3	47		47		47				141
		'19.2학기	0									0
		'20.1학기	3	48		48		48				144
		'20.2학기	0									0
		'21.1학기	3	45		45		45				135
		'21.2학기	0									0
		'22.1학기	3	43		43		43				129
		'22.2학기	0									0
		'23.1학기	3	45		45		45				135
		'23.2학기	0									0
		계	15	228	0	228	0	228	0	0	0	684
12	충북 과학고	'19.1학기	1	30								30
		'19.2학기	0									0
		'20.1학기	0									0
		'20.2학기	0									0
		'21.1학기	0									0
		'21.2학기	0									0
		'22.1학기	0									0
		'22.2학기	0									0
		'23.1학기	0									0
		'23.2학기	0									0
		계	1	30	0	0	0	0	0	0	0	30

연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13	충남 과학고	'19.1학기	0									0
		'19.2학기	0									0
		'20.1학기	0									0
		'20.2학기	0									0
		'21.1학기	0									0
		'21.2학기	0									0
		'22.1학기	0									0
		'22.2학기	0									0
		'23.1학기	1	49								49
		'23.2학기	0									0
		계	1	49	0	0	0	0	0	0	0	49
14	전북 과학고	'19.1학기	1			17						17
		'19.2학기	1				17					17
		'20.1학기	1			27						27
		'20.2학기	0									0
		'21.1학기	1			22						22
		'21.2학기	0									0
		'22.1학기	1			22						22
		'22.2학기	0									0
		'23.1학기	2			21				14		37
		'23.2학기	0									0
		계	7	0	0	109	17	0	0	14	0	142
15	전남 과학고	'19.1학기	1	55								55
		'19.2학기	4		55	30		32		48		165
		'20.1학기	0									0
		'20.2학기	4	72		50		46		48		216
		'21.1학기	0									0
		'21.2학기	4	69		55		48		35		207
		'22.1학기	0									0
		'22.2학기	4	63		43		44		39		189
		'23.1학기	0									0
		'23.2학기	4	60		29		54		35		178
		계	21	319	55	207	0	224	0	205	0	1,010
16	경북 과학고	'19.1학기	2			24		24				48
		'19.2학기	0									0
		'20.1학기	3	21		21		21				63
		'20.2학기	0									0
		'21.1학기	3	32		32		32				96
		'21.2학기	0									0
		'22.1학기	2	21		21						42
		'22.2학기	0									0
		'23.1학기	3	22		22		22				66
		'23.2학기	0									0
		계	13	96	0	120	0	99	0	0	0	315

연번	학교명	개설 시기	개설 과목수	수강인원								
				미적 분학I	미적 분학II	일반 물리I	일반 물리II	일반 화학I	일반 화학II	일반 생물학	정보	합계
17	경산 과학고	'19.1학기	0									0
		'19.2학기	2	34		34						68
		'20.1학기	0									0
		'20.2학기	2	37						37		74
		'21.1학기	0									0
		'21.2학기	2	35				35				70
		'22.1학기	0									0
		'22.2학기	2	39		39						78
		'23.1학기	0									0
		'23.2학기	2	35						35		70
		계	10	180	0	73	0	35	0	72	0	360
18	경남 과학고	'19.1학기	3	63		58		54				175
		'19.2학기	3				37		40	29		106
		'20.1학기	4	65		37		51		34		187
		'20.2학기	3				37		51	34		122
		'21.1학기	4	66		46		40		33		185
		'21.2학기	3				46		40	33		119
		'22.1학기	4	60		33		49		25		167
		'22.2학기	3				33		49	25		107
		'23.1학기	4	70		46		41		41		198
		'23.2학기	3				46		41	41		128
		계	34	324	0	220	199	235	221	295	0	1,494
19	창원 과학고	'19.1학기	3			52		52		52		156
		'19.2학기	2	51						51		102
		'20.1학기	3			50		50		50		150
		'20.2학기	2	50						50		100
		'21.1학기	2			51		51				102
		'21.2학기	2	51						15		66
		'22.1학기	3			34		48		14		96
		'22.2학기	1	48								48
		'23.1학기	3			31		41		20		92
		'23.2학기	1	46								46
		계	22	246	0	218	0	242	0	252	0	958
20	제주 과학고	'19.1학기	4	28		28		28		28		112
		'19.2학기	3			28		28		28		84
		'20.1학기	4	24		24		24		24		96
		'20.2학기	0									0
		'21.1학기	4	26		26		26		26		104
		'21.2학기	0									0
		'22.1학기	3	27				27		27		81
		'22.2학기	0									0
		'23.1학기	4	20		20		20		20		80
		'23.2학기	0									0
		계	22	125	0	126	0	153	0	153	0	557
합계			350	4,325	284	3,536	887	3,358	930	2,583	30	15,933

5)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4031-301)[24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4031-301) 사업은 「진로교육법」 제15조[245]에 따라 지정된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진로교육 현황조사, 관계자 연수 및 진로교육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대한 보조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

244) 문의: 02-6788-5186

245)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3억 4,200만원이고, 3억 4,200만원 전액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

< 2023년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42	-	342	342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법률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동 사업은 「진로교육법」 제15조[246]에 따라 지정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제도적인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246)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국가진로교육센터(제15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제16조)에 관한 규정을 두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주요 업무(진로교육법 제15조제2항)>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주요 업무(진로교육법 제16조)>

-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

❑ 그런데, 2023년 동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액 3억 4,200만원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1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진로교육 관계자연수와 진로교육 연계·협력체제 구축에 사용됨.

「진로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 중 예산 집행내역에 포함된 사항은 “진로교육 현황조사” 뿐이고,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를 통해 일부 “진로전담교사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업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2023회계연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집행내역 >

○ 342 백만원
- 인건비: 142 백만원 (3명 × 47.3백만원)
- 기본경비: 40 백만원 (12개월 × 3.33 백만원)
- 사업비: 160 백만원
  - ▸진로교육 현황조사: 130 백만원(2식 × 65 백만원)
  - ▸진로교육 관계자연수: 15 백만원(2식 × 7.5 백만원)
  - ▸진로교육 연계·협력체제 구축: 15 백만원(1식 × 15 백만원)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기존에는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사업비의 부족으로 법률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최근 6개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액 >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425	360	340	342	342	307

자료: 교육부

❑ 2019년의 경우 2023년에 비해 8,300만원이 많은 4억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는 진로교육 기초연구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이 수행되었음[247].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법률에 따른 예산 집행 및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선정,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47) '19년 사업 내용(2019년 예산 5,500만원 편성, 자료: 교육부)
o 중장년 평생학습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안) 개발
 - 진로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o 중장년 평생학습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시범 운영 기관 및 참여자 모집, 시범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o 중장년 평생학습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수정·보완
o 중장년 평생학습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o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후속과제 제안

❑ 첫째, 1,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내역사업 ‘진로교육 관계자연수’의 수행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는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 교육’에 참여하여 진로교육 관련 발표를 진행하였고, 2차 연수로 중학교 진로전담교사를 대상으로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음. 2022년의 경우에는 진로체험센터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 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짐.

한편, 법률에 명시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 중 동 내역사업과 연관된 업무는 제7호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교육’인데, 사업의 내용 중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교육은 진로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뿐 동 내역사업이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교육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임. 진로전담교사 외의 진로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생각되나, 법률 규정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 내역사업의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내역사업 ‘진로교육 연계 협력체제 구축’ 사업의 경우 법률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동 내역사업은 국가 진로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진로교육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교육부 및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결과보고서에서 「진로교육법」 제4조제4항[248]과 제20조[249]를 사업 시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교육부는 진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체험처 발굴·지원 등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교육부의 설명과 같이 진로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되나, 교육부와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동 내역사업의 법률상 근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248)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49) **「진로교육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조제4항의 경우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일반적·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해당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시·도교육청 간 및 관련 전문기관 간의 교류를 주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또한, 제20조제1항의 규정 역시 교육감이 진로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됨.

❑ 「진로교육법」의 제정 취지 달성 및 효과적인 진로교육 정책 운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법률상 명시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25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하여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현안 분석, 조사·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동북아 역사·영토교육 사업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176억 2,600만원으로 전액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였고, 동북아역사재단은 176억 2,600만원 중 169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96.1%임.

250) 문의처: 02-6788-5184

< 2023회계연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7,626	-	17,626	16,938	-	688	96.1
○ 사업비	7,553	-	7,553	7,333	-	220	97.1
-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878	-	878	798	-	80	90.9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2,028	-	2,028	2,002	-	26	98.7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517	-	517	506	-	11	97.9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432	-	432	412	-	20	95.4
-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965	-	965	958	-	7	99.3
- 교류 및 홍보 사업	906	-	906	869	-	37	95.9
-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구축	823	-	823	822	-	1	99.9
- 연구관리 및 지원	204	-	204	197	-	7	96.6
-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800	-	800	769	-	31	96.1
○ 인건비	8,025		8,025	7,381		644	92.0
○ 경상비	2,992	-	2,992	2,942	-	50	98.5
○ 자체수입	△944	-	△944	△1,234	-	290	76.7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개선 필요

❑ 동북아역사재단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 예산과 이월결산잉여금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에 해당함.

❑ 자체수입은 잡수입과 이자수입으로 나뉘며, 이월결산잉여금은 전기이월금과 전전기이월금으로 구분됨. n년도에 발생한 처분전 결산잉여금이 n+1년도의 전기이월금 예산액보다 적을 경우, 그 전액이 n+1년도의 전기이월금으로 세입에 반영됨. 그러나 n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이 n+1년도 전기이월금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만 n+1년도의 전기이월금으로 반영되며, 나머지 금액은 n+2년도의 전전기이월금으로 반영하는 방식임.

<최근 5년 동북아역사재단 예산·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수입	1. 자체수입	94	168	112	163	130	157	142	336	142	432	219
	- 사업수입	-	-	-	-	-	-	-	-	-	-	-
	- 사업외수입	94	168	112	163	130	157	142	336	142	432	219
	(잡수입)	91	138	100	145	112	140	119	278	119	139	188
	(이자수입)	3	30	12	18	18	17	23	58	23	293	31
	2. 이월결산잉여금	1,748	1,545	1,518	1,006	1,407	377	802	759	802	802	725
	- 전기이월금	1,218	1,015	1,518	1,006	1,407	377	802	759	802	802	725
	- 전전기이월금	530	530	-	-	-	-	-	-	-	-	238
	3. 출연금	14,585	14,585	16,489	16,489	19,188	19,188	16,937	16,937	17,626	17,626	15,672
	4. 이월사업비(전기사고이월)	-	359	-	236	-	651	-	392	-	270	-
총 계		16,427	16,657	18,119	17,894	20,725	20,373	17,881	18,424	18,570	19,130	16,616

지출	1. 인건비	7,422	6,770	7,474	7,061	7,699	6,914	7,854	7,616	8,025	7,381	8,233
	2. 경상비	3,089	2,995	3,122	2,941	3,043	3,028	3,079	3,004	2,992	2,942	2,940
	3. 사업비	5,916	5,282	7,523	6,628	9,983	8,629	6,948	6,102	7,553	7,188	5,443
	4. 예비비	-	-	-	-	-	-	-	-	-	-	-
	5. 이월사업비(전기사고이월)	-	359	-	236	-	651	-	392	-	270	-
	6. 보조금 반납		-		-		-		-		-	
	7. 처분전 결산잉여금		1,015		377		759		1,040		1,198	
	- 퇴직급여적립금		-		-		-		-		-	
	- 경영평가성과급		-		-		-		-		-	
	- 기관운영적립금		-		-		-		-		-	
	- 차기이월		1,015		377		759		802		725	
	- 차차기이월		-		-		-		238*		473	
	8. 이월사업비(차기사고이월)		236		651		392		270		151	

주1: 2020년의 경우 결산잉여금에 포함된 도서판매대금 미수금이 대손 처리 등에 따라 조정된 것임.
2: 동북아역사재단은 '24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전전기이월금에 해당하는 '22년도 지출결산 차차기 이월금 238백만원을 누락한 결과 정부출연금을 동일한 금액만큼 더 지원받았으나, '25년도 예산 요구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전기이월금에 이를 포함시켜 정부출연금을 동일한 금액만큼 적게 지원받기로 하였음을 밝힘.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51]을 근거로 하는 기관운영 출연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80억 2,500만원, 경상경비 29억 9,200만원, 사업비 75억 5,300만원, 자체수입 △9억 4,400만원 등 17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인건비 73억 8,100만원, 경상경비 29억 4,800만원, 사업비 73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자체수입 4억 3,200만원, 이월결산잉여금 8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음.

251)**「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4조(출연금 등)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결산 세부내역>

'23년 예산		'23년 결산	
예산	산출내역	결산	집행내역
17,626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1,017백만원 **가. 임·직원 인건비:** - 114명×70,394,737원=8,025백만원 **나. 임차료 등 경상경비** - 12월×249,333,334원=2,992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7,553백만원 가.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 3개사업×292,666,667원=878백만원 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 2개사업×1,014,000,000원=2,028백만원 다.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 1개사업×517,000,000원=517백만원 라.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1개사업×432,000,000원=432백만원 마.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 4개사업×241,250,000원=965백만원 바. 교류 및 홍보 사업 - 4개사업×226,500,000원=906백만원 사.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구축 - 2개사업×411,500,000원=823백만원 아. 연구관리 및 지원 - 2개사업×102,000,000원=204백만원 자.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 2개사업×400,000,000원=800백만원 ○ **자체수입** - 1식×△944,000,000원=△944백만원	14,702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0,329백만원 가. **임·직원 인건비** - 정원 대비 평균 현원 104명 7,381백만원 나. **임차료 등 경상경비** - 임차료,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 2,948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7,333백만원 가.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 고조선·부여 연구 및 자료 집성 등 798백만원 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편찬 등 2,002백만원 다.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 독도·동해표기 확산 등 506백만원 라.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역사화해 모색 연구 등 412백만원 마.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등 958백만원 바. 교류 및 홍보 사업 - 동북아역사 교양총서 발간 등 869백만원 사.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구축 - 도서관·아카이브시스템 관리운영 등 822백만원 아. 연구관리 및 지원 - 동북아역사논총 발간 등 197백만원 자.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 연구 성과 및 자료 영문 번역 등 769백만원 ○ **자체수입** - 자체수입 432백만원, 이월결산잉여금 802백만원

❑ 동북아역사재단의 202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8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73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6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5년간 동북아역사재단의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인력 미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연평균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인건비 예산액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건비 예산액	7,422	7,474	7,699	7,854	8,025
인건비 집행액	6,770	7,061	6,914	7,616	7,381
집행잔액	652	413	785	238	644

자료: 교육부

<최근 5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정·현원 현황>[252]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정원	113	113	113	114	114	114
현원	103	108	111	111	108	102

주: 각 연도말 기준
자료: 교육부

❑ 이처럼 인건비 잔액이 매년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5년간 정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연구직의 이직률이 높은 데 주로 원인이 있음.

따라서 재단은 연구직 인력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52)〔참고자료〕"최근 5년간(2019~2024.6월) 동북아역사재단 정·현원 현황" 참조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동북아역사재단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정원	현원	비고
2019년	임원	2	2	
	연구직	49	45	
	행정직	32	30	
	무기계약직	30	26	
	계	**113**	**103**	
2020년	임원	2	2	
	연구직	49	47	
	행정직	32	32	
	무기계약직	30	27	
	계	**113**	**108**	
2021년	임원	2	2	
	연구직	49	48	
	행정직	32	32	
	무기계약직	30	29	
	계	**113**	**111**	
2022년*	임원	2	2	
	연구직	49	47	
	행정직	33	32	
	무기계약직	30	30	
	계	**114**	**111**	
2023년	임원	2	1	
	연구직	49	45	
	행정직	33	32	
	무기계약직	30	30	
	계	**114**	**108**	
2024. 8월	임원	2	2	
	연구직	49	40	
	행정직	33	32	
	무기계약직	30	28	
	계	**114**	**102**	

※ '22.3.월 직제규정 개정 시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

8. 학생건강정책관

<일반회계>

1) 교육급여(1131-300)[25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급여(1131-300)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12조[254]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바우처로 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255]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었음.

---

253) 문의: 02-6788-5186

2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급여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255) 「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교육급여의 비용은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율은 2022년 83.13%, 2023년 83.06%였음.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573억 1,300만원이며, 그중 1,573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100%임.

< 2023년도 교육급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급여	157,313	-	157,313	157,311	-	2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교육급여 신청절차 일원화를 통한 실집행 개선 필요

❑ 교육급여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람[256]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257]가 도입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됨.

256) 법률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서 변하지 않음.

257) 맞춤형 급여체계란,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다른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단일 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되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체계를 말함. 또한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급여를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전문부처에서 운영하도록 조정되었음.

❑ 동 사업의 2023년도 사업비는 교육급여 지원 예산과 교육급여 사업비,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 운영비로 구분되며,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다시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예산으로 구분됨.

< 2023년도 예산 집행내역 >

○ 교육급여 지원 예산: 157,313 백만원(수급자 313,442 명)
- 교육활동지원비: 139,730 백만원
※ (초) 130,389 명 × 415 천원 × 83.06% + (중) 86,159명 × 589 천원 × 83.06% + (고) 96,894명 × 654 천원 × 83.06% = 139,730 백만원
- 교과서비: (고) 2,899명 × 94 천원 ×83.06% = 226 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고) 5,518명 × 2,313 천원 × 83.06% = 10,601 백만원

○ 교육급여 사업비: 403 백만원
※ 금융통지비 38 백만원 + 교육급여프로그램 운영 305 백만원 + 지침 인쇄 및 배포 57 백만원 + 위원회 운영 3 백만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 운영비: 2,435 백만원

○ '21년 교육급여 집행액 정산분: 3,916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교육급여 예산액은 2019년 1,317억 800만원에서 2023년 1,573억 1,300만원으로 5년간 20%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 단가가 모든 학교급에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바, 예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및 지원인원 >

(단위 : 천원,명,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초등학교	지원단가*	203	206	286	331	415
	지원인원	119,049	124,356	131,521	133,103	127,517
	총액	24,167	25,617	37,615	44,057	52,920
중학교	지원단가	290	295	376	466	589
	지원인원	76,563	81,097	85,677	87,794	85,136
	총액	22,203	23,924	32,215	40,912	50,145
고등학교	지원단가	290	422	448	554	654
	지원인원	100,207	97,347	93,350	88,685	89,135
	총액	29,060	41,080	41,821	49,131	58,294

자료: 교육부

*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어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8월 이후 정확한 지원 인원 및 총액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급여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국가가 83.06%를 부담하고 나머지 16.94%는 지방비로 충당함.

❑ 교육급여는 기존에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현금(계좌이체)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왔으나, 저소득층 가정이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2.7.29.)에 따라 2023년도부터 지급방식을 바우처 지급 형태로 변경하였음.

❑ 한편,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한 2023년도의 경우 이전에 비해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교육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연도 말 기준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사업비 실집행률이 98.5%이었고 2022년의 경우에도 97.9%의 집행 실적을 보였음. 그런데 2023년의 경우 12월 기준 보조금의 실집행률이 81.2%로 조사되어 예년에 비해 집행 실적이 15%p 이상 감소함.

< 최근 3개년 교육급여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102,513	-	102,513	100,900	-	1,613	98.4%
2022	121,763	-	121,763	119,248	-	2,518	97.9%
2023 (12월)	154,473	-	154,473	125,390	-	(미정)	81.2%
2023 ('24년 7월)	154,473	-	154,473	140,022	-	(미정)	90.6%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고 해당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므로, 2023년 말 기준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추가적인 집행이 이루어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하지만 2024년도 7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의 실집행률은 90.6%로 여전히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비해 7~8%p가 낮은 상황이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바우처의 사용 기한을 차년도 8월까지로 설정한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특히,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바우처 형태로 변경된 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지급 방식 변경 이전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바, 동 사업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는 신청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던 당시에는 학부모 등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신청 당시 지정한 계좌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음.

❑ 그런데, 바우처 형태로 지급방식이 변경된 후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학부모 등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급여 보장 결정이 이루어진 후, 급여 정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되어 수급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여 바우처 지급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가 추가됨.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현금 지급 당시 신청 절차	바우처 신청 절차
① 교육급여 신청 접수	· 학부모 등이 온라인(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학부모 등이 온라인(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소득·재산 조사	·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부모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부모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③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교육급여 대상여부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 · 전송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학교)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 결정, 수급권재 해당여부 통지 및 **급여 지급**	· 교육급여 대상여부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 · 전송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학교)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 결정,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통지
④ 급여 정보 전송	-	·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수급권자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조회
⑤ 바우처 신청 접수	-	·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 신청 접수 및 바우처 포인트 배정 정리
⑥ 바우처 배정 및 지원	-	· 학교·교육청: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지급· 관리 · 한국장학재단: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지급**·관리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실제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된 인원은 총 33만 248명이지만 그중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하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인원은 31만 4,253명임[258]. 즉, 1만 5,995명의 인원이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추가 절차를 따르지 않아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교육급여 대상자 및 바우처 신청자 현황 >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급여 대상자	303,794	310,707	303,466	302,737 (330,248)	302,8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	-	-	-	314,253	260,131

자료: 교육부

* 2020년~2022년의 교육급여 대상자는 각 연도 말 기준 최종 대상인원이고 실제 해당 연도에 교육급여를 수급한 총인원은 그보다 많음.

** 2023년의 경우 연도 말 기준 최종 대상인원은 302,737명이며, 330,248명은 2023년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총인원에 해당함.

2024년의 경우에도 7월 기준 교육급여 대상자는 30만 2,825명이나, 그중 바우처를 신청한 인원은 26만 131명에 불과하여 4만 2,694명의 수급자가 아직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

258) 2024년 7월 통계이므로 교육급여바우처의 신청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해당함.

❑ 이전과 달라진 절차로 인한 수급자의 혼란 발생과 그에 따른 사업 집행 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바우처 지급 신청 없이 교육급여 신청만으로도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재 교육급여와 바우처 동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및 행복e음 시스템 기능 개선 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 있으나 교육급여의 신청 접수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동 사업의 특성상 집행률의 하락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교육급여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집행률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급방식 변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관리 개선 필요

❑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제도로,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의 중간적 형태에 있음.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수급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현금이 융통될 우려가 있는바, 현금 대신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런데, 바우처로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활동지원비의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일반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 특정 사용처에서만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데 비해[259], 동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사용처를 제외한 모든 사용처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성인용품 판매점 등으로, 해당 업종을 제외한 음식점, 가구점, 옷가게,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용처에서도 교육활동 지원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259)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일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만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및 2024년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 표와 같음.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제한 업종 >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자료: 교육부

❑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카드사별로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등에 따라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있는바,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는 것 역시 바우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현재 카드사별로 스포츠센터 및 레저시설, 종교단체 등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가 상이한데[260],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바우처 사용 혼란 발생이 우려되며 카드사 변경을 통한 사용제한 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260) BC카드 사용 시 종합레져타운, 기타레져업소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국민카드의 경우 종합스포츠센터, 레포츠클럽에서의 바우처 사용이 제한됨. 또한, 신한카드에서는 종교단체에서의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현대카드는 종교단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체 카드사가 가맹업종 운영체계를 통일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상 사용처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현재 최대한 카드사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 운영비로 2023년 24억 3,500만원과 2024년 19억 6,400만원의 예산 소요가 발생했으며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인해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생겨나 복지 공백이 우려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 방지'라는 바우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향후 교육부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무상교육(1602-300)[26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1602-300) 사업은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262]가 신설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및 제14조[263]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에 증액교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

261) 문의: 02-6788-5186

262)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9,028억 700만원이고, 전액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

< 20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고등학교 무상교육	902,807	-	902,807	902,807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264]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임.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학교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265].

264) 2019년 1학기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1인당 약 160만원이 한 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소요되었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교 무상교육”(2022.).

265)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함.

❑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2022년에는 1,186,479명의 학생이 9,094억 4,900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2023년에는 1,210,492명에 대하여 9,028억 7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2024년 역시 9,438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1,243,145명이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의 무상교육 대상 인원 추계에 따르면 2027년까지도 매년 120만명 이상의 학생이 동 사업에 의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됨.

< 고등학교 무상교육 최근 5개년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646,000	943,113	909,449	902,807	943,898

자료: 교육부

* 2020년의 경우 본예산에서 당초 6,594억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 과정에서 13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2~'27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인원 추계 >

(단위: 명)

학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인원	1,203,386 (예산상 인원) 1,186,479 (실제 인원)	1,197,019 (예산상 인원) 1,210,492 (실제 인원)	1,243,036 (예산상 인원) 1,243,145 (실제 인원)	1,245,480	1,212,826	1,221,846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는데[266], 법률 개정 당시 두 법률의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된 바 있음[267].

당시의 회의록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5% 수준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국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여 운영하되, 그 사이에 지속가능한 재정 대책을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268],

---

2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328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9826호)

267) 관련 안건들은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와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됨.

2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법률 제1667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전제하에 신설됨[269]. 따라서, 동 규정의 일몰 기한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이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시한 만료에 따라 기존의 국고부담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과 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5조 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점(2024년 68조 9,000억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동 사업비의 재원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교육부는 법령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국고예산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은 가능하므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012년 이후 장

269) **부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간 지속된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 논란[270]과 같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 사업비 비용 부담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법률상 근거와 재정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1]이 2024년 7월 16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270)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비용 부담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 회계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재원 부담 주체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현재는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어 유·보통합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812호)

3)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4131-306)[27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4131-306) 사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검정고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고 검정고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보조 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7억 9,800만원으로 전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부받은 7억 9,800만원 중 7억 9,1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99.1%임.

272) 문의: 02-6788-5186

< 2023년도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798	-	798	798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신속한 운영기관 선정 필요

❑ 동 사업은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검정고시 제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습자들, 특히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거점기관의 운영비 또한 지원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4,800만원이며, 55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4억 2,170만원, 5개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거점기관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실집행액은 4억 4,370만원인 것으로 보고됨.

❑ 한편, 동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 선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검정고시 시험은 매년 1회와 2회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과 3월에 운영기관의 선정이 이루어져 5월과 4월 진행된 검정고시 1회 시험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짐. 또한, 2022년의 경우 2021년 운영기관 선정 당시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에 선정된 71개 기관 중 66개 기관에서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고시 시험 일정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 그러나, 2023년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1회 시험이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지원기관 선정 결과가 5월 4일 발표되는 등 절차가 지연되어 1회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동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였음.

❑ 동 내역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시험일 기준)을 살펴보면, 1회와 2회 프로그램 참여자의 단순 합계를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2,153명과 2022년 2,155명에서 2023년 996명으로 50% 이상 감소하였고, 중복 집계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2021년 1,545명 2022년 1,584명에서 2023년 1,185명으로 약 2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검정고시 응시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1회	2회	계	1회	2회	계	1회	2회	계	1회	2회	계
프로그램 등록(참여) 인원	841	992	1,833	960	1,193	2,153	935	1,220	2,155	-	996	996
검정고시 응시자 수	445	522	967	496	630	1,126	563	660	1,223	-	599	599

주: 시험일 기준

자료: 교육부

<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자 제외) >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12세 이하	2	2	4	3	0
13~19세	153	187	200	144	37
20대	19	27	64	63	70
30대	30	35	79	97	69
40대	47	58	72	86	71
50대	269	209	293	236	144
60세 이상	594	723	833	955	794
합계	1,114	1,241	1,545	1,584	1,185

자료: 교육부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동 내역사업 보조사업자를 재지정하는 절차와 교육부의 비영리 민간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인해 운영기관의 선정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검정고시 1차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 연기된 2020년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4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 재지정 역시 법정 절차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으므로 대비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

특히,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사업 기간은 선정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운영기관 선정 전까지의 기간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검정고시 1회 응시자가 동 사업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운영기관의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2년의 경우에도 시험일은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운영기관 추가 선정 결과 발표가 4월 18일 이루어져 추가 선정된 5개 기관에서는 1회 시험 응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고, 2024년 역시 검정고시 1회 시험이 종료된 5월 3일에 운영기관 선정 발표가 이루어진바, 운영기관 선정 지연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정고시 시험일,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일 >

구분	검정고시 1회차 시험일	운영기관 선정 공고일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일
2020	5.8.*	3.2.	4.20.
2021	4.10.	2.10.	3.23.
2022	4.9.	3.7.	4.18.
2023	4.8.	3.9.	5.4.
2024	4.6.	3.27.	5.3.

자료: 자체제작

* 2020년 1회차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 11일에서 5월 8일로 연기됨.

아울러, 사업 수행 지연이 사전에 예상되었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교육부는 예산 편성 당시에 해당 사정을 반영하지 않음[273]. 참고로,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 가량 감소한 수준인 4억 4,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 수혜자 수는 중복 수혜자를 제외하더라도 1,185명으로 전년 1,584명 대비 25% 이상 감소하여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부진한 측면이 있음.

❑ 향후 교육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운영기관이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73) 2023년도 동 내역 사업 예산은 2022년 4억 9,000만원에서 4,200만원 감액된 4억 4,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감액이 아니라 운영기관 축소로 인한 감액이었음.

(2)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성과 미흡

❑ 동 사업 내역사업 중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등 수혜자의 감소 외에도 사업 성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71개 기관이었으나, 2023년의 경우 20% 이상이 감소한 55개 기관이었음.

< 검정고시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

(단위:개)

	2020년		2021년		2022*		2023년	
지원 ·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73	57	72	71	(연차) 69	66**	58	55
					(추가) 12	5		
거점기관	7	5	6	6	6	6	6	5

자료: 교육부

* 중·장기적 학습지원을 위해 2021년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시 지원 기간을 2년(1+1)으로 설정. 2021년 선정기관 71곳 중 66곳은 2022년 연차평가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추가 선정 평가에 따라 5곳을 신규로 선정함.

** 2021년 선정기관 71곳 중 2곳은 연차평가에 서류를 미제출 했으며, 2곳은 서류를 미제출, 1곳은 선정되었으나 사업 운영을 포기함.

❑ 동 내역사업은 기존에 교육프로그램 이용자의 연령 구성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부터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학습자의 학력 보완’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만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교육부는 해당 선정기준을 신규로 설정함으로 인해 운영기관의 참여가 감소했다는 설명임.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모집 당시 각각 73개와 72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2023년에는 58개 기관만이 지원에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운영 방식의 변경이 운영기관의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운영기관의 감소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대상이던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성인학습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의 경우 지원대상 기관이 33개로 2023년의 55개 기관에 비해 40%가 감소하였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는 동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전무한바,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동 내역사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합격률이 전체 검정고시 응시자 합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교육부는 2020년부터 '학습자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274]'을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현황조사에 따르면 동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운영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응시자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2023년 54.3%로 전체 검정고시 합격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측면이 있음.

< 시험별 검정고시 합격률 현황 >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초졸	91.34	92.42	94.67	91.52	92.66
중졸	82.89	83.82	83.25	83.91	86.21
고졸	71.47	79.17	80.41	82.73	84.19

자료: 교육부

274) 조사 항목: 프로그램 참여 인원, 검정고시 응시자 수, 검정고시 합격자 수, 응시율, 합격률

< 교육프로그램 이용자 합격률 현황 >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격률	-	61.8	50.4	50.7	54.3

자료: 교육부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검정고시 합격률이 낮아지고, 검정고시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이용자 중 50대 이상 고령 학습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275]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용자의 합격률인 54.3%는 60대 이상의 합격률인 59.5%(1회차)와 65.7%(2회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바, 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2023년 검정고시(고졸) 연령대별 합격률 >

(단위: %)

	12세 이하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3년 1회	86.4	87.0	71.7	63.9	73.9	70.2	59.5
23년 2회	87.8	89.7	80.4	75.1	77.9	72.9	65.7

자료: 교육부

275) 50대 이상 고령 학습자 비중: ('19) 77.5% ('20) 75.1% ('21) 72.9% ('22) 75.2% ('23) 79.2%

❑ 셋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중도포기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연령대별 교육프로그램 중도포기 비율 >

(단위: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21	**14.2**	**15.6**	**32.9**	**20.8**	**19.1**	22.7
2022	21.1	33.3	37.1	30.2	13.1	19.2
2023	**21.6**	**31.4**	**34.8**	**29.6**	**21.5**	20.0

자료: 교육부

◦ 중도포기 비율 = $\frac{\text{(총 참여 학습자 수 - 출석률 66.7% 이상 학습자 - 시험 합격자)}}{\text{총 참여 학습자 수}}$

(참고) 2019, 2020년에는 출석률로만 따져 이수여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연도 데이터는 제외

2021년과 비교할 때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중도포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10대와 20대, 40대에서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며 30대의 경우 증가 폭은 작지만 2023년 중도포기 비율이 34.8%로 절대적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임.

교육부는 10대와 20대 학습자는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꿈드림)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기반 검정고시 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이탈 유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고, 40대의 경우 중도포기 학습자 중 이주배경학습자가 증가한 것[276]이 중도포기자 비율의 증가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임.

276)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40대 중도포기자 중 이주배경학습자는 5명(15명 중 5명, 33%)이었는데, 2023년에는 12명(20명 중 12명, 60%)으로 증가함.

❑ 그러나, 30대와 50대의 경우에도 중도포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2022년에는 중도포기자 중 이주배경 학습자의 비율이 2023년에 비해 낮았음에도 중도포기자의 비율은 30.2%로 2023년보다 높았다는 점[277], 이주배경 학습자 역시 검정고시 교육프로그램의 수요자로서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전히 학습자의 중도포기 비율을 낮추고 검정고시 응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검정고시 응시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프로그램 등록(참여)인원	-	1,833	2,153	2,155	996
검정고시 응시자 수	-	967	1,126	1,223	599
응시율	-	52.8	52.3	56.8	60.1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성과를 개선하고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77) 2022년의 경우 40대 중도포기자는 총 25명이었고, 그중 이주배경학습자는 44%에 해당하는 11명이었음.

4)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4705-301)[27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4705-301) 사업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규정된 교육통계조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과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정과제 84-3[279]에 따라 2023년부터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가 내역사업으로 추가되었음.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및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사업은 디지털교육기획관 소속 교육데이터담당관이 담당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의 경우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의 소관 사업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음.

---

278) 문의: 02-6788-5186

279)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주요내용 중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69억 1,500만원이며, 65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00만원이 이월, 1,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5.3%임.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6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00만원이 이월, 1,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68.5%임.

< 2023년도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	6,915	-	6,915	6,596	302	17	95.3%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1,000	-	1,000	685	302	14	68.5%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연구용역 계약 사업 집행관리 개선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 중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국정과제가 수립됨에 따라 2023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의 현황과 개별 학교의 학생지원 사업 현황 등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으로는 10억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도 예산은 7,000만원이 감액되어 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됨.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액 10억원 중 6억 8,500만원만이 집행되고 3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금액은 2024년 6월 28일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됨.

❑ 동 실태조사 제안요청서상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 7월에서 8월 사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월에는 조사 설계 및 문항 개발에 착수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3월에는 자료 처리와 분석을 마치도록 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계약 체결이 9월에서야 이루어지고 실태조사 대상 학교와의 협력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4년 3월 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280]에 따라 사업 추진도 함께 지연됨.

❑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조달청으로부터 “협상순위 통보 및 기술협상 실시 안내”를 받은 후 협상을 완료하고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024년에는 계획한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280) (당초 계약기간 2023. 9. 13. ~ 2024. 4. 10. → (변경 계약기간) 2023. 9. 13. ~ 2024. 6. 30. 변경사유: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이 변경되어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용역 계약 기간 연장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 학교의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사 설계 등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기간 변경이었다는 설명임.

❑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의 질 제고를 위하여는 교육부의 설명과 같이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동 사업에 따른 실태조사의 목적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 또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됨.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81]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282]에 따를 때에도 가능한 사업이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4년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 학교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

28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82)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연구용역비(260목) (p.187)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교육부는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된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사업이 향후 계획한 일정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 교원학부모지원관

<일반회계>

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1033-300)[28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1033-300)은 중앙 단위에서 학부모정책을 추진하고 17개 시·도의 각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284]

283) 문의: 02-6788-5189

284)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5개 본부 중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각 시·도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3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2억 5,700만원으로 기관운영출연금 1억 3,300만원과 사업출연금 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 지원	257	-	257	257	-	-	100.0
○ 기관운영출연금	133	-	133	133	-	-	100.0
- 인건비	131	-	131	131	-	-	100.0
- 공공요금 등 제경비	2	-	2	2	-	-	100.0
○ 사업출연금	124	-	124	124	-	-	100.0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74	-	74	57	-	-	77.0
-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40	-	40	37	-	-	92.5
- 학부모정책 지원 기반 조성	10	-	10	30	-	-	3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출연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 2023년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사업수행자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기관운영출연금 1억 3,300만원과 사업출연금 1억 2,400만원 등 총 2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출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12조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85]

❑ 교육부는 출연금 집행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제13조(보호자),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및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를 제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기타 내용 생략)

285)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내용 생략)

❑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는 각각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부모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것이며, 「평생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 제19조에서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교육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각 조항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의 체계적 편성 및 집행 필요

❑ 2023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 지원 사업의 기관운영출연금 중 인건비 1억 3,100만원은 무기계약직 3인에 대해 집행되었으며,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286]에서도 4,300만원이 집행되었음.

그리고 정규직 2인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 세부사업에 편성된 인건비에서 집행되었음.

< 2023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관련 인건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집행액
무기계약직(3인)	일반회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131
	특별교부금	43
정규직(2인)	일반회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125
합계		299

자료: 교육부

28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력 중, 무기계약직 3인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인건비에서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규직 2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전체의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세부사업에 편성된 인건비에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별도의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인건비를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정규직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배치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 파악과 소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3)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게재 필요

❑ 2023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 지원 사업의 사업출연금 중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지원시스템 운영비 4,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학부모On누리[287])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게재된 콘텐츠는 총 101개[288]로, 각 콘텐츠는 60%이상 수강할 경우 이수된 것으로 처리됨.

❑ 2023년까지 게재된 콘텐츠를 기준으로 콘텐츠의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콘텐츠의 75.2%(101개 중 76개)는 이수자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 현황 >

(단위: 개, %)

신규 게재 연도	신규 게재된 콘텐츠 수(A)	이수율 50% 미만 콘텐츠 수(B)	이수율 저조(50% 미만) 콘텐츠 비중(B/A)
2013	7	7	100.0
2014	5	5	100.0
2015	6	5	83.3
2016	8	8	100.0
2017	11	9	81.8
2018	12	10	83.3

287) https://www.parents.go.kr
288) 2024년 4월 기준 118개의 콘텐츠가 게재됨

신규 게재 연도	신규 게재된 콘텐츠 수(A)	이수율 50% 미만 콘텐츠 수(B)	이수율 저조(50% 미만) 콘텐츠 비중(B/A)
2019	8	5	62.5
2020	10	5	50.0
2021	9	9	100.0
2022	18	8	44.4
2023	7	5	71.4
합계	**101**	**76**	**75.2**

주: 1. 콘텐츠 수는 2023년까지 신규 게재된 것을 기준으로 함.
2. 이수율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수강자 기준임.
자료: 교육부

❑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게재된 콘텐츠 중 지속하여 수강할 유인이 부족한 콘텐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부모의 수요와 콘텐츠의 시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게재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6100)[28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61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결산개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사업은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총 3개의 의무적 지출사업[29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계획액 4조 9,185억 600만원에서 자체변경으로 3,165억 8,000만원을 증액한 계획현액 5조 2,350억 8,600만원 중, 5조 2,188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62억 3,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9.7%임.

---

289) 문의: 02-6788-5189

29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202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자체 변경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4,918,506	316,580	5,235,086	5,218,856		16,230	99.7
○ 연금급여	4,108,274	270,139	4,378,413	4,362,354	-	16,059	99.6
○ 재해보상급여	44,834	7,823	52,657	52,539	-	118	99.8
○ 퇴직수당급여	765,398	38,618	804,016	803,963	-	53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연금 가입자, 탈퇴자, 수급자 등의 인원수와 평균 급여액을 바탕으로 총 급여액을 산출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사업의 2023년 당초계획액을 산출하였으나,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급여를 지급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사업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이에서 당초계획액 보다 많은 집행액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연금급여, 2022년에는 연금급여 및 재해보상급여에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3개 급여에서 모두 추가 소요액이 발생함.

특히 연금급여는 당초계획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3조 4,080억원 → 2022년 3조 7,030억원 → 2023년 4조 1,080억원)하였음에도, 추가소요액도 증가(2021년 300억원 → 2022년 1,560억원 → 2023년 2,540억원)하는 추세를 보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사업 당초계획액 및 집행액 추이 >

(단위: 십억원)

구분	2021			2022			2023		
	당초계획액 (A)	집행액 (B)	추가소요액 (A-B)	당초계획액 (A)	집행액 (B)	추가소요액 (A-B)	당초계획액 (A)	집행액 (B)	추가소요액 (A-B)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지급	4,210	4,181	28	4,593	4,683	△90	4,919	5,219	△300
- 연금급여	3,408	3,437	△30	3,703	3,860	△156	4,108	4,362	△254
- 재해보상급여	51	45	6	49	52	△3	45	53	△8
- 퇴직수당급여	751	699	52	840	771	69	765	804	△39

자료: 교육부

❑ 연금급여 등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는 수급자 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2014~2023년) 수급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수는 2014년 4만 7,782명에서 2023년 10만 1,01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 중 교원은 2016년에 2,808명으로 가장 적은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나 2023년에는 5,427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고, 사무직원도 2016년에 1,099명으로 가장 적은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나 2021년에 1,747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낸 이후 2023년에도 1,716명이 증가하였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수 추이 >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47,782**	53,170	57,077	61,666	67,559	73,752	80,465	87,093	93,872	**101,015**
(증감)	-	(5,388)	(3,907)	(4,589)	(5,893)	(6,193)	(6,713)	(6,628)	(6,779)	(7,143)
교원	33,523	37,605	40,413	43,890	48,303	52,935	57,960	62,841	68,120	73,547
(증감)	-	(4,082)	**(2,808)**	(3,477)	(4,413)	(4,632)	(5,025)	(4,881)	(5,279)	**(5,427)**
사무직원	14,259	15,565	16,664	17,776	19,256	20,817	22,505	24,252	25,752	27,468
(증감)	-	(1,306)	**(1,099)**	(1,112)	(1,480)	(1,561)	(1,688)	(1,747)	(1,500)	**(1,716)**

주: 수급자 수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기준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입자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2014~2023년) 가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 수는 2014년 28만 721명에서 2023년 33만 3,85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 중, 교원 가입자 수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3,864명이 감소하였으며, 사무직원 가입자 수는 2016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291]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3만 746명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 가입자의 증가폭은 4,485명으로 축소됨.

2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3934호, 2016.1.28. 일부개정, 2016.3.1. 시행)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수 추이 >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80,721	282,467	313,156	317,602	320,326	323,697	327,864	330,322	333,231	333,852
(증감)	-	(1,746)	(30,689)	(4,446)	(2,724)	(3,371)	(4,167)	(2,458)	(2,909)	(621)
교원	173,797	174,454	174,397	173,115	169,093	163,245	159,900	156,632	152,832	148,968
(증감)	-	(657)	(△57)	(△1,282)	(△4,022)	(△5,848)	(△3,345)	(△3,268)	(△3,800)	(△3,864)
사무직원	106,924	108,013	138,759	144,487	151,233	160,452	167,964	173,690	180,399	184,884
(증감)	-	(1,089)	(30,746)	(5,728)	(6,746)	(9,219)	(7,512)	(5,726)	(6,709)	(4,485)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와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되는 반면 가입자 수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어, 연금수지는 2022년에 2,019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 6,108억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재정수지는 2021년 2조 1,350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감소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금수지 및 재정수지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총수입(A)	75,895	72,863	66,460
연금부담금(a)	43,402	44,576	45,844
기타 이자수입 등	32,493	28,287	20,616
총지출(B)	54,545	57,071	61,236
연금급여(b)	41,575	46,595	51,952
기타 사업비	12,970	10,476	9,284
재정수지(A-B)[1)]	21,350	15,792	5,224
연금수지(a-b)	1,827	△2,019	△6,108

주: 1) 재정수지는 투자증권평가손익금액 미포함 금액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29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서 5주년 주기로 시행한 2020년 연금재정 장기추계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기추계 결과 >

(단위: 억원)

구분	2021	…	2029	…	2049	…	2080
총수입(A)	44,389		56,495		64,203		62,851
총지출(B)	35,766		56,520		94,527		162,864
재정수지(A-B)	8,623		△24		△30,324		△100,013
기금액	223,393		251,224		-		-

주: 2020년 제5차 재정재계산 결과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2~207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연령계층별 비중이 202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71.1%, 고령인구 17.4%, 유소년인구 11.5%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2072년에는 고령인구 47.7%, 생산연령인구 45.8%, 유소년인구 6.6%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2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2022~2072년) >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총인구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고령인구 (65세 이상)	898	944	994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17.4)	(18.2)	(19.2)	(20.3)	(25.3)	(34.3)	(40.1)	(44.2)	(47.7)
생산연령인구 (15~64세)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71.1)	(70.7)	(70.2)	(69.5)	(66.6)	(58.0)	(51.9)	(48.9)	(45.8)
유소년인구 (0~14세)	595	571	549	526	416	388	375	293	238
	(11.5)	(11.0)	(10.6)	(10.2)	(8.1)	(7.7)	(8.0)	(6.9)	(6.6)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령계층의 인구가 해당 연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추계 기준, 2023.12.

❑ 또한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72년 27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폐교 등 학교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자 수 감소 및 수급자 수 증가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학령인구(6~21세)(2022~2072년) >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합계	750	730	715	698	597	412	425	377	278
증감	-	△20	△15	△17	△101	△185	13	△48	△99
(증감률)	-	(△2.7)	(△2.1)	(△2.4)	)(△14.5	(△31.0)	(3.2)	(△11.3)	(△26.3)
초(6-11)	270	261	248	234	161	156	153	123	94
중(12-14)	137	136	138	140	115	68	83	71	48
고(15-17)	132	136	138	137	133	69	82	74	52
대(18-21)	210	197	190	187	188	119	108	109	8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추계 기준, 2023.12.

❑ 폐교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규정된 직제와 정원의 개정, 폐지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준용되어,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함.[293]

폐교로 인한 연금은 2017년 49명에 대해 총 12억 1,6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에는 379명에 대해 총 80억 7,6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시연령보다 조기에 지급된 금액[294]은 30억 2,800만원임.

<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 수		49	304	297	321	340	353	379
지급액	폐교~개시연령[1] 전	709	4,020	4,048	3,685	3,628	3,407	3,028
	개시연령 이후	507	1,536	2,157	2,570	3,251	3,995	5,048
	합계	1,216	5,556	6,205	6,255	6,879	7,402	8,076

주: 1) '개시연령'은 폐교가 아닌 '일반 퇴직'에 따른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9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기타 내용 생략)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기타 내용 생략)

294) < 1996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

퇴직 연도	일반 퇴직	직제 개폐 등으로 퇴직
2016년~2021년	60세	퇴직한 즉시
2022년~2023년	61세	퇴직 +1년
2024년~2026년	62세	퇴직 +2년
2027년~2029년	63세	퇴직 +3년
2030년~2032년	64세	퇴직 +4년
2033년~	65세	퇴직 +5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3561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부칙 제7조 및 제8조

<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자의 개시연령별 · 학교급별 분포현황 >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인원	1	17	118	224	19	379
(비중)	(0.3)	(4.5)	(31.1)	(59.1)	(5.0)	(100.0)

(단위: 개, 명)

유치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특수학교		합계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2	2	6	35	4	84	7	247	2	11	21	379

주: 2023년 수급자 기준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효율적 기금운용 등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으나,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 가입자 수 감소와 퇴직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연금 재정 악화가 예상되므로,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6034-300)[29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6034-300)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해 전산 관련 전문 분야에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경영효율성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결산개요

❑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은 6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계획액과 동일한 계획현액 중 58억 9,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7.5%임.

< 2023년도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용 등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정보시스템구축	6,044	-	6,044	5,892	-	152	97.5
○ 시설장비유지비	2,795	-	2,795	2,654	-	141	95.0
○ 일반연구비	2,392	-	2,392	2,390	-	2	99.9
○ 자산취득비	857	-	857	848	-	9	98.9

자료: 교육부

295) 문의: 02-6788-5189

나) 검토의견: 정보화 관리용역사업의 적정 사업 및 비목 편성 · 집행 필요

❑ 2023년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각종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26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 중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계약명	2023년 사업기간 (총 계약기간)	2023년 집행액 (총 계약액)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23.1. ~ 12. (2022.7. ~ 2024.6.)	1,424 (7,070)
자산운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23.1. ~ 12. (2023.1. ~ 2025.12.)	564 (2,154)
보안관제 운영 및 유지보수	2023.1. ~ 12. (2023.1. ~ 2025.12.)	396 (1,186)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2023.1. ~ 12. (2020.3. ~ 2024.12.)	5 (14)
통신선 및 CMS 사용	2023.1. ~ 12. (2023.1. ~ 2025.12.)	181 (664)
단일 기반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2023.6. ~ 12. (2023.6. ~ 2024.7.)	24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분담금)	2023.1. ~ 12.	60
합계		**2,654**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그러나 시설장비유지비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등의 용역 비용에 적합한 비목이므로,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각종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비교 >

구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관리용역비(210-15목)
내용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 p.158, p.163

❑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단일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6034-300)' 세부사업과 '기타경비(6376-200)' 세부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각 집행되었음.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1	2022	2023
[6000]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6034]정보화사업	[300]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525	1,493	1,424
[6300]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영비	[6376]기금운영비	[200]기타경비	1,981	2,046	2,099
합계			3,506	3,539	3,523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09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 주요사업비에 편성되지 않아 기본경비인 '기타경비(6376-200)'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10년에 주요사업비로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6034-300)’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으나, 기본경비 추진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하여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획재정부 지침[296]에 따라 신규 시스템의 도입비는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6034-300)’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기타경비(6376-200)’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도 포함되므로, 신규 시스템의 도입비와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모두 해당됨.[297]

또한 정보화 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반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분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침.[298]

296)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p.14
297)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pp.42~56
29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

❑ 이와 달리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과 PC 교체 등에 관련된 소규모 전산 운영 경비가 해당됨.[299]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신규 시스템 도입비를 정보화 사업 예산에서 집행하고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정보화 사업 예산과 기본경비를 구분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보화 사업은 예산 편성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격을 달리하는 두 세부사업 예산으로 단일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주요사업비의 정보화 사업으로 운영할 부분과 기본경비인 기타경비로 운영할 부분을 구분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99)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p.14

10.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일반회계>

1)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1035-404)[30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1035-404)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의 매칭을 연계하는 내용의 사업임. 동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사업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교육기부 자원 발굴, 체계적 지원 강화,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36억 7,000만원인데, 전액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

300) 문의: 02-6788-5186

< 2023년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3,670	-	3,670	3,670	-	-	100%
- 교육기부 자원 발굴	683	-	683	683	-	-	100%
- 체계적 지원 강화	610	-	610	610	-	-	100%
-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886	-	886	886	-	-	100%
-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1,391	-	1,391	1,391	-	-	100%
- 은퇴인력 등 활용 개인교육기부	100	-	100	100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교육기부 실적 개선 필요

❑ 동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는 교육기부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교육기부 수요·공급의 효율적 매칭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통해 체험 전시장을 제공하며, 상·하반기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제공과 교육기부 캠페인으로 교육기부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특히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건수가 2020년 4,381건으로 전년대비 25% 가량이 줄었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019년 860만 명에서 2020년 225만 명으로 약 75%가 감소하였음.

교육기부 박람회의 경우에도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2020년 기업과 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자 수 또한 전년대비 41%에 불과한 6만 명을 기록함.

그러나 2021년 이후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건수는 6,800건 이상을 유지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였고, 교육기부 박람회 방문자 수 역시 2023년 18만 명 이상으로 조사되어 박람회의 전반적인 실적 또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기부 실적 현황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프로그램 운영 건수(건)	5,094	5,809	4,381	6,805	6,859	6,905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8,314,448	8,608,488	2,249,599	5,552,845	5,786,733	5,977,887

자료: 교육부

< 교육기부 박람회 실적 현황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간	11.22~ 11.25	10.23~ 10.26	12.14~ 12.20	11.23~ 12.2	10.7~ 10.10	11.30~ 12.3
참여기업 수	24	41	11	29	18	28
참여기관 수	122	99	45	68	76	106
방문자 수 (명)	136,015	145,500	60,355	155,300	164,148	181,022

자료: 교육부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

❑ 다만, 여전히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는 2023년 약 598만 명으로 2019년 860만명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인바,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교육기부 주체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기관·단체·개인 등이 교육기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개인교육기부자는 2,305명으로 전년 대비 115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에 전년 대비 111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개선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하여는 저조한 추세임.

< 개인 교육기부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가 인원	542	164	281	201	244	146	111	115
개인 교육기부자 누적 인원	1,043	1,207	1,488	1,689	1,933	2,079	2,190	2,305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동 사업의 내역 중 우수 교육기부 기관·단체 인증 사업[301]의 경우 2023년 37개 기관이 신규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누적 741개 기관) 2022년보다 성과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추이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현황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우수기관 수 (인증제, 누적)	537	588	623	669	704	741
기업	84	95	97	101	103	113
공공기관	116	132	149	174	193	208
단체·협회	91	94	100	108	113	117
대학	84	88	89	90	95	99
동아리	162	179	188	196	200	204
전년 대비 증가 수	67	51	35	46	35	37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아울러, 교육부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기관과 교육기부 활성

301) 우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임.

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교육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의 최근 실적 역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기업 49개, 공공기관 34개, 대학 34개, 협회・단체 29개 등 11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 업무협약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않음.

< 교육부-기업 등 교육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현황 >

연도	기업	공공기관	대학	협회・단체	합계
2017	3	3	-	-	6
2018	2	3	-	-	5
2019	2	2	1	1	6
2020	-	-	-	-	0
2021	1	-	-	1	2
2022	1	-	-	-	1
2023	-	-	-	-	0
누적	49	34	3	29	115

자료: 한국과학창의재단,「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2023)

❑ 동 내역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의 경우에도 2023년 335개 동아리만이 운영되어 2019년 570개 동아리가 운영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저조한 측면이 있음.

<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현황 >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수	581	570	200	355	353	335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교육부는 향후 다양한 교육기부 주체를 확보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내실화함으로써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법적 근거 없는 출연금 지급 부적절

❑ 동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12조[302]가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금은 반드시 개별 법률에 교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음.

❑ 교육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3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음[303].

그러나, 동 조항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

302)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03)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있다는 일반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과학창의재단이 동 사업을 수행할 근거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304],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 지원'이라는 과학창의재단의 설립 목적 및 재단의 기능, 재단이 수행하는 여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과학창의재단이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04)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4)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30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 사업은 장애학생 대상 예술 중·고등학교인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과 전국단위 모집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인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그리고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인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세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특수학교 설립 사업으로,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74억 300만원인데, 173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5,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9.7%임. 부산대·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동 사업비는 전액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집행됨.

305) 문의: 02-6788-5186

< 2023년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17,403	-	17,403	17,349	-	54	99.7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	-	-	-	-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17,403	-	17,403	17,349	-	54	99.7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	-	-	-	-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조속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필요

❑ 동 사업은 2017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교육부가 2017년 기준 174개교였던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면서[306] 구체적으로 통합유치원,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충하겠다는 추진과제를 설정함에 따라 시작된 사업임.

306) 2023년 6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4개소로 증가하였음.

2018년에는 부산대학교와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총사업비 심의·확정이 이루어졌고,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2021년 공모 선정 및 총사업비 심의·확정이 이루어짐. 당초 교육부는 부산대에는 예술 분야, 공주대에는 직업교육 분야, 그리고 교원대에는 체육 분야에 특성화된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고, 부산대·공주대는 2024년 3월, 교원대는 2025년 3월에 부설 특수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사업 개요 >

구 분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기간	2019년～2024년	2019년～2024년	2021년～2025년
학교유형	예술 중고등학교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체육 중고등특수학교
학급 수	21학급(중: 9학급, 고: 12학급)	18학급(고)	21학급(중: 9학급, 고: 12학급)
위 치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내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한국교원대학교 캠퍼스 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부지면적	16,675㎡	62,566㎡	26,000㎡
건축규모	연면적 14,588㎡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789㎡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942㎡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백만원)	48,172 '19년: 1,361(설계비) '20년: 195(공사비) '21년: 13,186(공사비 및 부대비용) '22년: 4,954(공사비, 감리비 등)	33,247 '19년: 1,341(설계비) '20년: 537(공사비) '21년: 11,164(공사비 및 부대비용) '22년: 4,002(공사비, 감리비 등) '23년: 13,903(공사비) '24년: 2,300(공사비, 부대비용)	46,305 '21년: 1,950(설계비) '22년: 9,557(공사비, 감리비 등)

자료: 교육부

❑ 그런데,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 2학기 개교 예정으로 현재 입학생을 모집하는 중에 있는 데 비해 부산대·교원대 부설 특수학교는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이에 202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반복해서 이월되고 있음.

< 최근 5개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연도	교육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19	1,361	1,361	0	1,361	16	1,345	0	1.2%
	2020	195	195	1,345	1,540	800	736	4	51.9%
	2021	13,186	13,186	736	13,922	768	13,154	0	5.5%
	2022	4,594	4,594	13,154	17,748	0	17,748	0	0.0%
	2023	0	0	17,748	17,748	0	17,748	0	0.0%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19	1,341	1,341	0	1,341	0	1,341	0	0.0%
	2020	537	537	1,341	1,878	927	951	0	49.4%
	2021	11,169	11,169	951	12,120	2,088	10,032	0	17.2%
	2022	4,002	4,002	10,032	14,034	12,246	1,755	33	87.3%
	2023	13,903	13,903	1,755	15,658	14,169	1,435	61	90.5%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21	1,950	1,950	0	1,950	77	1,873	0	3.9%
	2022	9,557	9,557	1,873	11,430	445	10,885	100	3.9%
	2023	-		10,885	10,885	506	10,379	0	4.6%

자료: 교육부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사업부지 확정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한 부지선정 지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로 인한 지연,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밟는 중이지만 부산시·금정구와의 협의 역시 지연되는 중임.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연도별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 >

연도	계획	집행
2019	· 사업부지 확정	· 기본계획(구상) 수립 · 사업관련 유관기관(단체) 협의
2020	· 사업부지 확정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 사업부지 확정 ·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5자간 MOU 체결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2021	· 도시관리계획 변경 · 설계용역 완료	· (계획,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2	· 공사발주	· 도시관리계획 변경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설계용역 완료
2023	· 공사계속 및 준공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 6월 내에 도시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는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여 2024년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나, 7월 말 기준 여전히 도시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교육부는 법령에 따른 건축기획, 공공건설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 준수로 인해 설계 단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이「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재검토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연도별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 >

연도	계획	집행
2021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 특수학교 설립 사업 공모 선정 · 건축기획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 공사계약 의뢰 및 계약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부설특수학교 설계공모 · 계획설계적정성 검토 및 계획설계 완료 · 중간설계 실시
2023	· 공사 착공 및 골조 공사 완료	· 중간설계적정성 검토 및 중간설계 완료 ·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시행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부는 2024년 6월까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7월부터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시작하여 12월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임.

❑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 완료 시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307]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특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 및 제50조[308]에 따를 때 6개월 이내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 각각 9개월과 10개월이 소요된바[309],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

307) 사업이 시작된 2017년 89,353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109,703명으로 20% 이상 증가함.

30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③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철도부문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09) 교육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제기하여 진행하는 행정절차로 기획재정부의 지시를 받은 KDI에서 진행하는 용역인바, 해당 용역의 검토기간 및 검토결과는 기획재정부 및 KDI의 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임.

(2) 반복되는 사업비 재재이월 부적절

❑ 동 사업은 교육부의 직접 수행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교육부가 각 국립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 예산이 반복해서 재재이월되고 있고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에도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이 2022년 재이월, 2023년에는 재재이월되었음.

< 최근 5개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연도	교육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19	1,361	1,361	0	1,361	16	1,345	0	1.2%
	2020	195	195	1,345	1,540	800	736	4	51.9%
	2021	13,186	13,186	736	13,922	768	13,154	0	5.5%
	2022	4,594	4,594	13,154	17,748	0	17,748	0	0.0%
	2023	0	0	17,748	17,748	0	17,748	0	0.0%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19	1,341	1,341	0	1,341	0	1,341	0	0.0%
	2020	537	537	1,341	1,878	927	951	0	49.4%
	2021	11,169	11,169	951	12,120	2,088	10,032	0	17.2%
	2022	4,002	4,002	10,032	14,034	12,246	1,755	33	87.3%
	2023	13,903	13,903	1,755	15,658	14,169	1,435	61	90.5%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21	1,950	1,950	0	1,950	77	1,873	0	3.9%
	2022	9,557	9,557	1,873	11,430	445	10,885	100	3.9%
	2023	-		10,885	10,885	506	10,379	0	4.6%

자료: 교육부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재재이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월절차 없이 실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보관할 수 없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48조[310]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311]가 명시이월비의 재이월을 ‘사고이월’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이 아닌 경우에는 명시이월비를 재이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바, 동 사업 예산의 재재이월은

---

31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311) **「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하는 사업비 집행으로 판단됨.

❑ 반복되는 사업비의 재재이월과 관련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첫째, 동 사업 사업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의 적용대상으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국립대학회계법」 제11조[312]는 대학회계의 세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법 제4조[313]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라 부속학교도 대학의 부속시설에 포함되므로 부속학교 설립을 위한 동 사업 예산 역시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에 해당

31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31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하여 동 사업 사업비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국립대학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둘째, 동 사업 예산의 재재이월은 「국립대학회계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월임. 「국립대학회계법」제20조[314]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이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재이월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교육부는 동 사업 예산은 해당 규정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었으므로 적법한 이월이라는 입장임.

31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다만, 동 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비록 국립대학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국립대학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 예산은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이나 노후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목적의 예산이 아니라 “특수학교의 확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의 예산에 해당하므로,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각 국립대학이 「국가재정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제20조제2항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동 조항이 「국가재정법」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재재이월까지 허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재정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사업비의 재이월은 적법한 이월에 해당하지만, 재재이월까지 적법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 사업과 같이 사업비를 반복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20조의 취지에 반하며, 특히 동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상의 이월절차가 아닌 각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를 이월·재이월하였으므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보관할 수 없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은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과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 예산의 재재이월은 위법성의 여지가 있는 예산 운용이라고 판단됨.

❑ 향후 교육부는 동 사업 예산을 「국가재정법」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영유아정책국
[영유아 보육 이관 사업]

<일반회계>[315]

1)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31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 미지급금 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15)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2023년도 사업은 종전의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였으나 부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주체는 업무를 이관받은 교육부로 표기함.
316)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3조 25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383억원을 예비비로 배정하여, 예산현액은 3조 1,634억 4,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됨.

<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영유아보육료 지원	3,025,145	138,300	3,163,445	3,163,445	-	-	100
○ 0~2세 보육료	2,836,629	138,300	2,974,929	2,974,929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36,629	138,300	2,974,929	2,974,929	-	-	100
○ 장애아 보육료	66,422	-	66,422	66,422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6,422	-	66,422	66,422	-	-	100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28,309	-	28,309	28,309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309	-	28,309	28,309	-	-	100
○ 연장보육료 지원	77,485	-	77,485	77,485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7,485	-	77,485	77,485	-	-	100
○ 미지급금 지원	16,300	-	16,300	16,300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6,300	-	16,300	16,300	-	-	100

나) 검토의견: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의무지출 사업의 예비비 편성 지양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317]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기관보육료(0세반: 599천원, 1세반: 326천원, 2세반: 221천원) 및 부모보육료(0세반: 514천원, 1세반: 452천원, 2세반: 375천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318]

❑ 2023년도 예산액은 3조 251억 4,500만원이며, '0~2세 보육료'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배정('23.9.25.)을 통해 1,383억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3조 1,634억 4,5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의 '0~2세 보육료'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출생아 수 및 9월 이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값에 따른 0~2세 영아 수에 월별 보육

---

317)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3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차등보조율 ± 10%)이며, 평균보조율은 69.5%임.

료 이용률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인원을 월평균 53만명으로 산출하고, 평균 국고보조율 69.5%를 기준으로 최종 예산액을 산출하였음.

<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세부 산출내역 >

○ **0~2세 보육료 : 2,836,62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836,629백만원**

가. '22.1~8월 출생아 수 반영 9월 이후부터 중위추계 반영

- (0세반) (63,843×599천원 + 70,209×514천원)×12×69.5%
- (1세반) (138,787×326천원 + 201,672×452천원)×12×69.5%
- (2세반) (164,783×221천원 + 247,938×375천원)×12×69.5%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2세반 아동 全 계층**
- (지원인원) ('23년) **530천명**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전년 대비 △5.7%)
- (지원단가) 기관보육료 5.0%, 부모보육료 3.0% 인상
- (국고보조율) ('22) 69.5% → **('23) 69.5%**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구분		보육아동수(명)		보육료 지원단가(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	부모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단가)	부모보육료 (지원단가)
0세반	'23년생	9,965	9,965 *부모급여 예산	599	-
	'22년생	53,878	70,209	599	514
1세반	'21년생	138,787	201,672	326	452
2세반	'20년생	164,783	247,938	221	375
총계		**367,413**	529,784		

※ 0~2세 보육료는 기관보육료(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 및 부모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바우처 지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률을 반영하여 예산 산출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3년생(0~11개월) 부모보육료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예산에 반영

자료: 교육부

❑ 그런데, ’23년 8월까지의 보육시설 이용 영아의 수가 이미 예산안 산출 시 예상인원인 53만명의 9.25%에 해당하는 4만 9천명을 초과한 57만 9천명에 육박함에 따라, 교육부는 보육료 예산 부족을 사유로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2023.9.25.)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음.[319)]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상 대비 보육시설 이용 영아수 증가는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3년도 예산 편성 시 ’21년도 어린이집 월별 이용률을 활용하여 보육료 지원 인원을 추계하였는데, ’21년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시기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나 ’23년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

319)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 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2023년도 예비비 배정 일정(자료: 교육부) >

- (3~9월) 월별 부족액 추계, 부내 이·전용 가능 예산 파악 및 기재부 실무 협의
- (9.19.)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비비 요구안 제출(복지부→기재부)
- (9.25.) 제40회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비비 대통령 재가
- (9.26.)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목적예비비 배정 통보(기재부→복지부)
- (10.5.)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 및 지방비 편성 현황 제출 요청 (복지부→시·도)
- (10.6.~25.)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방비 편성 현황 제출(시·도→복지부)

위기단계 하향[320]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함.

< 어린이집 이용률 비교 >

연도	예산서상 이용률(n-2년) (A)			실제 이용률(n년) (B)				이용률 차이 (B-A)		
	0세반	1세반	2세반	0세반	1세반	2세반	평균	0세반	1세반	2세반
2019	14.2%	69.3%	84.7%	16.6%	75.3%	90.1%	60.7%	2.40%	6.00%	5.40%
2020	16.2%	74.5%	86.3%	17.0%	74.6%	88.9%	60.2%	0.80%	0.10%	2.60%
2021	16.6%	75.3%	90.1%	18.7%	76.3%	89.4%	61.5%	2.10%	1.00%	-0.70%
2022	17.0%	74.6%	88.9%	21.1%	80.4%	91.8%	64.4%	4.10%	5.80%	2.90%
2023	18.7%	76.3%	89.4%	22.4%	85.0%	90.9%	66.1%	3.70%	8.70%	1.50%

자료: 교육부

< 출생아 수, 어린이집 이용률, 보육료 지원단가 등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생아 수* (명)	소계	1,393,200 (△8.6%)	1,259,800 (△9.6%)	1,156,046 (△8.2%)	1,094,542 (△5.3%)	1,025,306 (△6.3%)
	만0세	303,100	272,400	253,946	244,250	225,958
	만1세	326,300	302,800	272,400	264,788	253,595
	만2세	357,500	326,900	302,800	277,529	266,619
	만3세	406,300	357,700	326,900	307,975	279,134
어린이집 이용률** (%)	평균	53.7 (3.3)	55.6 (3.6)	58.3 (4.8)	59.5 (2.1)	60.9 (2.3)
	0세반 (만 0~1세)	16.6	17.0	18.7	21.1	22.4
	1세반 (만 2세)	75.3	74.6	76.3	80.4	85.0
	2세반 (만 3세)	90.1	88.9	89.4	91.8	90.9

320)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육료 지원단가*** (천원)	0세반 (만 0~1세)	939	970	1,012	1,069	1,113
	1세반 (만 2세)	664	686	713	749	778
	2세반 (만 3세)	510	527	547	574	596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실집행액 (백만원)		**3,492,384 (3.3%)**	**3,396,502 (△2.7%)**	**3,265,378 (△3.9%)**	**3,174,597 (△2.8%)**	**3,160,930 (△0.4%)**

* 연도별 출생아 수(통계청)

** 어린이집 이용률 : 출생년월, 이용월별 보육료 지원아동 수/출생아 수(통계청)의 평균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종일반 보육료 지원 단가(보육지원체계 개편('20.3) 이후 기본보육 지원단가(기관+부모보육료) 적용)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예산편성 시점에 차년도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은 '20년도를 제외하면 '19년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3년 예산 편성 시점인 '22년도에도 전년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경향'을 반영한 대상인원 추계 현실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대상 영아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과 보육료 지원단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경향으로, 예산서상 어린이집 이용률 대비 실제 이용률의 차이를 비교하면 특히 '23년 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치와 실제 이용률의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321]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인 반면, 의무지출 예산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

❑ 따라서, 교육부는 의무지출 대상 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인원 추계 방법 현실화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할 것임.

---

321)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확충(3134-344)[32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어린이집 확충(3134-344)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및 기자재 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운영 및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조사 및 전담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22)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49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67억 4,300만원을 이용(감)하여, 예산현액은 324억 2,700만원으로 이 중 32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9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어린이집 확충 사업	49,170	△16,743	32,427	32,178	-	249	99.2
○ 어린이집 확충	48,534	△16,743	31,791	31,556	-	235	99.3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8,534	△16,743	31,791	31,556	-	235	99.3
○ 운영 및 관리	33	-	33	19	-	14	57.6
-일반수용비(210-01)	33	-	33	19	-	14	57.6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조사, 전담지원	603	-	603	603	-	-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603	-	603	603	-	-	100

나) 검토의견

(1) 어린이집 확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

❑ 내역사업인 ‘어린이집 확충’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323]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며, 2023년도 예산액 485억 3,400만원 중 167억 4,300만원을 전용 등 (감)하고, 예산현액은 317억 9,100만원으로 이 중 315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다만,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47.5%로 전년 대비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모두 50%에 달하지 못하고 있음.

3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라 50%, (생활SOC 6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 최근 4년간 어린이집 확충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이·전용 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C)	
2023	48,534	48,534	△16,743	31,556	31,556	-	31,556	14,985	31,556	14,985	47.5
2022	60,268	60,268	△11,226	48,900	48,900	-	48,900	18,511	48,900	18,511	37.9
2021	60,275	60,275	△10,100	47,898	47,898	-	47,898	20,975	47,898	20,975	43.8
2020	74,276	76,076	△15,435	60,641	60,401	-	60,401	26,873	60,401	26,873	44.5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①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문제, ②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을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요구액을 각각 전년 대비 삭감한 바 있음.[324)]

이와 같은 동 사업의 실집행 저조에 대해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중 사업단가가 낮은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편중 및 신축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 목표치 500개소 대비 17.2% 미달한 414개소 확충 지원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

324) <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용 >
(2022년도) 세부사업 기준 24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3년 예산(492억) 대비 5.9%를 삭감한 463억으로 편성
(2023년도) 세부사업 기준 '25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4년 예산(416억) 대비 10%를 삭감한 375억원으로 편성

❑ 다만, 교육부는 ’23년 장기임차사업 대상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외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실적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했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간 3회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실집행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자체별 사업 일정에 맞춰 3회계연도에 걸쳐 교부하되, 1차년도에는 30%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22년도 대비 ’23년도 실집행률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및 실적 >

(단위: 개소)

구분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장기임차		합계
	계획	지원	(매입)	계획	지원	계획	지원	(지원개소)
2020년	100	78 (78.0%)	(21)	350	466 (133.1%)	100	37 (37.7%)	581
2021년	80	62 (77.5%)	(7)	420	427 (101.7%)	100	26 (26.0%)	515
2022년	60	34 (56.7%)	(9)	390	408 (104.6%)	100	53 (53.0%)	495
2023년	45	19 (42.2%)	(4)	435	358 (82.3%)	60	37 (61.7%)	414

자료: 교육부

❑ 따라서,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실적 미달 및 집행 부진은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요 부족과 계획 대비 집행 저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동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동 사업의 목적인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수요 감소에 따른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확충목표의 수립이 필요함.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및 보육아동수를 살펴보면[325], 보육통계를 작성한 1999년도 이후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수가 모두 증가하다가 2013년도를 정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도 이후 보육아동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

또한, 유보통합으로 향후 유치원에서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치 현황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325)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참고

참고로, 「2023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 지원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은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17.3%→11.9%)에 대한 요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326]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에 있어 공동주택리모델링과 장기임차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유지되는 반면, 신축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20년(78개소) → '21년(62개소) → '22년(34개소) → '23년(19개소)]이고, 실집행률 또한 타 방식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주로 낮은 공사단가와 절차 등에 장기화가 소요되는 신축사업의 특징에 기인된다고 보임.

326) 「2023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용역, p. 217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육양육지원 관련 현금지원 확대가 2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육아휴직 정책/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 지원 및 고용관련 제도 개선이 23.6%, 연장보육·시간제, 야간연장·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16.7%, 보육서비스 질 향상 12.3%,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11.9% 순임. 2022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보육·양육 지원 관련 현금 지원 확대(17.8%→25.6)나 육아휴직정착/근로시간 등 시간 지원 및 고용관련 제도개선(20.7%→23.6%)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반면, 보육서비스 질 향상(22.1%→12.3%)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17.3%→11.9%)에 대한 요구는 감소함.

따라서, 취약보육 지역과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에는 불가피하게 신축사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사업 면적당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327]

< 어린이집 확충사업 확충방식별 단가 기준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공립신축 (매입방식포함)	면적당 : 1,397천원/m2	면적당 : 1,676천원/m2	면적당 : 1,676천원/m2	면적당 : 1,676천원/m2	면적당 : 1,676천원/㎡
장애아 전문 신축	면적당 : 1,397천원/m2	면적당 : 1,676천원/m2	면적당 : 1,676천원/m2	면적당 : 1,800천원/m2	면적당 : 1,800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소당 : 55백만원/개소	개소당 : 55백만원/개소	개소당 : 50백만원/개소	개소당 : 50백만원/개소	개소당 : 50백만원/개소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 : 105백만원/개소 가정 : 75백만원/개소	민간 : 105백만원/개소 가정 : 75백만원/개소	민간 : 100백만원/개소 가정 : 75백만원/개소	민간 : 100백만원/개소 가정 : 75백만원/개소	민간 : 100백만원/개소 가정 : 75백만원/개소
기자재비	개소당 : 5백만원/개소	개소당 : 5백만원/개소	개소당 : 5백만원/개소	개소당 : 5백만원/개소	개소당 : 5백만원/개소

자료: 교육부

327) 교육부에 따르면,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기준, 노유자 시설 평균 공사 단가는 '21년 2,546천원에서 '23년 4,203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단가는 '21년도 이후 현재까지 1,676천원으로 동일함.**

❑ 셋째,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같이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회복지제도는 국고보조율 산정에 있어 지자체별 재정 여력, 아동인구 비율과 같은 상대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음.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사업별 용도와 조건을 지정하여 이전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비율이 보조율에 따라 정해지는 정률보조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있음.[328]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에 따르면,[329] 차등보조율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9)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2월, p.15.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사용하여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방식(「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②해당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사용하는 방식(기초연금), ③재정자립도를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차등적인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식(고용 및 주택부문의 일부 사업)이 있음.

동 사업은 국고보조율 50%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사업에 대한 수요에 차등이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육정책관 소관의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 등 다른 사업의 경우 서울·지방으로 이원화된 기준보조율에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330]

33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5. 보육서비스 지원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가.~마. (생 략)		

(2)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균형배치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어린이집 경영악화 및 폐원 가속화로 인한 보육 인프라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다만, 최근 4년간 성과지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선정 개소 수는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3년에는 당초 성과기준 목표치인 500개소에 17.2% 미달하는 414개소를 설치함.

< 최근 4년간 성과지표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출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단위: %)	목표	18.6	22.0	25.3	27.2	28.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감 추이 등을 고려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 100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실적	20.3	22.7	25.3	28.3	-			
	달성도	109.1	103.2	100.0	104.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단위: 개소)	목표	550	550	550	500	500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선정 개소 수	복지부 자료
	실적	581	515	493	414	-			
	달성도	105.6	93.6	89.6	82.8	-			

자료: 교육부

❑ 한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2025년까지 공보육 50%[33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확충목표를 550개소에서 500개소로 낮추었음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지표달성도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82.8% 수준임.

또한, 출생률 감소로 인하여 국공립 외 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담당하는 보육아동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실제 목표로 하는 성과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시도별 공보육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모든 시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증가하였으나 서울특별시(51.5%)와 세종특별자치시(39.7%)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며, 시도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31) 공공보육이용률(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어린이집이용아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p. 71)
1-3-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ㅇ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현황과 이용률(현원기준)을 고려, 지역균형 공급을 위해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이용률 25% 미만지역* 우선 공급
* 공보육 이용률('19.12) : 전국 28.2%, 서울 46.6%(최고), 울산19.2%(최저), 경기 19.6%, 인천 20.3%, 경남 22.4%, 충남 23.1%, 경북 23.8%, 대전24.8%
- (국공립 유치원)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및 학급 증설, 운영시간 다양화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와 통학차량 단계적 확대
* 신·증설,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개소수 및 보육아동 현황 >

(기준: 매년 말, 단위: 개소,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수	계	37,371	35,352	33,246	30,923	28,954
	국공립	4,324 (11.6%)	4,958 (14.0%)	5,437 (16.4%)	5,801 (18.8%)	6,187 (21.4%)
	국공립외	33,047 (88.4%)	30,394 (86.0%)	27,809 (83.6%)	25,122 (81.2%)	22,767 (78.6%)
보육아동 현황	계	1,365,085	1,244,396	1,184,716	1,095,450	1,011,813
	국공립	232,123 (17.0%)	253,251 (20.4%)	268,967 (22.7%)	276,670 (25.3%)	286,487 (28.3%)
	국공립외	1,132,962 (83.0%)	991,145 (79.6%)	915,749 (77.3%)	818,780 (74.7%)	725,326 (71.7%)
출생아수(명)		302,676	272,337	260,562	249,000	235,039

자료: 교육부

<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단위: %)

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	'21	'22	'23
전체 평균	20.4%	22.7%	25.3%	28.3%
서울특별시	43.8%	46.7%	49.0%	51.5%
부산광역시	21.9%	23.7%	26.2%	29.5%
대구광역시	16.8%	20.4%	24.7%	29.9%
인천광역시	16.7%	18.7%	21.1%	25.0%
광주광역시	10.5%	14.3%	18.5%	22.6%
대전광역시	10.6%	13.5%	17.3%	20.3%
울산광역시	14.2%	15.9%	17.9%	20.1%
세종특별자치시	24.1%	28.4%	36.0%	39.7%
경기도	17.7%	20.1%	22.6%	25.7%

강원도	18.5%	20.7%	22.7%	25.2%
충청북도	13.2%	15.7%	17.5%	19.8%
충청남도	10.5%	11.8%	14.1%	17.9%
전라북도	12.2%	14.5%	17.0%	19.8%
전라남도	17.2%	19.5%	21.8%	24.9%
경상북도	12.5%	13.8%	16.0%	17.5%
경상남도	16.4%	18.9%	21.4%	24.4%
제주도	8.8%	9.8%	10.7%	12.2%

자료: 교육부

❑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6조[332] 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산업단지 지역 등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을 강화함으로써 보

332)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육의 실질적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시도별 보육인프라의 수요 및 공급 현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배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개소수 현황 >

2023. 12. 31. 현재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소 계	28,954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21.4%	4.2%	1.9%	30.7%	36.9%	0.4%	4.5%
대도시	10,548	3,042	307	152	2,887	3,515	49	596
		28.8%	2.9%	1.4%	27.4%	33.3%	0.5%	5.7%
중소도시	12,507	2,026	246	132	3,903	5,699	54	447
		16.2%	2.0%	1.1%	31.2%	45.6%	0.4%	3.6%
농어촌	5,899	1,119	653	267	2,096	1,478	21	265
		19.0%	11.1%	4.5%	35.5%	25.1%	0.4%	4.5%

자료: 교육부(2023년 말 기준 보육통계)

❑ 따라서, 교육부는 저출생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 경영악화 및 폐원이 가속화된 농어촌 등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공백이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333]의 적시성을 강화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33)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보육사업관리(3135-350)[33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사업관리(3135-350)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보육사업 지침서 제작, 보육사업 홍보, 정책연구용역 등 보육사업 지원 및 관리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통하여 보육행정을 간소화하고 지자체 및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보육사업 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34)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4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7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8,800만원으로 이 중 4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보육사업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보육사업관리	4,655	733	△161 161	5,388	4,420	661	307	82.0
○ 보육사업 지원	1,450	-	△161 161	1,450	1,339	-	111	92.3
-일반수용비(210-01)	638	-	△50 111	699	686	-	13	98.1
-임차료(210-07)	25	-	50	75	47	-	28	62.7
-일반용역비(210-14)	400	-	△111	289	260	-	29	90.0
-국내여비(220-01)	111	-	-	111	82	-	29	73.9
-국외여비(220-02)	8	-	-	8	8	-	-	100
-사업추진비(240-01)	9	-	-	9	9	-	-	100
-일반연구비(260-01)	259	-	-	259	247	-	12	95.4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205	733	-	3,938	3,081	661	196	78.2
-일반연구비(260-01)	3,205	733	-	3,938	3,081	661	196	78.2

나) 검토의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의 2023년도 예산액은 3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 3,800만원이고, 이 중 30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고, 1억 9,600만원이 불용됨.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사업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의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2,260	2,676	2,670	4,147	3,205
예산현액(A)	2,638	3,274	3,156	4,615	3,938
집행액(B)	1,545	2,677	2,550	3,740	3,081
집행률(B/A)	58.6	81.8	80.8	81.0	78.2
이월액	598	486	468	733	661
불용액	495	111	138	142	196

자료: 보육사업 관리사업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예산 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은 매년 보육 관련 법·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주요 기능개선 사항으로는 ①부모급여 지급방식 및 금액 변경에 따른 보육시스템 개선, ②어린이집 반(0세반) 유지 지원금 제도 도입에 따른 체계 구축, ③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과후 보육 시간단위 이용 기능 구축 등임.

구체적으로 '23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3.7월에 '23년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계획(안)'을 마련한 후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사전협의를 거쳐 조달청 입찰공고는 '23.9월에 하였으나, 단독응찰을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실제 계약은 '23.10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24년 6월 말에 사업을 완료함.

< 2023년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현황 >

내용	일자	비고
'23년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계획(안)	23. 7.17.	사업 수행 기간 '23.10. ~ '24.6.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사전협의 신청	23. 7.21.	
보안성 검토결과(정보보호팀)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결과(정보통계담) 통보 2023년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계약 요청	23. 8.16.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공고 1차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1차 개찰 결과 유찰됨 (사유: 단독응찰)	23. 9.11. 23.10.1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공고 2차 ※ 수의 계약 2차 개찰 결과 ㈜한국이디에스 선정	23.10.20. 23.10.25.	
기능개선 사업 계약일	23.10.30.	

자료: 교육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기간	'19.8.~'20.5.	'20.9.~'21.6.	'21.11.~'22.7.	'22.9.~'23.7.	'23.10.~'24.6.
계약방법	수의계약 (2차 재공고 결과 단일응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한시 특례적용기간 중 단일응찰)			
계약기간	'19. 8.20. ~ '20. 5.16.	'20. 9.14. ~ '21. 6.11.	'21.11. 2. ~ '22. 7.30.	'22.11.28. ~ '23. 9.24.	'23.10.30. ~ '24. 6.26.
완료일	'20. 5.16.	'21. 6 .11.	'22. 7.30.	'23. 9.24.	'24. 6.26.

주: (수의계약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제3항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335]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매년 하반기에 당해연도 사업을 시작하여 다음연도 상반기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2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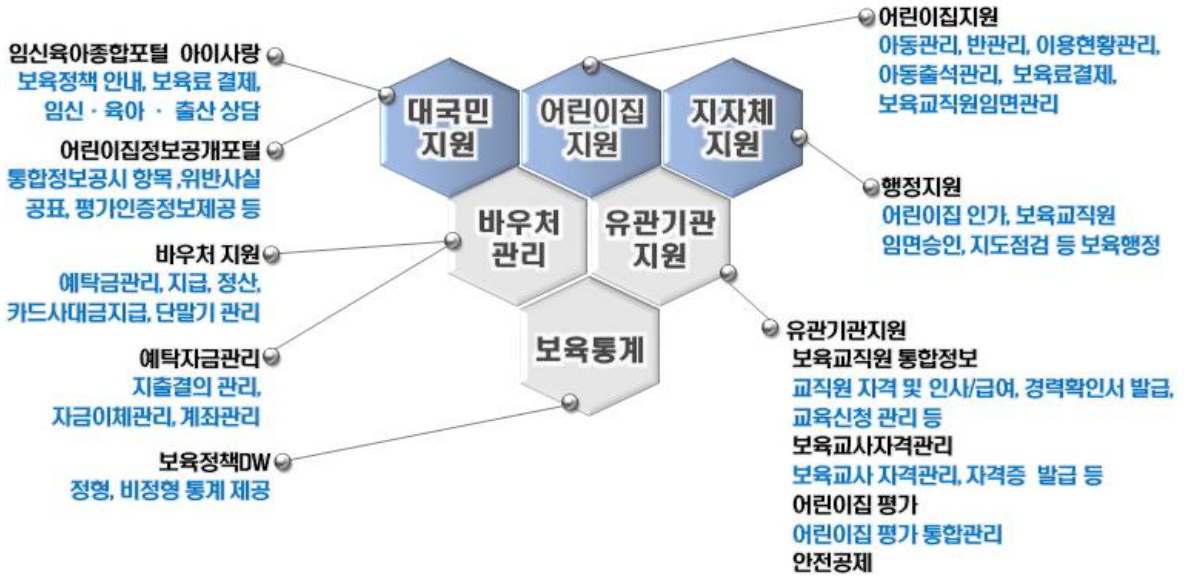
---

3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은 다양한 기능이 통합·구성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13개 단위시스템)과 관련된 제도 변경사항, 사용자 및 유관기관 개선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반사업에 비해 더 많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336]를 거치는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사업착수 시기 지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세부 기능 >



※ **(13개 단위시스템)** ①어린이집지원시스템, ②행정지원시스템, ③바우처관리시스템, ④예탁은행관리시스템, 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⑥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⑦보육교직원통합정보서비스, ⑧보육교사 자격관리시스템, ⑨어린이집 평가관리시스템, ⑩안전공제관리시스템, ⑪안전공제자금관리시스템, ⑫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⑬보육정책DW 시스템

자료: 교육부

336) 사용자 등 의견수렴(2~3개월), 내부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3~4개월), 정보화 사업 관련 행정절차(행안부 및 정보화부서 사전검토 등 포함, 약 3개월) 등이 소요된다고 함.

❑ 그러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같은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착수 시기 지연 상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린이집·지자체·유관기관 등 시스템 이용자의 보육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을 적기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337]에 따라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집·지자체·유관기관 등의 보육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 수요자(부모 등)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약 3만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보육 관련 업무 담당자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수의 규모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필수적임.

---

337)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매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프라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서는 노후화 서버('09년 도입)의 클라우드 전환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음.[338]

❑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세출예산 이월금지의 원칙'[339]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338)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 현황 > (자료: 교육부)

구분	합계	도입년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서버수	35대	14대	4대	3대	14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에 입주된 서버는 총 56대로, 2023년 말 기준 21대를 클라우드 전환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환 대상은 35대임.

339)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3135-353)[34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341] 지원(3135-353)은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보육정보제공, 도서·장난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부모교육상담, 시간제보육 등)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이며 국고보조율은 50%임.

---

340) 문의: 02-6788-5192

341)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⑥ (생 략)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됨.

< 2023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000	-	1,000	1,000	-	-	100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00	-	1,000	1,000	-	-	1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	-	1,000	1,000	-	-	100

나) 검토의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구조적인 집행 부진요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시·군·구 단위에 보육컨설팅, 도서·장난감 대여, 부모 상담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억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23.8.31., '23.10.24.) 전액 교부되어 집행률이 100%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000	1,000	1,000	1,000	2,699	3,699	1,719	1,000	-	1,000	-	-

자료: 교육부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지역사회 내 맞춤형 가정양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도 연례적 실집행 저조의 문제가 있음.[342]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규모 지방재정 및 부지 확보, 사전절차(영향평가, 인허가, 주민협의 등) 등이 필요한 건축사업의 특성상 연도 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 >

구분	주요사업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육아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부모상담, 놀이체험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제공,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지역특화 사업	가정양육, 저출산대책관련된 지역 특화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자료: 교육부

❑ 그러나,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제1항[343]

342)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20·2021·2022회계연도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개선 필요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으며, 2022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를 지적하였음.

343)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에 따라 국비 교부액을 2차례('23. 8월, 10월)로 나누어 교부하였을 뿐, 동 사업에서 1차 교부한 보조금의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2차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344]」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과 같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부처가 지자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사업 추진 등으로 민간부문에 실집행될 때 경기 활성화 및 공공시설 확충으로 인한 국민편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①연차별 공정률(계획 → 설계 → 보상 → 인허가 → 공사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거나, ②다수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시 지자체별 실집행 여력에 따라 교부액 규모를 연중 조정하는 체계가 부족하고, ③지자체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충분히 미리 받아 놓고, 이를 이월하여 다년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만성적인 집행 부진의 문제도 가지고 있음.[345]

---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344)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7. (6) 보조금 교부시 유의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3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1년 상반기 조기집행 추친 상황 점검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집행 개선방안 논의,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021. 6. 24.) 참고

❑ 따라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집행 부진 해소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단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연차별 공정률을 반영하여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346]하여,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347]」과 같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연도 중 지자체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교부금을 교부해야 함.

통상적으로 건축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후 매년 실적을 반영해 수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에도 신축은 3회계연도, 리모델링은 2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년도 이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설치 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지자체)에 대한 국비 최초 교부일부터 국비 실집행 완료까지는 대체로 2~3회계연도가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5회계연도가 소요된 사례도 있음.

---

34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6. 24.)에 따르면,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개선방안으로 실집행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편성) 다년도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을 반영해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 도입, (집행관리) 부처별로 연도 중에 지자체별 실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보조금 과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교부금을 탄력조정하여 전체 집행률 제고, (성과평가) 보조사업 평가시 집행실적 기준을 '집행률'에서 '실집행률'로 바꾸어 부처에서의 실집행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 등을 제시함.

347)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97. (6) 보조금 교부시 유의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 선정 및 개소 현황 >

(2024.5월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 선정 연도	설치 대상	센터 개소일	국비 교부액	국비 실집행 완료연도 [집행기간]
2020년도 ('20. 3. 5.)	부산 강서구·금정구	'21. 11. 25. '23. 12. 21.	2,000	2021년도 [2회계연도] 2022년도 [3회계연도]
	인천	'25. 3월(예정)	1,000	2022년도 [3회계연도]
	광주 서구	'21. 1. 1.	200	2021년도 [2회계연도]
	강원 강릉	'24년 하반기(예정)	468	2020년도
	충북 영동	'22. 11. 23.	1,000	2022년도 [3회계연도]
	충남	'24년 하반기(예정)	1,500	2024년도 [5회계연도][348]
	충남 서산	'22. 3. 26.		2022년도 [3회계연도]
	전북 부안·남원,	'24. 1. 1. '24. 5. 30.	2,000	2022년도 [3회계연도]
	경남 창원	'23. 12. 27.	1,000	2022년도 [3회계연도]
2021년도 ('21. 2. 25.)	부산 서구·남구	'24. 9월(예정) '25년(예정)	2,000	2023년 [3회계연도]
	대전 서구	'22. 7. 1.	1,000	2022년 [2회계연도]
	전북 전주	'24. 5.	1,000	2023년 [3회계연도]
2022년도 (1차: '22. 8. 2차: '22. 12.)	부산 영도구	'24. 12월(예정)	1,000	2024년 [3회계연도]
	충남 당진	'25년 상반기(예정)	1,000	2023년 [2회계연도]
	전북 김제	'24년 하반기(예정)	700	2024년 [3회계연도]
2023년도 (1차: '23. 8. 2차: '23.10.)	부산 동구	'26년(예정)	1,000	-

자료: 교육부

348)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둘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49]」에 따라 동 사업의 사업수행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3년도 설치 계획인 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 동구[350])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반려[351]로 '24년 6월 재심사를 통해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5년부터 '26년에 걸쳐 착공 및 완공 예정으로 재이월이 예상됨.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4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50) **< 2023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 동구) 추진 경과 >**

- '22년 8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 수립
- '22년 12월 : 2022년 육아지원센터 국비 지원 확정
- '23년 1월 : 국비 확정내시 알림 및 교부 신청 완료
- '23년 3월 :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 사업 대상지 변경(현 좌천동 920-5번지 일원)
- '23년 8월 : 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기획설계 용역 착수
- '23년 11월 : 시 사전심사 및 공공건축사전심의 결과 반영하여 사업예산 확정(241억), 시 공공건축심의 자료 제출
- '23년 12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계획 수립 완료

351)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반려 사유는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 규모* 및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복합플랫폼(어울림파크) 구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또한, 2024년도 설치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 은평구, 경남 김해시)의 경우에도 개관 예정일이 각각 2025년 9월 및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연도 내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셋째, 「영유아보육법」 제7조[352]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4년 7월 기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8개소가 설치 완료(’14.10.15.)되었으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1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율은 5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사업 예산은 ’20년부터 ’24년까지 정부안에 편성되지 못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조사업자(지자체) 및 예산액(단가 등)이 정해진 상태로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거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

352)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8. (생 략)

한 검토 없이 사업수행자를 선정함으로써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부안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단위: 개, %)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 (A)		시군구 수(B)	설치율 (A/B)
계	136	1	18	117		228	51.3%
중앙	1	1	-	-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0
부산	11	-	1	11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사하구	16	68.7
대구	4	-	1	3	동구, 수성구, 달성군	8	37.5
인천	7	-	1	6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10	60.0
광주	3	-	1	2	동구, 서구	5	40.0
대전	3	-	1	2	대덕구, 서구	5	40.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5	100.0
세종	1	-	1	-		-	-
경기	33	-	1	22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21	104.8
경기 북부		-	1	9	가평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10	90.0
강원	4	-	1	3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18	16.7
충북	6	-	1	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영동군	11	45.5
충남	4	-	1	3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15	20.0
전북	6	-	1	6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14	42.8
전남	4	-	1	3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22	13.6
경북	7	-	1	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23	26.1
경남	6	-	1	5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18	27.8
제주	2	-	1	1	서귀포시	2	50.0

자료: 교육부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35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53) 문의: 02-6788-5192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액은 1조 7,50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11억 6,800만원을 전용(증)하고, 292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증)하여, 예산현액은 1조 8,107억 8,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함.

<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750,362	60,422	1,810,784	1,810,784	-	-	1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1,018,934	40,624	1,059,558	1,059,558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18,934	40,624	1,059,558	1,059,558	-	-	100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46,350	27,198	273,548	273,548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46,350	27,198	273,548	273,548	-	-	100
○ 보조, 대체교사 지원	465,162	△7,000	458,162	458,162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65,162	△7,000	458,162	458,162	-	-	100
○ 어린이집 운영지원	19,916	△400	19,516	19,516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9,916	△400	19,516	19,516	-	-	100

나) 검토의견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부적절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354] 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355]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조 7,503억 6,200만원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부족으로 전용을 통해 311억 6,800만원과 예비비 배정(’23.11.29.)을 통해 292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1조 8,107억 8,4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보조, 대체교사 지원’ 예산 중 70억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

354)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 7. (생 략)

3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임.

근무환경개선비로 내역변경하고('23.9.8.), ②'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 668억 5,7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친 전용('23.11.1., '23.12.5.)과 예비비('23.11.29.)를 통해 충당함.[356]

<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3.9.8)	전용 (23.11.1. 23.12.5.)	예비비 (23.11.29.)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	1,750,362	-	31,168	29,254	1,810,784	1,810,784 [1,788,312]
①보육교직원 인건비	1,018,934	-	26,168	14,456	1,059,558	1,059,558 [1,054,459]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831,298	-	29,090	20,236	880,624	880,624 [879,481]
- 영아전담 어린이집	39,719	-	△1,300	△1,858	36,561	36,561 [36,250]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52,841	-	300	△634	52,507	52,507 [52,565]

356)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 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2023년도 예비비 배정 일정(자료: 교육부) >

- (3~11월) 분기별 부족액 추계, 부내 이·전용 가능 예산 파악 및 기재부 실무 협의
- (11.21) 제48회 국무회의에서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비비 대통령 재가
- (11.29)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일반예비비 배정 통보(기재부→복지부)
- (12.1) 변경내시 수정 통보, (12.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복지부→시도)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3.9.8)	전용 (23.11.1. 23.12.5.)	예비비 (23.11.29.)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방과후 교사	672	-	-	△256	416	416 [392]
- 그 밖의 연장형 교사	64,771	-	△1,400	△5,920	57,451	57,451 [53,538]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29,633	-	△522	2,889	32,000	32,000 [32,234]
②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46,350**	**7,400**	**5,000**	**14,798**	**273,548**	**273,548 [268,982]**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17,019	7,300	5,000	12,531	241,850	241,850 [238,813]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760	-	-	483	7,243	7,243 [6,734]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2,571	100	-	1,784	24,455	24,455 [23,435]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465,162**	**△7,000**	**-**	**-**	**458,162**	**458,162 [446,709]**
- 보조교사(연장교사)	409,151	△4,916	-	-	405,296	405,296 [397,301]
- 대체교사	56,011	△2,084	-	-	52,866	52,866 [49,408]
④어린이집 운영지원*	**19,916**	**△400**	**-**	**-**	**19,516**	**19,516 [18,162]**
- 교재교구비	9,408	-	-	-	9,614	9,614 [9,167]
- 차량운영비	9,550	△400	-	-	8,846	8,846 [7,971]
-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958	-	-	-	1,056	1,056 [1,024]

주: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④어린이집 운영지원 내내역사업 예산현액은 변경내시 후 금액(2024.5.23.)
자료: 교육부

<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이·전용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23.9.8.)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 보조, 대체교사 지원	330-01	7,00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140-40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30-0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족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 어린이집 운영지원		400			
전용 ('23.11.1., '23.12.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3143-300)	330-01	3,90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140-404)	330-0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부족
	어린이집 확충 (3134-344)	330-03	16,600			
	가정양육수당 지원(3141-300)	330-01	10,668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357]에 따라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이며, 예비비 또한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358]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외

35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358)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적인 제도임.

그러므로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해야 할 보충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률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직성 경비로 지급대상, 지급단가 및 국고보조율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3년도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교직원 수 증가 예상치와 전년도 지원 대상자 수 등은 고려하였으나, ①당초 예상 대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증가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소요 발생이 있었고, ②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율은 50.8%('19년도 이후 동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결)이었으나, 실제 국고보조율은 52.2%로 국고보조율 증가분이 미반영된 점과 ③보육교직원별 인건비 지원단가에 전전년도 보육교직원별 평균 호봉을 반영하여 예산을 산출하는데, 편성 단가가 실제 단가 대비 95~97% 수준으로 낮게 책정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였다는 설명임.

❑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아반(만 0~2세) 담임교사(월 26만원)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월 13만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수당의 성격으로,

'23년도 본예산 2,170억 1,900만원의 11.4%에 해당하는 248억 3,100만원을 각각 내역변경(73억원), 전용(50억원) 및 예비비 편성(125억 3,100만원)을 통해 충당하였는데, 이에 교육부는 ①실제 집행한 국고보조율은 54.4%였으나, 예산 편성 시에는 50.8%로 미반영된 부분과 ②지원인원 일부 미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 2023년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예산 산출내역 >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산출내역 : 217,019백만원
· 담임교사 120,424명 × 260천원 × 12개월 × 50.8% = 190,867백만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33,000명 × 130천원 × 12개월 × 50.8% = 26,152백만원

자료: 교육부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및 단가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담임 교사	지원인원(명)	155,697	158,884	162,565	132,342	120,424	120,424
	지원단가(만원)	22	24	24	26	26	26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인원(명)	-	22,000	30,000	33,000	33,000	27,350
	지원단가(만원)	-	12	12	13	13	13

자료: 교육부

❑ 그러나, 동 사업은 2022년도 결산에서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부족으로 '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충',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179억원을 전용한 바 있으며, 교직원 호봉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육교직원 호봉변경사항 보고 등을 통해 변동추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최근 4년간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평균호봉이 증가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행정 절차 >



주: 어린이집 급여일은 25일로, 시군구별로 행정처리 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교육부

<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경력교사 평균호봉 >

연도별 평균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치료사	특수교사
		영아	유아			
2020년(11월)	19.9	7.9	6.9	6.7	5.9	7.9
2021년(11월)	20.7	8.4	7.5	6.9	6.5	8.8
2022년(11월)	21.1	8.8	7.8	7.0	6.8	9.6
2023년(11월)	21.6	9.1	8.6	7.0	7.3	10.4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국고보조율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산출에 주의를 다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할 것임.

(2)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제4항 및 제24조의2[359] 에 따라 ①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고, ②연장보육(16:00~19:30)을 위해 연장교사를 두며, ③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 시 보육업무를 대행함에 목적이 있으며,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및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연장교사는 연장반 운영(16:00~19:30)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위해 채용된 교사로서 연장보육을 책임지고 계획·운영하고, 부

---

359)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안정적인 연장보육운영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근무해야 함.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되어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직접 채용된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교사(연장교사) 및 대체교사 운영 현황 >

구분	보조교사	연장교사	대체교사
목적 (업무)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교수학습 · 급간식 · 생활지도 등 보조)	연장보육(16:00~19:30) 전담	보육교사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담임·보조·야간연장 겸임 가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고용 주체	어린이집(대표자 또는 원장)	어린이집(대표자 또는 원장)	육아종, 지자체, 어린이집
급여 ('24년)	월 1,068천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부담·퇴직적립금 30% 국고 지원	월 1,068천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부담·퇴직적립금 30% 국고 지원 (+ 담임수당 130천원)	월 2,401천원 * 어린이집 채용: 일93,690원, 8시간 근무기준
근로	일 4시간 근무	일 4시간 근무(15:00~19:30)	일 8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구분	보조교사	연장교사	대체교사
조건	* 보조교사-임면권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 가능 (단, 연장 인건비 어린이집 부담)	* 연장교사-임면권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 가능 (단, 연장 인건비 어린이집 부담)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4시간 근무 가능 * 상호 협의로 일급, 주급 가능
지원 조건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전문/통합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50% 이상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3명,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 지원 가능	①~④ 모두 충족 어린이집 ①연장반 구성, ②전자출결 시스템, ③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④연장반 영유아의 월 이용시간 충족 (0세-장애아반 20h, 영아반 30h, 유아반 80h)	담임교사(8h 근무), 교사겸직원장(年 최대 15일), 연장교사, 야간연장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미지원
지원 순위	지원기준+평가제 결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우선순위 설정 * 영아반담임교사(8h)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 우선 배치	지원기준+예산에 따라, 지자체별 우선순위 설정 * 학기 초(3~4월) 지원기준 ③,④ 미충족 → 지원 가능 * 지원 선정 후, 아동감소로 기준 미달 → 2개월간 지원 가능	① 아동학대 후속, 교사 권익보호(기간 제한X) ② 보수교육(5~0일) ③ 경조사(5~10일) ④ 연가, 질병·사고(1~10일)
지원 방식	신청(어린이집→시군구) →선정→공개채용·임면보고 →승인→인건비 신청·지급* *어린이집으로 지급	신청(어린이집→시군구) →선정→공개채용·임면보고 →승인→인건비 신청·지급* *어린이집으로 지급	<사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월 신청(1개월 단위) <수시> 긴급사유, 유선·FAX

자료: 교육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조, 대체교사 지원’의 결산 내역을 보면, ①보조교사(연장교사) 인건비 본예산은 4,091억 5,100만원으로 내역변경을 통해 49억 1,600만원을 감하여 예산현액은 4,052억 9,600만원이며 전액 집행(실집행 3,973억 100만원)하였고, ②대체교사 인건비 본예산은 560억 1,100만원으로 내역변경을 통해 20억 8,400만원을 감하여 예산현액은 528억 6,600만원이며 전액 집행(실집행 494억 800만원)함.

< 2023년도 보조, 대체교사 지원 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3.9.8)	전용 (23.11.1. 23.12.5.)	예비비 (23.11.29.)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	1,750,362	-	31,168	29,254	1,810,784	1,810,784 [1,788,312]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465,162**	**△7,000**	**-**	**-**	**458,162**	**458,162 [446,709]**
- 보조교사(연장교사)	409,151	△4,916	-	-	405,296	405,296 [397,301]
- 대체교사	56,011	△2,084	-	-	52,866	52,866 [49,408]

주: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내내역사업 예산현액은 변경내시 후 금액(2024.5.23.)
자료: 교육부

< 보조(연장)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실집행 내역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교사 (연장교사)	예산편성 인원(명)	52,000	58,000	61,000	61,024
	예산액* (백만원)	320,291	371,655	391,707	409,151
	실집행액 (백만원)	319,986	366,057	383,936	397,301
	실집행률(%)	**99.9%**	**98.5%**	**98.0%**	**97.1%**
대체교사	예산편성 인원(명)	3,436	4,136	4,836	3,923
	예산액* (백만원)	46,982	57,251	67,893	56,011
	실집행액 (백만원)	29,786	35,176	48,958	49,408
	실집행률(%)	**63.4%**	**76.1%**	**73.0%**	**88.2%**

주: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교육부

❑ 한편, 최근 4년간 보조(연장)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실집행 현황을 보면, ①보조교사(연장교사)의 경우 예산액 및 실집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으로 실집행률이 평균 98.4%로 높은 수준이나,
②대체교사 인건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23년도에 예산액이 감소하면서 집행률이 다소 개선되었을 뿐 실집행률은 최근 4년평균 75.2%로 낮은 수준임.

그러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와 휴가(경조사, 건강검진, 질병·사고 등) 보장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정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2.12.)'에 따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방안으로, ①개편된 보육지원체계(기본+연장보육) 안정화 및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②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를 통해 보육교사 교육, 휴가권의 실질적 사용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2023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4.45점(5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이나,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개선해야 하는 점 1순위 응답 기준 교사를 꼽은 비중도 8.0%(11항목 중 6위)로 낮지 않은 비중을 보여, 영유아 부모들

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기는 하나,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이 더욱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360]

❑ 따라서, 교육부는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의 실집행률을 제고하여,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 휴가권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60) **「2023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용역, p. 222
※ 어린이집 이용만족도(5점 평균)는 교사(4.45), 안전관리(4.38), 원장(4.37), 교육내용(4.35), 내부분위기(4.34) 순

1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36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을 제로에너지·친환경 그린 스쿨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스쿨이 결합한 미래형 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려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4,211억 5,800만원으로, 이 중 3,837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374억 1,7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1.1%임.

<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421,158	-	421,158	383,741	-	37,417	91.1

자료: 교육부

361) 문의: 02-6788-5184

나) 검토의견

(1)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의 교부와 사업 대상 선정 절차 개선 및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동 사업은 5년간(2021~2025년)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 중 2,835동(재정사업 2,126동, BTL 709동)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되었음.

❑ 사업 첫해인 2021년에 582동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86동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2023년 사업물량을 50% 감축하고 2026년에 해당 감축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음.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추진 일정 >

착수연도 / 물량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582동 (`21년 선정대상교)	○	○	○	○	○				
386동 (`22년 선정대상교)		○	○	○	○	○			
193동 (`23년 선정대상교)			○	○	○	○	○		
386동 (`24년 선정대상교)				○	○	○	○	○	
386동 (`25년 선정대상교)					○	○	○	○	○
193동 (`26년 선정대상교)						○	○	○	○

자료: 교육부

❑ 재원은 국비 5.4조원 및 지방비 13.3조원을 합한 총합 18.7조원이고, 각 사업별로 국비 30%, 지방비 70% 비율로 추진되는 매칭사업[362]에 해당하며, 국비를 교부받은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집행하는 보조사업임.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예산배분 계획 >

(단위: 동, 억원)

구분	사업 (건물수)	사업비		
		계	국고(30%)	지방(70%)
재정사업	2,126	128,934	36,536	92,398
2021년	582	3,334	943	2,391
2022년	386	17,315	4,315	13,000
2023년	193	12,666	4,212	8,454
2024년	386	23,837	6,734	17,103
2025년	386	17,917	5,075	12,842
2026년 이후	193	53,865	15,257	38,608
민자사업(BTL)	709	58,831	17,649	41,182
2021년	179	-	-	-
2022년	132	-	-	-
2023년	132	-	-	-
2024년	132	219	66	153
2025년	134	660	198	462
2026년 이후	-	57,952	17,385	40,567
합 계	2,835	187,765	54,185	133,580

자료: 교육부

362)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실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16.3%를 기록하는 등 전체 실집행률이 58.9%에 불과하였음. 한편 2022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1.5%, 전체 실집행률은 37.6%을 기록하는 등 실집행률이 더욱 하락하였음.

< 2021,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시·도 교육청별 실집행률 >

(단위: %)

사업시행 주체(기관명)	2021년 실집행률	2022년 실집행률
서울교육청	16.3	1.5
부산교육청	97.0	21.2
대구교육청	100.0	67.8
인천교육청	17.5	39.6
광주교육청	28.4	56.2
대전교육청	97.0	100.0
울산교육청	100.0	81.5
세종교육청	-	20.7
경기교육청	100.0	22.4
강원교육청	5.7	34.4
충북교육청	92.7	93.2
충남교육청	100.0	61.0
전북교육청	36.8	90.5
전남교육청	40.9	19.4
경북교육청	68.8	40.6
경남교육청	22.4	43.5
제주교육청	43.1	4.1
전체	58.9	37.6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당초 3년간 1:3:6으로 정해진 연부율을 5년간 1:3:2:2:2로 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탄력적인 예산배분 등 적

극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여 실집행률 개선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2023년도 각 시·도교육청별 실집행 역시 부진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이 1.7%, 세종시교육청이 0%의 실집행률을 기록한 것과 동시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70% 미만의 낮은 실집행률을 기록하여 전체 실집행률은 52.5%에 그치고 있음.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조성 사업 시·도 교육청별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예산액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서울교육청	70,331	47,419	65,752	113,171	16,418	47,419	1,177	45,242	51,511	1.7
부산교육청	33,905	32,648	22,390	55,038	43,344	32,648	21,537	11,111	583	63.5
대구교육청	19,426	18,819	6,500	25,319	20,346	18,819	13,846	4,973	0	71.3
인천교육청	12,458	11,222	9,429	20,651	16,833	11,222	7,404	3,819	0	59.4
광주교육청	6,206	5,653	1,876	7,529	4,481	5,653	2,651	3,001	46	42.7
대전교육청	24,051	23,709	0	23,709	15,674	23,709	15,674	8,035	0	65.2
울산교육청	18,054	17,685	1,705	19,390	13,105	17,685	11,400	6,285	0	63.1
세종교육청	656	656	75	731	75	656	0	656	0	0
경기교육청	53,936	53,908	44,884	98,792	72,607	53,908	27,723	26,185	0	51.4
강원교육청	16,549	16,000	11,680	27,680	22,297	16,000	10,617	5,383	0	64.2
충북교육청	14,481	12,944	997	13,941	9,490	12,944	8,501	4,443	8	58.7
충남교육청	26,892	23,638	10,092	33,730	24,217	23,638	14,125	9,513	0	52.5
전북교육청	20,987	19,833	2,170	22,003	9,473	19,833	8,610	11,223	1,307	41.0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예산액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전남교육청	32,539	31,773	27,782	59,555	54,158	31,773	26,376	5,397	0	51.1
경북교육청	35,166	33,532	22,469	56,001	53,415	33,532	30,946	2,586	0	88.0
경남교육청	31,331	30,132	19,222	49,354	37,674	30,132	18,754	11,378	302	59.9
제주교육청	4,190	4,170	2,613	6,783	4,552	4,170	1,939	2,231	0	46.3
합계	421,158	383,741	249,636	633,377	418,159	383,741	221,280	161,461	53,757	52.5

자료: 교육부

❑ 연부율 조정 등의 노력으로 2022년 대비 2023년 실집행률이 14.9%p 상승(37.6%→52.5%)하였으나, 실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하였던 것은 교육부의 사업 관리 미흡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 첫째로, 사업 수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서울 지역은 사업 반대[363] 등 사유로 과거 실집행이 부진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집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364]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교부하여 2023년에 5% 미만의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으며,

2022년에 비교적 높은 실집행률을 보인 대전, 충북 등 지역에서도 각종 심의 및 사전기획 등의 지연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여 전년에 비해 실집행률이 크게 하락하였음.

363) 자녀의 재학 기간 내 사업 추진 반대, 서울시의회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예산 미의결 등

364) 2022년 서울시교육청의 실집행률은 1.5%이며 이월액은 657억 5,200만원이었는데, 2023년에 474억 1,9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액은 164억 1,800만원에 그쳤음.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시·도 교육청별 실집행 저조 사유 >

구분	2021년 실집행률	2022년 실집행률	2023년 실집행률	실집행 저조 사유
서울 교육청	16.30%	1.50%	1.7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사업 반대, 대상 재선정 기간 소요 - 2023: 사업 반대 및 각종 심의 지연
부산 교육청	97.00%	21.20%	63.50%	- 2022: 각종 심의 및 학사일정 등 지연 발생 - 2023: 각종 심의 및 학사일정 등 지연 발생
대구 교육청	100.00%	67.80%	71.30%	- 2022: 교내 각 동별 대상연도 상이로 병행 추진 - 2023: 해당없음
인천 교육청	17.50%	39.60%	59.4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각종 심의 및 학사일정 등 지연 발생 - 2023: 각종 심의 및 규모 재검토에 따른 지연
광주 교육청	28.40%	56.20%	42.7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각종 심의 및 학사일정 등 지연 발생 - 2023: 각종 심의 지연 발생
대전 교육청	97.20%	100.00%	65.20%	- 2023: 각종 심의 등 지연
울산 교육청	100.00%	81.50%	63.10%	- 2023: 학사일정 및 대상학교 선정 지연
세종 교육청	0.00%	20.70%	0.00%	- 2021: 해당없음(대상사업 없음) - 2022: 학사일정 지연 - 2023: 학사일정 지연
경기 교육청	100.00%	22.40%	51.40%	- 2022: 각종 심의 및 학사일정 등 지연 발생 - 2023: 각종 심의 및 사업 관계자 의견수렴 등으로 인한 지연
강원 교육청	5.70%	34.40%	64.2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각종 심의 및 학사일정 등 지연 발생 - 2023: 각종 심의 및 설계 중 지연
충북 교육청	92.70%	93.20%	58.70%	- 2023: 각종 심의 및 사전기획, 설계, 시공 등의 유찰로 인한 지연
충남 교육청	100.00%	61.00%	52.5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구분	2021년 실집행률	2022년 실집행률	2023년 실집행률	실집행 저조 사유
				- 2022: 설계공모 다수 유찰로 인한 지연 - 2023: 각종 심의 및 사전기획, 설계, 시공 등의 유찰로 인한 지연
전북 교육청	36.80%	90.50%	41.0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3: 규모 재검토 및 각종 심의 등 지연
전남 교육청	40.90%	19.40%	81.1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각종 심의 및 학사일정 등 지연 발생
경북 교육청	68.80%	40.60%	88.0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사전기획, 설계 다수 유찰로 인한 지연
경남 교육청	22.40%	43.50%	59.9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주택사업 고려 사업 일정 재조정 - 2023: 각종 심의 지연
제주 교육청	43.10%	4.10%	46.30%	- 2021: '21.3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마련 후 '21.6월부터 대상학교 선정 시작 등 지연 - 2022: 사전기획, 설계 다수 유찰로 인한 지연 - 2023: 각종 심의 지연

자료: 교육부

❑ 둘째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65]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

36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7p, 기획재정부, '23.1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 종료일 2달 전부터 회계연도 말까지(3~5차 교부) 전체 교부금액의 53.1%(3차 19.1% + 4차 21.9% + 5차 12.1%)를 교부하는 등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2023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일자 및 교부금액 >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일자 및 교부금액					
	1차 (4.12)	2차 (8.8)	3차 (10.30)	4차 (11.16)	5차 (12.5)	합계
서울	21,719	0	0	12,850	12,850	47,419
부산	4,694	2,843	12,555	10,672	1,884	32,648
대구	2,648	1,993	4,253	4,962	4,963	18,819
인천	1,745	3,964	2,756	2,343	414	11,222
광주	1,649	1,947	1,553	504	0	5,653
대전	18,624	2,758	1,745	582	0	23,709
울산	2,602	3,731	7,946	3,406	0	17,685
세종	410	246	0	0	0	656
경기	14,522	1,072	12,643	14,632	11,039	53,908
강원	2,287	1,751	3,947	4,568	3,447	16,000
충북	2,966	2,563	4,004	2,931	480	12,944
충남	13,362	3,407	0	6,869	0	23,638
전북	5,246	5,046	3,148	3,644	2,749	19,833
전남	12,096	2,634	5,112	5,965	5,966	31,773

구분	교부일자 및 교부금액					
	1차 (4.12)	2차 (8.8)	3차 (10.30)	4차 (11.16)	5차 (12.5)	합계
경북	10,859	8,866	7,317	5,516	974	33,532
경남	20,000	1,001	6,391	2,740	0	30,132
제주	557	180	0	1,716	1,717	4,170
합계	135,986	44,002	73,370	83,900	46,483	383,741
비율	35.4%	11.5%	19.1%	21.9%	12.1%	100%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사업 기간 및 대상 동수를 축소하여 3년간(2021~2023) 1,604동(△1,231동)에 대해 10.5조원(△8조)(국비 3.0조, 지방비 7.5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계획 물량 중 집행이 개시된 물량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으로 마무리하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계획 물량 중 미집행된 잔여 물량(1,231동)과 신규 물량(469동)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기존의 국고보조분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지자체가 집행의 주체가 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임을 밝힘.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변경 계획 >

[당 초]

(단위 : 동, 조)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재정사업	물량(동)		582	386	386	386	386	-	2,126
	예산편성	계(A)	0.3345	2.3657	2.7337	2.3547	2.3547	2.8253	12.9686
		국비(30%)	0.0943	0.7100	0.8260	0.7064	0.7064	0.8473	3.8904
		지방비(70%)	0.2402	1.6557	1.9077	1.6483	1.6483	1.9780	9.0782
민자사업	물량(동)		179	132	132	132	134	-	709
	임대료상환	계(B)	-	-	0.0699	0.1214	0.1729	5.1709	5.5351
		국비(30%)	-	-	0.0210	0.0364	0.0519	1.5513	1.6606
		지방비(70%)	-	-	0.0489	0.0850	0.1210	3.6196	3.8745
계		(물량,동)	761	518	518	518	520		2,835

[변 경]

(단위 : 동, 조)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재정사업	물량(동)		582	386	193	-	-	-	-	1,161
	예산편성	계(A)	0.3334	1.7315	1.2666	1.2456	1.4368	0.7008	0.3110	7.0257
		국비(30%)	0.0943	0.4315	0.4212	0.3519	0.4061	0.1985	0.0881	1.9916
		지방비(70%)	0.2391	1.3000	0.8454	0.8937	1.0307	0.5023	0.2229	5.0341
민자사업	물량(동)		179	132	132	-	-	-	-	443
	임대료상환	계(B)	-	-	-	0.0219	0.0660	0.1072	3.3194	3.5145
		국비(30%)	-	-	-	0.0066	0.0198	0.0322	0.9958	1.0544
		지방비(70%)	-	-	-	0.0153	0.0462	0.0750	2.3236	2.4601
계		(물량,동)	761	518	325	-	-	-	-	1,604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사업 대상 중 '24년도에 사전기획 및 설계 중인 사업 상당수가 공사 및 준공 단계로 전환[366]되어 실집행률(4월말 기준 37.6%)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나,

향후 예상되는 실집행률의 상승은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설계·심의 단계를 벗어나면서 공사가 수행되고, 설계·심의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던 신규사업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추진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사업 반대 및 심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기존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시까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사업추진 현황에 맞게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

366) '24년도 사업추진율 : (기획 및 설계) 27%, (공사 및 준공) 73%

(2) 당초의 사업 목적 중 ‘학교 복합화’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이에 기반한 사업 관리 필요

❑ 동 사업은 공간 혁신(재구조화)이라는 비전 아래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외에도 학교 복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여 공동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개요 >



❑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3.3.17.)에 따라 5년간(‘23~‘27)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3년은 39교가 선정되었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을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적극 연계한 결과 8교(20.5%)가 선정되어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교육·돌봄 인프라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입장임.

❑ 또한 동 사업은 교육청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학교 선정 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하는데,

검토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복합화 요소를 확인 후 승인하도록 하며, 미적용시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2021년에 최초로 동 사업이 추진된 이래 1,16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년간 대규모 학교복합시설의 추진 사례가 8건에 불과한 것은 그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 지자체 참여 대규모 학교복합시설 건립(예정) 현황 >

(단위: 교)

구분	복합화 유형					합계
	주차장	체육관+주차장	복합센터+주차장	수영장	도서관	
건수	1	3	2	1	1	8
세부 내역	경북 1 ('21대상:영양초)	서울 2 ('21대상: 갈현초,신창초) 경기 1 ('22대상: 양주덕산초)	울산 1 ('21대상: 남목초) 경북 1 ('22대상 : 구미초)	경기 1 ('22대상:소래초)	경남 1 ('23대상:하이초)	-

주: '24년 3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확인한 복합화 요소에 대한 집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학생·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해당 현황에 대한 별도의 평가 체계 또한 존재하지 않음.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이라는 직접적인 사업 수행 목적 외에도 학교 복합화라는 부수적인 사업 목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 목적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36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 사업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확충과 실험·연구공간 분리 및 실험실 내 전기·소방·환기 성능개선 등을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하며,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과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등이 있음.

367) 문의: 02-6788-5197

(2) 결산개요

❑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3,278억 8,100만원으로, 이 중 3,248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8,4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1%임.

< 2023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27,881	-	327,881	324,897	-	2,984	99.1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68,024	-	268,024	265,720	-	2,304	99.1
○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59,857	-	59,857	59,177	-	680	98.9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개선” 및 “안전장비 확충” 사업과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 이 중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은 대학 동물실험실의 시설과 사육·실험 방법 등이 관계 법령상의 기준[368]과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동물실험을 위한 기반구축과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적 동물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실험센터 신축’ 및 ‘노후 실험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대학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간 전국 거점대학 9개교[369]에 동물실험센터를 신축하고, 국립대학의 소규모 노후 동물실험실 환경개선 및 장비교체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36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실험동물의 공급, 안전관리 교육 실시, 동물실험원칙 준수 등

369)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 2023년도에는 ‘노후 실험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은 없었고, 동물실험센터 신축 예산으로만 9개교[370]에 총 288억 1,7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28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8%임.

< 2023년도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동물실험실 구축	28,817	-	-	28,817	28,758	-	59	99.8

자료: 교육부

❑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1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49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5억 7,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900만원은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15.6%로 나타났음.

< 2023년도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 동물실험실 구축	28,817	2,733	31,550	4,913	26,578	59	15.6
◎ 동물실험센터 신축	28,817	2,733	31,550	4,913	26,578	59	15.6

자료: 교육부

370)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리모델링 사업)

❑ 각 대학의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신규사업 중 충북대의 경우 실집행률이 65.2%로 나타났지만, 경상대의 경우 실집행률이 2.5%로 나타났고, 충남대는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사업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의 경우 모두 실집행률이 35%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대 학	2023년도				
	본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경북대	6,200	70	6,270	1,236	19.7
부산대	6,200	339	6,539	749	11.5
전남대	6,200	216	6,416	91	1.4
전북대	6,290	1,506	7,796	1,716	22.0
강원대	1,200	320	1,520	293	19.2
제주대	1,200	282	1,482	504	34.0
경상대	525	-	525	13	2.5
충남대	525	-	525	-	0.0
충북대	477	-	477	311	65.2
계	28,817	2,733	31,550	4,913	15.6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은 동 사업을 시작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1년도~2022년도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대 학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본 예산	추경 예산371)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경북대	435	130	29.9	4,633	160	305	465	73	15.7
부산대	435	8	1.8	5,020	347	229	576	237	41.1
전남대	435	0	0.0	3,265	265	435	700	457	65.3
전북대	435	0	0.0	1,071	1,071	435	1,506	-	0.0
강원대	-	-	-	525	525		525	205	39.0
제주대	-	-	-	525	525	-	525	243	46.3
경상대	-	-	-	-	-	-	-	-	-
충남대	-	-	-	-	-	-	-	-	-
충북대	-	-	-	-	-	-	-	-	-
계	1,740	138	7.9	15,039	2,893	1,404	4,297	1,215	28.3

자료: 교육부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축부지 선정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이견차,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특수장비 구매 조건 확인을 위한 검토기간

371) 2021년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 대상 4개교 중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의 경우 2022년 총 129억 1,800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의 94.0%에 달하는 121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음.

지연 및 낙찰자 선정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시 '동물실험실 기반조성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 동물실험실 기반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억 원)

구 분		총소요	소요예산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액		1,901	1,901	40	150	288	625	798	
설치 대상	소 계	1,901	1,901	40	150	288	625	798	5년 내 완료
	1)센터신축	1,446	1,446	17	150	288	409	582	
	2)환경개선	455	455	23	-	-	216	216	

자료: 2023년도 예산안 공동요구자료 II-1 참조

1) 센터신축 : 거점대학 등 중심 실험동물센터 신축

2) 환경개선(리모델링등) : 지역 중심대학 소규모(노후) 동물실험실 환경개선 및 실험실 특성상 통합설치가 불가능한 대학 환경개선·장비교체

❑ 동 계획에 따라 2023년에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에 288억 1,700만원이 배정되었고, 그 중 93.1%에 해당하는 268억 1,600만원을 공사비로 배정, 계속사업을 진행 중인 6개 대학에 모두 배정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한 공사비 280억 9,700만원 중 33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음[372].

372) 계속사업에 배정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실집행률 또한 각각 0.9%와 61.1%로 낮게 나타났음.

< 동물실험센터 구축 사업 실집행내역(비목별) >

(‘23.12.31. 기준,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 동물실험실 구축	28,817	2,733	-	31,550	4,913	26,578	59	15.6
-기본조사설계비(420-01)	762	302	-	1,064	526	538	-	49.4
-실시설계비(420-02)	765	948	-	1,713	951	703	59	55.5
-공사비(420-03)	26,816	1,281	-	28,097	3,343	24,754	-	11.9
-감리비(420-04)	393	139	-	532	5	527	-	0.9
-시설부대비(420-05)	81	63	-	144	88	56	-	61.1

자료: 교육부

❑ 한편, 2022년도의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중지, 설계 중 총사업비 증액 협의로 인한 검토시간 소요, 설계업체 선정 지연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설계용역 착수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373],

373) < 2022년도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 집행 부진 사유 >

대학명	집행부진 사유
경북대	실험, 사육실에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한 음압 및 클린룸 설비 구축 공사비 반영
부산대	- 동물실험센터 신축 건물 부지위치와 관련하여 내부 위원회 확정이 지연되어 설계용역 중지(1개월)로 사업 지연 - 동물실험센터의 적정 공사비 단가 반영을 위해 공사비 증액 관련 교육부협의 완료시까지 설계용역 중지(4개월)하여 사업 지연
전남대	총사업비 증액 협의로 인한 검토시간 소요
전북대	- 설계 진행과정 중 공사비 관련 총사업비 협의 - 공사비 협의와 관련하여 설계용역 중지(22.09.14.)
강원대	설계업체 선정 지연(조달철 입찰 2회)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신축 설계 구상(의견 수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축 등) 등에 따른 집행 지연
제주대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달청 설계공모 등 계약자 선정 과정 지연으로 인한 설계용역 착수 지연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년간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집행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또한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경상대와 충남대의 경우 2023년도 예산으로 각각 5억 2,5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신축 부지선정을 위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374]을 이유로 두 사업 모두 지연되어 경상대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로 배정된 2억 6,200만원 중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실시설계비로 배정된 2억 6,300만원 중 5,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충남대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배정된 2억 6,200만원과 2억 6,300만원에 대하여 모두 실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 위의 신규사업도 다년간의 투자계획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시 신규사업 대상 학교의 의견수렴 등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374) < 2023년도 동물실험센터 신축 신규사업 집행 부진 사유 >

대학명	집행부진 사유
경상대	동물실험센터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지연으로 설계용역 (조달)계약 지체(착수일:‘23.12.12.)되어 계획 대비 예산 집행 부진
충남대	동물실험센터 신축 대상부지 선정을 위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의 지연으로 설계용역 등 추진이 지연되어 계획대비 예산집행 부진

자료: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375], 다년간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연도별 사업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연중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바,

❑ 향후 교육부는 동물실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다년간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별 사업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연중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375)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2) 고가 · 첨단기자재확충사업의 관리를 위한 조치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고가·첨단기자재확충사업은 국립대학에 1억원 이상의 교육·연구·실습용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의 복합화·첨단화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첨단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고가·첨단기자재를 적기에 확충하지 못하여 교육·연구의 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특성화 전략에 따른 중점 연구분야(전문·실습) 육성, 권역별 공동활용, 의학·생명과학 분야 연구역량 강화, 반도체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예산 지원하는 사업임.

❑ 고가·첨단기자재확충사업은 중점 연구분야 및 권역별 공동활용 지원사업과 202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반도체 기자재 지원사업[376]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761억 7,600만원으로, 746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1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8.0%로 나타났음.

376) 반도체 기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의 수행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시 고가·첨단기자재확충사업에 도입된 것으로, 반도체 인재양성 등이 가능한 고가·첨단기자재(반도체 기자재)를 확충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고가 · 첨단기자재확충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고가·첨단기자재 확충	76,176	-	76,176	74,675	-	1,501	98.0
-반도체 기자재 지원	56,010	-	56,010	56,010	-	-	100.0
-중점 연구분야 및 권역별 공동활용 지원	20,166	-	20,166	18,665	-	1,501	92.6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의 법적근거가 되는 법률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377]」이 있으나, 교육부는 고가·첨단기자재의 도입과 구매된 기자재의 활용 등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자재를 실제 구입·관리하는 주체는 국립대학이며, 국립대학 내 고가·첨단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가·첨단기자재를 운영하는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규정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국립대학 내 자체 고가·첨단기자재 운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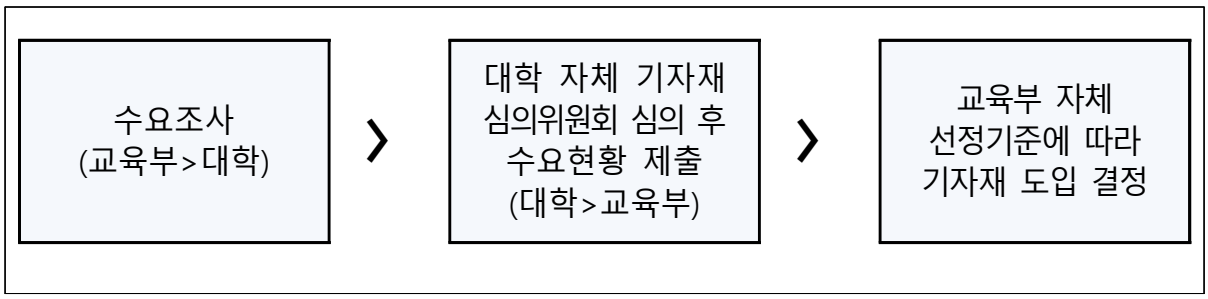
❑ 그러나, 국립대학 내 고가·첨단기자재 운영 규정은 제·개정 주체가

37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대학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3년도 동 사업을 위한 고가·첨단기자재의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기자재 선정을 위한 교육부의 수요조사에 대하여, 각 국립대학은 자체 기자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자재 수요현황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수요현황에 대하여 자체 선정기준으로 기자재를 심사한 후 도입을 결정하여 예산을 배정하였음.

< 2023년도 고가 · 첨단기자재 선정 절차 >



❑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국립대학의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규정 중에는 기자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국립대학의 내부규정만으로 고가·첨단기자재의 도입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중요 사항들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각 국립대학 내 자체 고가·첨단기자재 운영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립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래의 목록은 2023년도에 동 사업으로 각 국립대학에 지원된 고가·첨단기자재 목록으로,

< 2023년 고가 · 첨단기자재 대학별 지원 목록 >

대학명	장비명
국립강릉원주대	액체고분해능질량분석기, 반도체 X-선 결정구조분석기, 반도체원자박막증착기, 반도체검사기
강원대	레이저발생장치(초고속고출력레이저), 주사전자현미경(SEM)(전자빔 나노리소그래피 시스템), 액체크로마토그래프(고속단백질액체크로마토그래피), 미생물분석기, 분말 겸용 원자층 증착장비,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 제품(디지털 유전자증폭기),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또는레이저주사현미경(초고속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 통신망분석장치(비트 오류율 테스터), 진공증착기(산화물스퍼터), 진공증착기(금속스퍼터), 반도체검사기(반도체 소자 분석기), 진공증착기(E-beam 이베포레이터), 진공증착기(열 원자층 증착기), 통신망분석장치(벡터네트워크분석기-ZNA67), 통신망분석장치(벡터네트워크분석기-ZNA43), 실험실용반응기(고압반응기시스템)
경북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X-선 회절분석기,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sem), 레이저주사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s), 진공증착기(RF&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 전자 주사선 묘화 시스템, 실시간세포대사분석기(Cellmetasbolismanalyzer)
경상국립대	투과전자현미경, 400mHz핵자기공명분광기, 실시간세포영상장치(세포분석기), 반응형 이온 식각 장치(웨이퍼식각기), 멀티타겟 스퍼터링 시스템(진공증착기), 파이즈코터, 웨이퍼증착적층기
국립공주대	DNA서열분석기, ICP-MS, XR기반 자율주행차 시뮬레이터,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용 섀시플랫폼 키트, 스퍼터(진공박막증착장비), 유기반도체 패턴용 잉크젯 프린터, 반도체 진공 증착용 장비, 플라즈마복합기(PCMC), 레이져 리소그래피 시스템, 정립식 도립식 일체형 레이저 형광 공초점 현광 현미경

국립군산대	컨포칼 현미경, 반도체장비인력교육시스템(300mm wafer용 dry etcher), 화학기상증착기
국립금오공과대	근접장주사광학현미경(NSOM), 삼축압축시험기, 유압엑츄에이터, LC/MS system(QQQ), 3D systems, 탄소 및 유리 강화섬유 복합소재 구조물 3D 프린팅 장비, PR stripper, 대면적 플라즈마 ALD 시스템(PEALD), RF 스퍼터 시스템, 전력시험기, 변위측정기, 고온 마모시험기
국립목포대	주사탐침현미경, 부식시험기, 반도체검사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세포분석기, 형광광도계, 포토레지스트노광기, 주사전자현미경, 웨이퍼식각기
국립목포해양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추진 시스템 실시간 연소 및 전력 측정 및 분석 장비, FastOcean APD Profiling System,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현미경
국립부경대	근접장주사현미경(SPM), 저가속전압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오제이전자분광기, 반도체 소재 박막 분석 시스템(열전도율측정기), 원자층 초박막 증착기, 반도체특성분석장비,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 RTA (Rapid Thermal Annealing), PECVD 장비, PVD sputtering/vacuum, wet station, ICP-RIE System, E-beam evaporator, Thermal oxidation system, 플라즈마 활성 소결기, 레이저 가공기
부산대	전자빔 증착기, 금속 3D프린터, 실시간 자동화 현미경, 파장 분산형 엑스선 형광분광기(WD-XRF), 마스크얼라이너(노광기), 반도체 소자분석시스템, 스퍼터, 반응성 이온 식각장비,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장치, 초고주파 신호분석기(VNA), 디지털 소재 잉크젯 프린터, 전자빔리소그래피시스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 저항가열 및 전자빔증착시스템,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장치, 고출력레이저 스크라이빙시스템, 실시간 고온 엑스레이 회절분석장비(주장비), 실시간 고온 엑스레이 회절분석장비(보조장비), 전자빔 나노패턴 리소그래피 시스템, 교육용 딥러닝 서버
서울과기대	전기도금장비, 스퍼터 장비, 웨이퍼 얼라이닝 & 본딩 시스템, 플라즈마화학증기증착장비(PECVD), 스핀코터, 마스크 클리너, 진공오븐
국립순천대	적외선분광기, 일립소미터, 투과전자현미경
국립안동대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열충격시험기, 적외선분광기, 원자힘현미경, 전기화학적이동평가시스템, 나노인덴터, 원편광이색성분광계, 반도체용 원자층 증착기
전남대	주사전자현미경, 반도체시편분석용광학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자기공명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모빌리티 구동모터 동력계
전북대	레이저 기반 유체흐름 가시화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자기광학측정장비, 원자층 식각시스템, 초고진공 기판클리빙-코팅시스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진공증착기), 초소형분자선박막증착장비, ICP반응이온식각장치(웨이퍼식각기), 전자빔증착기(Electron beam evaporator), 시간 분해능 PL 측정 장비, 아스팔트 공용성능 측정기, 가상해부학 테이블
제주대	방사선암치료기, 스퍼터, Pulsed Laser Deposition(PLD) system, 전자현미경, 반도체특성분석장치, 원자현미경시스템, 엘립소미터

국립 창원대	X선 형광분석기, 하이브리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고주파스퍼터링시스템, 마스크 정렬 노광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건식 식각기, 원자층 증착장비(ALD), 라미레이터 장치, Thermal Evaporation System, 반도체검사기
충남대	전자분광분석기, 클러스터 열/플라즈마 원자층증착기, 반도체검사기, 진공증착기, 회로기판제작기, 레이저현미경, 반도체검사기, 진공증착기, 신호분석기, X선 마이크로 컴퓨터 단층 촬영 시스템, 전자선 리소그래피(e-beam lithography)
충북대	구면수차보정투과전자현미경(HR FE-TEM), 공초점레이저 현미경 분석 시스템, Axiooberver.7_Photonmultiplier_Ca2+imaging_Fura 2, 네트워크분석기, 비접촉 3차원 형상 측정기, 열분석기
한경국립대	스마트팩토리 실습장비, 반도체제조공정 실습장비, 마스크리스 얼라이너, 주사전자현미경(SEM)
한국교원대	초고진공 스퍼터 시스템, 실시간 공초점 라만 이미징시스템
국립한국 교통대	철도차량용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교육 플랫폼 구축, X-선광전자분광분석기
한국체육대	체육과학연구소 자동면역조직검사장비, 체육과학연구소 마커리스동작분석시스템
국립한국 해양대	선박운항시뮬레이터, 전자빔증착기시스템 , 레이저라이터 시스템, 글러브박스 시스템, 열증착시스템, 마스크얼라이너 시스템, 초순수장치 시스템, 스핀코터 시스템, 급속열처리장치 시스템
국립한밭대	만능시험기(UTM), Mask Aligner, E-beam evaporator, Wet station system, Deep Level Transient Spectroscopy, Semiconductor Device Analyzer, 시차주사 열량계(DSC), 전자빔 리소그래피 및 주사현미경

자료: 교육부 제공 자료 편집

❑ 열충격시험기(시험 장비, 환경조성형 장비)[378], 반도체 X-선 결정구조분석기(분석 장비)[379], 전자현미경(계측 장비), 고압반응기시스템(환경조성형 장비)[380] 등 다수의 장비들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

378) 반도체 칩 또는 필름/반도체 패키징 연구를 위해 해당시료에 열 스트레스를 주어 열저항 테스트 및 결함을 찾아내거나 내열특성 시험을 주목적으로 함(참조: ZEUS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정보)

379) X-ray를 이용하여 시료에 조사 후 방출되는 X선 회절 패턴을 이용하여 시료의 결정구조를 분석하는 장비(참조: ZEUS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정보)

380) 반도체 및 재료 소자 및 전극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고온·고압을 사용하는 고압반응기 시스템(참조: ZEUS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정보)

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381](이하 “표준지침”)」에서 연구장비로 정의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382].

❑ 또한 “표준지침”은 국가의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도입・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81) 동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도입、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82) 동 지침 [별표 1의1]에서는 ‘연구장비’의 정의 및 구성을 규정하면서,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으로 정의하면서, 연구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의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1.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o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o ‘연구시설’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함

1.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2.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3.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

구분	포함대상	제외대상
연구시설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팹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육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센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연구장비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인데, 현재 고가·첨단기자재 확충사업은 기자재의 공동활용과 관련하여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ZEUS[383]를 활용하고 있음[384].

❑ 따라서 교육부는 “표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참고하여 고가·첨단기자재 확충사업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83)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장비활용 종합 포털사이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2조(공동활용체계)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3.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통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연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온라인 예약체계와 ZEUS의 온라인 예약체계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384) 교육부는 고가·첨단기자재를 포함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구매한 3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경우 ZEUS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집행지침 >

O 기타 유의사항 -(ZEUS 등록) 일반회계(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등)에서 구입한 3천만원 이상 비R&D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ZEUS 등록

(3) 고가 기자재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2023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을 통하여 37개 국립대학에서 총 32,957개의 실험실습기자재가 확충되었고, 이 중 단가 1억원 이상의 기자재(이하 “고가 기자재”라 함) 구입금액은 889억 3,100만원으로 총 집행액 대비 33.5%를 기록하였음[385].

< 최근 2년간 고가 기자재 확충 비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69,223	268,024
총 집행액(A)	68,991	265,720
고가 기자재 집행액(B)	43,504	88,931
비율(B/A)	63.1	33.5

자료: 교육부

❑ 또한 2022년도 “고가 기자재” 집행액은 435억 400만원으로, 2023년도 집행액은 2022년도 보다 상승하였음[386].

❑ 한편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19년～‘23년) “고가 기자재”의 연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활용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자재가 매년 20～30% 내외로 지속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매년 절반이

385)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구매한 안전장비는 제외함.

386) 2024년도의 경우 고가·첨단기자재 확충사업(1억원 이상의 교육·연구·실습용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만 1,004억 5,900만원이 배정되었는바, 2024년도 “고가 기자재” 집행액은 2023년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서 “고가 기자재” 집행액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넘는 기자재가 50건 미만의 활용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바, “고가 기자재”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5개년간 고가 기자재의 연간 활용 현황 >

(단위: 개)

연도 \ 활용건수	10건 미만	10건 이상 20건 미만	20건 이상 50건 미만	50건 이상 100건 미만	100건 이상	계
2019	14	7	13	11	21	66
	21.2%	10.6%	19.7%	16.7%	31.8%	100.0%
	51.5%					
2020	19	10	20	21	27	97
	19.6%	10.3%	20.6%	21.6%	27.8%	100.0%
	50.5%					
2021	28	14	11	14	26	93
	30.1%	15.1%	11.8%	15.1%	28.0%	100.0%
	57.0%					
2022	27	20	28	15	39	129
	20.9%	15.5%	21.7%	11.6%	30.2%	100.0%
	58.1%					
2023	64	27	27	25	54	197
	32.5%	13.7%	13.7%	12.7%	27.4%	100.0%
	59.9%					

자료: 교육부 제공(2024.6.1. 기준)
주: 당해연도에 구입한 1억원 이상 고가 기자재의 당해연도 활용 현황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재재 활용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예산 집행시 준수해야 하는 집행지침[387]을 국립대학에 배부하여 국립대학

387) < 2023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집행지침 >

O 기타 유의사항
-(ZEUS 등록) 일반회계(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등)에서 구입한 3천만원 이상 비R&D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ZEUS 등록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세부사업)으로 구입한 3천만원 이상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 ZEUS[388]에 등록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기자재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출한 3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ZEUS 등록실적을 보면 3천만원 이상 기자재는 총 1,382개로, 이 중 225개(16.3%)만이 취득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도 구입 기자재의 ZEUS 등록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기자재 수	구입액	비 고
3천만원 미만			31,575	73,328	-
3천만원 이상	등록	30일 이내	225	22,302	16.3%
		30일 이후	1,090	95,525	78.9%
	미등록		67	5,989	4.8%
	소 계		1,382	123,816	100%
계			32,957	197,158	-

자료: 교육부 제공(2024.6.1. 기준)

❑ 또한 30일 이후에 등록된 기자재(1,090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5개의 기자재가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후 등록되었으며, 67개의 기자재는 미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공동활용시스템에 대한 등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88)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장비활용 종합 포털사이트

< 2023년도 구입 기자재의 ZEUS 등록 현황(구입 후 30일 이후) >

(단위: 개)

구 분	등 록					미등록	총계
	30일~ 3개월 내	3개월~ 6개월 내	6개월~ 1년 내	1년 이후	소계		
기자재 수	545	293	247	5	1,090	67	1,157

자료: 교육부 제공 자료 편집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구매한 기자재 중 “고가 기자재”의 연간 활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재의 공동이용 활성화는 중요해 보이며,

교육부는 기자재의 ZEUS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국립대학의 기자재 등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38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은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보수·정책 사업과 BTL 정부지급금으로 구분됨.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1조 19억 9,700만원으로, 이 중 9,940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77억 7,0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2%임.

< 2023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1,001,853	-	1,001,997	994,077	150	7,770	99.2

자료: 교육부

389) 문의: 02-6788-5184

나) 검토의견 : 국립대학의 실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확충·보수·정책 사업과 BTL 정부지급금으로 구분됨. ① 확충사업은 신규 시설의 신·증축과 기존 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② 보수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 지원, ③ 정책사업은 석면제거,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해당하고, ④ BTL 정부지급급은 BTL로 건립한 기숙사의 시설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임.

❑ 동 사업은 대학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제출한 예산요구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교육부는 대학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대학에 교부하고 대학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후 그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구조임.

❑ 한편, 교육부 등 부처의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은 12월 31일[390]인 것에 반해, 대학의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은 2월 말일[391]로 상이함. 이에 따라 동 사업에서 각 국립대학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390)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9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동 사업의 2023년 12월 말 기준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전체 예산 현액 1조 9억 7,300만원 중 6,480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64.7%를 실집행하였으며,

보수사업과 BTL 정부지급금을 제외한 확충사업과 정책사업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확충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2,874억 6,900만원 중 1,142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39.7%에 불과하며, 총 120개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나타났음[392].

< 2023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교육부		국립대학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이월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육부 불용처리)	'23년 집행잔액	집행률
□ '23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1,853	1,000,973	1,000,973	-	1,000,973	648,068	7,587	345,318	64.7
○ 확충사업	287,469	287,469	287,469	-	287,469	114,211	2,383	170,875	39.7
○ 보수사업	519,701	518,8211)	518,821	-	518,821	387,017	4,430	127,374	74.6
○ 정책사업	114,903	114,903	114,903	-	114,903	68,393	690	45,820	59.5
○ BTL정부지급금	79,780	79,780	79,780	-	79,780	78,447	84	1,264	98.3

자료: 교육부

392) [참고자료] "2023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대학별 실집행 부진 사업" 참조.

❑ 교육부는 이처럼 실집행이 부진하였던 원인에 대하여, 일반회계(국고)는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것에 반해 대학회계는 3월 1일부터 집행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대학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동계 방학기간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12월 말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21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요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수급이 불안정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액 규모가 증가한 상황이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현행 건축법령상 절차[393]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대학회계 기준인 2월 말일('24.2.28)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936억 6,6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에 그쳐 동 사업 전체의 대학회계 기준 실집행률은 74.1% 수준으로 저조하고, 확충사업의 경우 216억 3,8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대학회계 기준 실집행률은 47.3%에 머물고 있으며,

39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에 따라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실행을 위해 사전검토 실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에 따라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뢰

394) 각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음.

< 2023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2024년 대학회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394]	`23년 집행잔액	`24년 집행액 (~2.28.)	대학회계 이월액	대학회계 불용액 처리				불용액 반납현황	
				~12.31.	~2.28.	~5.31.	계	반납완료 (~5.31.)	미반납 (5.31. 기준)
□ '23 국립대학 시설확충	345,318	93,666	246,714	7,587	4,938	901	13,426	8,645	4,780
○ 확충사업	170,875	21,638	148,186	2,383	1,031	86	3,501	2,144	1,357
○ 보수사업	127,374	58,835	66,368	4,430	2,193	202	6,826	4,968	1,858
○ 정책사업	45,820	13,193	31,714	690	911	613	2,212	1,436	776
○ BTL정부지급금	1,264	-	446	84	803	-	887	97	790

주: 미반납은 대학별·분기별로 집행잔액을 모아서 제출 및 월별 반납하고 있어 6월기준 반납 예정

자료: 교육부

관급자재 수급지연은 '21년 이후에 발생하였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14.6「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1부터 추정 설계비가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23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예산 편성은 '22.8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에서 제시한 실집행률 부진 사유는 예산 편성 당시에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불가피한 실집행 부진의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3년 집행잔액 : `23년 예산 중 12월까지 집행 및 불용 후 잔여금액
. `24년 집행액 : `23년 예산 중 `24년 1월 ~ 2월 집행금액
. 대학회계 이월액 : `23년 3월 ~ `24년 2월까지 집행 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금액
(공사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및 수업일수 보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동계방학기간(`23.12. ~ `24.2.)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이월 발생)
. 대학회계 불용액 처리 : 1차 `23년 12월 반납 → 이후 `24년 2월 불용액 처리 후 즉시 및 분기별 반납

❑ 동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유보다는 사업의 진척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 및 교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먼저, ① 최근 설계용역 관련규정의 제·개정 및 강화 등으로 설계기간('21년 평균 1년 5개월)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이 매년 다수 발생하지만, 설계비 전액을 사업을 시작하는 첫 연도에 교부하여 온탓에 설계비가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였음.

❑ 대표적으로 동 사업 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무조건적 교부 대신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하나,

'23.5.16에 이르러서야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운영 대학이 지정되는 등 설계 관련 예산의 집행이 연내에 불가능함에도 사업방식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설계비 전액을 편성 및 교부한 결과 4개 대학 중 3개 대학에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문제[395]가 발생하였음.

---

395)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사업 추진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 4개 대학이었는데, 설계 용역 선금을 지급한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음.

<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남대	679	0	0
부산대	679	0	0
충남대	679	0	0
경북대	679	475	70.0
합계	2,716	475	21.5

자료: 교육부 자료 재구성

❑ 또한, ② 총사업비 규모가 큰 확충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과 이에 따른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조정 절차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기간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396]에 따를 때 총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교육기본시설의 공사기간이 급간별로 각각 31, 33, 34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6, 39, 52개월로 나타나는 등 집행이 지연된 바 있음.

< 교육기본시설 공사기간 산정 검토 >

(단위: 개월)

구분	100억 미만	100~150억	150~200억	200~250억	250~300억	300억 이상
대학 실적*	19	22	29	36	39	52
가이드라인	25	28	30	31	33	34

* (대학실적) 2019~2023년 중 완료된 신규사업 60건 대상
자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96)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2.8.

❑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수준만큼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부는 향후 '25년부터 신규사업 설계비(기본+실시) 예산을 2개년으로 배분하여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설계 기간에 맞추어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 설계용역 예산배정 조정 내용 >

구 분	~ `23년 이전 : 전체 사업	`25년 반영 : 기재부 사업
신·증축 개축 리모델링	▪ (1차년도) 기본 50% + 실시 50% ▪ (2차 이후) 공사비	▪(1차년도) 기본설계비 50% ▪(2차년도) 실시설계비 50% + 필요시 공사비 지급 * 실시설계기간, 조달청 입찰·계약 기간 등을 고려한 연내 집행 가능한 경우 ▪(3차 이후) 공사비 전체 지원

자료: 교육부

신규사업 예비선정[397], 성립 전 예산 활용[398],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399] 및 선금·기성금 즉시 지급[400]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힘.

397) '25년 신규사업 선정 전 적기 추진 가능성 및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기획, 사전 협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연 요소(부지선정, 사용자협의 등)를 사전에 배제 및 국가정책(글로컬대학, 캠퍼스 통합·재배치,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우선 선정 검토

398) 예산안 기준으로 `23년 대학 회계 추경 사업('24년 1~2월 집행을 위해 대학회계상 추경을 통해 '24년 예산 편성·집행)과 '24년 대학회계 본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조기에 집행계획 수립 요청

399) 조달청 조달 구매 요청 시 선고지 요구 후 조달청에 대금(최대 70%) 지급

400)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최대 70%) 지급

[참고자료]

< 2023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대학별 실집행 부진 사업 >

(단위: 백만원, %)

학교명	사업 유형	구분	사업명	2023년(`24.2.기준)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부산교대 (2개)	보수	실소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	60	2	3%
	정책	안전인증	안전인증	21	12	56%
경인교대 (1개)	보수	실소요	경기캠퍼스 행정관 필로티 안전보강	854	292	34%
청주교대 (2개)	보수	일반보수	시설 설비 보수	2,028	1,066	53%
	보수	실소요	산업재해 예방 / 정보통신망선로	59	39	66%
공주교대 (2개)	확충	계속	실과관 리모델링	3,948	1,114	28%
	보수	실소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	-	-	0%
전주교대 (2개)	확충	계속	도서관 개축공사	3,037	1,077	35%
	정책	안전인증	안전인증	10	6	62%
광주교대 (4개)	확충	계속	미래교육혁신관	3,058	1,732	57%
	보수	실소요	도서관공간혁신	2,000	179	9%
	보수	안전인프라	안전인프라구축	607	333	55%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설치	900	267	30%
진주교대 (1개)	확충	계속	미술관 및 음악관 개축	3,000	810	27%
충남대 (6개)	확충	신규	디지털융합인재양성관 신축	758	96	13%
	확충	신규	스마트영농창업융복합 기술혁신센터 신축	650	436	67%
	확충	신규	반도체공동연구소	679	-	0%
	확충	계속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및 확충	7,344	418	6%
	보수	실소요	전기차충전시설확충	700	2	0%
	정책	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1,850	346	19%
전북대 (11개)	확충	계속	산학융합 PIAZA 신축	6,931	1,732	25%
	확충	계속	약학대학 리모델링 및 증축	6,844	2,809	41%
	확충	계속	자연과학대학 3호관 개축	5,000	7	0%
	비품	비품	약학대학 리모델링 비품비	375	-	0%
	보수	실소요	노후창호 교체	1,300	523	40%
	보수	실소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	700	-	0%
	보수	실소요	운동시설 개선 및 주변도로 개선	3,000	374	12%
	보수	실소요	석면제거(목적보수)	303	147	48%
	보수	안전인프라	안전인프라 구축(보차도분리)	1,248	491	39%

학교명	사업 유형	구분	사업명	2023년(`24.2.기준)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정책	석면제거	석면제거 사업	7,000	3,840	55%
	정책	안전인증	교육시설 안전인증	76	5	6%
전남대 (7개)	확충	신규	미래간호교육관 증축	389	226	58%
	확충	계속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	6,537	2,118	32%
	확충	계속	인문대2호관 개축	4,816	1,229	26%
	확충	계속	여수캠퍼스 학생성공홀 신축	4,765	139	3%
	확충	계속	1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679	-	0%
	보수	실소요	여수캠퍼스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4,516	1,026	23%
	정책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제거 사업	6,732	-	0%
경북대 (10개)	확충	계속	상주캠퍼스 창의융합교육관 신축	1,860	13	1%
	확충	계속	간호대학 신축	5,320	2,096	39%
	보수	일반보수	시설 설비 보수	10,970	5,898	54%
	보수	실소요	노후 창호 교체	1,300	738	57%
	보수	실소요	노후 변압기 등 교체	2,000	1,109	55%
	보수	실소요	노후 승강기 교체	1,000	19	2%
	보수	안전인프라	안전인프라 구축	1,680	153	9%
	정책	석면제거	석면제거 사업	4,100	113	3%
	정책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690	65	9%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2,800	996	36%
부산대 (5개)	확충	계속	제6공학관 개축	68	-	0%
	확충	계속	2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679	-	0%
	확충	신규	부산캠퍼스 사회관 개축	773	439	57%
	보수	안전인프라	외벽타일 철거 및 재설치 등	3,000	393	13%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2,100	519	25%
강원대 (4개)	확충	계속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축	3,836	-	0%
	확충	계속	교육1,2,3호관 개축	5,092	-	0%
	보수	실소요	노후변압기 등 교체사업	-	400	0%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3,049	1,882	62%
충북대 (6개)	비품	비품	의과대학 3호관 신축 비품비	371	148	40%
	확충	계속	첨단 강의동 신축	8,000	1,577	20%
	보수	실소요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1,000	571	57%
	보수	안전인프라	운동장본부석 보수	350	85	24%
	정책	석면제거	석면제거 사업	1,700	73	4%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1,750	592	34%
제주대	확충	신규	AI 융복합관(학생학습) 및	352	176	50%

학교명	사업 유형	구분	사업명	2023년(`24.2.기준)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5개)			교양관리모델링			
	확충	계속	동물의료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6,000	15	0%
	확충	계속	사범대학 리모델링	1,638	1,035	63%
	보수	안전인프라	교통안전	300	154	51%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1,500	378	25%
한국교원대 (2개)	보수	실소요	노후창호 교체	600	320	53%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376	107	28%
부경대 (5개)	확충	계속	학생지원시설 개축	8,828	2,180	25%
	확충	계속	인문사회경영관 증축	5,222	3,100	59%
	비품	비품	인문사회경영관 증축 비품비	120	-	0%
	보수	안전인프라	안전인프라 구축	3,190	2,071	65%
	정책	치장벽돌	치장벽돌 보강사업	1,049	329	31%
목포대 (6개)	확충	계속	체육관 및 약대 리모델링	8,852	5,179	59%
	보수	일반보수	시설설비보수	6,389	4,324	68%
	보수	실소요	창조관 외부마감재(드라이비트) 교체공사	1,400	773	55%
	보수	실소요	노후 창호 교체	1,000	673	67%
	보수	실소요	노후 변압기 등 교체	1,000	636	64%
	정책	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600	245	41%
공주대 (3개)	확충	신규	평생교육원·예술관 리모델링	578	41	7%
	확충	계속	글로벌종합연수관 신축	5,063	2,257	45%
	확충	계속	미래융합역사문화관 신축	6,230	66	1%
안동대 (3개)	확충	계속	생명백신공학 강의동 증축	4,227	2,536	60%
	비품	비품	생명백신공학 강의동 증축 비품비	115	-	0%
	정책	안전인증	안전인증	35	24	69%
군산대 (6개)	확충	신규	공대1,4호관 리모델링	611	-	0%
	보수	일반보수	시설설비보수	6,158	3344	54%
	보수	실소요	학내 하수관로 개선사업	1,200	31	3%
	보수	실소요	(특별)전기차충전시설 확충사업	350	10	3%
	보수	실소요	학생테니스장 조성	623	381	61%
	정책	안전인증	교육시설 안전인증	47	32	68%
강릉원주대 (1개)	확충	계속	자연1호관 개축	2,987	10	0%
창원대 (1개)	보수	실소요	토지매입비	288	100	35%
순천대 (4개)	확충	신규	첨단공학관 신축	250	132	53%

학교명	사업 유형	구분	사업명	2023년(`24.2.기준)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확충	계속	공대1호관 리모델링 및 증축	1,059	604	57%
	정책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제거사업	3,551	2,172	61%
한국해양대 (2개)	확충	신규	도서관 리모델링 외 철거공사	405	212	52%
	확충	계속	도서관 증축	7,350	3,860	53%
한국체육대 (3개)	확충	계속	골프연습장 개축	5,000	2	0%
	보수	실소요	산업재해 예방 / 정보통신망선로	59	31	53%
한국방송대 (2개)	확충	계속	수도권지역 학습관 신축	7,463	1,764	24%
	확충	계속	경남지역대학 이전 신축	1,000	330	33%
한국교통대 (1개)	확충	계속	화학생명관 리모델링 및 증축	5,000	1,278	26%
한밭대 (1개)	확충	계속	디지털도서관 신축	5,000	253	5%
한경대 (5개)	확충	계속	글로컬융합교육센터 신축	6,820	1,240	18%
	보수	실소요	[특별] 노후냉난방시설 교체	2,500	1,534	61%
	보수	실소요	산업재해 예방 / 정보통신망선로	118	59	50%
	보수	안전인프라	안전인프라 구축	1,214	699	58%
	정책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240	3	1%
서울과기대 (2개)	확충	계속	도서관 및 학생회관 신축	5,000	10	0%
	보수	일반보수	시설 설비 보수	5,921	3,563	60%
경상국립대 (5개)	확충	신규	공학1·6호관 리모델링 및 증축	574	53	9%
	확충	계속	농생1호관 노후시설개선	8,955	1,360	15%
	확충	계속	교양학관 리모델링 및 증축	4,747	422	9%
	보수	안전인프라	개인용이동장치 주차구획 등 시설개선	300	-	0%
	보수	안전인프라	시설안전	1,700	70	4%

자료: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1) 행복기숙사지원사업(2861-301)[40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행복기숙사지원사업(2861-301)은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이 좋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형 행복기숙사 사업,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 에듀21 기숙사 사업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01)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액은 707억 3,300만원으로, 707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임.

< 2023년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전용 등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70,733	-	70,733	70,733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낮은 실집행률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숙사 유형으로는 사립형 행복기숙사, 연합형 행복기숙사, 에듀21 기숙사(대환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총 58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음[402].

❑ 유형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ⅰ) 사립형 행복기숙사는 사립대학 내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운영하는 것이고, ⅱ) 연합형 행복기숙사는 대학 내·외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합기숙사를 건립·운영하는 것이며, ⅲ) 에듀21 기숙사는 기 운영중인 민자기숙사의 민간자금을 공공기금으로 대환하는 것이고, ⅳ)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를 공급·운영하는 것임.

❑ 기숙사의 건립과 운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장기저리의 공공기금[403]을 차입하여 마련한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

402) 사립형 행복기숙사 38개, 연합형 행복기숙사 5개, 에듀21기숙사 10개, 기숙사형 청년주택 2개, 글로벌교류센터 2개, 파리한국관 1개가 운영되고 있음. 그 외 설계 및 공사중에 있는 기숙사가 10개, 사업이 종료(예정 포함)된 기숙사가 11개 있음.

403)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하여 운영하였으나, 2018

로 한 민간투자방식(BTO)[404]으로 추진되고 있는바[405],

동 사업은 재단이 차입한 기금으로 기숙사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406]'라 함)에 사업비를 융자해주고, 해당 SPC는 기숙사를 설치·운영하여 기숙사비 등의 운영수입으로 융자 원리금을 재단에 상환하면 재단은 이를 공공기금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407].

< 행복기숙사 유형별 사업개요 >

구 분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에듀21기숙사 (대환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내용	대학 내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운영	대학 내·외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운영	旣 운영 중인 민자 기숙사의 민간자금을 대환하여 절감된 이자액만큼 기숙사비 인하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공급·운영
건립부지	대학 내 교지	국·공유지, 국·공·사립대 및 공공기관 부지 등	대학 내 교지	대학밀집지역 및 역세권
지원대상	행복기숙사(사립) SPC 및 사학기관	행복기숙사(연합) SPC	민간투자사업 SPC	행복기숙사(연합) SPC
이자율	연 1.7% 수준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시)			
운영기간	최대 30년 이내		잔여 운영기간내	운영기간내

자료: 교육부

년도부터는 신규로 주택도시기금만 차입하고 있음.

404) BTO(Build(건설)-Transfer(이전)-Operate(운영)):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

405)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유형 중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BTO에 해당하지 않음.

406)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407)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SPC 외에 사학기관도 직접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즉, 동 사업의 주체인 재단의 예산 집행률은 재단에서 당해연도에 각 기숙사 사업별 SPC에 배정한 융자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데, 2023년에는 신규사업 4건에 284억 8,000만원, 계속사업 5건에 422억 5,300만원이 융자되어 100%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 2023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집행내역(재단→SPC)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규) 배정연도	학교명(사업명)	계획액	집행액 (융자금)
신규	행복(사립) 기숙사	2023	인하대	4,310	4,310
			아주대	2,686	2,686
	에듀21 기숙사	2023	동국대	8,797	8,797
			경기대	12,687	12,687
	소계			28,480	28,480
계속	행복(사립) 기숙사	2022	용인대	8,820	8,820
	행복(연합) 기숙사	2022	행복도시	13,858	13,858
			인천대	16,618	16,618
		2018	대구	300	300
		2015	동소문	2,657	2,657
	소계			42,253	42,253
합 계				70,733	70,733

자료: 교육부 제공 자료 편집

❑ 한편, 각 기숙사 사업별 융자금에 대한 SPC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 중에서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 사업에 배정된 융자금은 전액 집행되었고, 에듀21 기숙사 사업으로 동국대와 경기대 기숙사 사업에 배정된 융자금도 전액 집행되었음.

❑ 그러나, 위 4건의 기숙사 사업을 제외한 5건의 기숙사 사업에 배정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사립형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인 인하대와 아주대 기숙사 사업은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났고, 계속사업인 용인대 기숙사 사업은 2023년까지의 누적 실집행률이 1.0%이며,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인 행복도시와 인천대 기숙사 사업은 2023년도까지의 누적 실집행률이 각각 22.0%와 2.0%로 나타났음.

< 2023년 기숙사 사업별 SPC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학교명(사업명)	융자배정현황 (재단 → SPC)				실집행현황 (SPC → 업체)			
			공공기금 배정액 (총사업비)	연도별 집행액		집행 누계 (A)	연도별 실집행액		실집행 누계 (B)	누적 실집행률 (B/A)
				`22년	`23년		`22년	`23년		
사립형	`23년 신규	인하대	86,164	-	4,310	4,310	-	3	3	0
		아주대	47,708	-	2,686	2,686	-	3	3	0
	`22년 신규	용인대	17,635	8,815	8,820	17,635	-	168	168	1.0
연합형	`22년 신규	행복도시	38,043	22,175	13,858	36,033	228	7,586	7,814	22.0
		인천대	43,630	11,512	16,618	28,130	3	561	564	2.0
	`18년 신규	대구	300	-	300	300	-	300	300	100.0
	`15년 신규	동소문	5,800	-	2,657	2,657	-	2,657	2,657	100.0
에듀21	`23년 신규	동국대	8,797	-	8,797	8,797	-	8,797	8,797	100.0
		경기대	12,687	-	12,687	12,687	-	12,687	12,687	100.0

자료: 교육부 제공 자료 편집

❑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인하대와 아주대의 경우 12월 말에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가 융자되어 그 중 금액이 적은 부대비만 연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고,

❑ 계속사업인 용인대, 행복도시, 인천대 기숙사 사업의 경우,

재단이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행복기숙사 사업 유형별로 신규사업에만 융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부진으로 신규사업이 어렵게 되는 등 신규사업 추진이 저조하게 되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SPC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사업에 융자금을 배정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낮은 실집행률 문제는 연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모두 저조하였고,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융자금을 매년 예산액 전액 배정하였으며[408], 사업 추진 실적도 매년 계획 대비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409],

---

408) 2021년도의 경우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7건에 융자금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과 다르게 당해연도 집행실적이 저조해지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SPC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12월에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에 대한 융자금 배정이 있었음.

409) 2023년도의 경우 사업 추진 수는 계획(6건) 대비 실적(9건)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적 중 4건의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함.

❑ SPC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르면 차년도에 배정해야 하는 융자액을 사업부진에 따른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에 조기집행하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시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계획 대비 실적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융자 배정(재단→SPC)					SPC 실집행률 (SPC→업체)
	계획		실적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집행액 (집행률)	12월 집행액 (연집행액 대비 비율)	
2019	20 (10)	118,007	10 (6)	118,007 (100%)	90,551 (76.7%)	5.5%
2020	13 (9)	112,908	9 (4)	112,908 (100%)	90,071 (79.8%)	21.3%
2021	11 (5)	107,350	3 (2)	35,679 (33.2%)	35,679 (100%)	1.7%
2022	8 (4)	83,728	6 (6)	83,728 (100%)	20,332 (24.3%)	13.1%
2023	6 (6)	70,733	9 (4)	70,733 (100%)	21,154(29.9%)	54.8%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신규사업 수를 의미
주2) SPC 실집행률: 당해연도에 융자 배정한 기숙사 사업의 해당 연도까지 배정된 융자금 총액 대비 SPC의 누적 실집행액 비율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4년도까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실집행률에 대한 고려 없이 총사업비 일괄배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으로 진행함에 따라 융자 배정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연차별 실집행률을 고려한 면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410],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3년도에 부진했던 사업들의 경우 2024년도 말에는 모두 공사에 착공되거나 사용승인 예정이어서 향후 실집행률이 상승할 것으로 설명하였음[411].

❑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편성 또한 실집행률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배정된 것인바, 2024년도 말까지 계획된 동 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상기 언급한 최근 5년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보면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계획된 신규사업 중 2건~5건의 사업이 불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신규사업을 불발시키는 반복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임.

---

410) 교육부는 이와 함께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현황에서 누적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6개 사업(인하대, 아주대, 경인여대, 용인대, 인천대, 서울과기대)의 경우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집행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411) 아주대의 경우 2025년 1월 착공 준비 예정임.

(2)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에 따라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고[412],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프로그램[413] 단위로 작성하고 있음[414][415].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은 '사립대학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융자)'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416],

2023년도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 융자)'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목표

---

412)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413)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묶음으로, 예산은 기능별로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으로 구분됨.

414) 2023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415)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16)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대학교육 역량강화(프로그램) -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단위사업)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세부사업) 구조로 되어 있음.

별 성과지표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수혜자 만족도’와 ‘행복기숙사 수용률’이 있음[417].

❑ 행복기숙사 수용률(%)은 당해연도까지 개관된 행복기숙사 누적 수용인원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목표대비 실적이 모두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4년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행복기숙사 수용률 (%)	목표	1.21	1.35	1.55	1.60	전년도('22년) 목표치에서 3% 상향 * 1.55% × 103% = 1.60%	당해연도까지 개관된 행복기숙사 수용인(누적)(A) / 당해연도 사립(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수(B) × 100	교육통계연보
	실적	1.31	1.50	1.55	1.78			
	달성도	108.3	111.1	100.0	111.3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당해연도까지 개관된 행복기숙사 수용인(누적)”을 “당해연도 사립(전문대 포함)대학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를 100으로 곱한 것이며,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동 지표를 산출하고 있음.

❑ 측정산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자에 해당하는 “당해연도까지 개관된 행복기숙사 수용인(누적)”은 2023년까지 개관 및 운영

417) 2023년도 교육부 성과보고서

중인 전체 행복기숙사 수용인원의 합산으로 구할 수 있음[418].

❑ 그런데, 2023년도 말 기준 개관 및 운영 중인 전체 행복기숙사 유형으로는 사립형 행복기숙사, 연합형 행복기숙사,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는데[419], 연합형 행복기숙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는 사립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학생들도 입주가 가능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두 유형의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2023년 9월 1일 기준 사립대학 학생은 2,690명, 국·공립대학 학생은 1,19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연합형 행복기숙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국·공립대학 학생들도 입주가 가능한데, 동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에서 분모는 “당해연도 사립(전문대 포함)대학 재학생 수”로 국·공립대학 재학생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바, 행복기숙사 수용률이 과대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당해연도까지 개관된 행복기숙사 수용인(누적) = 당해연도까지 개관된 [**국·공립대학**+ 사립(전문대 포함)대학 재학생 중] 행복기숙사 수용인(누적)
당해연도 사립(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수

418) 2023년 교육부 성과보고서

419)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행복기숙사 유형 중 파리한국관, 글로벌 교류센터, 에듀21 기숙사에 입주 중인 학생들은 행복기숙사 수용률 산출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전문대 포함)대학 재학생 수”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20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 또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사립(전문대 포함)대학 재학생 수”는 향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복기숙사의 수용인원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립(전문대 포함)대학 재학생 수의 감소로 행복기숙사 수용률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립대학 재학생 현황(2014년~2023년) >

(단위: 천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학생	1,658	1,633	1,599	1,568	1,560	1,553	1,537	1,486	1,440	1,43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조사기준일: 해당연도 4.1)

< 연령별(20세~29세) 추계인구(2024년~2033년) >

(단위: 천명)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인구	6,372	6,137	5,888	5,678	5,510	5,342	5,158	5,034	4,984	4,95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참조(기준: 2023.12.14.)

❑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성과지표로서 행복기숙사 수용률은 목표 대비 실적이 모두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복기숙사 수용률 측정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한편, 2024년도 성과평가부터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420], '대학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 '행복기숙사 수용률'이 제외되었으나,

향후 동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표로 '행복기숙사 수용률'을 다시 적용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성과지표 마련시 위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20)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